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인도주의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

위험 감소, 회복력 증진 및 복구 지원

Guidelines for Integr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Action

*Reducing risk, promoting resilience
and aiding recovery*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아동 보호



교육



식량 안보 및 농업



보건



주택, 토지 및 재산



인도적 지뢰 퇴치 활동



생계



영양



보호



쉘터, 정착 및 복구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인도주의 활동 지원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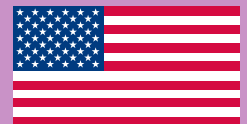
더 많은 정보를 얻고, GBV 가이드라인과 주제별 지침 가이드의 온라인 버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www.gbvguidelines.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인도주의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 위험 감소, 회복력 증진 및 복귀 지원」의 한글판은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서울시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1203호, 우편번호 04521)에서 출판했습니다. 본 지침은 2015년 첫 출간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인도주의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 위험 감소, 회복력 증진 및 복귀 지원」의 영문판의 번역본입니다.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인도주의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 위험 감소, 회복력 증진 및 복귀 지원」은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에서 2005년 발간한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개입 지침」의 2015년 종합 개정판 번역본입니다. 본 GBV 지침은 GBV 조정 유닛/기관의 안내를 따라 미국 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산하 해외재난지원국 (Office of U.S. Foreign Disaster Assistance, OFDA)의 지원으로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가 독자적으로 번역하고 발간했습니다.



발행인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1203호
이메일 iomseoul@iom.or.kr
웹사이트 www.iom.or.kr
감수 조혜림(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인쇄 2017년 11월
발행 2017년 11월



개정과정에서 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신 미국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젠더기반폭력 AoR(Gender-Based Violence Area of Responsibility)은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 수준의 포럼입니다. 이 포럼에는 더 예측 가능하고, 책임있으며 효과적인 GBV 방지 및 대응을 보장하고자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비정부기구, 유엔 기구, 학계 및 기타 기관이 모였습니다. 인도적 지원 체계에서 GBV AoR은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 (Global Protection Cluster) 내에서 '책임 영역(area of responsibility)'을 구성합니다.

<<http://gbvaor.net>>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인도주의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

위험 감소, 회복력 증진 및 복구 지원

Guidelines for Integr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Action

Reducing risk, promoting resilience
and aiding recovery

-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  아동 보호
-  교육
-  식량 안보 및 농업
-  보건
-  주택, 토지 및 재산
-  인도적 지뢰 퇴치 활동
-  생계
-  영양
-  보호
-  쉼터, 정착 및 복구
-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  인도주의 활동 지원 부문

감사의 글

본 지침은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가 2005년 발간한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위한 지침”의 종합 개정판입니다. 본 지침은 진 워드(Jeanne Ward)와 줄리 라프르니에르(Julie Lafrenière)가 주저자로, 사라 코트리(Sarah Coughtry), 사미라 사미(Samira Sami), 제이니 로리-와이트(Janey Lawry-Whit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개정에 대한 감독은 UNICEF가 주도하는 운영팀이 맡았습니다. 이 운영팀에는 본 지침의 저자를 비롯하여 UNICEF의 멘디 마시(Mendy Marsh)와 에린 패트릭(Erin Patrick), UNFPA의 에린 케니(Erin Kenny), 여성난민위원회(Women’s Refugee Commission)의 조안 티모니(Joan Timoney), 독립 컨설턴트인 베스 반(Beth Vann)이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16개 기관으로 구성된 기관 간 자문 위원회(‘자문팀’)가 본 지침의 개정을 위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 자문팀에는 글로벌 GBV AoR(GBV Area of Responsibility, AoR)의 공동 주도 기관인 UNICEF와 UNFPA를 비롯하여 UNHCR,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 미국난민협회(American Refugee Committee), 케어인터내셔널(Care International), 가톨릭구호서비스(Catholic Relief Services), 국제어린이재단(ChildFund International), 인터액션(InterAction), 국제의료단체(International Medical Corps),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옥스팜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 플랜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 레퓨지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여성난민위원회(Women’s Refugee Commission) 등의 전문 NGO와 함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및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독립 컨설턴트 등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헌신과 기여는 전 개정 과정에 걸쳐 든든한 구심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정 착수에 앞서 중점 사항을 정하고 현장 내 특정 필요와 도전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국어 설문조사가 실시됐으며, 이번에 개정된 본 지침의 내용과 디자인은 이러한 설문조사를 포함한 심층 협의 과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네 차례의 글로벌 리뷰를 거치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부나 국가에서 활동하는 200여 이상의 국내 및 국제 행위자로부터 상세한 의견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또한 8개국 9개 지부에 있는 유엔, INGO, 정부 기관에 걸쳐 약 1,000명에 달하는 관계자가 참여하여 본 지침의 초안을 현장 차원에서 검토 및 검증했습니다.

저희 운영팀과 자문팀은 본 지침의 개정에 참여해 주신 전 세계 모든 개인과 단체, 특히 국제 및 현장 차원의 클러스터 주도 기관 및 클러스터 조정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 지침의 개정을 위해 참여해주시고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개정을 위해 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신 미국 정부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본 지침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글로벌 레퍼런스 그룹이 설립됐으며, 이 그룹에는 UNICEF 및 UNFPA의 주도 하에 미국난민협회, 케어 인터내셔널,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 국제어린이재단, 국제의료단체, 국제이주기구, 국제구조협회, 노르웨이난민위원회, 옥스팜, 레퓨지인터내셔널, 세이브더칠드런, UNHCR, 여성난민위원회, 세계식량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침의 이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GBV 지침 웹사이트<www.gbvguidelines.org>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는 지식의 보고로서, 본 지침뿐만 아니라 관련 툴, 사례 연구 모음,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쉽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본 지침의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버전, 관련된 교육 및 학습 자료 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출판물에서 사용된 명칭 및 제시된 자료는 어떠한 국가, 영토, 도시나 지역 또는 해당 당국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나 국경 또는 경계와 관련하여 UN 또는 협력기관의 어떠한 의견 표현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Prographics, Inc.

인용 제안: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15,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인도주의 활동에 젠더기반폭력 통합하기 위한 지침: 위험 감소, 회복력 증진 및 복구 지원



머리말

인도주의 활동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전 단계에 걸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 보호와 장기적인 웰빙 유지에 집중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젠더기반폭력은 인도주의 비상사태 시 개인, 가족, 지역 사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보호 관련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분쟁 상황에서, 특히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자행된 성폭력에 관한 끔찍한 증언이 최근 몇 년간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및 이보다 덜 알려진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아동 결혼, 여성 할례 등 기타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의 발생 빈도는 가히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자연재해 및 기타 비상사태는 이러한 폭력을 가속화시키고 보호 수단을 침식시킵니다. 젠더기반폭력은 생존자를 유린하고 트라우마를 남길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사회의 회복력을 약화시켜 복구와 재건이 어렵게 만듭니다.

젠더기반폭력의 범위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젠더기반폭력을 예방하고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행 프로그램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새로 개정된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의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인도주의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 위험 감소, 회복력 증진 및 복구 지원”은 인도주의 커뮤니티가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명확한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대비부터 회복에 이르는 인도주의 대응의 전 단계에 걸쳐서 젠더기반폭력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 인도주의 활동가와 커뮤니티가 필수 행동을 조정,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안내와 효과적인 틀을 담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검토와 현장 검증을 거친 본 지침은 인도주의 커뮤니티 전역에 걸쳐서 활동하는 우리 동료들의 통합된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또한 인도주의 활동에서 보호의 중심화를 추구하는 IASC의 원칙이라는 우리 공동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ⁱ

인도주의 기관에서부터 조정관,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인도주의 기관, 클러스터, 그리고 공여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인도주의 활동의 모든 측면에 젠더기반폭력 프로그램을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젠더기반폭력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제는 이러한 재앙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회원국, 유엔 기구, 시민 사회, 개인,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ⁱⁱ

젠더기반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치 단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집된 의지를 발판 삼아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도주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커뮤니티, 가족, 개인이 더 강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지고 있는 책임이자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Stephen O'Brien

스테판 오브라이언
(Stephen O'Brien)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사무차장



Hervé Ladsous
에르베 라드수
(Hervé Ladsous)
유엔평화유지활동 사무차장



Elhadj As Sy
엘하지 아 씨
(Elhadj As Sy)
사무총장



William Lacy Swing
윌리엄 레이스 스윙 대사
(William Lacy Swing)
사무총장



Jasmine Whitbread
재스민 위트브레드
(Jasmine Whitbread)
CEO



Babatunde Osotimehin
바바툰데 오소티메힌
(Babatunde Osotimehin)
총재



Helen Clark
헬렌 클라크
(Helen Clark)
행정관



Joan Clos
조안 클로스
(Joan Clos)
총재



António Guterres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ónio Guterres)
고등판무관



Anthony Lake
안토니 레이크
(Anthony Lake)
총재



Ertharin Cousin
어서린 커즌
(Ertharin Cousin)
총재



Margaret Chan
마거릿 찬
(Margaret Chan)
사무총장

ⁱ <www.interaction.org/document/centrality-protection-humanitarian-action-statement-iasc>

ⁱⁱ <www.un.org/en/women/endviolence/pdf/pressmaterials/VAW%20Press%20Release.pdf>



약어

AAP	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s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CwC	communicating with communities 커뮤니티와의 커뮤니케이션
AoR	area of responsibility 책임 영역	DDR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무장 해제, 동원 해제 및 재통합
AXO	abandoned explosive ordnance 방치된 폭발물	DEVAW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폭력철폐선언
CA	camp administration 캠프 행정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국제개발부
CAAC	Children and Armed Conflict 아동과 무력분쟁	DRC	Danish Refugee Council 덴마크 난민위원회
CAAP	Commitments on 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s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을 위한 약속	DRC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콩고민주공화국
CaLP	Cash Learning Partnership 현금 학습 파트너십	DTM	Displacement Tracking Matrix 이재이주 추적 매트릭스
CBPF	country-based pooled fund 지역기반합동기금	EASÉ	Economic and Social Empowerment 경제 및 사회적 역량강화
CCCM	camp coordination and campmanagement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EC	emergency contraception 긴급 피임
CCSA	clinical care for sexual assault 성폭행 임상 치료	ERC	emergency relief coordinator 긴급구호 조정관
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ERW	explosive remnants of war 전쟁 잔류 폭발물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중앙긴급대응기금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식량농업기구
CFW	cash for work 현금지원 취로사업	FGD	focus group discussion 표적집단토론
CIVPOL	Civilian Police 민간 경찰	FGM/C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여성 할례
CLA	cluster lead agency 클러스터 주도 기관	FSA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식량 안보 및 농업
CoC	code of conduct 행동 강령	GA	General Assembly 총회
CP	child protection 아동 보호	GBV	gender-based violence 젠더기반폭력
CPRA	Child Protection Rapid Assessment 아동 보호 신속 현황 파악	GBVIMS	Gender-Based Viole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젠더기반폭력 정보관리시스템
CPWG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아동 보호 워킹그룹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정보시스템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협약	HC	humanitarian coordinator 인도주의 조정관



약어(계속)

HCT	humanitarian country team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인도주의 기관	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정보 관리 시스템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INEE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비상사태 시 교육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HLP	housing, land and property 주택, 토지 및 재산	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국제 비정부기구
HMA	humanitarian mine action 인도적 지뢰 퇴치 활동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HPC	Humanitarian Programme Cycle 인도주의 프로그램 주기	IPPF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국제가족계획연맹
HR	human resources 인적 자원	IRC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국제구조위원회
HRP	Humanitarian Response Plan 인도주의 대응 계획	IRIN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 종합 지역 정보 네트워크
HRW	Human Rights Watch 국제인권감시단	IRIN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 종합 지역 정보 네트워크
IASC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	KII	key informant interview 주요 정보원 인터뷰
ICLA	Information, Counselling and Legal Assistance 정보, 카운슬링 및 법적 지원	LEGS	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축산 비상사태 지침 및 기준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LGBTI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M&E	monitoring and evaluation 모니터링 및 평가
ICWG	inter-cluster working group 클러스터 간 워킹그룹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IDD	Internal Displacement Division 국내 이재이주 담당부서	MHPSS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 국내 이재민	MIRA	multi-cluster/sector initial rapid assessment 다중 클러스터/부문 초기 신속 현황 파악
IEC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정보, 교육 및 의사소통	MISP	Minimum Initial Service Package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연맹	MoE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IGA	income-generating activity 소득 창출 활동	MPP	minimum preparedness package 최소 대비 패키지
IMC	International Medical Corps 국제의료단체	MRE	mine risk education 지뢰 위험 교육
IMN	Information Management Network 정보 관리 네트워크	MRM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모니터링 및 신고 메커니즘



약어(계속)

NFI	non-food item 비식량물품	SRP	strategic response plan 전략적 대응 계획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SS&R	shelter, settlement and recovery 쉘터, 정착 및 복구
NRC	Norwegian Refugee Council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STI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성매개감염병
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SWG	Sub-Working Group 하위 워킹그룹
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TAG	Thematic Area Guide 주제별 지침
Oxfam	Oxford Famine Relief Campaign 옥스퍼드 기근 구호 캠페인	UNDAC	United Nations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유엔재난평가조정단
PATH	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 건강 부문 적정기술을 위한 프로그램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PEP	post-exposure prophylaxis 노출 후 예방조치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PFA	psychological first aid 심리적 응급처치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기구
POC	Protection of Civilians 민간인 보호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PSEA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인구기금
PTA	parent-teacher association 학부모교사연합회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유엔지뢰퇴치활동국
RC	resident coordinator 지역 조정관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RDC	relief to development continuum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구호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SAFE	Safe Access to Firewood and alternative Energy 장작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접근	UXO	unexploded ordnance 불발탄
SC	Security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	VAW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SGBV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VSLA	Village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마을저축대부조합
SOGI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SOP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표준운영절차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기구
SRH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성 및 생식보건		



약어(계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MA	World Medical Association 국제의료협회
WPE	Women's Protection and Empowerment 여성 보호 및 역량강화
WRC	Women's Refugee Commission 여성난민위원회



목차

감사의 글.....	ii
머리말.....	iii
약어.....	iv

제1부 개요

제1장 지침의 개요	1
제2장 젠더기반폭력의 개요.....	5
제3장 인도적 지원 활동 중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할 의무.....	14
제4장 지침 이행 보장하기: 주요 행위자의 책임.....	18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

제1장 주제별 부문 소개	31
제2장 젠더기반폭력 대처를 위한 원칙 및 접근법.....	45

제3부 주제별 지침

제1장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51
제2장 아동 보호.....	73
제3장 교육	97
제4장 식량 안보 및 농업	121
제5장 보건	141
제6장 주택, 토지 및 재산.....	167
제7장 인도적 지뢰 퇴치 활동.....	187
제8장 생계	203
제9장 영양.....	223
제10장 보호.....	241
제11장 쉼터, 정착 및 복구.....	263
제12장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281
제13장 인도주의 활동 지원 부문.....	303

부록

부록 1 젠더기반폭력 관련 주요 참고자료.....	309
부록 2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용어집.....	310
부록 3 젠더기반폭력의 일반적인 유형	319
부록 4 기타 주요 용어.....	321
부록 5 젠더기반폭력 범위에 대한 통계	324
부록 6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할 의무	327
부록 7 인도주의 전략 계획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	331
부록 8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프로젝트 젠더 마커 팁 시트.....	337
	340



제1부 개요



제1장 지침의 개요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actor) 및 무력분쟁, 자연재해 및 기타 인도주의 비상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가 인도주의 대응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필수 행동을 조정, 계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돼 있듯이 GBV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공중 보건 및 인권 문제이다.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GBV 관련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군비 강화, 커뮤니티 및 국가 보호 부재, 이재이주(displacement), 필수 자원 부족, 커뮤니티 서비스 중단, 문화 규범 및 젠더 규범의 변화, 관계 단절, 기반 시설 약화 등이 있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예방' 및 '완화'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GBV의 '예방'과 '완화'라는 용어의 의미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예방'과 '완화' 사이에 중복될 수 밖에 없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방은 GBV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젠더 평등을 증진하는 활동을 확대하거나, 커뮤니티, 특히 남성 및 남아와 협력하여 GBV의 원인이 되는 관행에 대처하는 조치 등). 완화는 GBV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예: 우범지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위험 감소 전략을 이행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거나, 이재이주 캠프의 설치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조명과 보안 순찰대를 마련하는 조치 등). 보건 등 일부 부문에서는 생존자 돌봄 및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문의 경우, 전문적인 대응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권고사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지침에서는 인도주의 대응의 모든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수 예방 및 완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모든 국내외 행위자는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는 GBV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생명을 구하고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 대비 초기 단계부터 부문간 조정된 방식으로 필수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필수 행동은 '제3부 주제별 지침'에 제시돼 있으며, 모든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포괄적이고 상호 연결된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비상사태 이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도주의 대응의 모든 영역에 걸쳐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이행하여 GBV 위험을 줄인다.
2. GBV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국가 및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을 강화하고 GBV 생존자¹ 및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한 돌봄(care)과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회복력을 증진한다.
3. GBV 문제의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적 및 국가적 역량을 지원하여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복구를 지원한다.

¹ 생존자란 젠더기반폭력을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와 '생존자'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법률 및 의료 부문에서 자주 사용되며, '생존자'라는 용어에는 회복력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리적·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선호된다. 본 지침에서도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생존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침의 구성

제1부에는 본 지침에 대한 소개, GBV의 개요, GBV가 모든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의 보호 관련 우려사항인 이유, 그리고 본 지침의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이 담겨있다.

제2부에서는 제3부 '주제별 부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각 주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한다. 또한, GBV 관련 프로그램의 모든 기획 및 이행에 기초가 되는 이행 원칙과 접근법을 소개한다. 모든 부문별 행위자는 관련된 주제별 지침과 함께 '제2부 배경'을 숙지해야 한다.

본 지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3부는 13개의 장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각 장에서는 인도주의 대응의 각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²

이렇듯 지침이 인도주의 활동 영역별로 정리돼 있지만 모든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독단적인'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각 장에서는 부문 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문별 행위자에게 다부문적 연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부문별 행위자가 자신의 활동 영역에 적용되는 내용뿐 아니라 다른 주제의 내용도 모두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본 지침은 유엔, 국내외 비정부기구, 학술 기관에서 개발한 다양한 툴, 기준, 배경 자료 및 기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각 장에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참고자료의 목록이 포함돼 있고, 추가적인 GBV 관련 참고자료는 '부록 1'에 별도로 정리돼 있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가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

본 지침에서 제시된 행동은 여러 형태의 GBV에 대해 알려지거나 확인된 발생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도적 개입 초기 단계뿐 아니라 어떠한 비상사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GBV가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GBV는 전 세계적으로 축소 보고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거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신뢰할 만한 서비스 제공자의 제한적인 가용성 또는 접근성, 가해자에 대한 면책, 돌봄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비상사태 시 GBV의 실상에 대한 인구 기반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는 안전 및 윤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인도주의 부문 종사자는 GBV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인구가 위협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GBV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여, 구체적인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본 지침의 부문별 권고사항에 따른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² 이러한 주제별 지침은 글로벌 클러스터 시스템 내의 인도주의 활동 영역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지침에서는 클러스터 환경과 비클러스터 환경에 모두 적합하도록 '클러스터'보다는 '부문'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클러스터화된 환경에서만 수행하는 활동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경우에는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클러스터 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humanitarianresponse.info/clusters/space/page/what-cluster-approach>를 참조한다.



대상

본 지침은 비상사태로 인해 이재이주한 사람을 받아들인 수용국/수용 커뮤니티뿐 아니라 무력분쟁, 자연재해 및 기타 인도주의 비상사태의 피해를 입은 환경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주요 대상은 프로그램 담당자들로서, 자신이 담당한 부문별 개입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통합하기 위해 본 지침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인도주의 조정관, 부문별 조정관, 공여자를 비롯한 인도주의 조정관도 본 지침을 참고자료 및 옹호 활동을 위한 툴로 활용해야 한다. 본 지침은 인도주의 부문 책임자가 기관 간 기획 및 조정을 촉진하고 충분한 자원 할당을 보장하며 직간접적으로 GBV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가·지역·기관의 정책과 국가 법률을 개정하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개발 환경(특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피해를 받는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GBV 예방 및 완화를 비롯한 인도주의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지침은 비 GBV 전문가, 즉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에 특정한 전문성은 없지만 피해 인구³의 GBV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이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GBV 부문이 아닌 다른 인도주의 대응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관 및 개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지침의 일부 주제(예: 의료, 교육, 보호, 아동 보호 등)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중에는 GBV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제별 부문에서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예방 및 완화 활동을 넘어 전문적인 대응 활동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는 성폭행 생존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GBV 생존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생존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면담과 조사를 수행하는 경찰의 역량강화 등이 있다. 이처럼 전문적인 GBV 대응 활동을 수행할 때는 GBV 전문가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전문가, GBV 전문기관 및 GBV 중심 프로그램의 중요성

본 지침 전반에 걸쳐 'GBV 전문가' 및 'GBV 전문기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GBV 전문가란 GBV 집중 전문 교육을 받거나 GBV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GBV 전문기관이란 GBV 예방 및 대응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의 수행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GBV 전문가, 인도적 지원 기관 및 기관 간 메커니즘은 본 지침을 활용하여 비 GBV 전문가가 각자의 활동 영역 내에서 그리고 여러 영역에 걸쳐 예방 및 완화 활동(일부 부문에서는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를 포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지침에는 GBV 전문가에게 기술적 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이 (각 주제별 '조정' 부분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본 지침에서는 GBV 중심(또는 GBV '중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GBV 전문가의 세부적인 책임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GBV 중심 프로젝트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GBV 전문 프로그램을 다부문적 GBV 주류화로 교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GBV 전문가를 비상사태 대비 초기 단계에 배치하여 GBV 전문 개입을 기획, 이행 및 조정하고, 이러한 GBV 전문 개입이 인도주의 대응의 모든 단계에 걸쳐 지속되고 확장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전문 GBV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반적인 참고 자료는 '부록 1'에 정리돼 있다.

³ 피해 인구에는 현재 이동 중이거나 캠프, 도시 또는 농촌 지역에 정착한 이재이주민(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과 국경을 넘은 사람 모두를 포함)을 비롯해 무력분쟁, 자연재해, 기타 인도주의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본 지침은 피해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여성 및 여아가 남성 및 남아와 함께 대비,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 활동 전반에 걸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제2장 젠더기반폭력의 개요

GBV 정의

젠더기반폭력(GBV)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차이(즉, 젠더)를 기반으로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GBV에는 신체적·성적·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주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압 및 기타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GBV 행위는 국제 조약 및 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는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제3장 '인도적 지원 활동 중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할 의무' 참조).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유형의 GBV가 국가 법률 및 정책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규정되는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고 법률 및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양상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GBV'라는 용어는 전 세계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 간의 구조적 불평등이 어떻게 여성과 여아에게 자행되는 폭력 형태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일괄적이고 근본적인 특성으로 작용하는지를 강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DEVAW, 1993)은 여성 폭력을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피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모든 젠더기반폭력"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GBV란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 및 차별을 낳고 여성의 완전한 진보를 방해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강조한다. 젠더 차별은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여러 형태의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폭력이 광범위하게 용인되고 은밀히 자행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생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하지 못하고 지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일부 행위자(actor)는 '젠더기반폭력'이라는 말을 남성 및 남아에 대한 젠더 차원의 특정 폭력 형태, 특히 남성성과 여성성의 불공평한 젠더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명시적 목적으로 자행되는 일부 성폭력 형태(예: 무력분쟁에서 적을 무력화하거나 여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자행되는 성폭력)를 강조할 때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남성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은 남자다움과 남성력 행사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남성이 (또는 아주 드문 경우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해를 가할 때 사용된다. 남성과 남아에 대한 폭력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과 마찬가지로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축소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남성성에 관한 규범(예: 남성 생존자가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거나 남성 생존자가 다소 약했기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고 암시하는 규범)과 관련이 있다. 남성성에 대한 성폭행은 신고로 인해 생존자와 그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국가의 법률에서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사전동의

어떠한 행위가 한 사람의 의지에 반해 가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동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동의는 어떠한 행위에 관한 사실, 영향 및 향후 결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전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하는 시점에 그 행위와 관련된 각 개인이 모든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개인은 해당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강요받지 않을 (즉, 강압이나 위협에 근거하여 설득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아동은 어떠한 행위가 미칠 영향을 예상할 능력이거나 경험이 없고 거부할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전동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지 장애, 신체, 감각 또는 발달 장애로 인해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남성에 대한 성폭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한 폭력의 생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한다.

또한, 일부 행위자(actor)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에게 자행되는 폭력을 지칭할 때 '젠더기반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에 따르면 LGBTI에 대한 폭력은 "젠더 규범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벌하려는 욕구에 의해 발생한다"(OHCHR, 2011). 약어 'LGBTI'는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적 규범 밖에 있다고 느낀 경험을 공유하는 광범위한 정체성을 아우르는 말이다(용어 검토는 '부록 2' 참조). 더 나아가 OHCHR은 "레즈비언 및 트랜스젠더 여성은 가족과 그보다 더 큰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 및 권력 관계 때문에 특정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동성애 혐오증과 트랜스젠더 혐오증은 이러한 폭력을 유발할 뿐 아니라 LGBTI 생존자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특히 국가가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감시하는 환경에서 가장 심각하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여성, 여아 그리고 GBV

세계 곳곳에서 여성과 여아는 사회적 권력 및 영향력, 자원 및 신체 통제력, 공적 생활 참여 기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 이는 모두 사회적으로 결정된 젠더 역할 및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은 이러한 불평등 상태에서 발생한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남성, 여성, 남아 및 여아에 대한 폭력 위험성을 높이는 다양한 젠더 취약성을 분석하고 모든 생존자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보장하는 한편, 여성과 관련된 문서화된 GBV에 대한 심각한 취약성, 이들이 경험하는 심한 차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안전하고 공평한 접근성의 부족을 감안하여 여성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IASC '젠더평등정책성명(Gender Equality Policy Statement)'(2008)에 따른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젠더 평등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 또한, 목표한 활동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부록 6' 참조)에 제시된 여성, 평화 및 안보 관련 주제별 의제에 명시된 여성과 여아의 보호, 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본 지침에서는 인도주의 위기로 인한 모든 피해 인구를 보호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여성과 여아의 GBV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졌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해 젠더 평등을 증진하는 전략을 포함한 맞춤형 지침을 제공한다.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의 성격 및 범위

분쟁 중에 발생하는 성폭력(예: 강간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전쟁 무기로 사용)을 모니터링 및 문서화하고 이에 대처하는 활동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폭력은 즉각적·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통한 피해 예방과 성폭력에 대처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피해 인구는 분쟁과 자연재해, 이재이주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귀환 과정 및 귀환 후에 다양한 형태의 GBV를 겪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을 GBV 관련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형태의 가정 폭력, 강제적·강압적 성매매, 아동 결혼, 강제 결혼, 여성 할례, 여영아살해, 성착취나 강제/가사 노동을 위한 인신매매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은 일정한 환경에서 확인된 필요(needs)와 폭력의 동향에 따라 GBV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GBV 유형 목록과 관련 정의는 '부록 3' 참조).



모든 유형의 GBV에서 폭력은 주로 남성이 여성을 종속, 무력화, 처벌 또는 지배하기 위해 사용한다.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젠더는 폭력 동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성에 대한 폭력은 안면만 있거나 낯선 사람이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여성은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가족 등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⁴ 뿐만 아니라 만연한 젠더 차별 및 젠더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과 여아는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GBV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GBV에는 1차적인 사건의 결과로 겪게 되는 '2차' GBV(예: 신고를 접수한 사람이 저지르는 학대, 성폭행에 뒤이은 명예 살인, 가해자와의 강제 결혼 등)가 포함된다.

비상사태 중에는 GBV 발생률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그 이유는 비상사태 환경에서 GBV 피해 집단에 대한 연구 수행과 관련된 방법론 및 상황에 따른 문제(예: 생존자 및 연구자의 안보 관련 사안, 이용 또는 접근 가능한 대응 서비스의 부족 등)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의 성격 및 범위에 관해 얻게 되는 정보는 대부분 그 출처가 질적 연구, 일화성 보고, 인도적 지원 모니터링 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통계이다. 아래에 있는 통계 데이터를 통해 많은 형태의 GBV가 인도주의 비상사태 중에 현저히 악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추가 통계자료 및 아래 제시된 데이터의 출처는 '부록 5' 참조).

- 2013년 UNICEF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협력기관들과 함께 GBV 생존자 12,24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중에서 약 30%(3,827명)가 아동(여아: 3,748명, 남아: 79명)이었다(UNICEF DRC, 2013).
- 2011년 홍수 이후 파키스탄에서는 조사 대상 커뮤니티의 52%가 여성 및 여아의 사생활과 안전이 주요 우려사항이라고 응답했다.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재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에 대한 2012년 신속 보호 현황 파악(Protection Rapid Assessment)에서 인터뷰에 응한 커뮤니티들은 수많은 여성과 여아가 더 심해진 가정 폭력, 강제 결혼, 조혼, 교환 결혼과 기타 젠더기반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de la Puente, 2014).
-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한 가구 조사(2008)에서는 87.2%의 여성이 생애 동안 한 가지 형태의 폭력을 당했고 62%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de la Puente, 2014).

⁴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국제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 피살 사건 중 38%의 가해자가 남성 파트너였고, 남성 피살 사건 중 여성 파트너가 가해자인 경우는 6%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남성은 사고사를 당하거나 응급 처치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을 입는 경우가 불균형적으로 더 많았고, 여성과 여아, 아동 및 노인은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와 방치로 인한 비치명적인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불균형적으로 더 많았다.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status_report/2014/en>. 참조: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http://whqlibdoc.who.int/hq/2002/9241545615.pdf>>)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여성과 자연재해

여성과 여아는 자연재해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가사 노동, 농업 및 식량 생산과 관련해 더 큰 책임을 맡은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가사 노동 책임을 추가로 떠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예: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가족의 곁을 떠나야 하는 경우). 법질서가 붕괴되거나 사회적 지원 및 안전 시스템(예: 대가족 또는 마을 집단)이 실패하게 되면 여성 및 여아에 대한 GBV 및 차별 위험이 증가한다.

(인용: Global Protection Cluster. n.d. 'Strengthening Protections in Natural Disaster Response: Women and girls' (draft), <www.globalprotectioncluster.org/en/tools-and-guidance/protection-cluster-coordination-toolbox.html>)

- 라이베리아에서는 성인 1,666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 전투원의 32.6%는 성폭력을 당했고 16.5%는 강제로 성노예가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Johnson et al., 2008). 시에라리온에 있는 캠프에서 생활하는 라이베리아 난민 여성 388명(조사 표본) 중 74%는 이재이주하기 전에 성적 학대를 당했고 55%는 이재이주하는 도중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다(IRIN, 2006 및 IRIN, 2008).
- 분쟁 후 우간다 북부에서 여성 장애인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는 대상의 1/3은 GBV를 당했고 몇 명은 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보고됐다(HRW, 2010).
- 2011년 케냐에 위치한 다답(Dadaab) 난민 캠프에서 시행한 현황 파악 조사에서는 소말리아 출신 청소년기 여아는 언어 및 신체 희롱, 기본 필수품을 빌미로 한 성적 착취 및 학대, 강간(공개된 장소 및 다수의 가해자에 의한 것 등 포함)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보고됐다. 여아는 급수장과 같이 부족한 서비스 및 자원에 접근하거나 캠프 밖에서 장작을 모으는 동안 폭력에 특히 더 취약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보고했다(UNHCR, 2011).
- 말리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 할례(FGM/C)가 시행되지 않는 북부 출신 이재이주 가정의 딸들이 FGM/C가 흔한 남부의 수용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FGM/C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북부 출신 가정은 자기 딸에게 FGM/C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Plan Mali, 2013년 4월).
-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여파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가정 폭력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 NGO는 신고 접수 건수가 세 배나 증가했다고 보고했다(UNFPA, 2011).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자연재해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급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ety, 2012).
- 인권문서화유닛(Human Rights Documentation Unit)과 버마여성연합(Burmese Women's Union)이 2000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 40,000명으로 추산되는 미얀마 여성이 매년 인신매매를 통해 태국의 공장과 성매매 업소로 보내지거나 가사 노동자로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IRIN, 2006).
- 콜롬비아에서는 생존자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1년 GBV 정보관리시스템(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을 시작해 7개 지역에서 GBV 사건 데이터를 수집했다. 2014년 중반까지 여성 3,499명(그 중 92.6%가 18세 이상)과 남성 437명(그 중 91.8%가 18세 이상)이 GBVIMS에 등록됐고 그중 3,000명 이상이 지원을 받았다(GBVIMS Colombia, 2014).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ST/SGB/2003/13, <www.refworld.org/docid/451bb6764.html>)에 관한 사무총장의 행정명령(Secretary-General's Bulletin)에서 강조한 것처럼 PSEA는 국제 인도주의, 개발, 평화유지 부문 행위자의 특정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에는 유엔, NGO 및 정부 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부문 종사자가 피해 인구를 상대로 저지르는 성적 착취 및 학대 사건의 예방,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 메커니즘 수립, 사건 발생 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안전하고 윤리적인 조치 실행 등이 포함된다. PSEA는 GBV 예방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PSEA 활동은 GBV 전문성 및 GBV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생존자의 권리와 기타 이행 원칙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책임은 인도주의 조정관/상주 조정관 및 개별 기관이 결정한다. 따라서 PSEA에 대해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본 지침의 권한 밖에 있다. 그렇긴 하지만 본 지침에서는 사무총장의 행정명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인도적 기관 정책 및 커뮤니티 아웃리치(outreach)에 PSEA 전략을 통합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자세한 지침은 IASC AAP/PSEA 태스크포스 웹사이트: <www.pseataaskforce.org>에서 볼 수 있다.



GBV가 개인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GBV는 생존자의 성적,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향후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한다. GBV가 성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로는 원치 않는 임신,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합병증, 여성의 성적 흥분 장애 또는 남성의 발기부전, HIV를 포함한 성매개감염병 등이 있다. GBV가 신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는 급성 및 만성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이 포함되며, 이러한 질병은 신경계, 소화기계, 근육계, 비뇨기계, 생식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존자는 GBV의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수행할 수 있었을 신체적·정신적 노동을 완수할 수 없게 된다. GBV가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는 우울증, 불안, 음주 및 마약 복용,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및 자살경향성 등이 있다.⁵

GBV 생존자는 GBV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커뮤니티 및 가정 내 따돌림은 생존자를 사회적·경제적으로 한층 더 불리한 처지로 내몰 수 있다. GBV가 미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로 인해 생존자는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과 잘 지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GBV가 미치는 피해는 생존자 가족과 커뮤니티 간 관계 등 커뮤니티 내에서의 관계나 강간을 당해 낳게 된 아이에 대한 커뮤니티의 태도로부터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LGBTI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성폭력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안대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는 다른 남성이 자신에게 저지른 성폭력을 신고했다가 소도미 법(sodomy laws)의 규정에 따라 역으로 기소를 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GBV는 영아 사망률을 높이고 출생 시 체중을 낮춰 영양실조에 일조할 뿐 아니라 학교 활동 참여에 지장을 줌으로써 아동의 생존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동에게 특정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상으로 인해 신체장애를 입거나, 적절한 영양 또는 자극을 얻지 못해 발달이 지체될 수 있으며, 학대를 당한 결과로 장기간에 걸쳐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보건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피해 중 대다수를 항상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BV와 직접적으로 관련짓기 어렵다. 이로 인해 GBV가 원인이 아니라는 잘못된 가정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가정, 커뮤니티에 GBV가 주는 피해에 대처하지 못하고 GBV의 범위와 숨은 속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가 인도주의 비상사태에서 치유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GBV 유발요인과 원인

인도적 개입에 GBV 예방 및 완화를 통합하려면 GBV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예상하고 그와 관련된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회, 커뮤니티, 개인/가족 차원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요인의 예가 다음 표에 정리돼 있다. 이러한 분류는 하이제(Heise, 1998)가 개발한 생태학적 모형(ecological model)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음의 예시는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나열한 것이므로, 실제 위험 요인은 환경, 인구, GBV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예시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을 통해 GBV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주의 비상사태와 관련된 조건은 다양한 형태의 GBV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의 근본 원인은 비상사태이건 안정기이건 상관없이 젠더 기반 차별과 불평등한 권력을 조장하거나

⁵ 여성 및 아동에 대한 GBV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Violence Against Women: Health consequences', <www.who.int/gender/violence/v8.pdf>, **UN Women.** 'Virtual Knowledge Centr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www.endvawnow.org/en/articles/301-consequences-and-costs-.html>을 참조한다. 남성에 대한 성폭력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12.** Working with Men and Boy Survivors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Forced Displacement, <www.refworld.org/pdfid/5006aa262.pdf>를 참조한다.

용납하는 태도, 신념, 규범 및 구조와 관련이 있다. GBV의 뿌리가 젠더 차별 및 젠더 불평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피해 인구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 아니라 젠더 평등을 향한 장기기간에 걸친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는 전략을 가능한 한 인도주의 활동 초기에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에는 인도주의 부문과 관련된 커뮤니티 기반 단체에서 남성 및 남아와 함께 여성 및 여아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피해 인구의 권리 증진을 위한 옹호 활동을 실시하고, 여성을 프로그램 담당 직원이나 책임자로 채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GBV 유발요인	
사회 차원의 GBV 유발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투가 쉽거나 감시가 없는 국경, 인신매매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 • 교전법 및 국제인도법 미준수 • 과잉 남성성(hyper-masculinity), 폭력적인 남성 규범/행동의 장려 및 그에 대한 보상 • 전투 전략(예: 전쟁 무기로 이용되는 고문 또는 강간) • 안보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의 부재 • GBV 관련 미비한 법률 체계 및 GBV를 범죄화하지 않는 면책 관행, 또는 다양한 형태의 GBV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인식의 부족 • 인도주의 비상사태 시 자행되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대규모 생존자 보상 및 지원 프로그램(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포함)을 통한 대처 부족 • 경제적, 사회적, 젠더 불평등 • 리더십, 평화 구축 절차, 안보 부문 개혁에 있어서 여성의 유의미하고 적극적인 참여 부족 • 성범죄 기소에 대한 우선순위 부족, 회복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결과(특히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준비 부족 • 장기적인 억류 또는 기소, 생계, 독립성, 남성적 역할의 상실 등 폭력 유발요인에 대한 대처에 실패
커뮤니티 차원의 GBV 유발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캠프/쉼터/WASH 시설 설계 및 기반 시설(장애인, 노인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위한 시설 포함) • 여성, 특히 청소년기 여아의 중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위한 안전 쉼터 부족 • 인도주의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심사 및 감독의 부족 • 피해 인구, 특히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위한 경제적 대안의 결여 • 커뮤니티 보호 메커니즘 붕괴 및 GBV 관련 커뮤니티 보호/제재의 부족 • 인도주의 부문 종사자가 저지르는 성적 착취 및 학대뿐 아니라 GBV 생존자 및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한 신고 메커니즘 결여 • 생존자를 위한 접근성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다부문적 서비스의 부족(보건, 안보, 법률/사법,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 주요 서비스 제공자(보건의료, 억류 시설, 경찰, 사법 등)에 여성 직원의 부재/과소대표성 • 여성, 여아,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주어지는 부적당한 주거공간, 토지 및 재산권 • 폭력적인 태도를 지닌 동원 해제된 군인 • 적대적인 수용 커뮤니티 • '희생자 탓하기' 또는 기타 GBV 생존자에게 해로운 태도 • GBV 생존자의 비밀 미보장 •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 • 아동 보호 메커니즘 결여 • 무장 해제, 동원 해제 및 재통합(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DDR) 프로그램 내 심리사회적 지원의 부족
개인/가족 차원의 GBV 유발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가족을 위한 기본적인 생존 필수품/물품의 부족 또는 이러한 생존 필요/물품(예: 식량, 물, 쉼터, 취사용 연료, 개인위생 용품 등)에 대한 안전한 접근성 결여 • 가족에게 할당된 자원에 대한 젠더 불공평한 배분 • 아동이나 노인을 부양하는 부모, 특히 여성가장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자원 부족(경제적 자원, 보호 능력 등) • 인도주의 담당 직원으로서 용인되는 행동에 대한 기준과 인도적 지원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인식 부족 • 해로운 음주/마약 복용 • 연령, 젠더, 교육, 장애 • 폭력 관련 가족사 • GBV 목격





알아야 할 기본 사항

도시와 기타 캠프 이외 환경에서 생활하는 난민 수 증가에 따른 위험

전 세계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난민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기준 UNHCR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050만 명의 난민 중 1/3은 캠프에 거주하는 데 비해 거의 절반은 크고 작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전 세계의 도시 난민 인구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발도상국 및 중소득 국가에서 UNHCR에 등록된 도시 난민 중 상당한 비율이 젊은 남성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수의 난민 여성, 아동 및 노인이 도시 및 기타 캠프 이외 구역에 거주하는데, 특히 캠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이들은 체포 및 구금, 강제 송환, 희롱, 착취, 차별, 부적절하고 과밀 수용된 쉼터, HIV, 밀입국 및 휴먼 트래피킹(human trafficking)을 비롯한 폭력의 위험을 비롯한 광범위한 보호 관련 위험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본 지침에 제시된 권고사항은 캠프에서 생활하는 사람뿐 아니라 도시 및 기타 캠프 이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재민 집단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를 위한 것이다.

(인용: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09. 'UNHCR Policy on Refugee Protection and Solutions in Urban Areas', <www.unhcr.org/4ab356ab6.html>)

위험에 처한 집단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다른 구성원보다 피해에 더 취약한 개인들의 집단이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주로 사회 내에서 갖는 힘이 약하나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더 높거나 구호 활동가의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본 지침에서는 이러한 개인들을 지칭하기 위해 '위험에 처한 집단(at-risk group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종교, 민족 등 취약성의 근본 원인이 젠더 기반 차별과 함께 작용하면 여성과 여아가 GBV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자체로 GBV의 한 형태인 강제적으로 아동 결혼을 하게 된 청소년기 여아는 성인 여성보다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을 당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남성과 남아의 경우, 남성성 및 여성성과 관련된 젠더 불평등한 기준으로 인해 일부 형태의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금된 남성과 남아 중에 동료 수감자들이 약하다고 (또는 '여성적'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은 성희롱, 성폭행,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일부 분쟁 피해 지역의 경우 일부 남성 집단이 성폭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평시에 누렸던 특권에 의지하여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기 때문이다.

아래 나열된 위험에 처한 집단 모두에게 젠더기반폭력을 당할 위험성이 항상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는 이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다면 GBV 대처 노력 과정에서 이러한 집단의 보호 권리 및 필요를 예의 주시하고 충족해야 한다. 특정 위험에 처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그들의 필요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지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프로그램 주기의 전 단계에 걸친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윤리성,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험에 처한 집단의 특정 경험, 관점, 지식을 취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위험에 처한 집단의 보호 권리 및 필요뿐 아니라 그러한 권리 및 필요가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위험에 처한 집단별 GBV에 대한 특정 취약성 중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 위험에 처한 집단이 GBV 및 기타 유형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감소하기 위한 개입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위험에 처한 집단	해당 집단이 노출될 수 있는 폭력의 예	폭력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발요인
청소년기 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행 성적 착취 및 학대 아동 결혼 또는 강제 결혼 여성 할례(FGM/C) 교육 접근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젠더 및 제한된 사회적 지위 여아를 가정에 고립시키는 가사노동 책임 증가 정상적인 커뮤니티 지원 및 보호 구조의 약화 이해하기 쉬운 보건, 권리 및 서비스(생식보건 포함)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좌절되거나 금지됨 조기 임신 및 출산 안전하지 않은 생계 활동에 참여 가족 구성원, 특히 1차 양육자의 사망 기본적 필요를 위해 착취적이거나 불건전한 관계에 의존
여성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행 성적 착취 및 학대 양육자(caregiver)의 성적 착취 및 학대 주택 및 재산에 대한 권리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젠더 및 제한된 사회적 지위 신체 상태 약화, 신체 또는 감각 장애 및 만성 질환 소외 및 더 악화된 가난의 위험 거동 제한 건강 및 영양 필요에 대한 방치 이해하기 쉬운 보건 및 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여성 가장 및 소년·여아 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행 성적 착취 및 학대 아동 결혼 또는 강제 결혼(아내 상속제(wife inheritance) 등) 주택 및 재산에 대한 권리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젠더 및 제한된 사회적 지위 이들을 가정에 고립시키는 가사노동의 증가 정상적인 커뮤니티 지원 및 보호 구조의 약화 기본적 필요를 위해 착취적이거나 불건전한 관계에 의존 안전하지 않은 생계 활동에 참여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 및 여성,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행 성적 착취 및 학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 교육 접근성 부족 사회적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젠더 사회적 낙인 및 소외 집, 가족 및 커뮤니티에서의 배제 또는 추방 가난, 영양실조 및 생식보건 문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높은 면책률 기본적 필요를 위해 착취적이거나 불건전한 관계에 의존 안전하지 않은 생계 활동에 참여
원주민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와 인종적·종교적 소수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차별, 배제 및 억압 전쟁 전술로서의 인종 청소 교육 접근성 부족 서비스 접근성 부족 토지 무단 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낙인 및 소외 가난, 영양실조 및 생식보건 문제 법률에 따른 보호 미비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높은 면책률 민족, 종교, 언어 또는 문화 집단에 따른 기회 부족 및 소외 커뮤니티 참여 및 생계 유지 활동의 장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배제 성폭행 성적 착취 및 학대 가정 폭력(예: 양육자가 LGBTI 아동에게 저지르는 폭력) 서비스 거부 괴롭힘/성희롱 레즈비언의 성적 지향을 처벌하기 위해 고의로 하는 강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 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높은 면책률 제한된 사회적 지위 법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자신이 동일시하는 젠더로 인정받지 못하는 트랜스젠더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관계, 다른 가족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거부 주택, 생계 기회,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제 성별로 분리된 쉼터, 화장실 및 의료 시설에서 트랜스젠더를 배제 노숙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가정·커뮤니티로부터의 사회적 소외/거부 안전하지 않은 생계 활동에 참여

(계속)



위험에 처한 집단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계속)

위험에 처한 집단	해당 집단이 노출될 수 있는 폭력의 예	폭력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발요인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을 포함하여 이산 또는 미동반 여아, 남아 및 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행 성적 착취 및 학대 아동 결혼 또는 강제 결혼 강제 노동 교육 접근성 부족 가정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젠더 및 제한된 사회적 지위 건강 및 영양 필요에 대한 방치 안전하지 않은 생계 활동에 참여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착취적이거나 불건전한 관계에 의존 조기 임신 및 출산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되었던 경험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받는 사회적 낙인, 소외 및 거부 전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 형제자매에 대한 미성숙한 부모로서의 책임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과 남성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압, 사회적 배제 성폭행 신체적 폭력 성적 착취 및 학대 교육 접근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 필요를 위해 착취적이거나 불건전한 관계에 의존 생식보건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조기 임신 및 출산 소외 및 사회적 지원/동료 네트워크 부족 커뮤니티에 의한 사회적 낙인, 소외 및 거부 법률 집행 과정의 희롱 및 학대 성 노동자를 범죄화하는 법률에 따른 보호 부족
구금 상태에 있는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벌 또는 고문으로서의 성폭행 신체적 폭력 교육 접근성 부족 심리적 응급 처치를 비롯한 보건,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악한 개인위생과 공중위생의 미비 구금 시설의 과밀 수용 남성, 여성, 가족 및 미동반 미성년자를 분리하지 못함 폭력 사건 (특히 성폭력) 신고를 막는 장애 및 방해 요인 당국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구금 전에 겪은 폭력 및 학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정신적 외상
HIV에 걸린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희롱 및 성적 학대 사회적 차별 및 배제 언어 폭력 교육 접근성 부족 생계 수단 상실 자녀와의 접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낙인, 소외 및 더 높아진 가난의 위험 토지, 재산 및 소유물의 상실 노동 역량 감소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가정의 해체 및 붕괴 신체적·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건강 상태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장애가 있는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차별 및 배제 성폭행 성적 착취 및 학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 교육 접근성 부족 주택, 재산 및 가족에 대한 접근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지원 및 보호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드는 거동, 청력 및 시력의 제한 소외 및 사회적 지원/동료 네트워크 부족 신체, 기술, 의사소통 측면의 장애로 인해 정보를 얻고 지침을 받는 데서 배제됨 접근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세탁 시설, 화장실 또는 배급 장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배제됨 폭력 보고 시 겪는 신체, 의사소통 및 태도 측면의 장애 커뮤니티 참여 및 생계 유지 활동의 장애 의료 및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높은 면책률 생식보건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폭력 생존자인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차별 및 배제 1차적 폭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2차 폭력(신고 접수자에 의한 학대, 성폭행에 이은 명예 살인, 가해자와의 강제 결혼 등) 성폭력,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성적 착취 및 학대 등을 포함한 잠재적인 폭력에 대한 취약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상태 악화, 신체 또는 감각 장애, 심리적 스트레스 및 만성 질환 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막는 장애 및 방해 요인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가정의 해체 및 붕괴 소외 및 더 악화된 가난의 위험

제3장 인도적 지원 활동 중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할 의무

“피해를 입고 위협에 처한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는 국가 및 비국가 분쟁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인도적 의사결정 및 대응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위협에 처한 집단에 대한 보호는 인도주의 대응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즉각적인 인명 구조 활동의 일환인 우리의 대비 노력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현장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이는 남성, 여성, 여아, 남아, 국내 이재민, 노인, 장애인, 성적 소수자 및 기타 소수자의 경험을 포함하여 이들이 처한 위협의 근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취약성을 고려함으로써 위기 발생 즉시, 그리고 위기 이후에 누가, 어떻게, 왜 위협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주의 활동에서 보호의 중심화(Centrality of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위원장의 성명, 2013년 12월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IASC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 일부로 승인됨.⁶ <www.globalprotectioncluster.org/en/tools-and-guidance/guidance-from-inter-agency-standing-committee.html> 참조)

사람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할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국가 및 비국가 분쟁 당사자는 국제인도법에 의거한 보호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는 민간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삼가고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분쟁 국가 또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폭력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비상사태 중에 활동하는 어떠한 조직, 기관 또는 독립체도 GBV를 예방하고 GBV 생존자만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완전한 지식, 기술, 자원, 권한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동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모든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GBV 위험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자신의 활동 영역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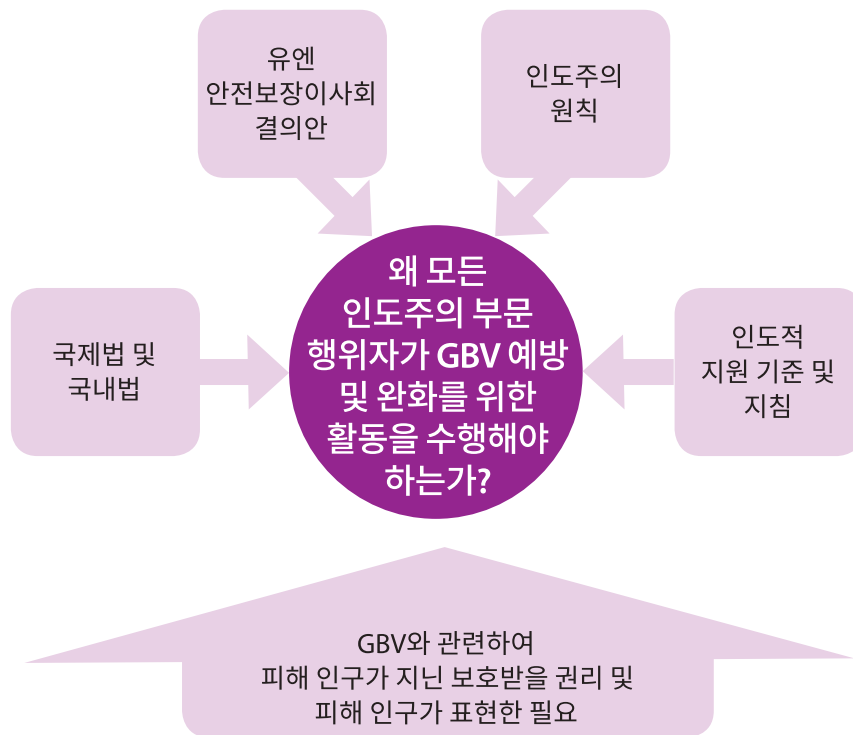
GBV에 대한 조치 실패는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피해 인구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예시와 같이 미비한 조치와 허술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은 뜻하지 않게 추가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미비하거나 비효율적인 조치는 생존자의 회복력, 의료, 웰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초가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고 피해 커뮤니티의 생활 및 생계를 복원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 요인을 양산한다. 일부의 경우, 조치 미비는 폭력의 고리를 영속화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GBV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생존자 중 일부는 의료, 심리 및 보호 관련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후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조치 미비는 간접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⁶ 또한, 인도주의 활동에서 보호의 중심화(Centrality of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에 대한 성명은 전 부문에 걸친 보호의 주류화 등 보호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 클러스터가 해야 하는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보호 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는 국제적 차원 및 현장 차원에서 활동하는 다른 클러스터들이 그들의 보호 주류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툴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Global Protection Cluster. 2014. Protection Mainstreaming Training Package**, <www.globalprotectioncluster.org/en/areas-of-responsibility/protection-mainstreaming.html>를 참조한다.



인도적 지원 활동 영역	GBV 문제를 대처하지 않았을 때 피해 인구가 겪을 수 있는 피해의 예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 CCCM)	현장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독신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권리와 필요에 대처하지 않으면 이들이 고립된 지역이나 비보호 지역에 배치됨에 따라 성희롱 및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동 보호 (Child Protection)	고립된 장소에 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하지 않거나 여성 직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특히 여아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직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여아 및 남아를 상대로 한 GBV 및 기타 폭력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동 생존자가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다.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으면 아동이 인도주의 활동가에 의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교육 (Education)	학생들의 특수한 권리, 필요 및 취약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사에 의한 착취, 중퇴, 아동/강제 결혼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학교가 집에서 멀면 아동, 특히 여아가 학교에 다닐 수 없거나 긴 통학 시간 동안 성희롱 또는 폭행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식량 안보 및 농업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경우, 연료와 식량을 구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는 여성과 여아는 강제/강압에 의한 성매매를 비롯한 성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높은 비보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건 (Health)	보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로 아동 및 성인 GBV 생존자를 대하도록 훈련되거나 준비되지 못한 경우 인명 구조 서비스에 방해가 된다.
주택, 토지 및 재산 (Housing, Land and Property, HLP)	HLP 프로그램에서 미망인 상속제(widow inheritance), 남성 간 상속 또는 가정 내 남성에게 부여되는 토지 소유권과 같은 전통적 규범 및 관행을 고수하면 안전하지 않은 생계 활동(예: 강제/강압적인 성매매)뿐 아니라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다양한 형태의 가정 폭력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인도적 지뢰 퇴치 활동 (Humanitarian Mine Action)	지뢰 폭발로 인해 직접적인 부상을 입은 여성과 여아는 같은 피해를 입은 남성에게 비해 신체적 재활 및 사회경제적 생활 재건을 위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과 여아는 장애로 인해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생계 (Livelihoods)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를 대상으로 한 생계 프로그램에서 젠더 역할 전환과 관련된 위험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여성이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또는 커뮤니티 내 남성에게 의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영양 (Nutrition)	영양 프로그램에 GBV 예방을 통합하지 못하면 빈곤 가정의 경우 아동 결혼이나 강제 결혼을 통해 딸의 영양적 필요를 보장하려 하거나 남아의 영양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아의 영양을 희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영양 부족 상태로 몸이 약해진 엄마들은 GBV 및 기타 폭력으로부터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보호 (Protection)	보호 모니터링 활동 시 GBV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핵심적인 윤리 고려사항에 주의하지 않으면 신원이 노출된 생존자의 경우 사회적 낙인 및 보복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쉼터, 정착 및 복구 (Shelter, Settlement and Recovery, SS&R)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 자재를 수집하거나 설치 작업에 참여할 기술이나 체력이 없는 사람의 권리와 필요가 다뤄지지 않은 경우, 이들은 쉼터 자재나 설치 지원을 얻기 위해 성관계나 다른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쉼터를 옮길 필요가 있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쉼터 개발에 필요한 규약이 SS&R 부문 행위자, 특히 캠프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를 위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여성과 여아는 폭력적인 가정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급수장, 접근성 있고 남녀로 구분된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GBV에 대처해야 할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의 책임은 아래 도식에서 강조된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체계의 지원을 받는다(체계의 요소에 관한 상세한 추가 정보는 '부록 6' 참조).



인도주의 비상사태에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이 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체계를 사용하여 국가, 커뮤니티, 개인들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국제법 및 국내법: GBV는 국제인도법, 국제 및 국내 형법, 국제·지역·국가 차원의 인권 및 난민법에 규정된 원칙을 위반한다. 이러한 원칙에는 무력분쟁 및 점령 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 법에 따른 생존, 평등, 안보, 동등한 보호에 대한 그들의 권리,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민간인 보호(Protection of Civilians, POC)는 국제인도법의 중심이자 국제 인권법, 난민 및 국제 형법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의무를 지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9년부터 POC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에 POC를 정기적으로 포함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에 POC를 평화유지 임무의 공통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POC 관련 활동을 통해 POC에 대한 일련의 주제별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여성, 평화 및 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해왔다. 그중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 1325호, 제1889호 및 제2212호는 여성, 평화 및 안보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예: 분쟁과 관련된 여성 특유의 경험, 분쟁 예방, 평화 유지, 분쟁 해결 및 평화 구축에 대한 여성의 기여). 결의안 제1820호, 제1888호, 제1960호 및 제2106호도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분쟁 관련 성폭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106호는 남성과 남아를 폭력 생존자로 명확히 언급한 최초의 결의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에는 아동 및 무력분쟁(Children and Armed Conflict, CAAC)도 포함되는데, 2005년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CAAC 관련 의제를 통해 무력분쟁 중 아동 강간 및 성폭력을 비롯한 여섯 가지 중대한 아동 권리 침해에 관한 모니터링 및



신고 메커니즘(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MRM)을 수립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6'을 참조한다.

인도주의 원칙: 인도주의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행동의 책무성, 질,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 원칙을 수립했다. 이 원칙은 모든 유형의 GBV 관련 개입에 영향을 미치며,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무력분쟁, 자연재해 또는 인도주의 비상사태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윤리 및 운영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유엔 기관은 총회 결의안 제46/182호(1991년) 및 제58/114호(2004년)에 명시된 인도성,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으로 구성된 인도주의 4대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인도성(Humanity)	중립성(Neutrality)	공평성(Impartiality)	독립성(Independence)
언제든지 인간의 고통을 발견하게 되면 해결해야 한다. 인도주의 활동의 목적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이 존중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교전 상황에서 중립성을 잃거나 정치, 인종, 종교, 이념으로 인한 논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활동은 오직 필요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가장 긴급한 고통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적, 인종, 성별, 종교적 신념, 계층, 정치적 의견을 근거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활동은 인도주의 활동이 실시되는 지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자가 지닐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표 및 기타 목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발췌: 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2012. 'OCHA on Message: Humanitarian principles', <https://docs.unocha.org/sites/dms/Documents/OOM_HumPrinciple_English.pdf>)

많은 인도주의 기관은 행동 강령을 만들고 '해를 입히지 말라(Do no harm)'는 원칙과 스피어 인도주의 헌장(Sphere Humanitarian Charter)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이러한 인도주의 4대 원칙을 더욱 충실히 지켜오고 있다. 스피어 인도주의 헌장의 원칙은 무력분쟁, 자연재해, 기타 인도주의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지닌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

- 존엄성 있는 삶을 누릴 권리
-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
- 보호 및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⁷

인도적 지원 기준 및 지침: 비상사태 시 GBV에 대처할 인도적 책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기준 및 지침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에 의해 개발되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준 중 핵심이 되는 기준은 '부록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의 내용:
지침 안내 13: 여성과 여아는 젠더기반폭력을 당할 위험이 특히 크다.
 인도주의 기관은 여성 및 여아를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강간 또는 가정 폭력 등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적 착취 및 학대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기준 및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성적 착취 및 학대 관행에는 인도적 지원의 대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한 고립된 여성이나 여성 장애인 등 특정 취약성을 가진 피해 인구가 연루될 수 있다.

(Sphere Project. 2011.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www.sphereproject.org/resources/download-publications/?search=1&keywords=Sphere+Handbook&language=English&category=22&subcat=22&subcat=23&subcat=29=0&subcat=31=0&subcat=35=0&subcat=49=0&subcat=56=0&subcat=60=0&subcat=80=0>)

⁷ 자세한 정보는 'The Humanitarian Charter' <www.spherehandbook.org/en/the-humanitarian-charter>를 참조한다.

제4장 지침 이행 보장하기: 주요 행위자의 책임

주요 국내 인도주의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과 행동은 어떠한 유형의 GBV가 인도주의 대응 전 영역에 걸쳐 인명 구조에 직결되는 우선순위로 인정되는지 그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십은 각 인도주의 분야의 GBV 지침 활용 및 이행을 촉진하기도 한다. 아래 표는 본 지침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의 비상사태 이전/대비 및 비상사태/안정화 단계에서 수행할 필수 행동이며, 그 수행 주체는 1) 정부, 2) 인도주의 조정관, 3)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인도주의 기관(HCT)/클러스터 간 워킹그룹, 4) 클러스터/부문 주도기관, 5) 클러스터/부문 조정관, 6) GBV 조정 메커니즘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행동은 본 지침의 모든 주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주기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프로그램 주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주요 행위자의 필수 행동	비상사태 단계 구분	
	비상 사태 이전/대비	비상 사태/안정화 단계
1. 정부		
요소 1: 현황 파악, 분석 및 전략적 기획		
GBV 예방, 완화 및 대응 조치가 모든 인도주의 활동 클러스터/부문에 걸쳐 즉각적인 인명 구조 우선순위가 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촉진할 지침 옹호자를 주요 부처 내에서 식별	✓	✓
대응 전략에 반영하고 초기 현황 파악에 활용하기 위해 피해 인구의 GBV 위험 및 노출에 관한 기존 데이터를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GBV 데이터 수집 및 보급과 관련된 안전 및 윤리 규칙 준수)	✓	✓
(국내 및 국제) GBV 전문가들이 GBV 도식화(예: GBV의 성격과 범위, 위험 및 취약성 요인, 국가 법률 체계, 클러스터/부문의 GBV 예방, 완화 및 대응 역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수집, 저장 및 공유의 설계 및 이행을 보장	✓	✓
요소 2: 자원 동원		
대응 시작 단계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GBV 개입을 위해 자원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여자와 함께 옹호(맞춤형 GBV 프로그램, 부문별 예방 및 완화 개입, 클러스터/부문 조정 등)	✓	✓
전체 대응 전략을 위한 자금 조달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기 현황 파악 보고서에 GBV 사건, 위험, 기존 서비스 등에 관한 익명화된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활동을 주도	✓	✓
다양한 클러스터/부문 프로그램 정책 및 계획에 GBV 관련 우려사항이 통합되고 GBV 관련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도록 보장	✓	✓
요소 3: 이행		
▶ 프로그램		
비상사태 이전 단계의 비상계획을 위한 리더십 및 조정의 일환으로 다음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BV가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을 인도주의 활동에서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규칙적인 계획 주기에 GBV가 항상 포함되도록 보장 • 모든 부처, 정부 기관 및 국내 NGO를 대상으로 GBV 예방, 완화 및 (일부 클러스터/부문의 경우)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를 그들의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GBV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음) 	✓	✓

(계속)



주요 행위자의 필수 행동

비상사태
단계 구분

비상 사태
이전/대비 비상 사태/
안정화 단계

1. 정부(계속)

▶ 프로그램

주요 의사결정권자는 인도주의 원칙,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을 준수하라는 본 지침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⁸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인도주의 활동의 기획, 설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M&E)에 관여하는 참여적인 과정을 촉진



인도주의 대응에 참여하는 모든 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본 지침에 대한 교육을 촉진. 오리엔테이션/교육에 참석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한 직원의 사무실 복귀를 지원



▶ 정책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에 관한 국내, 지방 및 국제 법률 체계에 의거하여 인도주의 대응이 피해 인구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보장



본 지침의 권고사항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및 전략에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에 관한 모범 사례가 반영되도록 보장



국가 및 지역 법률 체계에서 GBV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보장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인도주의 활동 전반에 걸쳐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본 지침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모니터링할 연락관(focal point)을 관련 정부 조직 내에서 임명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모든 클러스터/부문에 적용되는 본 지침의 권고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 국내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 함께 모든 정부 조직의 관련 회의 및 이니셔티브(initiative)에서 본 지침을 참조



직원 교육 프로그램 및 오리엔테이션에 본 지침에 관한 교육을 통합



GBV 전문가가 GBV 데이터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관리(수집, 저장, 공유 및 보급)하도록 지원하는 국내 규약이 마련되도록 보장



정기적인 정부 간 정보 공유의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소셜미디어 포함) 및 공공 행사에서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을 통해 얻은 모범 사례 교환을 적극적으로 공유



요소 4: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

부문 간 비상사태 대비 회의에서 본 지침 및 관련 틀을 홍보하여 모든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클러스터/부문 및 지리적 영역과 관련된 지침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모든 클러스터/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인도주의 대응 프로그램의 모든 영역에 걸쳐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을 이행



요소 5: 모니터링 및 평가

본 지침의 각 주제 부분에서 관련 지표를 하나 이상 파악하여 지역 및 국가 보고에 포함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GBV 예방 및 완화를 위한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국내 정책, 계획 및 전략의 이행에 관한 모든 보고 시 활용



정부 보고 회의에 GBV를 상시 의제 항목으로 포함



현황 파악 및 평가에 본 지침의 지표를 통합



(계속)

⁸ 제3장 '인도적 지원 활동 중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할 의무' 참조

주요 행위자의 필수 행동

비상사태 단계 구분	
비상 사태 이전/대비	비상 사태/안정화 단계

2. 인도주의 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S, HC)

요소 1: 현황 파악, 분석 및 전략적 기획

인도주의 활동에서 GBV 예방, 완화 및 (일부 클러스터/부문의 경우)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가 즉각적인 인명 구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활동을 주도(GBV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 여부와 관계없음)	✓	✓
범분야 사안에 관한 초기 HCT/ICWG 토론에서 모든 클러스터/부문이 자신의 전략 및 제안을 GBV 위험 감소에 통합할 책임을 강조	✓	✓
전체 보호 현황 파악 역량(예: 비상사태 시 배치된 유엔재난평가조정단(United Nations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UNDAC) 및 기타 현황 파악 팀)의 일환으로 GBV 전문가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GBV 관련 질문이 초기 신속 다중 클러스터/부문 현황 파악에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일을 주도(질문 및 데이터 수집 방법에 관한 GBV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 현황 파악 보고 및 보호 전략 전반에서 GBV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보장 	✓	✓
다음과 같은 국내 및 국제 GBV 전문가의 활동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GBV에 관한 도식화 작업 수행(예: GBV의 성격과 범위, 위험 및 취약성 요인, 국가 법률 체계, 클러스터/부문의 GBV 예방, 완화 및 대응 역량)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수집, 저장 및 공유의 설계 및 이행을 보장 	✓	
피해 인구의 GBV 위험 및 노출에 관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비상사태 예비 시나리오에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포함되도록 보장	✓	✓

요소 2: 자원 동원

비상사태 발생 시점부터 CERF/긴급구호요청(Flash Appeal) 및 기타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서 GBV를 인명을 구조하는 기준으로 다루도록 보장 모든 클러스터/부문의 지원 요청 초안에 본 지침의 권고사항을 포함하도록 장려		✓
대응을 시작할 때부터 인명 구조 GBV 개입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여자와 함께 옹호(맞춤형 GBV 프로그램, 클러스터/부문 개입 및 클러스터/부문 조정 등)	✓	✓
전체 대응 전략을 위한 자금 조달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기 현황 파악 보고서에 GBV 사건, 위험, 기존 서비스 등에 관한 익명화된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활동을 주도	✓	✓
다양한 클러스터/부문 프로그램 정책 및 계획에 GBV 관련 우려사항이 통합되고 GBV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도록 하는 옹호 활동을 정부와 함께 전개		✓

요소 3: 이행

▶ 프로그램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인도주의 활동의 기획, 설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M&E)에 관여하는 참여적인 과정을 촉진	✓	✓
모든 클러스터/부문이 각자의 프로그램에 GBV 예방, 완화 및 (일부 클러스터/부문의 경우)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GBV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음)	✓	
정부가 본 지침을 인지하고, 본 지침의 풀 버전과 간략한 버전인 주제별 지침(Thematic Area Guides, TAGs)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
인도적 지원 이해관계자(예: HCT/ICWG, 클러스터/부문 주도기관 및 조정관, 클러스터/부문 프로그램 담당자, 국내 상대자)에 대한 교육 활성화	✓	✓
본 지침의 권고사항이 클러스터/부문 프로그램 및 그로 인한 결과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GBV 전문가 및 다양한 클러스터/부문 조정관의 지속적인 보고와 더불어 GBV 사안을 HCT/ICWG 의제에 정기적으로 포함하도록 지원	✓	✓

(계속)



주요 행위자의 필수 행동

비상사태
단계 구분

비상 사태
이전/대비 비상 사태/
안정화 단계

2. 인도주의 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S, HC)(계속)

▶ 정책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가 GBV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국가·지역·관습 법률 및 정책의 개정과 채택을 지원



GBV 위험 감소 전략을 국가 및 지역 정책 및 계획에 통합하도록 옹호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이러한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금을 할당



사무총장의 행정명령(ST/SGB/2003/13)에 따라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저지르는 성적 착취 및 학대에 대해 '무관용' 정책 보장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국내 및 국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모든 포럼 및 회의에서 특정 GBV 위험을 다루도록 옹호 활동 전개



국내 및 국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 시(공여자, HCT/ICWG, 긴급구호 조정관, 정기 비상사태 자금 조달 보고, 전략적 대응 계획에 대한 보고 등) GBV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보장



요소 4: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

기관 간 대비 회의에서 본 지침을 홍보하여 모든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클러스터/부문/기관에 해당하는 지침을 인지하고, 아울러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을 준수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보장⁹



GBV 조정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여 인도주의 대응의 모든 영역에 걸쳐 GBV의 통합을 지원할 뿐 아니라 GBV 협력기관의 전문적인 GBV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보장



비상사태 이전 비상계획 수립을 위한 리더십 및 조정의 일환으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GBV의 속성과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을 인도주의 비상사태의 우선적인 보호 사안으로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요소 5: 모니터링 및 평가

GBV 지침의 각 주제 부분에서 관련 지표를 하나 이상 파악하여 국가 연례 보고에 포함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을 위한 조치에 관한 HCT/ICWG 회의 중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요구



다양한 책무성 체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에 GBV를 포함



3.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인도주의 기관(HUMANITARIAN COUNTRY TEAM, HCT)/클러스터 간 워킹그룹(INTER-CLUSTER WORKING GROUP, ICWG)

요소 1: 현황 파악, 분석 및 전략적 기획

클러스터/부문 간 회의에서 GBV를 즉각적인 인명 구조 우선순위로 강조



모든 현황 파악, 모니터링 및 기타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에 GBV 관련 질문뿐 아니라 성별, 연령,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보장



초기 및 지속적 현황 파악을 설계할 때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고 윤리적인 관행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보장



요소 2: 자원 동원

긴급구호요청(Flash Appeal), CERF, 기타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대한 모든 클러스터/부문 및 다중 클러스터/부문의 대응 자금 조달 제안서에 GBV 예방, 완화 및 (일부 클러스터/부문의 경우)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영되도록 보장



해당하는 GBV 지침의 권고사항 참조/사용이 자원 동원을 위한 OCHA 지침에서 성공적인 자금 조달 제안서의 척도가 되도록 보장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GBV 관련 물품의 사전 배치를 조정



(계속)

⁹ 위의 '인도적 지원 활동 중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할 의무' 참조

주요 행위자의 필수 행동

비상사태
단계 구분3.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인도주의 기관(HUMANITARIAN COUNTRY TEAM, HCT)/
클러스터 간 워킹그룹(INTER-CLUSTER WORKING GROUP, ICWG)(계속)비상 사태
이전/대비비상 사태/
안정화 단계

요소 3: 이행

▶ 프로그램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풀 버전 및 TAG 버전)을 인쇄하여 비치하고 지침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	✓	✓
클러스터/부문 간 회의에서 GBV 위험 및 위험 감소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합동 클러스터/부문 접근법을 통한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의 기회를 강조	✓	✓
정기적인 정보 공유의 일환으로 HCT/ICWG 회담 및 기타 포럼에서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을 통해 얻은 모범 사례 교훈을 적극적으로 공유	✓	✓

▶ 정책

비상사태 초기 단계에서부터 클러스터/부문 정책, 기준 및 지침에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포함	✓	✓
모든 기관 직원 및 파트너에 의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행동을 이행하고 모든 기관/조직이 이러한 필수 활동을 이행하도록 옹호 활동을 주도	✓	✓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모든 인도주의 협력기관에서 권고사항을 활용하도록 옹호함으로써 기관 직원 및 파트너가 본 지침에 익숙해지도록 보장	✓	✓
지침 관련 오리엔테이션/교육에 참가 모든 직위의 기타 직원도 이러한 오리엔테이션/교육에 참가하고 권고사항 이행을 촉진하도록 홍보	✓	✓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GBV 관련 정기 보고를 포함	✓	✓
HCT/ICW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커뮤니케이션 및 옹호 활동 자료에서 GBV 위험, 예방, 완화 및 대응에 관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다양한 필요, 역량 및 의견을 반영하도록 보장(데이터 수집, 저장 및 공유와 관련된 안전 및 윤리 원칙 준수) GBV 전문가들이 GBV 데이터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
OC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 보고 및 기타 비상사태 보고에 GBV 예방, 완화 및 대응 조치뿐 아니라 GBV 동향에 대한 정기 보고를 포함(예: 최초 상황 보고서의 보호 부문에 GBV에 대한 단락을 포함) 	✓	✓

요소 4: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

HCT/ICW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사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보장해야 할 HCT/ICWG 책임의 일환으로 (또한, GBV 프로그램이 인명 구조 개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GBV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부문 간 연계를 적극적으로 보장(예: 기타 클러스터/부문을 보건 클러스터/부문 및 GBV 조정 메커니즘과 연결) 	✓	✓
OC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러스터 간 조정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GBV 사안이 HCT/ICWG 토론/커뮤니케이션의 정규 부분이 되도록 하고 GBV 조정 메커니즘이 ICWG에서 자리 잡도록 보장 	✓	✓

요소 5: 모니터링 및 평가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에 사용되는 전략과 그러한 전략의 결과에 관한 클러스터/부문 간 회의에 정기 보고를 포함	✓	✓
GBV 예방, 완화 및 (일부 클러스터/부문의 경우)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와 관련된 평가 질문을 기간 간 실시간 평가 및 기타 평가 책임 범위에 포함	✓	✓

(계속)



주요 행위자의 필수 행동

주요 행위자의 필수 행동	비상사태 단계 구분	
	비상 사태 이전/대비	비상 사태/안정화 단계
4. 클러스터/부문 주도기관(CLUSTER/SECTOR LEAD AGENCIES, CLA)		
요소 1: 현황 파악, 분석 및 전략적 기획		
특히 UNHCR(글로벌 보호를 주도하는 기관), UNICEF 및 UNFPA(글로벌 GBV를 공동 주도하는 기관)와 같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관의 장이 HCT/ICWG 회의 및 기타 포럼에서 본 지침을 언급하도록 함으로써 동료들 사이에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촉진	✓	✓
요소 2: 자원 동원		
직접 모범을 보여 주도, 자금 조달 제안서에 해당 GBV 지침의 권고사항을 포함	✓	✓
요소 3: 이행		
▶ 프로그램		
본 지침의 권고사항이 클러스터 주도기관(Cluster Leading Agency, CLA)에서 담당하는 모든 인도주의 부문 프로그램 대응에 통합되도록 보장	✓	✓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직원으로 채용 및 고용유지	✓	✓
필요하고 해당되는 경우에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GBV 관련 물품을 사전에 배치	✓	
▶ 정책		
기관 및 글로벌 클러스터 정책, 계획 및 제안을 개발하고 이행함으로써 GBV 예방, 완화 및 대응(해당하는 경우)이 CLA 프로그램(예: 채용 및 인사 정책, 조달 정책, 대응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통합되도록 보장	✓	✓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CLA 프로그램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사용할 GBV 지침을 현장에 충분히 비치	✓	✓
CLA 프로그램 담당 직원 및 관리자가 본 지침에 관한 교육을 받고 지침을 사용하도록 보장	✓	✓
대응을 시작할 때부터 GBV 동향과 GBV 예방, 완화 및 (일부 클러스터/부문의 경우)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를 현황 보고에 포함	✓	✓
요소 4: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		
모든 부문에서 본 지침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GBV 조정 메커니즘의 CLAs 및 보호 클러스터/부문이 자원으로 참여하도록 보장	✓	✓
HCT/ICWG 및 기타 클러스터/부문 간 포럼에서 GBV 예방, 완화 및 대응 문제를 클러스터/부문 간 다중 기관 접근법을 통해 다루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
요소 5: 모니터링 및 평가		
모든 CLA 모니터링 체계에 본 지침의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그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	✓	✓
GBV 예방, 완화 및 (일부 클러스터/부문의 경우)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에 관한 평가 질문을 기관 평가에 포함	✓	✓

5. 클러스터/부문 조정자

요소 1: 현황 파악, 분석 및 전략적 기획		
클러스터/부문 회의에서 대응 초기에 본 지침을 소개(인쇄물,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협력기관들이 지침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신 매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	✓	
GBV 현황 파악 질문을 개발하고 각 클러스터/부문별 현황 파악을 위한 적절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조언하기 위하여 GBV 전문가와 협력	✓	✓
3/4/5하(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원칙 수행에 관한 클러스터/부문 지침에 관련 지침 권고사항 포함	✓	✓

(계속)

주요 행위자의 필수 행동

비상사태 단계 구분	
비상 사태 이전/대비	비상 사태/안정화 단계

5. 클러스터/부문 조정자(계속)

요소 2: 자원 동원

클러스터/부문별 제안의 초안을 작성할 때 GBV 위험 요인 및 관련 사안과 관련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 본 지침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특정 환경에 맞도록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자금 조달 제안서에 반영	✓	✓
클러스터/부문 프로그램 대응에서 GBV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클러스터/부문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	✓	✓
다양한 클러스터/부문 프로그램 정책 및 계획에 GBV 활동 예산이 지속적으로 책정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차원의 국내 클러스터/부문 상대자와 협력	✓	✓

요소 3: 이행

▶ 프로그램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증진, 그들이 모든 클러스터/부문 관련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옹호	✓	✓
GBV 조정 메커니즘과 협력하여 해당 환경 및 각 클러스터/부문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본 지침을 적용	✓	✓
클러스터/부문 협력기관이 본 지침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대응에 반영하도록 다음과 같은 옹호 활동을 실시: • 본 지침에 관한 교육에 참여, 클러스터/부문 구성원이 지침 관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GBV 생존자와의 협력에 관한 이행 원칙이 모든 대응에 적용되도록 장려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프로그램 설계와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 및 이행	✓	✓
GBV 위험과 이러한 위험에 클러스터/부문 프로그램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특히 중점을 둔 클러스터/부문 전략을 개발	✓	✓
GBV 전문가를 활용하여 클러스터/부문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을 증진	✓	✓

▶ 정책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클러스터/부문 관련 국가·지역·관습 법률과 정책의 개정 및 채택을 지지	✓	✓
GBV 관련 기관 간 조치를 포함하여 분명한 마일스톤이 수반된 클러스터/부문별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	✓	✓
필요한 경우, GBV 전문가 또는 지침 교육을 받은 클러스터/부문별 직원의 도움을 받아 클러스터/부문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해당하는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포함하고 이를 널리 유포(예: 남성 및 여성의 동등한 고용을 위한 기준, GBV 사건에 관한 정보 공유 절차, 클러스터/부문 보고 절차, 성적 착취 및 학대의 경우 조사 및 규제 조치 실행)	✓	✓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본 지침의 권고사항을 다양한 클러스터/부문 대응에 통합한 경험을 공유, 이러한 통합이 효과적인 대응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를 공유	✓	✓
GBV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클러스터/부문 전략을 글로벌 클러스터와 공유하고 클러스터/부문 간 회의에서도 공유	✓	✓

(계속)



주요 행위자의 필수 행동

비상사태
단계 구분

비상 사태
이전/대비 비상 사태/
안정화 단계

5. 클러스터/부문 조정자(계속)

요소 4: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

모든 클러스터/부문 조정자의 경우:

- 클러스터/부문 워킹그룹 회의에서 본 지침(특히 클러스터/부문별 지침)에 대한 인식을 제고
- 해당하는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클러스터/부문 비상계획 및 대응 시나리오 개발에 적용
- 국내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본 지침을 언급하여 해당 담당자가 이를 인지하고 비상사태 대비 및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GBV 조정 메커니즘에 관여하고 GBV 관련 사안과 관련해 각 클러스터/부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역할을 할 연락관을 지정
- GBV를 신고한 생존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최신 위탁 정보를 얻기 위해 GBV 조정 메커니즘과 연락



보호 클러스터/부문 조정관의 경우:

- 강한 연대를 통해 인도주의 활동 시 본 지침을 이행하고, 이행 과정을 주도하는 GBV 조정 메커니즘을 지원하며, 본 지침의 권고사항을 보호 활동에 포함함으로써 모범 사례를 제시



요소 5: 모니터링 및 평가

정기적인 클러스터/부문 모니터링 활동에 본 지침의 관련 지표를 통합하고 GBV 조정 메커니즘, HCT/ICWG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보고 내용을 공유



클러스터/부문에서 자체 GBV 관련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예: 3/4/5하 원칙에 GBV 관련 활동을 포함)



모든 클러스터/부문 현황 파악 및 평가에 GBV가 예방, 완화 및 대응(해당하는 경우)되는 정도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도록 옹호 활동을 전개



6. GBV 조정 메커니즘¹⁰

요소 1: 현황 파악, 분석 및 전략적 기획

가능한 한 GBV 전문가(해당하는 경우, 기타 GBV 역량)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HC, OCHA 및 클러스터/부문에서 현황 파악(다부문 및 각 부문별)의 GBV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맥락화할 수 있도록 지원



GBV의 성격 및 범위, 고위험 집단, 취약성 요인 등에 관한 기존 데이터를 공유하여 현황 파악, 예비 시나리오 정의 및 자금 조달 제안서에 반영

- 안전 및 윤리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도록 보장
- 데이터가 적다고 해서 GBV 사건이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 GBV 신고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공지



요소 2: 자원 동원

공여자가 본 지침을 그들의 자금 조달 기준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협력 관계를 수립 및 구축

- 공여자 대표와 해당하는 모든 GBV 데이터를 공유하고 GBV 지침의 권고사항이 공여자의 자금 조달 결정에 반영되도록 옹호
- 해당되는 경우, GBV 전문 프로그램 제안서 및 주제에 대한 자금 조달을 옹호



본 지침의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이고 조정된 행동을 보장하는 공동 제안서를 클러스터/부문과 함께 개발



(계속)

¹⁰ 여기에 제시된 책임은 본 지침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GBV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 및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는 **GBV AoR, 2015. Handbook for Coordin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 <www.gbvguidelines.org>을 참조한다.

주요 행위자의 필수 행동

비상사태
단계 구분

비상 사태
이전/대비

비상 사태/
안정화 단계

6. GBV 조정 메커니즘(계속)

요소 3: 이행

▶ 프로그램

GBV 위험 및 관련 조치의 우선순위를 상황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지침의 클러스터/부문 간 맥락화를 주도	✓	✓
클러스터/부문에 본 지침의 권고사항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GBV 전문가를 파악	✓	✓
클러스터/부문 전반에 걸친 공동 프로그램 대응의 조정을 촉진	✓	✓

▶ 정책

인도주의 활동의 일환으로 GBV 예방, 완화 및 (일부 클러스터/부문의 경우)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모든 클러스터/부문, 인도적 지원 기관 또는 중앙 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조언자의 역할 수행	✓	✓
GBV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 법률 체계의 검토 및 개혁에 관해 전문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	✓	✓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p>다음 작업을 통해 비상계획 및 대응 활동에 정보를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환경의 GBV에 관한 기존 데이터(GBV의 성격 및 범위, 위험 및 취약성 요인, 국가 법률 체계, 클러스터/부문의 GBV 예방·완화·대응 역량)를 수집 및 분석하고 모든 클러스터/부문 및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공유 GBV 위험 감소와 관련된 국제 및 국가 클러스터/부문 기준 및 실제 관행에 관한 정보 (격차뿐 아니라 실시된 사례도 파악)를 수집하고 RC/HC, OCHA 국장 및 HCT/ICWG와 공유 	✓	
<p>다음 활동을 통해 본 지침에 관한 국내 인식제고를 주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본 지침을 소개 모든 클러스터/부문 워킹그룹에게 본 지침을 제시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권자 및 프로그램 담당자 중에서 본 지침을 옹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식별하여 이들과 함께 지침의 활용을 촉진할 다양한 메커니즘을 개발 정부 관계자와 적극적인 관계 구축 	✓	✓
<p>향상된 프로그램을 위한 옹호 활동을 실시하고 본 지침에 명시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이때, GBV 문제에 대해 공적으로 발언하는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 생존자 및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 및 안보상의 위험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것)</p>	✓	✓
<p>다음과 같이 본 지침에 대한 교육을 주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의사결정권자(예: RC/HC, HCT/ICWG 구성원, OCHA 국장, 정부 협력기관, 클러스터/부문 조정관, 공여자 등)와 함께 오리엔테이션 개최 다양한 클러스터/부문, 여성의 권리 및 인권 그룹과 함께 본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 	✓	✓
<p>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생존자에 중점을 둔 GBV 데이터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클러스터/부문 간 정보 공유 규약을 개발</p>	✓	✓
<p>지역의 GBV 대응 역량 및 위탁 경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 정보를 모든 클러스터/부문 및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그들이 생존자를 적절한 지원/대응 채널로 위탁할 수 있도록 보장</p>	✓	✓
<p>모든 클러스터/부문과 협력하여 기본적인 GBV 메시지를 개발하고 이를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 시 유포</p>	✓	✓
<p>본 지침의 권고사항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클러스터/부문의 활동을 의식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보고를 더 큰 GBV 커뮤니티와 공유</p>	✓	✓
<p>대응 전반에 본 지침의 권고사항을 통합한 결과(가능한 경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결과도 포함)를 OCHA 보고에 체계적으로 정보를 입력</p>	✓	✓

(계속)



주요 행위자의 필수 행동

주요 행위자의 필수 행동	비상사태 단계 구분	
	비상 사태 이전/대비	비상 사태/안정화 단계
6. GBV 조정 메커니즘(계속)		
요소 4: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		
모든 클러스터/부문과 관계를 맺을 GBV 연락관을 식별하여 클러스터/부문 회의에 참가하고 본 지침의 권고사항을 통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	✓	✓
클러스터/부문의 담당 직원이 본 지침에 제시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	✓	✓
요소 5: 모니터링 및 평가		
기타 클러스터/부문에 대한 기초선 데이터(비상사태 전이나 초기에 수집한 1차 또는 2차 데이터)를 공유하여 프로그램에 반영	✓	✓
대응 활동 중에 본 지침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클러스터/부문 간 포럼 및 회의에서 공여자, 중앙 정부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으로 공유	✓	✓
기타 클러스터/부문 모니터링 체계 및 평가에 본 지침의 지표를 포함하도록 옹호 및 지원	✓	✓
GBV 집중 요소를 평가하는 보호 관련 대응 평가가 시행되도록 옹호	✓	✓
본 지침의 이행 및 효율성에 대한 주기적 검토/평가를 계획하고 수행	✓	✓

추가 인용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cember 1993.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RES/48/104, <www.un.org/documents/ga/res/48/a48r104.htm>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11. '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nd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19/41,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iscrimination/a.hrc.19.41_english.pdf>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2008. 'Policy Statement: Gender Equality in Humanitarian Action',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Policy%2020%20June%202008.pdf>

Heise, L. 1998. 'Violence against Women: An integrated, ecological framework', Violence against Women, vol. 4, no. 3, June 1998, pp. 262-90, <www.ncbi.nlm.nih.gov/pubmed/12296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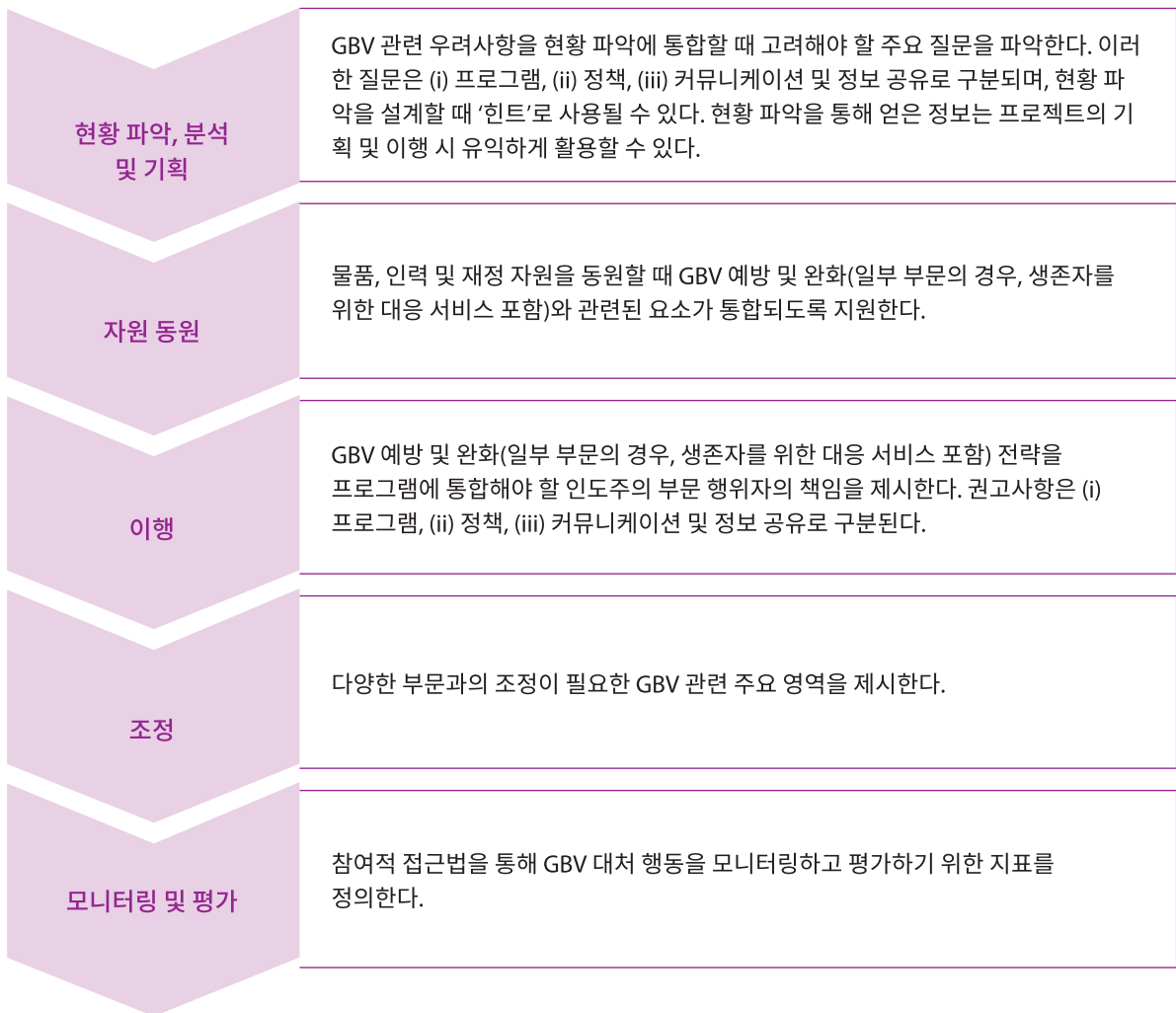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



각 요약표에는 해당 부문에 적용되는 최소 약속²이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다. 이러한 최소 약속은 자원 및 시간이 제한된 비상사태 초기에 부문별 행위자가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주요 행동이다. 비상사태 중 긴급 상황이 진정되자마자(상황에 따라 최소 2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음) 요약표에 요약되고 주제별 본문에 자세히 설명된 필수 행동을 추가/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표현된 필요 및 확인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서 각 고려사항을 해당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프로그램 주기 체계에 따른 필수 행동

요약표 다음 페이지에는 각 주제가 프로그램 주기의 5대 요소에 따라 정리돼 있다. 프로그램 주기의 5대 요소는 상호 연계 및 지원되도록 설계됐다. 조정은 5대 요소 중 하나로 포함돼 있지만 프로그램 주기 전체에 걸쳐 고려되고 통합돼야 한다. 프로그램 주기의 5대 요소³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5대 요소별 단계에 걸친 통합은 다차원적인 과정으로서의 조기 복구를 위한 개념이다.



² 최소 약속이 항상 필수 행동 요약표에 있는 각 프로그램 주기의 처음에 나오지 않다는 점에 주의한다. 이는 모든 행동이 이상적인 프로그램 모델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모든 행동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특히 비상사태 초기 단계에는 최소 약속을 우선해야 하며 그 외의 행동은 추후에 이행한다.

³ 본 지침에 포함된 프로그램 주기의 5대 요소의 출처는 인도주의 프로그램 주기(Humanitarian Program Cycle, HPC)이다. HPC를 일부 수정하여 주요 정보를 간략하게 표시했다. HPC는 개혁 의제(Transformative Agenda)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지원을 준비, 관리 및 제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HP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humanitarianresponse.info/programme-cycle/space>를 참조한다.



조기 복구는 인도주의 대응 초기에 시작되며 모든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조기 복구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지역의 주인 의식과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위기의 즉각적인 결과뿐 아니라 위기의 근본 원인과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기반하여 개입하며,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 기회 촉진을 추구하는 개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위험을 감소하고 평등을 증진하며 차별을 예방한다. 조기 복구 접근법의 목적은 위기 후 복구를 위한 자립 가능하고 해당 국가가 주도하는 회복력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미래의 위기가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Global Cluster on Early Recovery. 2014. ‘Guidance Note on Inter-Cluster Early Recovery’[draft], p. 7, <www.humanitarianresponse.info/system/files/documents/files/Guidance%20Note%20on%20inter-cluster%20ER%20draft%20June%2024%202014%20%28no%20Annex%29.pdf>)

조기 복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 초기부터 프로그램에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포함하여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통해 GBV(특히 젠더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처하고 증거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개발해야 한다.

요소 1: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주제별 프로그램 주기는 GBV 관련 권장 질문 목록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권장 질문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수행하는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정기 모니터링에 선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권장 질문은 각 주제별 ‘이행’에 제시된 권고사항 및 다음과 같은 3대 주요 책임(‘요소 3’ 참조)과도 연계된다.

- 프로그램
- 정책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알아야 할 기본 사항

현황 파악 없이 위험 감소 개입 시작하기

현황 파악은 프로그램 설계 및 이행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하지만 일부 필수적인 GBV 예방 및 완화 조치(일부 부문의 경우,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 포함)의 경우, 비상사태 전이나 발생 시 현황 파악이 요구되지 않는다. 현황 파악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위험 감소 개입 활동은 다양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 부문에서는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의료 부문 행위자는 비상사태가 시작될 때마다 생식보건을 위한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Minimum Initial Service Package, MISP)를 실행할 수 있다.
-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 CCCM) 부문 행위자는 현장의 모든 공동 구역에 조명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황 파악을 설계할 때는 각 주제별 현황 파악을 위한 질문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p>접근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행위자 • GBV, 젠더 및 다양성 전문가 • 피해 커뮤니티 내 모든 연령대 및 배경의 남녀, 특히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 • 커뮤니티 지도자 • 커뮤니티 기반 기구(예: 여성, 청소년/청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조직) • 인도주의 대응 부문의 대표 • 중앙 및 지방 정부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의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p>접근 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시점에 접근 •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접근(이 간격은 부문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부문의 지침에 따라 결정해야 함) • 부문에 따라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모니터링 중에 접근
<p>접근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가능한 2차 자료(기존 현황 파악/연구, 질적 및 양적 정보, 국내 이재민(IDP)/난민 등록 자료 등)를 검토 • 관련 풀뿌리 조직, 시민 사회 및 정부 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인 상의 실시 • 주요 정보원과의 인터뷰 실시 • 연령·젠더·문화 측면에서 적절한 커뮤니티 구성원과 표적집단토론을 진행(예: 참여적 현황파악 시 필요한 경우 남성, 여성, 여아, 남아를 분리하여 상담) • 현장 관찰 • 현장 안전 도식화 작업 실시 • GBV와 관련된 국가 법률 체계를 검토하고 이러한 법률 체계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보호하는지 분석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현황 파악을 설계할 때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윤리 및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현황 파악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그리고 특히 현황 파악에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이 포함된 경우, 현황 파악 활동은 전체 커뮤니티, 특히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함께하는 참여적인 과정에 따라 설계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IASC 젠더 핸드북(IASC Gender Handbook)⁴에 규정돼 있듯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타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⁴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이 인도주의 부문 실무자와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IASC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황 파악 팀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The State of the World's Girls 2013: In double jeopardy – Adolescent girls and disasters, <<http://plan-international.org/girls/reports-and-publications/the-state-of-the-worlds-girls-2013.php>>를 참조한다.



GBV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현황 파악을 실시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

- GBV 관련 내용이 포함된 현황 파악의 경우, 기획, 설계, 분석 및 해석의 전 과정에 걸쳐 GBV, 젠더, 다양성 부문의 전문가와 상의한다.
- 가능한 경우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다.
- GBV 조사와 관련된 안전 및 윤리 권고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 커뮤니티의 문화적·종교적 민감성을 고려한다.
- 특정 필요가 있는 사람을 비롯해 모든 배경의 여성 및 여아, 남성 및 남아와 상의하여 참여적인 방식으로 모든 현황 파악을 실시한다. 맞춤형 개입을 위해 위험에 처한 집단의 고유한 필요는 현황 파악 시 공정하게 표현돼야 한다.
- 공동 톨과 방법을 사용하여 기관 간 또는 다부문 간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의 투명성과 보급을 확대한다.
- 기관 간 및 부문 간 팀에 GBV 전문가를 포함한다.
- GBV 관련 프로그램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활동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격차나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GBV 관련 보호 문제를 확인한다. 필요 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 현황 파악 참가자, 특히 여성 및 여아에게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인원의 여성 및 남성 평가자와 번역사를 확보한다.
- 모든 사람이 토론 시 안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상의를 진행한다. 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 배제, 편견 및 사회적 낙인에 대비하여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을 분리하거나, 적절한 경우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 현황 파악 팀의 구성원에게 윤리 및 안전 사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GBV 생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돌봄 체계(즉 위탁 경로)에 대한 정보를 교육에 반영한다.
- 현황 파악 과정에서 GBV 위험이나 GBV에 노출된 경험을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신고하는 방법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특히 의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적절한 경우, 그리고 안보상의 위험이 없는 경우, 현황 파악 활동에 정부 공무원, 관련 부처 및 정부 기관을 포함시킨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GBV 생존자 등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을 역추적할 수 있는 자료는 공유하지 않는다.
- 현황 파악 팀에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 문화적으로 민감하거나 금기된 주제(예: 젠더 불평등, 생식보건, 성적 규범 및 행동 등)에 관해 너무 깊이 캐묻지 않는다.
- GBV 생존자를 따로 지목하지 않는다. 즉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고유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언급한다.
- GBV 피해를 입은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 추정하지 않고, GBV 신고 자료 또는 신고 동향이 GBV의 실제 발생률과 추세를 나타낸다고 추측하지 않는다.
- GBV 전문가의 지원 없이 특정 GBV 사건이나 발생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인용: GBV AoR. 2010. Handbook for Coordin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provisional edition], CPWG. 2012.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UN Action. 2008. Reporting and Interpreting Data on Sexual Violence from Conflict-Affected Countries: Dos and don'ts)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정기 모니터링 중에 수집한 정보는 GBV 위험과 부문별 특정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할 다음과 같은 우선사항과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 ▶ 피해 인구 내 특정 집단에 대한 안전 및 안보상의 위험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불평등한 서비스 접근성
- ▶ 보호, 권리, GBV 위험 감소에 관한 국제 및 국내의 부문별 기준이 미적용됨 (또는 부재함)에 따라 GBV 관련 위험이 증가함
- ▶ 프로그램 기획, 설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일부 집단의 참여가 부족함. 따라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모든 집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해당 부문에 GBV 전문가가 배치되도록 옹호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일부 상황에서 자원 동원의 기반이 되는 공동 대응 계획 단계를 수립할 때도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주의 프로그램 주기, OCHA 최소 준비 패키지(Minimum Preparedness Package, MPP), 다중 클러스터/부문 초기 신속 현황 파악(Multi-Cluster/Sector Initial Rapid Assessment, MIRA), 전략적 대응 계획(Strategic Response Plans, SRP) 등 공동 기획안 및 전략안을 작성할 때 GBV를 적절히 다루고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현황 파악 시 GBV 관련 안전 및 안보 사안 조사

보호 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여성과 여아, 남성과 남아가 직면한 안전 및 안보상의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안전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원 활동 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GBV 관련 안전 문제가 (특히 인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결과) 언제,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진입점 및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 분석하는 일이 포함된다. 그러나 GBV 생존자를 현황 파악의 특정 집단으로 색출하거나 표적화해서는 안 된다. **GBV 집중 현황 파악은 GBV 전문가나 GBV 전문 협력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해야 한다. GBV 집중 현황 파악에는 특정 GBV 사건 조사, 생존자의 특정한 경험 인터뷰, 해당 인구 내 GBV의 정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각 인도주의 부문에서 활동하는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현황 파악 수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황 파악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현지 사정에 맞게 설계하고 실시해야 하며, 커뮤니티의 참여를 받아 현지 정부 관계자나 프로그램 관리자가 주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비 GBV 전문가가 일반적인 현황 파악 활동 중에 GBV와 관련된 특정 신고를 접수한 경우, 비밀 보장을 위한 안전 및 윤리 기준에 따라 GBV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생존자가 요청하는 경우 생존자의 익명성도 보장해야 한다.



요소 2: 자원 동원

자원 동원이란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 공여자를 통하거나 조정된 인도적 지원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7' 참조). 본 지침의 목표는 제안서 초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GBV 관련 주요 사안을 제시함으로써 GBV 관련 자금 조달 시 접하게 되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주제별로 제시된 부문별 자금 조달을 위한 요점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요점도 고려해야 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예방 및 대응을 인명 구조로 인식하기

GBV에 대처하는 활동은 인명 구조로 간주되고 중앙긴급대응자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을 비롯한 다수의 인도적 지원 공여자의 지침과 기준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부터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을 우선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GBV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인 보호 및 안정성 이니셔티브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상사태 초기에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GBV 관련 자원이 제한된 조건에서 활동하게 된다(Hersh, 2014). 예컨대 GBV 영역에서 물리적·인적 자원 또는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여 GBV 관련 자금이 제한적으로 할당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비상사태 대응 시스템상에 취약성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며 이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일부 경우에 이러한 취약성은 GBV 예방 및 대응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초기 신속 평가를 실패한 데서 비롯될 수 있다(다양한 인도주의 전략 계획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GBV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7' 참조).

제안서의 구성 요소	제안서에 포함 여부를 고려해야 할 GBV 관련 요점
인도적 필요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환경에서 생활하는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을 설명한다. 'GBV'라는 포괄적인 용어 대신 GBV의 각 유형(예: 성폭행, 강요에 의한 성매매, 아동 결혼과 강제 결혼,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분석한다. GBV 위험에 처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어떻게 식별했고 GBV 관련 우선순위, 필요 및 권리에 관해 어떻게 상의했는지 설명한다.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문별 활동 영역과 연결된 GBV 관련 위험을 설명한다. 해당 활동의 대상은 어떠한 집단이며 대상 설정에 취약성 기준 및 포함 전략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한다.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어떠한 메커니즘이 실행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활동이 피해 커뮤니티에서 특정 유형의 GBV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다른 활동에 어떻게 연관되고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프로젝트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활동이 다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부문의 활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한다. GBV 예방을 위해 환경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설명한다(예: GBV의 근본 원인과 GBV 유발요인을 더 잘 모니터링하고 이해함으로써 GBV를 예방). GBV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보장한다. GBV 전문가와 GBV 조정 메커니즘 간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와 안전을 보장하는 커뮤니티 시스템과 구조를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개선하고 재건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GBV 관련 활동의 진행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과 GBV 관련 활동이 피해 인구에 미칠 수 있는 역효과를 설명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전략에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프로그램이 GBV 관련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 시트(Indicator Sheets)의 결과 지표를 각 주제별 지침에 포함한다. 해당되는 경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계획을 설명한다.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관련 취약성 요인에 따라 지표를 분류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IASC 젠더 마커(Gender Marker)

인도적 지원은 긍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성, 여아, 남아, 남성의 특정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평가해보면 젠더 평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젠더 마커는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가 여성/여아와 남성/남아가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설계됐는지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 젠더 평등을 증진하도록 설계됐는지를 평가해서 0~2등급으로 표시하는 톨이다. 프로젝트가 젠더 평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젠더 마커를 통해 그 결과가 제한적일지 아니면 유의미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젠더 마커의 젠더 주류화 목표는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의 목표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지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성 및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젠더 평등 문제에 대처할 뿐 아니라 남성 및 남아를 GBV 예방 활동의 파트너로 포함시켜야 한다.

(젠더 마커와 GBV 예방 및 대응 프로젝트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록 8' 참조. 젠더 마커에 관한 정보는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Marker%20Fact%20Sheet.doc> 참조. 젠더 마커에 따른 지출 동향에 관한 정보는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2014. Funding Gender in Emergencies: What are the trends?** <www.globalhumanitarianassistance.org/report/funding-gender-emergencies-trends> 참조)

중요한 것은 자원 동원이 자금 요청에 국한되지 않다는 점이다. 부문별 행위자는 GBV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기획하고 이행할 때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 인적 자원을 동원할 때, 부문별 파트너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사안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러한 사안들을 이해한다.
 - 자신의 활동에 GBV 위험 감소 전략을 통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그들이 모든 부문별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물품을 사전에 배치한다.
- ▶ 이해하기 쉬운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 자료를 준비한다.
- ▶ 공여자가 GBV 예방, 완화 및 대응 개입을 인명 구조로 인식하여 GBV 대처를 위한 부문 내 및 부문 간 역량강화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도록 공여자 커뮤니티와 함께 옹호한다.
- ▶ 부문별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부 및 인도적 지원 정책에 GBV 우려사항이 통합되고 활동에 대한 지속적 예산 책정 전략이 포함되도록 한다.

요소 3: 이행

각 주제별 '이행'에서는 GBV 관련 위험 감소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 관련 예방 및 완화 전략(일부 부문의 경우,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개선하고 공동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함께 이행해야 할 활동을 설명한다.
- ▶ GBV 사건에 관한 가용 자료의 유무와 상관없이 특정 부문 내 모든 행위자가 이행해야 할 GBV 관련 책임을 설정한다.
- ▶ GBV 생존자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한 보호를 극대화한다.
- ▶ GBV 근절을 위한 장기적인 개입을 발전시킨다.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유)은 각 부문 내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에 제시된 권장 질문과 연계되며 이러한 권장 질문을 통해 3대 주요 책임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각 책임을 이행해야 할 대상에는 다양한 부문별 행위자가 포함된다.

1) 프로그램: NGOs, 커뮤니티 기반 기구 (국내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등), INGOs, 유엔 기구, 중앙 및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실행하도록 장려한다.

- ▶ 피해 인구 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거버넌스 (governance) 메커니즘 및 커뮤니티 의사결정 구조에 프로그램 담당 직원 및 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1)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직면한 특정 GBV 위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2) 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그들의 권리 및 필요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 ▶ 자신들이 실시하는 활동에 GBV 예방 및 완화(일부 부문의 경우,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 포함)를 통합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

IASC 원칙인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을 위한 약속 (Commitments on 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s, CAAP) 중 '약속4'에서는 피해 인구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본 지침에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현황 파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커뮤니티 기반 조직에 직원 및 책임자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권고사항에 반영돼 있다.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참여시키는 것은 이 장에서 나중에 다룰 이행 원칙 및 접근법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특히 지도자나 관리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일부 환경에서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인 권고사항(예: 프로그램 담당 직원 중 여성이 50%를 차지하도록 노력)을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참여가 잠재적으로 안보상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성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접근법은 전후 사정에 주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2) 정책: 프로그램 담당자, 옹호자, 국가 및 지역 정책입안가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실행하도록 장려한다.

- ▶ 비상사태 초기 단계부터 프로그램 정책, 기준 및 지침에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포함한다.
- ▶ 국가 및 지역 정책과 계획에 GBV 위험 감소 전략을 통합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금을 할당한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국가·지역의 법률과 정책 (관습법 및 정책 등)의 개정 및 채택을 지원한다.

3)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아웃리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실행하도록 장려한다.

- ▶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합한 GBV 생존자 돌봄 시스템(즉 위탁 경로)을 식별하고, 부문별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에 기본적인 GBV 메시지를 통합하며, 비밀 유지 및 생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비상사태 초기 단계에는 서비스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그에 따라 위탁 경로를 조정해야 한다.



-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성 정체성, 심리적 응급 처치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예: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위탁 및 심리적 응급처치 제공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이라는 용어는 심리사회적 웰빙을 보호/증진하고 정신 장애를 예방/치료하는 것이 목표인 모든 유형의 현지 또는 외부 지원을 일컬을 때 사용된다(IASC, 2007). GBV 경험은 생존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일 수 있다. 모든 생존자는 가족 및 커뮤니티 내에서 도움이 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GBV 집중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최초 GBV 집중 서비스는 훈련된 GBV 지원 활동가가 사례 관리 및 회복력 향상에 기반한 정신 보건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부 생존자(일반적으로 그 수가 비교적 적음)의 경우 GBV 관련 정신건강 문제를 대처해본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집중적인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예: 치료 계획에 따라 생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또는 사회복지사가 볼 때 생존자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GBV 피해를 받은 사람을 위한 치료와 지원의 일환으로, 인도주의 커뮤니티는 생존자가 GBV 집중 커뮤니티 기반 치료 서비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면 GBV 및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에 의한 집중적인 정신건강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존자가 법률/사법 지원 및 경찰 보호 서비스를 원할 수도 있다.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받을 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정보를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생존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본 지침 전반에 걸쳐 중대한 책임으로 제시돼 있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생존자가 GBV에 노출됐다고 신고하는 경우에 동원할 수 있는 보호 체계(즉 위탁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일부 인도주의 부문은 GBV 전문 직원을 그들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인도주의 부문 종사자는 생존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심리적 응급처치 원칙을 숙지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비 GBV 전문가는 GBV 사례 관리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았더라도 생존자가 피해 사례를 공개할 경우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 낙인을 찍지 않는 생존자 중심 접근법에 따라 응답함으로써 생존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생존자 중심 접근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이행 원칙’ 참조).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PFA)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인간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안전, 존엄성, 권리를 존중한다.
2. 상대방의 문화를 고려하여 행동한다.
3. PFA 이외의 긴급구호 활동에 대해 숙지한다.
4. 자기 자신을 돌본다.

준비

- 위기 상황을 파악한다.
- 가용 서비스와 지원을 파악한다.
- 안전 및 안보 우려사항을 파악한다.

(계속)



! 알아야 할 기본 사항(계속)

아래 제시된 PFA 3대 기본 행동 원칙(관찰, 청취, 연결)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상황에 안전하게 진입한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 필요를 실제적인 지원 및 정보와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지 확인한다. • 명백하고 시급한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간다. • 필요 및 우려사항에 대해 물어본다. • 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진정할 수 있게 돕는다.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보를 제공한다. •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 및 사회적 지원과 연결해준다. 	

다음은 PFA 제공 시 윤리적 측면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보여주는 목록이다. 이 목록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을 피하고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며 오직 피해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시됐다. 이처럼 윤리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경우에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사람을 문화적 맥락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도와야 한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생존자를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GBV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자문을 구해야 한다.

해야 할 일

-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한다.
- 피해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버린다.
- 지금 당장 도움을 거절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준다.
- 피해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해당되는 경우 비밀을 지킨다.
- 피해자의 문화, 연령, 젠더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행동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위치를 악용하지 않는다.
- 도움을 준 대가로 돈이나 다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는다.
- 본인의 능력을 과장하지 않는다.
- 도움을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방해하거나 밀어붙이지 않는다.
- 이야기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선불리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다.

(인용: IRC, World Health Organization, War Trauma Foundation and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1. Psychological First Aid: Guide for field workers, pp. 53-55, <www.who.int/mental_health/publications/guide_field_workers/en>;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for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10 myths', <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violence/rhr12_17/en>. 최초 지원 관련 세부 정보: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Health Care for Women Subjected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or Sexual Violence. A clinical handbook (Field-testing version), WHO/RHR/14.26, <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violence/vaw-clinical-handbook/en>)



요소 4: 조정

GBV의 복잡성을 고려해 보면, 여러 부문, 조직 및 분야가 협력하여 통일된 예방 및 완화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할 때 GBV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다. 비상사태 상황에서 인도적 개입을 주도하는 행위자(예: 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상주 조정관/인도주의 조정관, 사무총장/상주 조정관/인도주의 조정관의 특별 부대표, UNHCR 등)는 GBV 관련 사안이 우선순위가 되고 시기적절한 방법에 따라 대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의 '지침 이행 보장하기: 주요 행위자의 책임' 참조). 효과적인 조정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고 '독단적인' 개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며, 인도적 지원 기관별 및 부문 내 GBV 행동 계획이 다른 부문의 행동 계획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부문 간 접근법을 강화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과 GBV

OCHA는 “국내 및 국제 행위자와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원칙에 따른 인도주의 활동”이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국내 이재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 비상사태에 일관성 있는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를 결속시킬 책임이 있다.

본 지침의 각 주제에는 GBV 예방 및 완화(일부 부문의 경우,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와 관련된 조정을 위한 별도의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국내 이재민(IDP) 환경에서 전체 인도주의 대응을 조정하는 주체인 OCHA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다.

- 클러스터 간 워킹그룹(Inter-Cluster Working Group, ICWG)과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인도주의 기관(Humanitarian Country Team, HCT)에 GBV를 의제 항목으로 포함
- OCHA 출판물에서 클러스터의 GBV 예방/위험 완화 노력을 강조
- 협력기관이 자료 분석 및 보고(예: 부문 간 현황 파악, 상황 보고 등)에 GBV 렌즈를 활용하도록 격려
- 정보 관리 네트워크(Information Management Network, IMN)에 GBV 전문가를 영입하여 GBV 생존자에 대한 서비스 격차 분석을 촉진
- 부문별 또는 다부문 현황 파악에서 제기된 GBV 관련 사안 또는 우려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GBV 조정 메커니즘의 주의를 환기
- 인도주의 대응 전반에 걸쳐 최소 수준의 교육을 보장(즉 부문별 행위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본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OCHA의 조정 역할 관련 세부 정보: <www.unocha.org/what-we-do/coordination/overview> 참조. 난민, 국내 이재민(IDPs) 및 기타 피해 집단이 있는 환경의 리더십 및 조정 메커니즘 관련 정보: UNHCR & OCHA. 2014. 'Joint UNHCR-OCHA Note on Mixed Situations: Coordination in practice', <www.unhcr.org/53679e679.pdf> 참조)

각 주제별로 부문 간 조정을 위해 주요 GBV 관련 영역에 대한 지침이 제공된다. 이러한 지침은 NGOs, 커뮤니티 기반 기구(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등), INGOs, 유엔 기구, 중앙 및 지방 정부, 인도주의 조정 책임자(예: 관련 부처, 인도주의 조정관, 부문별 조정관 및 공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문별 조정 메커니즘의 지도자는 다음 활동도 수행해야 한다.

- ▶ GBV 사안을 정기적인 의제 항목으로 포함하고 관련 부문 조정 활동에 GBV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부문 조정회의에서 GBV를 정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 ▶ 젠더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양성 전문가 또는 네트워크(예: 장애, LGBTI, 노인 등)와 함께 조정하고 상의하여 자칫 간과할 수 있는 특정 취약성 사안을 적절히 대변하고 대처하도록 보장한다.



- ▶ 각 부문에서 자신의 GBV 관련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예: 행위자, 활동 및 지리적 범위를 도식화하기 위해 각 부문에서 사용하는 3/4/5하(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원칙에 GBV 관련 활동을 포함).
- ▶ 자금 조달 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여 부문별 프로그램 대응에서 GBV가 충분히 대처되도록 보장한다.
- ▶ GBV 관련 기관 간 행동을 포함하는 분명한 마일스톤과 함께 부문별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 GBV 예방 및 완화(일부 부문의 경우,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 포함)를 통합하는 부문별 정책, 규약 및 기타 틀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한다.
- ▶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옹호 활동을 실시하고 본 지침에 명시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때, GBV 문제에 대해 공적으로 발언하는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 생존자 및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 및 안보상의 위험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전문가에게 접근하기

부문별 조정관 및 행위자는 GBV 조정 메커니즘의 의장(또는 공동 의장)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그와 협력해야 한다(주의: GBV 조정 메커니즘의 의장은 상황에 따라 정부 행위자, NGOs, INGOs 또는 유엔 기구가 맡을 수 있음). 또한, 부문별 연락관이 GBV 조정회의에 참여하고 GBV 의장/공동 의장(또는 기타 GBV 조정 그룹 구성원)이 부문별 조정회의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문별 조정관 및 행위자는 본 지침에 제시된 권고사항의 이행에 도움을 줄 GBV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GBV 전문가는 진행 중인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보호 원칙 및 GBV 감소 전략이 통합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특정 활동을 통해 조정 과정에 자문, 협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GBV 집중 현황 파악 수행
- 생존자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
- 위탁 시스템 및 경로 개발
- GBV 생존자를 위한 사례 관리 제공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안과 생존자를 존중하고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에 대해 부문별 행위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그러나 GBV 전문가가 모든 부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부문별 대응에 GBV 위험 감소 전략을 통합하려는 노력은 부문별 행위자가 주도함으로써 부문별 대응 내에서 GBV 행위자의 모든 권고사항이 적절성과 타당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GBV 조정 메커니즘이 활동하지 않는 환경의 경우, 부문별 조정관 및 행위자는 국제 GBV AoR뿐 아니라 GBV 관련 전문성을 지닌 현지 행위자(예: 사회복지사, 여성 단체, 보호 담당자, 아동 보호 전문가 등)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관련 연락처: GBV AoR 웹사이트 <www.gbvaor.net>).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옹호(Advocacy)

옹호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에 의한) 지역적·국내적·국제적 차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정보를 고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GBV 전문가 및 광범위한 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GBV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보장할 수 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다양한 유형의 제품, 플랫폼, 채널(예: 보도 자료, 출판물, 지도, 미디어 인터뷰, 다양한 웹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동영상·사진·그림을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제품, 인식제고 캠페인, 피해 인구를 위한 필수 정보 채널 등)을 활용하여 특정 환경에 해당되는 특정 GBV 사안을 강조할 수 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행 시 옹호를 목적으로 생존자의 이야기, 이미지 또는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 및 자료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인용: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2011. GBV Emergency Response and Preparedness Participant Handbook, p. 93, <http://cpwg.net/resources/irc-2011-gbv_erp_participant_handbook_-_revised>)



요소 5: 모니터링 및 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M&E)는 기획, 자원에 대한 예산 책정, 성과 측정 및 향후 인도주의 대응의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툴이다. 지속적인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유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무성(특히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주기적 평가는 이행한 활동의 장단점을 심층 분석하고 피해 인구 및 인도주의 활동가의 지식, 태도, 행동이 개선된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데이터 모니터링 작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행 협력기관 및 공여자는 M&E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장 동료뿐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와 교훈을 공유할 수 있다. 본 지침은 GBV 사건 자료 수집과 자원 집약적인 평가를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지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M&E 관련 일반 정보는 ALNAP 인도주의 활동 평가 가이드(Evaluating Humanitarian Action Guide), <www.alnap.org/eha> 등 실시간 및 최종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참조. M&E 관련 GBV 집중 자료는 '부록 1' 참조).

각 주제에는 프로그램 주기의 단계별 권장 활동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지표는 추가 자료 수집 메커니즘 없이도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부문별 M&E 툴 및 과정에 통합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지표를 선택하고 적절한 대상을 설정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전개됨에 따라 대상 인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표를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양적 자료(설문 조사 및 3/4/5하 원칙을 통해 수집)와 질적 자료(표적집단토론, 주요 정보원 인터뷰 및 기타 질적 방법을 통해 수집) 수집에 관한 권고사항도 포함돼 있다. 질적 정보를 통해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일부 지표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특성 및 효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혼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사례 신고

여러 가지 안전 및 윤리 문제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본 지침에서는 신고된 사례 건수의 증감을 성공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GBV 사례 관련 자료는 GBV 전문가 또는 GBV 연구 조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집해야 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윤리 관련 고려사항

GBV 관련 자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긴 하지만, 본 지침의 지표는 GBV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성이 없는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자료 수집 및 공유 시 안전, 비밀 유지 및 사전동의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지켜야 할 책임이다. 추가 정보는 '요소 1: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참조한다.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정해야 유익할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때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험이 가장 소중한 학습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문에서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를 50%로 설정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상의하는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거나 여성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피해 커뮤니티와 대화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은 GBV 관련 활동뿐 아니라 부문별 개입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GBV 렌즈'를 사용하는 관련 부문에서 지표를 분석하고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정보 ('GBV 관련' 정보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정보 포함)에 GBV 예방 및 완화(일부 부문의 경우,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 포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내재돼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포함된다.

끝으로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수집한 정보의 질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해당 취약성 요인에 따라 지표를 분리해야 한다.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의 '위험에 처한 집단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참조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렌즈'를 사용한 M&E 및 자료 분석의 예

교육 부문은 이재민 커뮤니티의 남아 및 여아를 위한 학습장을 설계한다.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GBV 지침 및 OCHA 인도주의 지표 레지스트리(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에서 제시하는 지표(피해 지역의 학습장/학교에 다니는 남아 및 여아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frac{\text{피해 지역의 학습장/학교에 다니는 여아의 수}}{\text{피해 지역의 학습장/학교에 다니는 남아의 수}}$$

그 결과를 연령 집단(5~13세 및 14~18세)에 따라 구분한다. 'GBV 렌즈'를 사용하여 이러한 지표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는 학습장에 다니지 않는 남아 및 여아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고 이러한 차이와 GBV간의 관련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 여아의 높은 조기 중퇴율의 원인은 조기 결혼, 가사노동 또는 부모가 딸을 학교에 보내는 일을 꺼리게 만드는 안전하지 않은 통학로 때문일 수 있다. 여아와 남아의 출석률 차이를 발견하게 되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GBV 관련 원인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해 볼 수 있다.

제2장 젠더기반폭력 대처를 위한 이행 원칙 및 접근법

다음의 이행 원칙은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주요 인도적 책임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이 이행 원칙은 모든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GBV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행할 때 그 기초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GBV에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포함된다.
- ▶ GBV 예방 및 완화는 젠더 평등을 증진하고, 존중되고 비폭력적인 젠더 규범을 조성하는 신념 및 규범을 증진하는 활동을 수반한다.
- ▶ 생존자 및 위험에 처한 사람과 관련해 안전, 존중, 비밀 보장, 비차별주의는 항상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해를 입히지 말라(Do No Harm)

'해를 입히지 말라'는 개념은 인도주의 기관이 "함께 있으면서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는 광범위하고 매우 복잡할 수 있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다음에 나오는 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및 시스템 접근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GBV 관련 활동에서 '해를 입히지 말라'는 원칙을 강화할 수 있다.

(인용: Kahn, C., Lucchi, E. 2009. 'Are Humanitarians Fuelling Conflicts? Evidence from eastern Chad and Darfur', Humanitarian Exchange Magazine, No. 43, <www.odihpn.org/humanitarian-exchange-magazine/issue-43/are-humanitarians-fuelling-conflicts-evidence-from-eastern-chad-and-darfur>)



- ▶ GBV 관련 개입은 더 좋은 결과를 얻고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 ▶ 참여와 협력은 효과적인 GBV 예방을 위한 초석이다.

이러한 원칙을 실행할 때 다음의 네 가지 상호 연관된 필수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인권 기반 접근법

인권 기반 접근법의 목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인도적 개입을 방해하는 차별적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개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용적이고 단기적인 비상사태 필요에 대처하는 것이 목표인 필요 기반 접근법과 대비되는 경우가 많다. 필요 기반 접근법에서는 그 실행 과정에 피해 인구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한 시스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및 규정을 다루는 데까지는 확대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권 기반 접근법에서는 피해 인구를 '권리 보유자'로 보고, 이들의 권리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통해 피해 인구에게 장기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 접근법의 목표는 필요뿐 아니라 권리, 즉 법적·도덕적 의무 및 책무성을 통해 이러한 필요가 어떻게 확인되고 해결되는지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와 더불어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격려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지원할 의무를 지닌 '의무 보유자'로 간주된다. 인권 기반 접근법에서는 GBV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 ▶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즉각적·근본적·구조적 원인 파악)과 자신의 삶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한다.
- ▶ 의무 보유자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그의 역량과 한계를 파악한다.
- ▶ 의무 보유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을 개발한다.
- ▶ 인권 기준 및 원칙을 준수하고 참여적 접근법을 활용한 절차와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 프로그램에 국제 인권 기구 및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이 반영되도록 보장한다.

2. 생존자 중심 접근법



(발췌: GBV AoR. 2010. GBV Coordination Handbook (provisional edition), p. 20, <<http://gbvaor.net/tools-resources>>)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GBV 관련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할 때 생존자의 권리, 필요 및 희망 사항을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그림은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생존자가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오른쪽)을 생존자의 권리(왼쪽)와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은 맡은 역할과 상관없이 전문가가 GBV를 경험한 사람에 관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다. 이 접근법의 목표는 GBV 생존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안전이 보장되며 생존자를 존엄성 및 존중심으로 대하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을 통해 생존자의 회복을 촉진하고 그들이 필요와 희망을 식별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인용: IASC Gender SWG, GBV AoR, 2010).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윤리 및 안전 기준을 증진하기 위한 생존자 중심 접근법의 핵심 요소

- 1) **안전:** 모든 부문 행위자는 생존자와 생존자의 자녀, 생존자를 도운 사람 등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GBV 사건 또는 학대받은 이력을 공개하는 개인은 가해자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다.
- 2) **비밀 보장:** 비밀 보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반영한다.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은 관련된 사람의 사전동의 없이는 아무 때나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정보를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밀 보장을 통해 안전, 신뢰 및 역량강화를 증진할 수 있다.
- 3) **존중:** 생존자는 주 행위자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은 복구를 촉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조치는 생존자의 선택권, 희망 사항, 권리 및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 4) **비차별주의:** 폭력 생존자는 연령, 젠더, 인종, 종교, 국적, 민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특성과 관계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인용: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2. 'Module 2' in Managing Gender-Based Violence Programmes in Emergencies, E-Learning Companion Guide, <www.unfpa.org/sites/default/files/pub-pdf/GBV%20E-Learning%20Companion%20Guide_ENGLISH.pdf>**)

3. 커뮤니티 기반 접근법

커뮤니티 기반 접근법에서는 지원 및 보호와 관련된 전략을 개발할 때 피해 인구가 지도자 및 주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상사태 초기 단계부터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정보와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커뮤니티 기반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비롯한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과 직접 상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고려한다.
- ▶ 현황 파악, 설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자주 간과되는 집단이 지원을 적극적이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시킨다.
- ▶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더 잘 보호받고, 그들이 해결책을 찾고 유지하는 역량을 강화하며 인도적 지원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인용: UNHCR, 2008).



4. 시스템 접근법

시스템 접근법이란 해당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의 조합을 찾기 위해 전체 조직, 부문 및 인도주의 시스템에 걸쳐 GBV 관련 사안을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시스템 접근법은 단기간 및 장기간에 걸쳐 GBV 예방 및 완화 노력(일부 부문의 경우, 대응 서비스를 포함)을 개선시키는 체계적인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시스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 ▶ 젠더 평등 및 GBV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관/조직/부문의 약속을 강화한다.
- ▶ 민감화 및 교육을 통해 젠더 평등 및 GBV에 대한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의 지식, 태도 및 기술을 향상시킨다.
- ▶ GBV를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부문별 역량을 약화시키는 직원의 젠더 불균형 등과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접근한다.
- ▶ 기반 시설 개선 및 GBV 관련 정책 개발을 통해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 및 안보를 강화한다.
- ▶ GBV 관련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인용: USAID, 2006).



알아야 할 기본 사항

교육 실시

본 지침에서는 부문별 행위자가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젠더, GBV 및 여성의 권리/인권에 관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교육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 정부 행위자 및 커뮤니티 구성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효과적인 GBV 관련 프로그램 이행에 필수적인 것 뿐만 아니라 GBV의 영속화를 조장하는 문화적 규범에 대처하고 영향을 미치는 데도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GBV 전문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문별 행위자는 국제 GBV AoR(Global GBV Area of Responsibility, gbvaor.net, gbvguidelines.org)에 연락하여 교육 준비 및 제공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문별 행위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기존에 개발된 부문별 관련 교육 툴을 조사하되 국내에서 개발된 툴을 우선한다(예: 현지 위탁 메커니즘, 표준운영절차, 톱 시트 등).
- 대상 집단의 의사소통 및 문해 능력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교육을 조정한다.
- 모든 교육이 현지어로 실시되고 교육 툴도 현지어로 번역되도록 보장한다.
- 가능한 경우 국외 교육 진행자가 국내 공동 진행자와 협력하도록 보장한다.
- 문화적·종교적 민감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최대한 보호하는 활동과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지속 가능한 지식 전달과 GBV 전문성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뿐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멘토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위험에 처한 다양한 집단(예: 장애인, LGBTI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국제 및 현지 전문가를 식별하여 위험에 처한 특정 집단 관련 정보를 교육에 반영한다.

(GBV에 관한 기존의 부문별 교육 툴은 각 주제의 '자원' 페이지를 참조. LGBTI의 권리 및 필요 등에 관한 교육 툴과 GBV 집중 교육 툴의 목록은 '부록 1' 참조)

추가 인용

Hersh, M. 2014. 'Philippines: New approach to emergency response fails women and girls'. Refugees International Field Report, <<http://refugeesinternational.org/sites/default/files/Philippines%20GBV%20New%20Approach%20letterhead.pdf>>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07.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Guidelines%20IASC%20Mental%20Health%20Psychosocial%20%28with%20index%29.pdf>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Gender Sub-Working Group(IASC Gender SWG), GBV

Area of Responsibility(GBV AoR). 2010. Caring for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in Emergencies Training Guide, <www.unicef-emergencies.com/downloads/eresource/docs/GBV/Caring%20for%20Survivors.pdf>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08. UNHCR Manual on a Community Based Approach in UNHCR Operations, <www.unhcr.org/47f0a0232.pdf>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6. Addressing Gender-Based Violence through USAID's Health Programs: A guide for health sector program officers, <www.prb.org/pdf05/gbvreportfinal.pdf>



제3부

주제별 지침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적용 대상

-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 CCCM) 관련 조정 메커니즘
- 캠프 행정(Camp Administration, CA), 캠프 조정(Camp Coordination, CC), 캠프 관리(Camp Management, CM)
행위자: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기반 기구(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등), 국제비정부기구(INGO), 유엔 기구
- CCCM과 관련된 지역 위원회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예: 여성, 청소년/청년, 노인 모임 등)
- 이재민
- 그 외 중앙 및 지방 정부, 커뮤니티 지도자, 시민사회 단체 및 기타 CCCM 이해관계자

왜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부문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캠프의 관리자, 조정자, 행정가 모두 해당 현장의 전체 운영 주기 동안 피해 인구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¹ 전체 운영 주기에는 캠프 기획과 설치부터 관리와 유지보수를 거쳐 현장 폐쇄와 피해 인구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까지 포함된다.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CCCM) 절차가 제대로 계획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GBV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 가구별 등록에만 의존하는 등록 절차는 일부 개인에 대한 자원 접근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착취 및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높인다. 여성이 식량, 지원 또는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남성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하게 되거나 이 모든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미등록된 여아 및 남아는 가족과 떨어지게 될 위험이 높고 성착취,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의 내용:

기준 1: 전략적 기획

- ▶ 쉼터 및 정착 전략은 이재이주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인구의 안보, 안전, 건강, 웰빙에 기여하고 가능한 경우 복구와 재건도 촉진한다.

지침 안내 7: 위험, 취약성 및 유해성 현황 파악

- ▶ 위험, 취약성 및 유해성 현황 파악 시 실제 또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과 연령, 젠더(GBV 포함),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피해 인구의 자연 환경 자원에 대한 의존, 피해 인구와 수용 커뮤니티 사이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특정 위험 및 취약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Sphere Project. 2011.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www.sphereproject.org/resources/download-publications/?search=1&keywords=&language=English&category=22)

¹ 이 장에서 '현장(site)'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유형의 캠프나 그와 유사한 환경(예: 계획 캠프, 자생 캠프, 접수/임시 센터,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자생 정착촌)을 의미한다. 통제 하에 이재민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의 위치를 선정하고 캠프 계획을 완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문별 주도기관과 캠프 관리 기관이 다른 부문 행위자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재민들이 정착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CCCM 대응이 프로그램 주기 프레임워크의 단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지침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자생 정착촌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도 있음).

필수 행동 요약표 참조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CCCM'의 정의

이재민 대응과 관련된 CCCM 부문의 책임은 세 가지로 나뉘지만 서로 연관돼 있다. 캠프 행정은 캠프나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실시되는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것과 관련된 정부, 국가(민간) 당국이 수행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캠프 조성은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도적 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캠프 관리란 이재민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체적인 대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응은 개별적인 캠프 차원에서 실시되며 여기에는 보호 및 서비스의 조정, 거버넌스 수립과 커뮤니티 참여, 캠프 기반시설 유지보수 보장,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서비스 기준 모니터링, 서비스 격차 파악이 포함된다. 다양한 국가 기관, 인도주의 기관, 커뮤니티 자원봉사자, 시민사회 이해관계자가 캠프 대응에 관여하게 된다.

(인용: Norwegian Refugee Council. 2008.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Gender-Based Violence', ch. 10 in The Camp Management Toolkit, <http://www.nrc.no/arch/_img/9178016.pdf>. 참조: CCCM Global Cluster, Revised Toolkit, forthcoming March 2015, e-version at <www.cmtoolkit.org>)

강제/가사노동으로 이어지는 인신매매 및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크다. 미등록된 여아는 아동 결혼에 내몰릴 위험이 크다. 캠프가 설치된 이후에 도착하여 늦게 등록한 미혼 여성,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장애인, 위험에 처한 집단²은 공식적인 현장의 외곽으로 밀려나 더 소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 ▶ 식량, 쉼터, 비식량물품(Non-Food Items, NFI)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불충분하면 여성과 여아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연료와 식량을 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폭행과 납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LGBTI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배급 체계는 이들을 소외시키고 착취 및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
- ▶ 조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이 잘못됐거나 현장과 관련된 서비스(쉼터, 위생 시설, 식량 배급소 등)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GBV 관련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
- ▶ 일부 지원 기관 시설에서는 과밀 수용이나 사생활 보호 부족으로 인해 GBV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텐트와 다가구 거주 공간에서는 잠을 자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문이나 칸막이가 없어서 성희롱과 성폭행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과밀 수용과 관련된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이나 다른 형태의 가정 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 상황 및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 ▶ 이재이주가 계속됨에 따라 현지의 토지, 식량, 물, 연료 등과 같은 천연 자원이 부족해 지면 커뮤니티 내 폭력이나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성착취와 같은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은 납치되거나 강제로 정착지를 떠나게 될 수 있으며, 생계 유지를 위한 기회를 찾다가 인신매매업자에게 속거나 기본적인 물품과 재료를 얻기 위해 성관계나 다른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

²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HIV 보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 아동(separated children)/미동반 아동(unaccompanied children)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캠프나 이와 유사한 환경을 잘 설계하면 GBV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며 이재민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캠프는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적절하게 식별하고 (데이터 수집, 등록 및 이재이주 추적 매트릭스(Displacement Tracing Matrix)와 같은 모니터링 체계 등을 통해) 정보, 공간, 서비스의 제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GBV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CCM 부문 행위자가 캠프 구축 및 장소 선정 시 현지 천연 자원을 고려하고, 캠프 주기 중 관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생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옹호하면 GBV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캠프 관리에는 전체적이고 범분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GBV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CCCM 부문 행위자가 이행해야 하는 행동은 GBV 전문가 및 기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CCCM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과 조정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조정' 참조)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캠프 운영 주기

캠프 운영 주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지침의 프로그램 주기는 이러한 캠프 운영 주기를 반영하고 있다. 캠프 운영 주기 전반에 걸쳐 GBV 예방 및 완화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인용: CCCM Global Cluster, Revised Toolkit, forthcoming March 2015, e-version at <www.cmtoolkit.org>)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은 CCCM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선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현황 파악은 가능한 한 CCCM 부문 행위자가 GBV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도 협력하여 부문간 및 학제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은 '이행' 아래 자세하게 설명된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과도 연관돼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도록 CCCM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하는 우선순위와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주요 현황 파악 대상 집단

- CCCM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앙 및 지방 정부, 현장 관리자 및 조정자, 캠프 거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지 경찰/보안 부대/평화유지군, 시민사회, 이재민, GBV/젠더/다양성 전문가
- 캠프 서비스 제공자: 쉼터, 정착 및 복구,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보건, 식량 지원, 보호 등
- 피해 인구 및 커뮤니티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의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 커뮤니티에 의해 캠프나 그와 유사한 환경이 조성된 도시 및 기타 장소: 현지 및 도시 당국, 시민사회 단체, 개발 부문 행위자, 보건 행정가, 교육 위원회, 민간 기업 등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CCCM 프로그램

참여 및 리더십

- 1) 책임자급을 포함하여 CCCM 담당 직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여성 직원의 교육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GBV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안보적 사안이 있는가?
- 2)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커뮤니티 기반 캠프 거버넌스 구조(예: 커뮤니티 관리 조직, 현장 위원회,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가능한 경우 이들이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 3) CCCM 대응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에 중점을 둔 활동을 주류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 기준(본 지침 포함)에 대해 알고 있는가?

현장 및 그 주변의 물리적 안전

- 4)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포함한 피해 인구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현장과 쉼터를 선정했는가? 캠프의 위치로 인해 GBV 취약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 시 안전 사안을 고려했는가?
- 5) 캠프 기획 및 설치 단계에서 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고려했는가(예: 침입 방지 자재 및 잠금장치가 있는 문과 창문 제공)? 과밀 수용을 피하기 위해 공간과 밀집에 대한 스피어 기준을 준수했는가?
- 6) 현장, 특히 GBV 위험이 큰 지역에 조명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 7) 현장 기획, 쉼터 설치, 다른 기반 시설과의 통합이 장애인(예: 신체적 장애, 부상, 시력 또는 감각 기관의 손상 등)을 포함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 편의³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진행됐는가?
- 8) GBV 생존자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쉼터가 이미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캠프 기획 및 설치 단계에서 안전 쉼터를 고려했는가?
- 9) 캠프 기획 및 설치 단계에서 GBV 생존자와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고려했는가?
- 10)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예방과 신고를 도울 수 있도록 현지 주민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예: 이름표, 로고, 티셔츠)으로 구별되는가? 직원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과 관련된 안보 사안이 있는가?
- 11) GBV 위험에 대한 안전 감사는 현장 및 그 주변에서 정기적으로(가급적 밤낮으로 여러 차례) 시행되는가?
 - 감사 중에 확인된 GBV 관련 사안 및 위험 지대로 알려진 곳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체계가 있는가?
 - 감사 결과를 관련 GBV/보호 협력기관 및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 공유하는가?
- 12)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물, 연료 또는 배급 장소에 접근할 때 성희롱, 성폭행, 납치 및 기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는가?

(계속)

³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인 편의(universal design and/or 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4 정의'를 참조한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13) 보안 요원이 물과 연료를 구하는 장소를 비롯한 현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가?

- 보안 순찰대에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포함돼 있는가?
- 보안 순찰 요원이 GBV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받았는가?

등록 및 프로파일링

14) 기혼 여성, 독신 여성, 가족이 없는 여아 및 남아가 개별적으로 등록돼 있는가? 다른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안전하고 사회적 낙인이 적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15) 자연재해 및 분쟁 상황에서 등록/인사/임시 센터에 GBV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예: 가족과 헤어지거나 신분증이 없어서 납치 및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더 높은 사람)이나 폭력을 공개한 사람이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설치돼 있는가?

- 등록/인사/임시 센터에 생존자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해 신속하게 등록하고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 수 있는 책임자나 GBV 전문가가 있는가?

CCCM 정책

1)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CCCM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돼 있는가?

- 특히 GBV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는 CCCM의 정책, 기준 및 지침 개발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캠프 관리 기관이 이러한 정책, 기준, 지침에 관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고 소통했는가?
- CCCM 담당 직원은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2) 국가 및 지역 CCCM 정책 및 계획이 GBV 관련 위험 감소 전략의 통합을 옹호하는가? 이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 할당됐는가?

- 주기적인 자연재해 상황에서 GBV 전문가가 CCCM 관련 GBV 위험 감소에 관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조항이 있는가? 캠프 환경에서 일상적인 보호 위험에 관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 전문가가 있는가?
- 현장을 어디에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이 있는가?
- 비상사태 발생 시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 설치에 관한 정책이나 기준이 있는가?
- 캠프에 보안 및 법 집행 요원을 배치하고 GBV에 관해 교육하는 정책이 있는가?
- 캠프 폐쇄와 출구 전략에 GBV 관련 위험이 반영됐는가(예: 캠프 폐쇄 후 항구적 해결책 없이 방치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집단을 파악)?

CCCM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1) CCCM 담당 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는가?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사안
-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CCCM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와 그중에서도 특히 커뮤니티와의 커뮤니케이션(CwC)과 피드백 메커니즘이 일반적인 안전 및 GBV 위험 감소에 관한 커뮤니티 내 인식을 제고하는가?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이러한 정보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가?

3) GBV 관련 메시지(특히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를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예: 신규 도착자를 위한 인사/접수센터, 대피 센터, 보육 시설, 학교, 지방 정부 사무소, 보건 시설 등)에 비치했는가?

4) CCCM에 대한 토론회에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는가? 이러한 토론회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함에 따라(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자원 동원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은 CCCM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GBV 관련 자원 동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비상사태 대비/긴급 자금이나 비상사태 후 복구/개발 자금을 요청할 때 특정 GBV 위험을 반영하고 대처 전략을 제안하면 제안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금 조달 이후

'자원 동원'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품 및 공여자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동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도적 부문/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 제시돼 있다.

A. 인도적 필요의 개요

- ▶ 현장과 관련하여 피해 인구의 GBV 관련 안전 위험, 보호 필요 및 권리가 제안서에 명시돼 있는가(예: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독신 여성, 칸막이가 없는 이재민 임시수용 시설, 현장 내외의 무장단체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위협,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도주의 담당 직원의 태도, 여성을 성관계와 같은 생존을 위한 착취 활동으로 내몰 수 있는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인도적 지원 활동,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장작 및 기타 연료 자원 수집 등)?
- ▶ 'GBV'로 통칭하는 대신 GBV 위험을 특정 유형(예: 성폭행, 강요에 의한 성매매, 아동 결혼과 강제 결혼,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 ▶ 비상사태 대비 전략을 포함한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
 - 현장 관리자와 조정자를 위한 대비 교육에 GBV를 통합하는 전략이 포함돼 있는가?
 - 정부, CCCM 담당자, 캠프 거버넌스 집단을 대상으로 GBV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CCCM 프로그램의 안전한 설계와 이행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현장 식별 및 협상 과정에 GBV 위험과 예방 전략을 고려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가?
 - 보편적 설계와 합리적 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반 시설 건설과 보수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가?
 - GBV 위험 감소 물자(예: 조명, 손전등, 칸막이, 침입 방지 자재 등)를 사전에 배치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가?
 -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자료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로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가?
- ▶ 비상사태 대응 전략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캠프 운영을 통해 GBV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가(예: GBV 생존자 및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해 비밀이 보장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는 별도의 공간 제공,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 설치, 위험 지역에 적절한 조명, 현장 정기 모니터링 시행 등)?

(계속)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계속)

- CCCM 부문 여성 직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가(예: 이동을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지원, 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 직원과 동행하도록 자금을 지원)?
- ▶ 캠프 폐쇄 및 항구적 해결책을 위한 전략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 및 특정 유형의 GBV를 감소시키는 장기적인 노력에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예: 현장 폐쇄 전, 현장 폐쇄 중 그리고 폐쇄 절차가 끝난 후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와의 상담)이 있는가?
-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반영돼 있는가?

C. 프로젝트 내용

- ▶ 제안된 활동에 GBV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이행 원칙 및 주요 접근법(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 기반)이 반영돼 있는가?
- ▶ 제안된 활동이 자원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하는가?
- ▶ 프로젝트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촉진/지원하는가(캠프 내 거버넌스 구조 및 캠프 위원회에 참여 등)?



**이행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CCCM 개입을 이행할 때 GBV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표현된 필요, 확인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CCCM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1. 캠프 운영 주기 전반에 걸쳐 현장 관리 메커니즘이나 커뮤니티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직원이나 책임자로 참여시킨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⁴
 - ▶ CCCM 프로그램 담당 직원 중 여성 비율이 50%가 되도록 노력한다. 여성 직원이 책임자급이나 교육직을 맡을 수 있도록 공식 및 직무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 여성(해당되는 경우 청소년기 여아 포함)이 CCCM 위원회 및 관리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⁴ 주의: CCCM은 캠프 인구를 고용을 하지 않는다. 고용된 여성은 캠프 거주민이 아닌 외부인(예: 수용 인구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 ▶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을 CCCM 부문 직원, 책임자, 교육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현장에서 GBV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예: 현장 관리와 연관된 요인들, 안전, 쉼터, 식량, 연료, 물, 위생시설과 같은 자원의 가용성과 접근성, 위탁 서비스 등)을 식별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러한 과정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2. 캠프 기획 및 설치 단계에서는 GBV 위험 감소 활동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 ▶ 캠프의 위치로 인해 GBV 취약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 시 안전 사안(예: 국경과의 거리, 생계 기회에 대한 접근, 천연 자원에 대한 경쟁 등)을 고려한다.
- ▶ 가족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과밀 수용을 줄이기 위해 스피어(Sphere) 기준을 준수한다(가능한 경우 스피어 기준을 초과한다).
- ▶ 침입 방지 자재, 잠금장치가 있는 문과 창문, (문화적으로 적절한 경우) 내부 칸막이 등을 제공하여 비(非)공동 취침 공간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증진한다.
-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collective centre)에 가족 및 성별 분리를 위해 적절한 칸막이를 설치한다(전통적인 가족 구성에 속하지 않거나 성별에 따라 분리된 공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LGBTI의 권리와 필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 ▶ 모든 공공장소, 공동 구역 및 GBV 위험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장소에서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도록 보장한다. 캠프 관리 기관은 우선적으로 화장실 및 목욕탕 주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캠프 관리 기관

캠프 관리는 개별적인 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캠프 관리 기관은 비상사태의 초기 단계부터 상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역동적인 캠프 환경의 변화하는 필요에 대응한다. 캠프에 상주하며 지도자 역할을 하는 캠프 관리 기관은 캠프 환경에서 모든 취약 인구, 특히 여성 및 여아에 대한 GBV 위험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여성, 청소년기 여아(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과 협의하여 캠프를 설계하고 배치한다.
- 캠프 운영 주기 전반에 걸쳐서 일상적인 캠프 관리와 지원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참여시킨다.
- 모든 캠프 관리 기관 직원이 GBV 이행 원칙에 관한 교육을 받고 관찰에 기반한 안전 감사 및 커뮤니티 도식화와 같은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툴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우려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에 처한 집단 모두의 안보, 존엄성,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인용: Norwegian Refugee Council. 2008.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Gender-Based Violence', ch. 10 in The Camp Management Toolkit, <http://www.nrc.no/arch/_img/9178016.pdf>. 참조: CCCM Global Cluster, Revised Toolkit, forthcoming March 2015, e-version at <www.cmttoolkit.org>)



- ▶ 캠프 기획 및 설치 단계에서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지정한다. 안전한 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GBV 및 아동 보호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들의 이재이주를 정하고 기획한다.
- ▶ GBV에 연루되거나 GBV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GBV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위해 등록, 환영, 경유 센터 내 분리되고 비밀이 보장되며 사회적 낙인의 우려가 없는 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새로 도착한 사람을 위한 접수처에 GBV 전문가나 생존자(이주 전이나 이동 중에 당한 폭력을 공개한 사람과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등)의 즉각적인 돌봄을 위해 위탁을 배정할 수 있는 연락관을 배치하도록 한다.
- ▶ 캠프 기획 및 위치 선정 과정에서 지역의 천연 자원 기반과 지속 가능한 생계 기회를 고려한다. 이는 식량, 물, 토지, 연료와 같은 천연 자원의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GBV에도 영향을 준다.
- ▶ 기획 단계부터 GBV 예방 및 완화 활동을 캠프 폐쇄를 위한 항구적 해결책과 출구 전략에 통합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안전 쉼터와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

본 지침에서 사용된 ‘안전 쉼터(safe shelter)’라는 용어는 위험을 피해 도망쳐 온 개인에게 독점 또는 부수적으로 임시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물리적인 공간 또는 그러한 공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안전 가옥(safe house)’ 또는 ‘보호/안전 피난처(protection/safe haven)’와 같은 다양한 용어도 쉼터를 의미한다. 피해 인구를 위한 안전 쉼터를 소개할 때 다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안전을 위해 안전 쉼터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하는 것이 좋을지 숨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한다.
- 커뮤니티, 특히 캠프 환경 내 지지를 모은다.
- 거주자와 직원 모두의 안보를 보장한다.
- 거주자와 직원 모두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 다양한 쉼터 선택권을 탐색하고 개발한다.
- 이재이주 환경에서 안전 쉼터에 대한 거시적인 장애 요인과 그 영향을 평가한다.
-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한다.

(인용: Seelinger, K.T., and Freccero, J. 2013. Safe Haven: Sheltering displaced persons from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 Comparative report. Human Rights Center Sexual Violence Program,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www.law.berkeley.edu/files/HRC/SS_Comparative_web.pdf>)

‘여성 친화적인 공간’은 여성이 자녀에게 모유를 수유하고 영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웰빙과 관련된 사안(예: 여성의 권리, 성 및 생식보건, GBV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공간은 여성이 자신의 상황에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커뮤니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상담 서비스(GBV 생존자를 위한 상담이 포함될 수 있음)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또한 생계 활동을 위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아동 친화적인 공간’과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은 아동과 청소년이 자유롭게 체계적인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 활동 및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말한다.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2012.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http://toolkit.ineesite.org/toolkit/INEEcms/uploads/1103/Minimum-standards-Child_Protection.pdf>.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한다. Global Protection Cluster, IASC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Reference Group, Global Education Cluster, and International Network of Education in Emergencies. 2011. Guidelines for Child Friendly Spaces in Emergencies, <www.unicef.org/protection/Child_Friendly_Spaces_Guidelines_for_Field_Testing.pdf>)





모범 사례

2011년 6월, 소말리아 출신의 새로운 난민들이 케냐 동북부 다답(Dadaab)을 통해 정기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1991년부터 난민을 수용해 온 기존 캠프 4곳이 한계에 다다랐다. 상당수의 새로운 여성 및 여아 난민은 공식 캠프 경계 및 기반시설의 보호로부터 멀리 떨어져 원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외곽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화장실과 같은 주요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은 볼일을 보기 위해 주변 덩굴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무장한 남성의 공격에 노출됐다.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에 신고된 GBV 사건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IRC 팀은 UNHCR과 협력하여 GBV 생존자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한 진입 지점을 파악했다. 여성 심리사회적 지원 담당자와 여성 난민 담당 직원을 접수센터에 배치하여 특별히 취약한 사람(여성가장, 미동반 미성년자 등)을 식별했다. 취약한 사람을 식별하게 되면 이들을 신속하게 등록하고 즉각적인 지원, 위기 상담, GBV 및 캠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여성 심리사회적 지원 담당자 및 난민 담당 직원은 생존자가 강간에 대한 임상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병원에 방문할 때 그들과 동행했다. 또한 접수센터에서는 여성과 여아에게 존엄성키트(Dignity kit)를 제공했다.

(정보제공: 다답의 IRC 여성 보호 및 역량강화팀,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5월 19일)

3. 캠프 운영 주기 중 관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GBV 위험 감소 및 완화 전략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 현장에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안전과 웰빙을 정기적으로 점검(예: 현장 관찰, 현장 안전 매핑, 여성 모임 또는 지도자와 상담 등)하고 이들이 폭행과 착취,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장한다. 캠프/현장 관리 직원이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보장한다(밤낮으로 수차례 방문하는 것이 선호된다).

- 현장 또는 그 주변 지역에 GBV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위험 지대로 알려진 곳 (예: 배급소, 보안검문소, 급수 및 위생시설, 엔터테인먼트 센터, 부지 주변,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등)
- 위험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예: 여성가장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가정, 이산 여아 및 남아, 위탁가정의 여아 또는 남아, 정신 질환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이 거주하는 장소



알아야 할 기본 사항

LGBTI

캠프 설계 및 안전은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인 사람이 직면하는 특정한 폭력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CCCM 부문 행위자는 **LGBTI 전문가(LGBTI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보호 부문 직원 등)**와 협력하여 **CCCM 프로그램에서 LGBTI인 사람의 기본적인 보호 권리와 필요가 다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 신분증, 배급 카드 및 기타 보편적인 문서가 필요한 환경에서 자신의 젠더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거나(남성 또는 여성으로 표시하지 않을 선택권 포함) 젠더/성별에 따라 M, F 또는 X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한다.
-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말할 수 있도록 등록 장소에 별도의 공간을 제공한다.
- LGBTI인 사람을 지원하고 이들이 특히 안보와 관련될 수 있는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에 관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하도록 등록 담당 직원을 교육한다.

(정보제공: 휴먼 라이츠 퍼스트(Human Rights First)의 던컨 브린(Duncan Breen),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5월 20일)



-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 및 여성, 아동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실시되는 장소
- ▶ 기관의 데이터 공유 과정과 GBV 보고 및 정보 공유 기준에 따라 정기 현장 점검,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결과를 관련 GBV 및 보호 협력기관 등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 공유한다. 이와 관련된 안보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피해 인구에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민원 신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커뮤니티로부터 서비스 배치, 서비스 접근성을 비롯한 GBV 관련 현장 관리 사안을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을 구한다.
- ▶ 캠프 및 캠프 유사 환경에서 일하는 CCCM 담당 직원의 신원을 로고나 이름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서명을 했는지 확인한다.
- ▶ 모든 서비스 제공 시 취약성 기준의 적용을 위해 다른 부문과 함께 옹호한다.

4. 캠프 운영 주기 전반에 걸쳐 현장과 그 주변의 GBV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및 보안 순찰대의 역할을 지원한다.

- ▶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정 수의 법 집행관 및 보안 요원이 배치되도록 옹호한다. 문화적·상황적으로 적절하다면 보안 요원 중 여성과 남성의 참여 비율이 동등해지도록 노력한다.
- ▶ 보호 협력기관 및 커뮤니티와 협력하여(1일 24시간, 1주일에 7일) 현장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책을 찾는다. 이러한 최선책에는 폭력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기 위해 남성 및 여성이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 지킴이(community watch)'를 구성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 보호 협력기관 및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경찰관 및 보안 순찰 요원이 GBV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
- ▶ 평화유지군이 주둔한 환경에서는 평화유지군과 협조하여 보안 순찰의 편의를 도모한다.



모범 사례

필리핀 경찰청의 여성 및 아동 보호부는 GBV 생존자에게 위탁을 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도주의 대응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항상 받는다. 다가가기 쉽고 믿을 수 있는 여성 경찰관을 재해 피해 지역에 파견해 캠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고 여성 및 아동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설립했다. 이러한 여성 경찰관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GBV와 관련된 법률 및 법적 보호에 관한 정보를 이재민과 귀환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제공: 필리핀의 GBV 전문가 메리 웨리 린 헤레라(Mary Scheree Lynn Herrera),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9월 1일)

5. 캠프 폐쇄에 GBV 예방 및 완화를 통합한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안전에 특히 중점을 두고 귀환/재정착/잔류 인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옹호한다.
- ▶ GBV 전문가가 캠프를 떠나는 GBV 생존자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도록 돕는다. 여건이 된다면 GBV 생존자를 위한 돌봄 및 지원 위탁 체계를 확인한다.
- ▶ 캠프 폐쇄 및 귀환/재정착/재통합 프로그램 관련 조직과 기관이 GBV 생존자 개인 기록의 비밀 보장을 비롯한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공유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생존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따져보고 GBV 신고 및 정보 공유 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임).

- ▶ 캠프 폐쇄 과정에서 피해 인구를 대상으로 GBV 위험을 줄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시행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장애인

경험에 따르면 장애인은 모든 이재민 중에서 가장 은폐되고 방치되며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에 속한다. 사고방식적·신체적·사회적 장벽, 준비 및 기획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은 긴급 대피 시 남겨지거나 버려질 가능성이 크며 시설, 서비스, 이동 수단 등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신을 도와줄 가족이 없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착취당하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도시 환경보다는 난민 캠프에서 장애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기회가 더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모든 현장의 프로그램이 더 포괄적이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CCCM 부문 행위자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등록 및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장애인을 식별하고 그 수를 파악한다. 장애인이 주류 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전문적 또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캠프 지도자 임명이나 커뮤니티 거버넌스 구조에서 무시되지 않도록 한다.
-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 편의 원칙에 따라 시설과 서비스(쉼터, 식량 배급소, 급수장, 화장실과 목욕탕, 학교, 보건소, 캠프 사무소 등)를 설계하거나 개조 한다. 신체적 접근성의 문제는 물리적 기반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 일상적으로 필요한 식량 및 기타 물품을 얻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
-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보건의료, 상담 서비스,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인용: **Women's Refugee Commission. 2008. 'Disabilities among Refugees and Conflict-Affected Populations'**,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press-room/journal-articles/1000-disabilities-among-refugees-and-conflict-affected-populations>>)

GBV 위험 감소 전략을

CCCM 정책에 통합하기

1. 적절한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CCCM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한다.

- ▶ (1) GBV 위험을 완화하고 (2)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이 CCCM 활동에 직원이나 지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피해 인구 중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해 식량 및 비식량물품의 서비스 제공 및 배분을 조정하는 절차
 - 주요 GBV 관련 비식량물품(예: 위생키트, 존엄성키트, 개인용 조명, 연료 및 대체연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책임이 있는 협력기관에 대한 지침
 - 캠프 거주민 중 위험에 처한 집단을 위한 주거 정책
 - 안전하지 않은 지역 및 활동(예: 연료 수집)과 관련된 GBV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입
 - 현장 관리에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위한 정책



- 등록 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과의 인터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
- GBV 사고 관련 보호/비밀 정보의 공유에 대한 절차 및 규약
- 성적 착취 및 학대 발생 시 신고, 조사, 징계 기관의 절차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를 CCCM 담당 직원에게 두루 배포하고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공용어 및 지역별 현지어를 사용하여 더 넓은 커뮤니티에 배포한다(점자, 수화, 비문해자를 위한 시각적 콘텐츠가 포함된 포스터, 커뮤니티 회의를 통한 안내 등 접근하기 쉬운 방법 사용). 커뮤니티 구성원이 현장 관리 기관에 주요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 모범 사례인 CCCM 최소 젠더 약속(minimum gender commitment)의 채택을 옹호한다.

2. GBV 위험 감소 전략을 국가 및 지역의 정책과 CCCM 관련 계획에 통합되도록 옹호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을 할당한다.

- ▶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CCCM 정책 및 계획을 검토하고 안전과 안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GBV 관련 조치를 통합하도록 지원한다.
 - 주기적인 자연 재해 상황에서 CCCM 관련 GBV 위험 감소에 대해 정부에게 자문하는 GBV 전문가를 위한 지원
 - 현장 위치 선정 및 설치 방안
 -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보안 요원의 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 설치
 - GBV 관련 위험을 고려한 캠프 폐쇄 및 출구 전략
- ▶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개발 과정에서 관련 실무 부처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이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 ▶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 등의 피해 인구 및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GBV 관련 위험을 고려한 현장 폐쇄 및 출구 전략을 개발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CCCM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에 통합하기

1.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존자를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 체계(예: 위탁 경로)를 확인하고, CCCM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CCCM 부문 종사자가 생존자가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서면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한다.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 캠프 관리자는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CCCM 부문 종사자가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섹슈얼리티,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예: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탁 경로

'위탁 경로'는 GBV 생존자를 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의 도움, 법률/사법 지원 등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연한 메커니즘이다.

✓ 교훈

아이티에서는 현장에 상주하는 캠프 관리팀이 증가함에 따라 GBV 관련 사건 신고도 증가했다. 201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12건이 CCCM 팀에 신고됐고,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신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GBV 사건의 98%가 IOM 캠프 관리자 또는 현장의 캠프 현장팀에 직접 신고됐다. IOM 보호팀에서 인터뷰한 생존자의 83%는 캠프 관리 직원을 제외하면 사건을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근 보건 시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 중 100%가 이러한 시설까지 이동할 수단이 없거나 혼자서 가기가 두려웠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캠프 관리자가 GBV 관련 메시지(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를 캠프 어디서나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으며 생존자가 폭력을 당한 경험을 공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캠프 관리자를 대상으로 위탁 제공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술과 정보를 교육해야 하는 이유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인용: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0. 'IOM Haiti Gender-Based Violence', <https://www.iom.int/jahia/webdav/shared/shared/mainsite/published_docs/brochures_and_info_sheets/CCCM_GB_V_Strategy.pdf>)

2. CCCM 부문 내부적으로 또는 더 큰 범위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의 협력기관과 함께 GBV 관련 보고를 공유하는 CCCM 프로그램이 안전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 생존자 개인과 가족의 신원이나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기관 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3. CCCM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에 GBV 메시지가 포함되도록 한다.

- ▶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GBV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제고 활동을 CCCM 아웃리치 이니셔티브에 통합한다(예: 커뮤니티 토론회, 워크숍,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회의, GBV 메시지 전달 등).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GBV 예방,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 및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를 사용한다.
- 메시지 개발 및 메시지 전달 전략 수립 과정에(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가 참여하도록 하여 메시지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관련 메시지 전달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통해 GBV와 관련된 사람 등 피해 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우려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GBV 전문가가 아니라면 GBV 전문가나 GBV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를 GBV 예방 관련 CCCM 아웃리치에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시킨다.
-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커뮤니티 토론회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예: 교통, 회의 시간 및 장소, 이들의 참여에 대한 반발 위험, 육아 지원의 필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 참가자가 GBV 관련 사안을 편안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론회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을 이행한다.
- ▶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CCCM 부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행동 강령과 CCCM 부문 종사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 GBV 관련 메시지를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예: 신규 도착자를 위한 인사/접수센터, 대피 센터, 보육 시설, 학교, 지방 정부 사무소, 보건 시설 등)에 비치한다.

★ 모범 사례

인신매매 범죄의 본거지로 알려진 필리핀 레이테(Layte)는 2013년 태풍 하이얀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태풍 이후 자원 부족과 기본 서비스의 붕괴로 인해 인신매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CCCM 클러스터 구성원은 커뮤니티 내에서 인신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GBV 워킹그룹의 지원을 받아 코팅된 작은 포스터 수백 장을 공공 장소에 부착했다. 포스터에는 예방에 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와 인신매매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정보제공: GBV AoR 신속 대응 팀의 일원인 데바나 데 라 푸엔테(Devanna de la Puente),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4년 3월 13일)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조정 과정의 첫 단계로, CCCM 프로그램 담당자는 GBV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에서 GBV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GBV 전문가는 CCCM 부문 행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CCCM 프로그램과 관련된 GBV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CCCM 현황 파악을 설계 및 실시하고 CCCM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한다.
- ▶ CCCM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관련 사안에 관해 교육한다.
- ▶ CCCM 담당 직원에게 GBV 피해 사례를 신고한 생존자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CCCM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다.
- ▶ CCCM과 관련된 젠더, GBV, 여성의 권리, 인권 사안에 대해 피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 ▶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고 안전하게 설계되도록 자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CCCM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른 인도적 지원 부문과 연계하여 GBV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부문(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부문)과의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다음 표에 제시돼 있다.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CCCM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아동 보호

▶ 아동 보호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장 관련 GBV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및 대처

교육

- ▶ 다음을 위해 교육 부문 행위자와 협력
 -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임시 학습장 포함)의 장소와 구조를 계획
 - 가임기 연령대의 여성 및 여아에게 위생용품을 배포하고, 교육 환경에서 여성의 권리와 필요에 부합하는 위생용품 세탁 및 처분 체계를 계획
 - 이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 유지

식량 안보 및 농업

▶ 식량 안보 및 농업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배급 장소, 시간과 절차가 GBV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행

보건

- ▶ GBV 생존자와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 우려사항과 필요에 근거하여 보건 시설의 위치를 계획하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 부문 행위자의 지원을 요청
- ▶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위탁의 이용 가능성과 필요를 평가하기 위해 보건 부문 행위자와 협조
- ▶ 대피 센터 및 난민/국내 이재민(IDP) 현장의 이동 진료소의 설치 및 일정에 대해 보건 부문 행위자와 조정
- ▶ 여성 의료진이 배치되도록 옹호
- ▶ GBV 생존자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옹호

주택, 토지 및 재산(HLP)

- ▶ 다음을 위해 HLP 부문 행위자와 협력
 - 남성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HLP 권리 및 등록, 프로파일링, 의도 조사 등 토지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
 - 토지, 공동구역, 공공장소를 대피 센터와 이재민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파악(예: 강제 퇴거 및 재배치)

생계

- ▶ 다음을 위해 생계 협력기관과 협력
 - 캠프 내에서 생계 활동을 위해 안전한 지역과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식별
 - 특히 연료, 물 및 기타 주요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소득 창출 활동 장소를 계획
 - 위험한 대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생계 전략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영양

- ▶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 우려사항에 기반하여 영양 시설의 위치 설정에 영양 부문 행위자와 상의(예: 생존자를 원활하게 돌보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 보건 시설 인근에 영양 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
- ▶ 영양실조 환자를 위한 입원 치료 센터가 현장 밖에 위치하거나 아동에게 성인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영양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성인이 식량에 대한 대가로 성관계를 해야만 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과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보호

- ▶ 다음을 위해 보호 부문 행위자와 협력
 - 접수처 및 등록 현장에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한 안전한 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
 - 정기적인 안전 방문과 감사를 통해 환경에서 GBV 위험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수집
 -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지원(예: 캠프의 전략 지역 또는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조명을 설치, 보안 순찰대 등)

쉼터, 정착 및 복구(SS&R)

- ▶ 다음을 위해 SS&R 부문 행위자와 협력
 - GBV 위험을 낮추는 현장 및 쉼터를 계획하고 설계(예: 여성, 아동, 청소년기 여아를 위한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공간 제공, 과밀 수용 문제 대처, 쉼터 관련 NFI의 안전한 배급 이행 등)
 - 단기적인 직접 공급을 통한 취사용 연료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보장
 - 안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쉼터 개선 계획 및 시행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

- ▶ 다음을 위해 WASH 부문 행위자와 협력
 - GBV 위험을 줄이는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급수 및 공중위생 시설 건설(예: WASH 시설의 적절한 조명, 급수장 및 위생시설까지 안전한 거리, 적절한 NFI 배급 등)
 - GBV 메시지(예: 예방법,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를 통합한 개인위생을 홍보하는 아웃리치 를 지원
 - 수자원 사용과 관련하여 수용 커뮤니티의 참여를 보장
 - 가임기 연령대의 여성 및 여아에게 위생용품을 배포하고 여성의 권리와 필요에 부합하는 위생용품의 세탁 및 처분 체계를 계획
 - 안전성, 접근성, GBV 사례에 대한 WASH 현장의 모니터링 지원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프로그램 단계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GBV 관련 질문을 CCCM 현황 파악에 포함 ⁵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관련 질문*이 포함된 CCCM 현황 파악의 수} \times 100}{\text{CCCM 현황 파악의 수}}$ <p><small>* 현황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GBV 주제별 질문은 54 페이지 참조</small></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또는 툴	100%	✓	✓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	$\frac{\text{현황 파악 응답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응답자의 수}}$ <p>및</p> $\frac{\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50%	✓	✓	

(계속)

⁵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30 November 2012.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ASC Transformative Agenda Reference Documen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4.%20Reference%20module%20for%20Cluster%20Coordination.pdf>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계속)

<p>현장의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와 상의</p> <p>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별도로 상의</p>	<p>양적 방법: 현장* 내부 및 인근의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와의 상의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현장의 수 × 100 현장의 수</p> <p>질적 방법: 현장과 그 주변에서 개인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GBV 관련 위험 요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현장에는 급수장, 화장실, 식량 및 NFI 배급소, 안전한 공간 등이 포함됨</p>	<p>해당 조직의 기록물,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 주요 정보원 인터뷰 (Key Informant Interview, KII), 현황 파악 보고서</p>	100%		✓	✓
<p>GBV 생존자 위탁 경로에 대한 직원의 지식</p>	<p>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생존자 위탁 경로를 올바르게 답한 CCCM 담당 직원의 수 × 100 설문조사에 응답한 CCCM 담당 직원의 수 * 직원에는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근로자 및 자원 봉사자가 포함됨</p>	<p>설문조사</p>	100%		✓	✓

자원 동원

<p>GBV 위험 감소를 CCCM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에 포함</p>	<p>GBV 지침에 나온 GBV 위험 감소 목표, 활동 또는 지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 CCCM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 100 CCCM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p>	<p>(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제안서 검토</p>	100%		✓	✓
<p>GBV 지침에 관한 CCCM 담당 직원 교육</p>	<p>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CCCM 담당 직원의 수 × 100 CCCM 담당 직원의 수</p>	<p>(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p>	100%		✓	✓

이행

▶ 프로그램

<p>현황 파악 현장의 GBV 위험 요인</p>	<p>양적 방법: 현장*(내부 및 인근)에 대한 질문에 GBV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피해 인구의 수 × 100 현장(내부 및 인근)에 대해 질문을 받은 피해 인구의 수</p> <p>질적 방법: 피해 인구가 현장 내부와 인근에서 GBV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피해 인구가 말한 현장 내부 및 인근의 안전 우려사항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현장에는 급수장, 화장실, 식량 및 NFI 배급소, 안전한 공간 등이 포함됨</p>	<p>설문조사, FGD, KII, 참여 커뮤니티 도식화</p>	0%		✓	✓
----------------------------	---	------------------------------------	----	--	---	---

(계속)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계속)

▶ 프로그램(계속)

<p>이재이주 현장에 지정된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의 존재</p> <p>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의 분리</p>	<p>양적 방법: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이 있는 이재이주 현장의 수 × 100 각 현장의 이재민의 수</p> <p>질적 방법: 여성이 여성 친화적인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동은 이러한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소년기 여아는 이러한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p>	<p>직접 관찰, KII, 안전 감사, 이재이주 추적 매트릭스 (Displacement Tracking Matrix, DTM)</p>	<p>현장에서 결정</p>		<p>✓</p>	<p>✓</p>
<p>CCCM 거버넌스 구조에서의 여성 참여⁶</p>	<p>양적 방법: CCCM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는 여성 피해자의 수 × 100 CCCM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는 피해자의 수</p> <p>질적 방법: 여성은 CCCM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자신의 참여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CCCM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p>	<p>현장 관리 보고서, DTM, FGD, KII</p>	<p>50%</p>		<p>✓</p>	<p>✓</p>
<p>CCCM 프로그램의 여성 직원</p>	<p>CCCM 프로그램의 여성 직원 수 × 100 CCCM 프로그램의 직원 수</p>	<p>해당 조직의 기록물</p>	<p>50%</p>		<p>✓</p>	<p>✓</p>
<p>이재이주 현장의 보안 순찰대의 존재</p> <p>성별에 따른 보안 순찰대 구분</p>	<p>양적 방법: 이재이주 현장의 보안 순찰대 수 × 100 이재이주 현장의 이재민 수</p> <p>질적 방법: 이재이주 현장을 얼마나 자주 순찰하는가?</p>	<p>KII, CCCM 정기 조정회의, 안전 감사, DTM</p>	<p>현장에서 결정</p>		<p>✓</p>	<p>✓</p>
<p>제대로 작동하는 조명을 갖춘 주요 기반 시설</p>	<p>제대로 작동하는 조명을 갖춘 주요 지점*의 수 × 100 주요 지점의 수</p> <p>* 주요 지점은 커뮤니티 도식화 과정에서 정의되며 화장실, 급수장, 모임 장소를 포함</p>	<p>관찰</p>	<p>현장에서 결정</p>		<p>✓</p>	<p>✓</p>
<p>CCCM 담당 직원이 접수하거나 조치를 취한 안전 관련 민원 피드백⁶</p>	<p>CCCM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접수되거나 조치*가 취해진 안전 관련 민원 건수 × 100 CCCM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접수된 안전 관련 민원 건수</p> <p>* 민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 인구에게 명확한 답을 제공</p>	<p>설문조사, FGD, KII, 참여 커뮤니티 도식화</p>	<p>100%</p>		<p>✓</p>	<p>✓</p>

(계속)

⁶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 <www.humanitarianresponse.info/applications/ir/indicators>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이행(계속)

▶ 정책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CCCM 정책, 지침 또는 기준에 포함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포함된 CCCM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times 100}{\text{CCCM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기관, 부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의) 문헌 검토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응답한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	100%	✓		✓
CCCM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GBV 위탁에 관한 정보 포함	$\frac{\text{GBV 생존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CCCM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times 100}{\text{CCCM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문헌 검토, KII,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다른 부문과 조정	$\frac{\text{현장에서 GBV 위험 감소 활동*을 위해 상의한 비 CCCM 부문의 수} \times 100}{\text{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비 CCCM 부문의 수}}$ <p>* 부문별 GBV 위험 감소 활동은 67 페이지 참조</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KII, 회의록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참고자료

주요 참고자료

- **Norwegian Refugee Council (NRC). 2008.**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Gender-Based Violence', ch. 10 in The Camp Management Toolkit, <http://www.nrc.no/arch/_img/9178016.pdf>
- **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 (CCCM) Global Cluster. Forthcoming March 2015.** Revised Toolkit, <www.cmtoolkit.org>
- **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 (CCCM) Global Cluster. 2010.** Collective Centre Guidelines, <www.globalccmcluster.org/tools-and-guidance/publications/collective-centre-guidelines>
- **Gender-Based Violence Area of Responsibility (GBV AoR). 2014.** 'Camp GBV Safety Audit', Handbook for Coordin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 Annex 36, <www.unicef.org/protection/files/GBV_Handbook_Long_Version.pdf>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and CCCM Cluster. 2011.**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Camp Managers: Prevention and response to GBV in IDP sites, Haiti, <www.eshelter-cccmhaiti.info/pdf/sop_sgbv_generic_2011.pdf>
- 젠더 평등 프로그램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2006.**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Handbook%20%28Feb%202007%29.pdf> 참조

추가 참고자료

- **Schulte, J., and Rizvi, Z. 2012.** 'In Search of Safety and Solutions: Somali refugee adolescent girls at Sheder and Aw Barre Camps, Ethiopia'. New York: Women's Refugee Commission,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resources/document/847-in-search-of-safety-and-solutions-somali-refugee-adolescent-girls-at-sheder-and-aw-barre-camps>>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1.** 'Working with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Intersex Persons in Forced Displacement'. Switzerland: UNHCR, <www.refworld.org/cgi-bin/telex/vtx/rwmain?docid=4e6073972>
- **House, S., Mahon, T., and Cavill, S. 2012.** Menstrual Hygiene Matters: A resource for improving menstrual hygiene around the world, <www.wateraid.org/what-we-do/our-approach/research-and-publications/view-publication?id=02309d73-8e41-4d04-b2ef-6641f6616a4f>
- **Reproductive Health Response in Conflict Consortium. 2004.** Gender-Based Violence Tools Manual: For assessment & program design, monitoring & evaluation in conflict-affected settings, <<http://reliefweb.int/report/world/gender-based-violence-tools-manual-assessment-program-design-monitoring-evaluation>>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2004.** Addressing the Needs of Women Affected by Armed Conflict. Geneva, <www.refworld.org/pdfid/46e943780.pdf>
- **UNHCR. 2006.** Operational Protection in Camps and Settlements: A reference guide of good practices in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other persons of concern, <www.refworld.org/docid/44b381994.html>



아동 보호



적용 대상

- 아동 보호 조정 메커니즘
- 아동 보호 부문 행위자(직원 및 책임자):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기반 기구(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등), 국제비정부기구(INGO), 유엔 기구
- 아동 보호 관련 지역 위원회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
- 그 외 중앙 및 지방 정부, 커뮤니티 지도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아동 보호 이해관계자

왜 아동 보호 부문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아동과 청소년은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법치주의의 결여, 가족 및 커뮤니티 보호 메커니즘의 해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제한된 권한 및 타인에 대한 의존도로 인해 더 큰 폭력 위험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인도주의 위기로 인해 성인이 부담을 느끼면 아동이 신체적 학대, 차별 및 기타 가정 폭력을 당할 위험이 커진다. 아동과 청소년은 또한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아동 노동, 상업적 성착취 등을 통해) 착취를 당할 위험이 있다. 무장세력과의 인접성, 과밀 수용된 캠프 및 가족 이산도 폭력 위험 증가에 일조한다.

비상사태 시 여아와 남아 모두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한다. 성적 착취 및 학대, 성관계를 위한 인신매매, 여성 할례(FGM/C), 명예 살인, 아동 결혼, 식량과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접근, 교육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성 등 다양한 유형의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하기

아동 및 청소년과 관계된 모든 행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인도적 프로그램 및 개입의 설계, 모니터링, 수정 과정에서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인도주의 기관이 아동 개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의된 절차상의 안전장치를 이행해야 한다. 아동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 범주에는 영아(1세 이하)와 대부분의 청소년(10~19세)이 포함된다. 청소년은 보통 10~19세 사이의 사람을 가리킨다.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PWG]. 2012.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pp. 15 and 221, <http://toolkit.ineesite.org/toolkit/INEEcms/uploads/1103/Minimum-standards-Child_Protection.pdf>. 자세한 정보는 UNHCR, 2008.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www.unhcr.org/4566b16b2.pdf> 참조)

필수 행동 요약표 참조

아동 폭력은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차별로 인해 여아와 젊은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아와 남아는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되거나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여아는 종종 성 노예 및 기타 성폭력 및 성착취의 표적이 된다. 미동반 여아 또는 고아인 여아, 독신 가장,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거나 장애가 있는 여아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¹

아동 보호 부문 행위자는 GBV 예방 및 완화 조치를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생존자를 위한 아동 친화적인 돌봄 체계(즉, 위탁 경로)를 지원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웰빙을 향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GBV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아동 보호 부문이 이행해야 하는 행동은 GBV 전문가 및 기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동 보호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과 조정해야 한다(다음에 나오는 '조정' 참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GBV 예방, 완화 및 대응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보호 부문 행위자는 비상사태에서 여아의 특정 필요와 취약성이 남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아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위치에 두는 사회적 규범과 전통에 대한 이해와 도전을 필요로 한다. 젠더 렌즈를 통해 남아에 대한 특정 유형의 폭력에 대처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결정된 남성성에 관한 규범, 특히 남성의 힘과 폭력적인 남성성에 관한 규범이 남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인 아동의 필요와 취약성은 특히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과 일한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나 구호 활동가와 협력하고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젠더 관련 위험과 보호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인도적 활동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

기준 8

- ▶ 여아와 남아는 신체적 폭력 및 기타 해로운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생존자는 연령에 따라 문화적으로 적절한 대응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 9

- ▶ 여아와 남아는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성폭력 생존자는 연령에 따른 정보와 안전하고 신속하며 포괄적인 대응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PWG]. 2012.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http://toolkit.ineesite.org/toolkit/INEEcms/uploads/1103/Minimum-standards-Child_Protection.pdf>)

¹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GBTI), HIV 보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미동반 아동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인도적 활동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에 따라 위험에 처한 아동 집단이란 돌봄과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가리킨다. 주로 배제된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의 범주로는 장애 아동, 소년소녀가장가정, LGBTI인 아동, 거리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아동, 강간의 결과로 태어난 아동, 인종/종교적 소수자인 아동, HIV 감염자인 아동, 청소년기 여아, 가장 심각한 유형의 아동 노동을 하는 아동,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혼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 및 아동 양육시설 또는 구금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등이 있다(157 페이지).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에 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어떠한 무장세력이나 무장단체에 의해 포섭되거나 이용된 적이 있거나 현재 그러한 상황에 놓인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은 전사, 요리사, 집꾼, 배달원, 스파이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아동, 여아 및 남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적대적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적이 있거나 가담하고 있는 아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용: UNICEF. 2007. The Paris Principles: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www.unicef.org/emerg/files/ParisPrinciples310107English.pdf>)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은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동 보호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선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현황 파악은 가능한 한 아동 보호 부문 행위자가 GBV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도 협력하여 부문간 및 학제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은 '이행' 아래 자세하게 설명된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과도 연관돼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하고 아동 생존자 대응 서비스를 촉진 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하는 우선순위와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아동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폭력 및 해로운 관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과정은 아동 폭력 연구를 위한 국제적 윤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국내법과 부합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기관 간 아동 보호 정보관리시스템(Inter-Agency Child Prote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및 인도적 활동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은 직원만이 아동을 인터뷰해야 한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수집, 데이터 공유에 대한 자세한 일반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주요 현황 파악 대상 집단

- 아동 보호의 주요 이해관계자: 정부 관계자, 인도주의 활동가, 시민사회, 현지 당국, 경찰, 교사, 가족 구성원 및 양육자, 커뮤니티 지도자와 구성원, 아동 보호 위원회, 종교 기반 단체, GBV/젠더/다양성 전문가
- 해당되는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 인구 및 커뮤니티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의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아동 보호 프로그램

참여 및 리더십

- 1) 책임자급을 포함한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여성 직원의 연수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GBV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안보적 사안이 있는가?
- 2)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서 GBV에 대한 특정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 청소년 및 다른 사람과 상의했는가?
 -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가?
 - 가능한 경우 이들이 커뮤니티 기반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예: 커뮤니티 아동 보호 위원회 등)?
- 3) 아동 보호 대응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에 중점을 둔 활동을 주류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 기준(본 지침 포함)에 대해 알고 있는가?

GBV 관련 아동 보호 환경

- 4) GBV가 발생시키거나 여아와 남아에 대한 GBV 및 기타 다양한 폭력 유형의 위험이 증가하게 하는 피해 인구의 어떠한 문화적 관행, 행동, 사회적 규범(예: 남아에 대한 특혜, 아동 결혼, 여성 할례(FGM/C), 젠더로 인한 교육에서의 배제(특히 중학교 수준의 교육에서 청소년기 여아의 배제), 가사노동, 무장세력/단체에 의한 아동 포섭, 아동 노동 등)은 무엇인가?
 - 이러한 관행과 규범이 어떻게 다양한 연령의 여러 위험에 처한 집단의 아동(예: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폭력)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 인도주의 비상사태로 인해 어떻게 변화(증가 또는 감소)했는가?
- 5) 여아와 남아를 GBV 및 기타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적 관행, 행동과 사회적 규범은 무엇인가? 인도주의 비상사태로 인해 어떻게 변화했는가?
- 6) 여아와 남아에 대한 GBV 및 기타 유형의 폭력 위험을 커지게 하는 환경 요인(예: 무장세력/단체의 존재, 장작/물 길기와 학교/직장에 가기 위한 안전하지 않은 경로, 과밀 수용된 캠프 또는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이산/미동반 아동 상태, 법에 저촉된 상태, 아동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존재 등)은 무엇인가?
 - 여아와 남아가 직면한 서로 다른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 특별히 위험에 처하거나 돌봄과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아동 또는 청소년 집단이 있는가?
- 7) 아동과 양육자가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처하는 역량은 어떠한가?
 - 아동과 청소년이 GBV 및 기타 유형의 폭력을 당했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커뮤니티 기관 및 지원(비공식 방안 포함)에는 무엇이 있는가?
 - GBV 및 기타 유형의 폭력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완화하기 위해 동원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 보호 메커니즘(예: 아동 보호 위원회, 감시 위원회, 아동 친화적인 공간, 커뮤니티 기반 기구, 가족 및 친족 네트워크, 종교 기관 및 기타 전통적 메커니즘 등)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아동 친화적인 대응 서비스

- 8) GBV 및 기타 유형의 폭력에 대한 아동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가(예: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안보/법 집행 기관, 법적 지원, 사법 과정 등)
 - 이러한 서비스가 여아와 남아 생존자의 각기 다른 필요를 지원하는가?
 - 서비스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 친화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서비스가 특히 아동 생존자의 정보에 바탕을 둔 사전동의와 의무 보고 법률 및 정책과 관련된 제정법과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가?
 - 제공자가 젠더, GBV, 여성과 아동의 권리, 사회적 배제와 섹슈얼리티뿐만 아니라 아동 친화적인 원칙과 돌봄에 대한 접근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가?
 - 돌봄의 질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정 및 위탁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가 실시되고 있는가?
- 9) 아동과 청소년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사회적, 태도적, 물리적 및 정보 제공 관련 방해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체계를 실시해야 하는가?
 - 서비스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 편의²를 바탕으로 제공되는가(예: 신체적 장애, 부상, 감각 장애, 인지 장애 등)?

(계속)

²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4 정의'를 참조한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특정 위기에 처한 집단의 GBV 관련 아동 보호 필요

- 10) 이산/미동반 아동을 위한 접수처에 담당자가 남녀 혼성팀으로 배치돼 있는가? 팀이 GBV 및 기타 유형의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아와 남아 생존자를 위한 즉각적인 돌봄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는가?
 - 대안적인 돌봄 및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에서 장기 위탁 또는 재결합 이후에도 잠재적인 GBV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가?
- 11)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GBV 관련 위험과 지원 필요를 고려하는가?
 - 무장 해제, 동원 해제, 재통합 과정에서 무장세력/단체 일원의 부양가족이거나 '부인'이라서 놓치기 쉬운 여아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는가?
 -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된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적이 있는 아동을 위해 사회적 낙인의 우려가 없는 지원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이러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우려가 없는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재결합한 여아와 남아의 가족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했는가?
- 12) 법적 분쟁에 연루된 아동을 위한 구금 시설은 GBV 관련 위험을 모니터링하는가?
 - 여아와 남아가 (아동과 성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시설에 구금됐는가?
 - 위험에 처한 아동과 부당하게 감금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 시스템이 실행되고 있는가?

아동 보호 정책

- 1)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아동 보호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지침에 통합돼 있는가?
 - 특히 GBV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는 아동 보호 정책, 기준 및 지침의 개발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이러한 정책, 기준, 지침에 관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과 소통했는가?
 -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은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책의 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2) 아동의 권리 및 아동에 대한 GBV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 법률과 관습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이들이 여아와 남아의 권리와 안전, 젠더 평등과 여아의 역량강화를 증진하는 헌법 기준, 국제 기준 및 체계에 부합하는가?

아동 보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 1) 아동 보호 아웃리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는가?
 - 젠더, GBV, 여성과 아동의 권리, 사회적 배제와 섹슈얼리티 사안
 - 아동 생존자와 그들의 양육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생존자의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2) 아동 보호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가 아동의 권리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GBV 및 기타 폭력에 관한 커뮤니티의 인식을 제고하는가?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GBV예방,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이러한 정보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이러한 아웃리치에 참여하는가?
- 3) 아동 보호 관련 토론회에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는가? 이러한 토론회가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함에 따라(예: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진행, 보안이 철저한 환경에서 개최,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자원 동원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은 아동 보호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GBV 관련 자원 동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비상사태 대비/긴급 자금이나 비상사태 후 복구/개발 자금을 요청할 때 특정 GBV 위험을 반영하고 대처 전략을 제안하면 제안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금 조달 이후

'자원 동원'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품 및 공여자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동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도적 부문/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 제시돼 있다.

A. 인도적 필요의 개요

- ▶ 여아와 남아의 특정 GBV 관련 안전 위험, 보호 필요 및 권리가 제안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가? 이러한 정보가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관련 취약성 요인에 따라 분류되었는가?
- ▶ 'GBV'로 통칭하는 대신 GBV 위험을 특정 유형 (예: 성폭행, 상업적 성착취, 아동 결혼,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가정 폭력, 여성 할례(FGM/C) 등) 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 ▶ 비상사태 대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프로젝트가 즉각적인 GBV 관련 아동 보호 필요를 어떻게 다루고 GBV 노출로부터의 안전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에 관한 설명(예: 아동 보호 모니터링이 일반 아동 보호 사안과 GBV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도록 보장, 캠프 또는 기타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환경 지원, 여아와 남아 생존자를 위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구축 등)이 있는가?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아동 집단에 대한 특정 폭력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예: 이산/미동반 여아와 남아, 법에 저촉된 여아와 남아 등)이 있는가?
 - 아동 보호 부문 여성 직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가(예: 이동을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지원, 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 직원과 동행하도록 자금을 지원)?
 - 여아와 남아에 대한 각기 다른 위험과 안전 필요를 인식하여 정부, 인도주의 활동가, 국가 및 지역 안보 및 법 집행 기관, 아동 보호 부문 종사자, 교사, 법률/사법 부문 행위자, 커뮤니티 지도자를 비롯한 관련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폭력에 관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자료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로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가?
- ▶ 비상사태 이후와 복구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 및 특정 유형의 GBV를 감소하는 장기적인 노력에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반영돼 있는가?

(계속)



C. 프로젝트 내용

- ▶ 제안된 활동에 GBV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이행 원칙 및 주요 접근법(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 기반)이 반영돼 있는가?
- ▶ 제안된 활동이 자원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하는가?
- ▶ GBV의 근본원인과 유발요인에 대한 대처를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예: 젠더 평등과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역량강화를 증진하는 법률과 정책에 관한 옹호 활동 등)이 있는가?
- ▶ 프로젝트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촉진/지원하는가(아동 보호 담당 직원으로 참여, 커뮤니티 기반 아동 보호 기관에 참여 등)?



이행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GBV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표현된 필요, 확인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GBV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1.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아동 보호 프로그램의 관련 부분에 참여시킨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아동 보호 프로그램 담당 직원 중 여성 비율이 최소 50%가 되도록 노력한다. 여성 직원이 책임 자급이나 교육직을 맡을 수 있도록 공식 및 직무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 여성(해당되는 경우 청소년기 여아 포함)이 커뮤니티 기반 아동 보호 관련 위원회, 협회 및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LGBTI인 아동과 청소년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인 아동과 청소년은 젠더 정체성으로 인해 일상적인 차별과 억압을 당할 위험이 크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청소년 역시 성적 지향으로 인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한다. 이들 집단은 LGBTI에 대한 편견이나 이를 범죄화하는 법률로 인해 경찰이나 보안 요원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비상사태 시 아동과 청소년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아동 보호 부문 행위자는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전문가와 협력하여 LGBTI인 아동과 청소년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특정 어려움을 파악해야 한다. LGBTI인 아동의 GBV 관련 보호 권리와 필요를 포함한 역량 구축은 광범위한 교육 이니셔티브에 통합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LGBTI인 사람은 자신의 안전감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련하여 상담받을 수 있어야 한다(단, 이러한 상담이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 생존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 아동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LGBTI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 위험에 처한 집단(예: 장애인, 원주민, 종교적 소수자, 소수 인종, LGBTI인 사람 등)의 성인을 아동 보호 담당 직원 및 책임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2. GBV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커뮤니티 기반 아동 보호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GBV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커뮤니티 보호 메커니즘(예: 아동 보호 위원회, 감시 위원회, 아동 보호 모니터링 및 아웃리치 담당 직원, 커뮤니티 기반 기구, 가족 및 친족 네트워크, 종교 기관 및 기타 전통적 메커니즘)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들이 여아 및 남아 (또는 이들의 양육자)에게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 ▶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아동 친화적인 커뮤니티 공간의 설계 및 이행에 통합한다.
 - 커뮤니티 공간이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아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예: 커뮤니티 공간이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도록 보장, 커뮤니티 공간을 오가는 아동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가급적 동행, 개방 시간이 다양한 아동 집단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보장, 장애 아동을 위한 접근성 기능 제공, 청소년인 엄마를 위한 보육 제공 등). 커뮤니티 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여아를 찾아 상담하고 이들이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청소년기 여아

10~19세의 청소년기 여아는 신체적 발달과 연령으로 인해 가장 큰 GBV 위험에 처한 집단 중 하나이다. 이러한 요인은 높은 수준의 성폭행, 성착취, 아동 결혼,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예: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학교 및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등)를 실시하고 이들의 특별한 필요(예: 육아 책임, 가사노동, 문해 수준 등)를 고려해야 한다.

(인용: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PWG]**, 2012.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p. 95, <http://toolkit.ineesite.org/toolkit/INEEcms/uploads/1103/Minimum-standards-Child_Protection.pdf>)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은 소외되거나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GBV 및 기타 폭력에 대한 노출이 야기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재정 자원이 부족하거나 GBV에 관한 정보 및 생존자를 위한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게다가 장애가 있는 청소년기 여아와 남아는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할 수 있는 동료 및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된 경우가 많다. GBV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 아동을 파악할 수 있고 아동 보호 활동이 장애인 친화적이며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어디에 살든지 이러한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무자는 장애 아동이 의료적 필요를 충족하고 커뮤니티 내 지원과 연결되고 이들의 전반적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위탁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생존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접근 가능한 보호 시스템에 위탁하며 생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 아동의 폭력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예방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안전한 공간, 네트워크 강화와 멘토링에 중점을 둔 여아 프로그램에서 장애가 있는 여아가 포함돼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Women's Refugee Commission**, 2014. Disability Inclusion: Translating policy into practice in humanitarian action,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programs/disabilities/disability-inclusion>> 참조)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커뮤니티 공간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 젠더/GBV/여성의 권리/아동의 권리/사회적 배제/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사안, 아동 생존자를 존중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이들의 권리,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커뮤니티 공간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가급적 커뮤니티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 중 남성과 여성 GBV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혼성팀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는 사건을 식별하고 심리적 응급 처치와 같은 즉각적인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돌봄과 지원을 위해 시기적절한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GBV 사회복지사가 어려운 사건(예: 아동 생존자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 판단되는 경우)을 다루는 경우 안전하고 윤리적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아동 성학대의 징후 식별

성학대의 징후는 아동에 따라 다르며 항상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의 스트레스성 징후나 증상(아래 참조)의 발현은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아동 보호 프로그램 부문 종사자와 커뮤니티 보호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동의 일반적인 스트레스 징후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징후를 성학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영유아(0~5세)

- 평소보다 자주 울고 훌쩍이며 소리를 지름
- 양육자에게 매달리거나 몹시 들러붙음
- ‘안전한’ 공간을 떠나는 것을 거부
- 잠을 잘 자지 못 하거나 자꾸 깬
- 말하는 능력이나 소변을 가리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다른 발달 퇴행이 나타남
- 연령에 맞지 않는 성행위에 관한 지식이 있거나 관심을 보임

어린 아동(6~9세)

- 0~5세 아동과 비슷한 반응
- 특정한, 특정 장소 또는 활동, 공격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 자신의 연령보다 어리게 행동(자면서 오줌을 싸거나 부모가 옷을 입혀주기를 바램)
- 갑작스러운 등교 거부
- 생식기를 많이 만짐
- 가족과 친구를 피하거나 전반적으로 혼자 있으려고 함
-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항상 먹기를 원함

청소년(10~19세)

- 우울증(만성적 슬픔), 울음 또는 감정적 마비
- 악몽 또는 수면장애
- 학교 생활 문제 또는 학교 회피
- 친구 관계에서 분노나 어려움을 표현 또는 사람과 싸우고 권위에 불복하거나 권위를 무시
- 가족 및 친구에게서 멀어지는 등 회피 행동을 보임
- 자학 행동(마약, 술, 자해)
- 학교 성적의 변화
- 항상 먹거나 식욕이 없는 것과 같은 식이장애를 나타냄
- 자살에 대한 생각 또는 경향
- 학대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학대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경험

(인용: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3.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http://gbvresponders.org/wp-content/uploads/2014/07/CCS-Guidelines-lowres.pdf>>)



- GBV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한다(예: 아동을 위한 안전한 터치 프로그램, 청소년기 여아를 위한 역량강화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여아와 남아를 위한 (각각 그리고 함께 진행되는) 폭력 및 젠더에 관한 토론 모임, 청소년을 위한 성 및 생식보건 교육, 육아 지원 단체 등). 육아 지원 단체가 장애 아동의 양육자를 지원하고 장애에 관한 인식 및 긍정적인 육아 기술 또는 전략을 포함하도록 한다.

3. 아동 GBV 생존자를 위해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다부문적인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 ▶ 관련 아동 보호 및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아동 GBV 생존자를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 체계(예: 위탁 경로)를 파악한다. 이러한 돌봄 체계에 보건의로 서비스,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안보/경찰 서비스, 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 및 기타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한다.
- ▶ 다부문적인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아동 GBV 생존자를 위한 절차가 모든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에 포함되도록 옹호한다.
 - 아동 보호 부문 행위자, GBV 부문 행위자, 협력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준 조정, 정보 공유 규약 및 위탁 경로에 관한 협의를 이행한다.
 - SOPs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GBV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GBV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
- ▶ 아동 친화적인 GBV 관련 서비스에 관한 목록을 취합하고 이를 아동 보호 담당 직원, GBV 전문가, 여러 부문의 서비스 제공자(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자, 변호사, 경찰 등)와 커뮤니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탁 경로

‘위탁 경로’는 GBV 생존자를 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의 도움, 법률/사법 지원 등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연한 메커니즘이다.

★ 모범 사례

수단에서 UNICEF는 아동 생존자, 증인, 범죄자를 위한 아동 및 여성 경찰 보호 부서(Children and Women Police Protection Unit) 내부에서 젠더 측면에서 적절한 조사 과정을 개발하는 데 경찰 본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여아에 대한 조사와 경찰의 지원이 민감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UNICEF는 여성 경찰의 증원을 옹호하고 있다.

(인용: Ward, J. 2007. From Invisible to Indivisible: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 of the girl child to be free from violence, p. 62, <https://www.unicef.at/fileadmin/media/Infos_und_Medien/Info-Material/Maedchen_und_Frauen/From_Invisible_To_Indivisible_-_Rights_of_Girl_Child.pdf>)

4.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에 격차가 있는 경우 아동 생존자에게 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의료진,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부문 행위자, 경찰, 법률/사법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원한다.

- ▶ 서비스 제공자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아동 생존자에게 관여하는 기본적인 단계와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보장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존자와 함께 일하기 위한 이행 원칙의 준수(예: 아동 최선의 이익 추구, 아동의 안전 보장,



아동을 위로, 적절한 비밀 보장,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 모든 아동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 아동의 회복력 강화)

- 현지 법률 및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전동의/승인 절차의 준수
- 아동이 위험에 처한 경우와 같이, 비밀 보장이 제한되는 상황을 반영한 비밀 보장 규약 적용
- 아동 생존자의 즉각적인 건강, 안전, 심리사회, 법률/사법 필요 현황을 파악하고 위기 개입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초기 개입 서비스 시행
- 아동에게 즉각적인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심리적 응급조치 포함)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가능한 장기적 지원을 위한 위탁을 제공
- 필요한 경우 학대 공개 이후 가족/사회 내에서 아동의 안전이 지속적인 방법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해당 아동이 보호를 필요로 한 경우 결단력 있고 적절한 조치를 실시
- 회복력 향상에 기반한 돌봄 및 지원 과정에서 아동 및 가족에게 관여하기 위한 강점과 필요를 파악
- 가해하지 않는 양육자와 적극적으로 관여
- 현지의 다른 아동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자를 파악하고 적절한 위탁을 실시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아동 친화적인 태도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친화적인 가치와 믿음을 실행에 옮기고 아동 친화적인 태도로 돌봄을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동과 함께 일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아동은 회복력이 있는 개인이다.
- 아동은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아동은 돌봄, 사랑,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해 듣고 관여할 권리가 있다.
- 아동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 정보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성학대 생존자와 함께 일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믿음이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믿음이 포함된다.

- 아동은 성학대에 관한 진실을 말한다.
- 성학대를 당한 것은 아동의 잘못이 아니다.
- 아동은 성학대로부터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다.
- 아동은 성학대를 당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놀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
- 양육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한 성인은 아동을 신뢰하고 성학대를 이유로 아동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아동의 치유를 도울 책임이 있다.

(인용: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3.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http://gbvresponders.org/wp-content/uploads/2014/07/CCS-Guidelines-lowres.pdf>>)

- ▶ 서비스 제공자가 성폭행 및 기타 형태의 폭력에 대한 노출에 관해 아동 및 청소년과 대화하는 경우 연령별로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한다.
 -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30분
 - 10~14세 아동의 경우 45분
 - 15~18세 아동의 경우 1시간
- ▶ 서비스 제공자가 폭력 의무 신고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 법률, 정책, 절차를 파악하도록 보장한다. 의무 신고 체계가 있는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적용하도록 보장한다.
 - 아동 생존자의 자유재량과 비밀 보장을 최대한 유지
 - 의무 신고가 필요한 사건의 기준을 숙지하고 의무 신고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추구되도록 보장
 - 법률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시간(대개 24~48시간) 안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
 - 보고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아동과 양육자에게 진행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아동 사건 파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가족 및 관련 당국과 함께 후속 조치 수행



모범 사례

그림, 이야기 또는 인형을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개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해야 한다. 난민 캠프에서 한 사회복지사는 성학대에 관해 6세 남아를 인터뷰했다. 이 아동은 좀 더 나이가 있는 아동에게 성학대를 당했으며 사회복지사에게 상대가 자신의 '엉덩이'를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과 이 아동이 '엉덩이'라는 단어에 관해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아 인형을 가져와 아동 생존자에게 인형의 엉덩이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달라고 했다. 남아는 인형을 집어서 인형의 뒷부분을 가리켰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아동 생존자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인용: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3.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http://gbvresponders.org/wp-content/uploads/2014/07/CCS-Guidelines-lowres.pdf>>)

5. 이산/미동반 여아 및 남아의 GBV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처한다.

- ▶ 이산/미동반 아동을 위한 접수처에 남성 및 여성 GBV 전문가 또는 GBV 관련 전문성을 지닌 아동 보호 부문 종사자로 구성된 혼성팀을 배치한다. 이들이 여아와 남아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면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관여하도록 교육을 받고 즉각적인 돌봄 및 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시기적절한 위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아동이 비행 전이나 환송 중에 발생한 폭력이나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폭력을 공개한 경우 포함).
- ▶ GBV 위험으로부터 이산/미동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돌봄 위탁 및 쉼터를 설계한다.
 - 최선의 이익을 위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돌봄 위탁 장소 탐색 시 보호 위험 현황 파악 수행
 - 남아, 여아 등 모든 아동의 사생활 보호 보장(예: 성별에 따라 분리된 목욕 시설과 수면 공간)
 - GBV 위험과 관련하여 위탁 장소 및 시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여아와 남아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실시하도록 보장



- ▶ 이산/미동반 아동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 돌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 배정 시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인 GBV 위험과 관련하여 친족 및 위탁 아동 체계를 점검하고 GBV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이행한다. 이러한 위탁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후속 방문을 실시한다.
- ▶ 위탁 센터의 직원과 양육자가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주의 깊은 심사를 받음
 -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행동 강령을 이해하고 서명함
 - 젠더, GBV, 여성과 아동의 권리,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와 그들이 돌보는 아동의 개인적 필요에 관한 교육을 받음
 - 아동 생존자를 위한 비밀이 보장되는 돌봄 체계와 관련된 SOPs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음
 - 정기적인 감독과 지원을 받음



- ▶ GBV 예방 메시지(아동과 양육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GBV 관련 돌봄을 받는 방법에 관한 정보 등)를 접수처, 쉼터 및 기타 임시 돌봄 위탁 장소에서 눈에 잘 띄도록 전시한다. 아동이 어떠한 행동이 학대인지 그리고 위탁 장소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도록 보장한다.
- ▶ 아동과 재결합한 가족에 대한 후속 방문에서 GBV 위험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 GBV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예방 및 완화 조치의 필요를 고려한다(예: 상업적 성착취의 위험에 처한 가난한 아동이 있는 가족 또는 여아를 조혼시키려고 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원 및 생계 지원, 가족 또는 커뮤니티 연결 및 지원 메커니즘의 해체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에 의해 성학대를 당한 아동의 재배치 등)

6.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에서 GBV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한다.

- ▶ 아동 포섭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 보호 부문 행위자가 여아와 남아가 처한 각기 다른 위험을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보장한다(예: 여아가 성적인 목적 또는 아동 결혼을 위해 포섭될 위험, 남아가 무장세력 또는 성적 학대의 대상으로 포섭될 위험). 이러한 각기 다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옹호 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당국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와의 조정을 촉진한다.
- ▶ 무장 해제, 동원 해제, 재통합 과정에서 무장세력/단체 일원의 부양가족이거나 '부인'이라서 놓치기 쉬운 여아를 식별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포함되도록 한다. 특별히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여아의 필요에 대처하고 이들의 자녀를 지원한다.
- ▶ 성폭력 및 기타 GBV 유형에 노출된 경험이 있고 과거에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되었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낙인의 우려가 없는 사회적 재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해당 커뮤니티가 남아와 여아에게 제공되는 재통합 지원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해당 가족과 커뮤니티 구성원이 아동 생존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기보다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모범 사례

UNICEF는 여아를 위한 시에라리온의 재통합 프로그램에서 분쟁 세력과 연관된 적이 있는 여아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행 협력기관과 협력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수업과 직업 교육을 보육 및 급식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유아를 키우고 있는 여아가 자신의 아이를 가깝고 긍정적이며 안전한 환경에 맡기고 그 동안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했다. 억류된 적이 있는 아동을 수용하는 학교는 추가적인 물품과 책 등을 통해 '보상'받았으며 그 혜택은 커뮤니티 내 모든 학생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과거 억류된 적이 있었던 아동만이 교육 지원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여 비교적 나이가 있는 여아가 전투 부대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받지 못했던 기본적인 읽기 및 수학 능력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됐다.

(인용: Ward, J. 2007. From Invisible to Indivisible: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 of the girl child to be free from violence, p. 56, <https://www.unicef.at/fileadmin/media/Infos_und_Medien/Info-Material/Maedchen_und_Frauen/From_Invisible_To_Indivisible_-_Rights_of_Girl_Child.pdf>)

7. 법적 분쟁에 연루된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한다.

- ▶ 잠재적인 GBV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구금 시설을 모니터링한다. 남아와 여아가 별도의 시설(또는 시설의 부서)에 구금되고 아동이 성인과 분리되도록 보장한다. 젠더, GBV, 여성과 아동의 권리, 사회적 배제와 섹슈얼리티 사안에 관해 구금 시설 담당 직원의 의식을 제고하고 구금 시설의 민원 신고 메커니즘 수립을 위해 옹호한다. 민원 신고 메커니즘을 개발할 때 여아와 남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장한다.
- ▶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경찰서에 여성 데스크와 젠더 데스크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 ▶ 폭력의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아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관습법 및 비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는 아동 또는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 ▶ 언제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대안적인 제재의 활용에 관해 옹호한다. 폭력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집행 유예나 커뮤니티 서비스와 같은 대안적인 제재를 모니터링한다.
- ▶ 당국과 협력하여 상업적 성착취를 통해 착취 또는 학대를 당한 아동이 생존자로 대우받도록 하고 기소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옹호한다.

GBV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아동 보호 정책에 통합하기

1. 적절한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아동 보호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되도록 한다.

- ▶ (1) GBV 위험을 완화하고 (2)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 구성원이 아동 보호 활동에 직원 및 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을 위한 보육 관련 정책
 - 여성에 대한 동등한 고용 기준
 - GBV 사고 관련 보호/비밀 정보의 공유에 대한 절차 및 규약
 - 성적 착취 및 학대 발생 시 신고, 조사, 징계 기관의 절차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를 아동 보호 담당 직원에게 두루 배포하고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공용어 및 지역별 현지어를 사용하여 더 넓은 커뮤니티에 배포한다(점자, 수화, 비문해자를 위한 시각적 콘텐츠가 포함된 포스터, 커뮤니티 회의를 통한 안내 등 접근하기 쉬운 방법 사용).

2. GBV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법률과 정책(관습법 포함)의 개혁을 지원한다.

- ▶ 아동의 권리, 젠더 평등 및 여아의 역량강화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 기준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법률, 규제, 정책, 절차를 검토하고 정부, 정책결정자, 관습적/전통적 지도자,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관련 이해당사자와 함께 옹호한다.
- ▶ 필요하다면 헌법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유해한 전통적 관습(예: 아동 결혼, 여성 할례(FGM/C), 아동 노동 등)에 관한 관습법과 과정을 바꾸도록 옹호한다.
- ▶ 법치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에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도록 옹호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 ▶ 모든 귀환, 재배치, 재통합 체계 및 개발 행동 계획, 무장 해제, 동원 해제, 재통합 프로그램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GBV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체계와 행동 계획에는 아동에 대한 GBV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며 아동 생존자에게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며 젠더 평등과 여아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 ▶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개발 과정에서 관련 실무 부처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이 커뮤니티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민감화(sensitization) 및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GBV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아동 보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에 통합하기

1. 아동 보호 부문 내부적으로 또는 더 큰 범위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에 속한 협력기관과 GBV 관련 신고를 공유하는 아동 보호 프로그램이 안전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 아동 생존자와 보호자의 신원이나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기관 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국제 젠더기반폭력 정보관리시스템(Gender-Based Viole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GBVIMS)의 활용을 고려해보고 GBVIMS와 기존 아동 보호 정보관리시스템의 연결성을 찾아본다.³

2. GBV 메시지를 아동 보호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에 통합한다.

- ▶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아동 보호 관련 메시지 전달에 GBV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합한다.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GBV 예방,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관련 메시지 전달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통해 GBV와 관련된 사람 등 피해 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우려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GBV** 전문가가 아니라면 **GBV** 전문가나 **GBV**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³ GBVIMS가 국가 아동 보호 또는 GBV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 정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GBVIMS는 오히려 여러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접근법과 툴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GBV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gbvim.com>을 참조한다.

- 안전한 터치와 그렇지 않은 터치 및 학대를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워크숍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전달)를 사용하여 위탁 경로 및 기타 주요 정보에 대한 아동 친화적인 버전을 배포한다.
 - 피해 인구와 주요 이해관계자(정부, 인도주의 활동가, 현지 당국, 경찰, 교사, 가족, 아동, 청소년, 종교적 지도자, 커뮤니티 지도자, 커뮤니티 구성원 등)를 대상으로 한다.
 - 메시지 개발 및 메시지 전달 전략 수립 과정에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가 참여하도록 하여 메시지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 ▶ 아동 보호 아웃리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사회적 배제, 섹슈얼리티, 아동 친화적인 심리적 응급처치에 관해 철저히 교육한다(예: 아동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를 GBV 예방과 관련된 아동 보호 아웃리치에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시킨다. 남성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육아와 일상적인 아동 보호 책임에 관한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아동 보호 관련 커뮤니티 토론회 및 교육 워크숍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예: 교통, 회의 시간과 장소, 이들의 참여에 대한 반발 위험, 육아 지원의 필요, 장애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론회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예: 비밀 보장, 별도로 마련된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을 이행한다.
 - ▶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아동 보호 부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행동 강령 및 아동 보호 부문 종사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조정 과정의 첫 단계로, 아동 보호 프로그램 담당자는 GBV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에서 GBV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GBV 전문가는 아동 보호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안전하고 윤리적인 GBV 관련 현황 파악 및 기타 아동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을 설계 및 실시하고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한다.
- ▶ 주어진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특정 유형의 GBV의 특성 및 사례에 관한 배경 조사를 시행한다.
- ▶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 관련 사안에 관해 교육한다.
- ▶ 아동 보호 담당 직원에게 GBV 피해 사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생존자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식별하고 아동 보호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 ▶ 아동 보호와 관련이 있는 젠더, GBV, 여성의 권리, 인권 사안에 대해 피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아동 보호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 연계하여 GBV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부문(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부문)과의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다음 표에 제시돼 있다.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동 보호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아동 보호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CCCM)

- ▶ 다음을 위해 CCCM 부문 행위자와 협력
 - 특정 GBV 위험을 고려하여 남아와 여아에게 안전한 등록 현장과 편의를 제공
 - 캠프 내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
 - 안전한 아동 친화적인 공간과 이산/미동반 아동, 소년소녀가장가정, 엄마가 된 아동 및 기타 큰 GBV 위험에 처한 아동의 숙소를 제공
 - 아동을 위한 공간이 안전한 장소(예: 번잡한 도로나 시장으로부터 떨어진 곳 등)에 있도록 보장
 - 아동과 청소년이 자주 찾는 캠프의 전략적 구역이나 위험한 구역에 캠프 조영 시설을 늘림
 - 비식량물품(Non-Food Item, NFI) 배급소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여아와 남아가 폭력이나 착취 위험에 처한 상황을 식별(가급적 여아 및 남아와 상의)

교육

- ▶ 다음을 위해 교육 부문 행위자와 협력
 - GBV 관련 아동 보호 우려사항이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파악, 모니터링과 평가에 반영되도록 보장
 - 교육 환경 내부 및 주변 보호와 관련된 아동 폭력, 착취, 학대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전략을 이행(예: 통학길에 동행, 교사와 직원을 위한 행동 강령 등)
 - 아동, 특히 여아를 위해 상업적 성착취 위험을 감소하는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직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계 프로그램과 연계

식량 안보 및 농업(FSA)

- ▶ FSA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식량 안보 개입에 아동 보호 기준을 통합하고 식량 배급이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를 비롯한 GBV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보장
- ▶ 소년소녀가장가정과 위탁 가정의 아동이 충분한 식량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개발
- ▶ 등록 및 신원 증명 서류를 확보하는 과정이 여아와 남아가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정

보건

- ▶ 보건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여아와 남아 생존자가 연령과 발달 단계의 필요를 고려하며 보호를 받고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양질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 아동과 청소년이 접수센터에 도착 시 GBV와 관련된 의학적 우려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생계

- ▶ 다음을 위해 생계 부문 행위자와 협력
 - 최소 노동 연령과 아동 노동의 위험을 완화할 전략 이행을 고려하여 청소년기 여아와 남아를 위한 안전한 생계 기회를 계획하고 이행
 - 생계 개입의 참여자가 GBV 위험에 처한 아동을 포함하도록 보장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보호 기준이 생계 개입에 통합되도록 보장
 - 청소년기 여아와 남아를 위한 생계 기회에 혜택(예: 소득 증대)과 위험(예: 학교 중퇴, 착취)을 신중하게 평가

영양

- ▶ 모든 연령의 여아와 남아, 특히 임신 및 모유수유중인 여아와 소년소녀가장가정이 안전하고 충분하며 적절한 영양 서비스와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 아동과 청소년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기회(예: 텃밭, 보충 식량,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를 식별

보호

- ▶ 학교나 다른 학습 공간을 오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GBV 관련 안전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연계하도록 보호 부문 행위자의 지원을 요청
- ▶ 법에 저촉된 아동을 수용하는 구금 센터가 기본적인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호 부문 행위자와 협력

쉼터, 정착 및 복구(SS&R)

- ▶ 다음을 위해 SS&R 부문 행위자와 협력
 - 특히 소년소녀가장가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혼자 살거나 쉼터가 없는 아동의 수를 파악 (예: 이들이 캠프 외곽 경계 부근에 있지 않도록 보장)
 - SS&R 담당 직원이 아동 노동을 포함한 아동 보호 사안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산/미동반 아동과 폭력, 학대, 착취, 방치로부터의 생존자를 위한 위탁 경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등록 과정 및 배급/지원 카드와 신원 증명 서류를 받는 과정으로 인해 여아와 남아가 쉼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더 큰 GBV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장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

- ▶ 다음과 관련하여 WASH 부문 행위자를 지원
 - 여아와 남아를 위한 WASH 시설의 안전 및 접근성을 모니터링
 - 보육 센터, 학교 및 기타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WASH 서비스를 통한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프로그램 단계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GBV 관련 질문을 아동 보호(Child Protection, CP) 현황 파악에 포함 ⁴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관련 질문*이 포함된 CP 현황 파악의 수} \times 100}{\text{CP 현황 파악의 수}}$ <small>* 현황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GBV 주제별 질문은 75 페이지 참조</small>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또는 틀	100%	✓	✓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	$\frac{\text{현황 파악 응답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응답자의 수}}$ $\frac{\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50%	✓	✓	

(계속)

⁴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30 November 2012.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ASC Transformative Agenda Reference Documen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4.%20Reference%20module%20for%20Cluster%20Coordination.pdf>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계속)

현황 파악 시 커뮤니티에 안전한 아동 친화적인 공간의 존재 ⁵	$\frac{\text{현황 파악 시 안전한 아동 친화적인 공간이 있는 대상 커뮤니티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시 대상 커뮤니티의 수}}$	직접 관찰, W 매트릭스	현장에서 결정	✓	✓	
아동 GBV 생존자를 위한 아동 친화적인 다부문 서비스의 존재 ⁵	$\frac{\text{아동 GBV 생존자를 위한 아동 친화적인 다부문 서비스*가 있는 대상 커뮤니티의 수} \times 100}{\text{대상 커뮤니티의 수}}$ <p><small>* 다부문 서비스에는 아동 친화적인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안보 및 법적/사법적 대응이 포함됨</small></p>	W 매트릭스	현장에서 결정	✓		✓

자원 동원

아동 보호(Child Protection, CP)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에 GBV 위험 감소를 포함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위험 감소 목표, 활동 또는 지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 CP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times 100}{\text{CP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제안서 검토	100%	✓	✓	
GBV 지침에 관한 아동 보호 담당 직원 교육	$\frac{\text{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CP 담당 직원/기관의 수} \times 100}{\text{CP 담당 직원/기관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	100%	✓	✓	

이행

▶ 프로그램						
아동 보호 프로그램의 여성 직원 수	$\frac{\text{CP 프로그램의 직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CP 프로그램의 직원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50%	✓	✓	
아동 친화적인 커뮤니티 공간의 여아와 남아 성비 연령 집단(0~6세, 7~12세, 13~18세)으로 구분	<p>양적 방법: 아동 친화적인 커뮤니티 공간에 온 여아의 수</p> $\frac{\text{아동 친화적인 커뮤니티 공간에 온 남아의 수}}{\text{아동 친화적인 커뮤니티 공간에 온 여아의 수}}$ <p>질적 방법: 아동 친화적이고 안전한 환경에 여아가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남아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p>	W 매트릭스, 해당 조직의 기록물, 표적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 FGD), 주요 정보원 인터뷰(Key Informant Interview, KII)	현장에서 결정	✓		✓

(계속)

⁵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 <www.humanitarianresponse.info/applications/ir/indicators>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계속)

▶ 프로그램

<p>아동 GBV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접근에 관해 피해 인구와 상의⁵</p> <p>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별도로 상의</p>	<p>양적 방법:</p> $\frac{\text{서비스 접근에 관해 피해 인구와 상의한 아동 GBV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의 수} \times 100}{\text{아동 GBV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의 수}}$ <p>질적 방법:</p> <p>아동이 GBV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장애물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p> <p>* 서비스에는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안보 및 법률/사법 대응이 포함됨</p>	<p>해당 조직의 기록물, FGD, KII</p>	<p>100%</p>		<p>✓</p> <p>✓</p>	
<p>아동 친화적인 태도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의 지식</p>	<p>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아동 친화적인 태도**를 바르게 응답한 서비스 제공자*의 수 × 100</p> <p>설문조사에 응한 서비스 제공자의 수</p> <p>* 서비스 제공자에는 의료 대응,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대응, 경찰 및 법률/사법 대응이 포함되며, 이러한 분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p> <p>** 아동 친화적인 태도에 관한 설명은 83 페이지 참조</p>	<p>설문조사</p>	<p>현장에서 결정</p>		<p>✓</p>	<p>✓</p>
<p>GBV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산/미동반 아동의 위탁 장소⁵</p>	<p>GBV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산/미동반 아동의 위탁 장소 × 100</p> <p>등록된 이산/미동반 아동의 위탁 장소의 수</p>	<p>W 매트릭스, CP 정보 관리 시스템</p>	<p>현장에서 결정</p>		<p>✓</p> <p>✓</p>	
<p>무장 해제, 동원 해제, 재통합(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DD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GBV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의 범위</p>	<p>아동 GBV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DDR 프로그램의 수 × 100</p> <p>DDR 프로그램의 수</p> <p>* 서비스에는 의료 대응,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대응, 경찰 및 법률/사법 대응이 포함됨</p>	<p>해당 조직의 기록물, KII</p>	<p>현장에서 결정</p>		<p>✓</p>	<p>✓</p>
<p>법에 저촉된 아동을 위한 대안 조치의 존재 여부</p>	<p>법에 저촉된 아동을 위해 구금 외의 조치가 마련돼 있는 특정 장소의 수 × 100</p> <p>특정 장소의 수</p>	<p>KII, 문헌 검토</p>	<p>100%</p>		<p>✓</p>	<p>✓</p>

▶ 정책

<p>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아동 보호 정책, 지침 또는 기준에 포함</p>	<p>GBV 지침에 나온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포함된 CP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 100</p> <p>CP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p>	<p>(기관, 부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의) 문헌 검토</p>	<p>현장에서 결정</p>		<p>✓</p>	<p>✓</p>
---	--	--------------------------------------	----------------	--	----------	----------

(계속)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계속)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응답한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	100%	✓		✓
아동 보호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GBV 위탁에 관한 정보 포함	$\frac{\text{GBV 생존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CP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times 100}{\text{CP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문헌 검토, KII,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다른 부문과 조정	$\frac{\text{GBV 위험 감소 활동*을 위해 상의한 비 CP 부문의 수} \times 100}{\text{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비 CP 부문의 수}}$ <p><small>* 부문별 GBV 위험 감소 활동 목록은 90 페이지 참조</small></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KII, 회의록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참고자료

주요 참고자료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0.** Core Commitments for Children in Humanitarian Action. New York: UNICEF, <www.unicef.org/cholera/Chapter_1_intro/05_UNICEF_Core%20Commitments_for_Children_in_Humanitarian_Action.pdf>
-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s (CPWG). 2012.**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http://toolkit.ineesite.org/toolkit/INEEcms/uploads/1103/Minimum-standards-Child_Protection.pdf>
-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ave the Children, Terre des Hommes,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8.** Action for the Rights of Children, <www.unhcr.org/3bb825cd2.pdf>
- **Handicap International and Save the Children. 2011.** 'Out from the Shadows.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draft), <www.ohchr.org/Documents/HRBodies/CEDAW/HarmfulPractices/HandicapInternationalandSaveTheChildren.pdf>
- **Save the Children,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nd World Vision. 2004.** Inter-Agency Guiding Principles on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www.unicef.org/protection/IAG_UASCs.pdf>
-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and GBV Area of Responsibility. 2014.** Fundraising Handbook for Child Protection and Gender Based Violence in Humanitarian Action, <http://gbvaor.net/wp-content/uploads/sites/3/2014/03/FUNDRAISING_HANDBOOK.pdf>. This handbook has been developed to help field practitioners meet the expectations of donors when planning and implementing child protection and GBV responses.
-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2.**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Guidelines for health and psychosocial service providers in humanitarian settings, <<http://gbvresponders.org/wp-content/uploads/2014/07/CCS-Guidelines-lowres.pdf>>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WHO Ethical and Safety Recommendations for Researching, Documenting and Monitoring Sexual Violence in Emergencies, <www.who.int/gender/documents/violence/9789241595681/en>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08.**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www.unhcr.org/4566b16b2.pdf>
-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2011.** 'Child Protection Rapid Assessment', <www.alnap.org/resource/7481.aspx?tag=461>. 아동 보호 신속 현황 파악(Child Protection Rapid Assessment, CPRA)은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발생 후 CPWG 구성원이 설계하고 수행하는 기관 간, 클러스터별 신속 현황 파악이다. 비상사태 직후 피해 인구의 아동 보호 관련 필요에 관한 대략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더 포괄적인 비상사태 영향 평가 과정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entre for International Medicine. 2008.** Clinical Care for Sexual Assault Survivors: A multimedia training tool – Facilitators guide, <<http://iawg.net/ccsas/ccsas-resources>>

추가 참고자료

-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2011.** 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www.ineesite.org/eietrainingmodule/cases/learningistheirfuture/pdf/Minimum_Standards_English_2010.pdf>
- **Ward, J. 2007.** From Invisible to Indivisible: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 of the girl child to be free from violence. New York: UNICEF, <https://www.unicef.at/fileadmin/media/Infos_und_Medien/Info-Material/Maedchen_und_Frauen/From_Invisible_To_Indivisible_-_Rights_of_Girl_Child.pdf>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08.** UNHCR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Women and Girls, <www.unhcr.org/47cfae612.html>
- **Child Soldiers International. 2012.** 'Louder Than Words: An agenda for action to end state use of child soldiers', <http://child-soldiers.org/global_report_reader.php?id=562>. 자세한 정보는 <www.warchild.org.uk/issues/child-soldiers>
- **Handicap International. n.d.** Disability Checklist for Emergency Response, <www.handicap-international.de/fileadmin/redaktion/pdf/disability_checklist_booklet_01.pdf>. 이 책자는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부상자와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다루고 있으며 장애 여성 및 아동 관련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 **Save the Children UK. 2008.** No One to Turn To, <http://www.savethechildren.org.uk/sites/default/files/docs/No_One_to_Turn_To_1.pdf>
- **NGO Advisory Council for Follow-Up to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11.** Five Years On: A global update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https://www.crin.org/docs/Five_Years_On.pdf>
- **Pinheiro, P. 2006.**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www.unicef.org/lac/full_text\(3\).pdf](http://www.unicef.org/lac/full_text(3).pdf)>



교육



적용 대상

- 교육 조정 메커니즘
- 교육 부문 행위자(직원 및 책임자):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기반 기구(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등), 국제비정부기구(INGO), 유엔 기구
- 교육 관련 지역 위원회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예: 여성단체, 청소년/청년 단체 등)
- 그 외 중앙 및 지방 정부, 커뮤니티 지도자, 시민사회 단체 및 기타 교육 이해관계자

왜 교육 부문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많은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것도 위험을 무릅쓰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인도주의 비상사태로 인해 기본적인 보호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학생과 교육 부문 종사자,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경우 등학교 또는 출퇴근 시 성희롱, 성폭행 또는 납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감독 직원이 부족하면 동급생이나 교사 등 성인에 의한 교내 폭력, 성희롱, 성폭행 위험이 증가한다.

비윤리적인 교사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 UNHCR과 영국 세이브더칠드런이 발간한 보고서(2002년)는 서아프리카 난민 캠프 내 인도주의 활동가가 여아 및 젊은 여성을 착취하는 실태를 폭로함에 따라 폭넓은 관심을 끌었다. 교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고 고학점을 비롯한 학교에서의 특혜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주요 가해자 집단 중 하나로 밝혀졌다.

비상사태에서 전통적인 교육 체계가 혼란을 겪게 되면서 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 아동은 교육비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학교가 이미 초과 수용된 상태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 ▶ 캠프 환경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거나 초등학교 수준에만 국한될 수 있다.
- ▶ 장애 아동은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 편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¹
- ▶ 여아를 가진 부모는 학교에서나 통학하는 중에 자녀가 GBV에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릴 수 있다.

¹ 보편적 설계와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4 정의'를 참조한다.

◀ 필수 행동 요약표 참조



- ▶ 빈곤 가정은 아들의 교육을 우선하여 딸의 학비, 교복 및 기타 물품을 마련할 돈이 없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아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학교 관련 비용을 대가로 성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여아가 학교에 다닐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또는 남아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경우)는 그 자체로 GBV의 한 유형에 해당된다.

공중위생 시설 및 물품의 부족과 생리와 관련된 문화적 금기 및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생리를 하는 청소년기 여아의 출석률이 낮아지고 중퇴율이 높아질 수 있다. 가족을 돌볼 책임, 아동 결혼, 임신 역시 여아의 진학과 학업의 지속을 막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여아의 학교 등록률이 높아지더라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되면 중퇴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 교과과정 및 기타 교육자료를 통해 GBV로 이어질 수 있는 젠더 역할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를 강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여성 교사가 거의 없는 학교 환경, 특히 높은 직책의 여성 교사가 거의 없는 경우 더 심각해진다. 특히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인 아동과 청년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 당국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학생을 배제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인 교사는 GBV 및 기타 폭력을 경험한 아동과 청년에게 최초 대응자가 되어야 한다. 이들이 폭력 경험을 공개할 때 교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은 아동이 해당 사건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은 GBV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잘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은 GBV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적절하게 설계된 교육 시설은 GBV 위험에 처한 아동 및 청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 교육 제공 전략 및 체계의 세심한 기획, 도시/캠프 내 존재하는 위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학습장 설치, 교사 및 학교 행정가를 대상으로 한 신중한 고용 및 연수, 학생 및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민감화(sensitization) 및 인식제고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GBV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여아가 학업을 지속하여 중등 교육을 받게 될 경우 조혼이나 성 착취적인 소득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 ▶ 학교는 젠더 평등 및 GBV 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적 규범이 도전받고 재정립 될 수 있는 곳이다. 초등 및 중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적인 과목을 가르침과 동시에 여성,

INEE 최소 기준의 내용

접근 및 학습 환경 표준 2: 보호 및 웰빙

... 교육 프로그램은 괴롭힘 및 성착취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한다. 학부모, 학습자, 교사 및 기타 교육 부문 종사자는 학습 공간을 오가는 경로와 학습 환경 주변에서 위험을 감소하는 방법에 관해 동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 성희롱, 착취, 학대 및 기타 유형의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대중에 공개
-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교사 및 기타 교육 부문 종사자를 위한 행동 강령에 이러한 규칙을 포함
- 여성 학습자를 보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학습 환경 내 성인 여성의 수를 늘림

... 젠더기반폭력이 발생하면 비밀이 보장되고 안전한 신고, 민원 및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

... 잘 조정된 위탁 체계를 통해 젠더기반폭력 생존자에게 적절한 의료, 심리사회적, 보호 및 사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 및 기타 교육 부문 종사자 표준 2: 업무 조건

... 행동 강령은 교사 및 기타 교육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동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받게되는 징계 절차를 명시한다. 여기에는 담당 인력이... 성추행 또는 다른 방식의 괴롭힘, ... 성적 호의(sexual favours)를 요구하는 착취, 위협, 학대, 폭력,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보호받는 건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다.

(발췌: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2010. 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http://toolkit.ineesite.org/inee_minimum_standards>)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²을 위한 비폭력, 평등, 존중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학교는 여아 및 남아에게 젠더 규범, 인권, 학대 예방, 분쟁 중재, 건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곳이다.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를 쌓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긍정적인 규범과 관습을 강화하는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다.

- ▶ 교육 체계 내외부에서 실시되는 생활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고 여아 및 청년기 여성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GBV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어리거나 청소년기 남아가 남성성에 대한 오래된 신념과 '남자다움'이 갖는 의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교육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있어서 미래의 경제 및 사회적 기회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된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전체적인 젠더 역압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아울러 분쟁의 피해를 입은 환경에서 중등 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영구적인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커뮤니티 재건 노력에 있어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는 것이다.

GBV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교육 부문이 이행해야 하는 행동은 GBV 전문가 및 기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부문 행위자는 또한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문제를 다루는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조정' 참조)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은 교육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선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현황 파악은 가능한 한 교육 부문 행위자가 GBV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도 협력하여 부문간 및 학제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은 '이행' 아래 자세하게 설명된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과도 연관돼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하고 생존자 대응 서비스를 촉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하는 우선순위 및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²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GBTI), HIV 보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미동반 아동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아래에 제시된 영역별 질문은 교육에서의 젠더와 GBV 우려사항을 다루는 기존 지침, 특히 **INEE 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http://toolkit.ineesite.org/inee_minimum_standards>)에 보완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글로벌 교육 클러스터(Global Education Cluster)의 **Joint Needs Assessment Toolkit** (<www.savethechildren.org.uk/sites/default/files/docs/Ed_NA_Toolkit_Final_1.pdf>) 역시 비상사태 시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중요한 지침을 담은 문서이다.

주요 현황 파악 대상 집단

- 교육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정부, 시민사회, 지역 지도자 및 종교 지도자, 학교 행정가, 교사, 학생, 학부모교사연합회(Parent-Teacher Associations, PTA), GBV, 젠더 및 다양성 전문가
- 피해 인구 및 커뮤니티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의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모범 사례

커뮤니티 및 청년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고안된 유연한 프로그램은 현지의 주인의식 및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ahim and Holland, 2006; UNHCR, 2001). 커뮤니티 엘리트만을 불균형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행이 쉬울지 몰라도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비생산적인 방법으로 입증됐다. 교육은 역량강화의 한 유형이므로 가장 취약한 청년을 식별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부모와 보호자는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Sommers, 2001a). 프로그램은 눈에 띄는 피해 인구의 요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특히 커뮤니티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아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지 커뮤니티와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현지어로 자료를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Sommers, 2001a). 참여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해 프로그램 이행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는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Hayden, 2007).

(인용: Zeus, B., and Chaffin, J. 2011. Education for Crisis-Affected Youth: A literature review. INEE Adolescent and Youth Task Team, <www.ineesite.org/uploads/files/resources/AYTT_LitReview_2012-02-14.pdf>)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리더십

- 1) 책임자급을 포함한 교육 담당 직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여성 직원의 교육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GBV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안보적 사안이 있는가?
- 2)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교육 관련 커뮤니티 기반 활동(예: 학부모교사연합회(PTA), 커뮤니티 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가능한 경우 이들이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 3) 학교에 여아 특히 청년기 여성의 교육, 멘토링, 또는 기타 형식의 지원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여성 전문가 또는 기타 여성이 커뮤니티 내에 존재하는가?
- 4) 교육 대응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에 중점을 둔 활동을 주류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 기준(본 지침 포함)에 대해 알고 있는가?

문화 및 커뮤니티 규범과 관행

- 5) 위기가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6) 어떠한 아동과 청년이 초등 또는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예: 청소년기 여아, 가장인 아동, 미성년 엄마, 성폭행 생존자,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장애 여아 및 남아, LGBTI 아동, 도시 환경 내 난민 아동 등)?
 - 여아의 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문화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예: 여아의 교육보다 남아의 교육을 우선시하는 젠더 규범, 교육 환경의 여아에 대한 젠더 차별적 태도, 아동 결혼 및 강제 결혼, 가사노동 등)?
 - 기타 위험에 처한 아동 집단이 교육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문화적 장벽(예: 사회적 낙인, 차별, 빈곤, LGBTI 청년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는 성 규범,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에 대한

(계속)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사회적 배제 또는 구금, 현지 교육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거부당한 도시 환경의 난민 아동 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중퇴자를 위한 재통합 및 재등록 전략이 실시되고 있는가?
- 7) 학부모/커뮤니티의 교육 참여 현황은 어떠한가?
- 학부모교사연합회(PTA)나 유사한 모임이 존재하는가?
 - 여성과 남성은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가?
 - 여성 참여를 막는 문화적 제약이 있는가?
- 8) 교육 환경에서 남아는 여아에게 그리고 여아는 다른 여아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남아를 대하는 남아와 여아의 태도는 어떠한가?
- 젠더 불평등적인 태도나 관습의 증거가 있는가?
 - 여아(특히 청소년기 여성)가 이러한 태도나 관행을 지지하거나 내면화하는가?
- 9) 학교에 출석하거나 통학 시 여아가 지켜야 하는 안전 주의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아와 남아가 통학 시 직면하는 (젠더 기반 여부와 상관없는) 폭력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가?
- 10) GBV 및 기타 폭력의 아동 생존자가 보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사건 신고와 관련된 위험 (안전, 사회적 낙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기본 시설 및 안전

- 11) 학교 및 기타 학습 환경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안전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가?
- 여성과 여아가 안전한 학습 환경의 위치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 (저학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학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 교육 센터가 장애인(예: 신체적 장애, 부상, 시각 및 기타 감각 손상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 편의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었는가?
- 12) 통학 거리 및 경로가 모든 학생, 특히 여아에게 안전하고 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
-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학습 환경을 오가는 데 동행할 수 있는 전략이 실시되고 있는가?
 - 학생 및 교사와 함께 교육 환경 내부 및 주변의 위험 지대로 알려진 곳에 관한 안전 도식화를 시행했는가?
 - 잠재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안전 순찰대가 있는가?
- 13) 학습 환경은 물리적으로 안전한가?
- 조명 시설은 충분한가?
 - 화장실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생활이 보호되고 안전한 곳에 있으며 그 수가 충분하고 성별에 따라 별도로 마련돼 있는가?
 - 가임기 연령대의 여학생 및 여교사가 학교에서 위생용품을 구할 수 있는가?
- 14) 학생과 교육 부문 종사자, 특히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학생과 교육 부문 종사자가 흔히 직면하는 GBV 관련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예: 교사 또는 직원에 의한 성착취, 교내 괴롭힘 또는 왕따, 학비 마련을 위해 착취적인 성관계에 연루된 학생, 특히 여아 또는 트랜스젠더 학생 등)?

신고 메커니즘 및 돌봄 시스템(위탁 경로)

- 15) GBV 생존자가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 경로가 있으며 이러한 경로가 교육 환경과 연결돼 있는가?
- 성적 착취 및 학대를 포함하여 GBV를 겪은 경우 신고 메커니즘과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가 학생과 교육 부문 종사자에게 전달되는가?
 - 학습 환경에 GBV 생존자를 지원하는 젠더 및 연령별 자료와 서비스가 있는가?
 - 법률 체계에서 동성 학대에 대해 교사에게 신고한 생존자나 이러한 신고에 대응하는 교사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가?
 - 학생을 대상으로 신고 및 위탁 체계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을 정기적으로 질문하는가?
- 16) 교육 담당 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는가?
- GBV 관련 사고를 공개할 수 있는 생존자를 존중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 윤리적이고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된 위탁 경로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 보고서가 공개된 후 생존자가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 17) GBV 생존자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단체가 있는가? 이러한 모임이 학습 환경과 연계돼 있는가?

(계속)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교육 역량 및 교육 교과과정

- 18) 교사와 행정가는 여아, 특히 청소년기 여성의 건강과 역량강화에 관련된 특정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는가?
 - 교사를 위한 교육 교과과정에 성교육 및 기타 젠더 관련 교육 사안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는가(예: 젠더인지적 교육법, 여아 및 남아의 접근/등록/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 교육 교과과정이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가?
- 19) 학습 자료에서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다루고 있는가?
 - 젠더에 관한 고정관념을 탈피했는가?
 - 초등 및 중등 교수법에서 여아를 평등한 존재로 존중하는가(즉, 여아가 남아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되는가, 남아가 그룹 활동을 주도하지 않도록 장려되는가, 교실 청소 임무가 남아와 여아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는가)?
- 20) 학습 자료를 통해 젠더 평등, GBV, HIV, 인권, 관계에 관한 기술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현지 지식 및 관습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정확하고 관련성이 높은 성교육을 받는가?

교육 정책

- 1)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교육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돼 있는가?
 - 특히 GBV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는 교육 정책, 기준 및 지침의 개발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이러한 정책, 기준, 지침에 관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과 소통했는가?
 - 교육 담당 직원은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책의 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2) 국가 및 지역의 교육 부문 정책이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차별하거나 교육 기회에 대한 안전한 접근에 걸림돌이 되는가(예: 임신한 청소년기 여아가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배제되는가)?
- 3) 국가 및 지역의 교육 부문 정책과 계획에 GBV 관련 위험 감소 전략이 포함돼 있는가?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 할당돼 있는가?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 1)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과 관련된 GBV 위험 및 보호 요인에 관한 커뮤니티의 인식을 제고하는가(예: PTA 또는 커뮤니티-학부모 학교 연합을 통해)?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GBV 예방,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이러한 정보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되는가?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참여하는가?
- 2) 교육 관련 토론회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이러한 토론회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함에 따라(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자원 동원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GBV 관련 자원 동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비상사태 대비/긴급 자금이나 비상사태 후 복구/개발 자금을 요청할 때 특정 GBV 위험을 반영하고 대처 전략을 제안하면 제안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금 조달 이후

'자원 동원'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품 및 공여자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동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도적 부문/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 제시돼 있다.



A. 인도적 필요의 개요

- ▶ 교육 환경과 관련하여 피해 인구의 GBV 관련 안전 위험, 보호 필요 및 권리가 제안서에 명시돼 있는가?
- ▶ 'GBV' 로 통칭하는 대신 GBV 위험을 특정 유형(예: 성폭행, 성착취, 아동 결혼, 강제 결혼 등)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 ▶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관련 취약성 요인에 따라 신체적 안전 및 학습 센터 접근과 관련된 사안을 이해하고 별도로 다루는가? 어리거나 청소년기 여아 및 GBV에 특히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GBV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기술하고 있는가?
- ▶ 제안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돼 있는가?
 -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남아 및 여아 등록률, 출석률 및 학업 유지율
 -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관련 취약성 요인에 따라 분류된 착취 및 학대 보고
 - 학교 행정가 및 교사의 남녀 성비
- ▶ 교육 부문 내 GBV 대처 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다루고 있는가? (예: 학습 센터 및 그 주변의 안보상의 위험, 폭력에 관한 태도와 신념, 커뮤니티와 학교의 섹슈얼리티 및 젠더 규범, GBV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습 센터의 제도적 역량 등)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 ▶ 비상사태 대비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GBV 위험 완화를 포함한 신속한 교육 대응을 위해 미리 배치돼야 하는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물품(예: 젠더 인지적인 '학습상자(School in a Box)' 또는 비상사태 키트, 화장실의 견고한 잠금장치 및 조명, 교복 및 기타 적절한 의복, 가임기 연령대의 여학생 및 여교사를 위한 위생용품, 장애인을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등)이 예측되고 있는가?
 - 정부, 교육 부문 종사자(최초 대응자 및 교육 부문 행위자), 관련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GBV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이행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자료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로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가?
- ▶ 비상사태 대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GBV 노출을 완화할 것인지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예: 교과과정 또는 학습 환경의 위치와 설계 측면)?
 - 전략이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충족하는가?
 - 교육 부문 여성 직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가(예: 이동을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지원, 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 직원과 동행하도록 자금을 지원)?
- ▶ 비상사태 이후와 복구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 및 특정 유형의 GBV를 감소하는 장기적인 노력에 교육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예: 초등 및 중등 교육 교과과정이 젠더 평등과 여아(특히 청소년기 여아)의 역량강화를 장려하도록 정부 지원)이 있는가?
 -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반영돼 있는가?

C. 프로젝트 내용

- ▶ 제안된 활동이 GBV 생존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지침 및 주요 접근법(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 기반)을 반영하는가?
- ▶ 제안된 활동이 자원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하는가?
- ▶ 프로젝트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촉진/지원하는가(교육 담당 직원으로 참여, 커뮤니티 기반 교육 위원회에 참여 등)?





이행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GBV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표현된 필요, 확인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GBV 예방 및 대응을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1.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교육 프로그램 담당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50%가 되도록 노력한다. 여성 직원이 책임자급이나 교육직을 맡을 수 있도록 공식 및 직무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예: 저학년 수업이나 비교적 쉬운 과목을 담당하는 직무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고위직에도 여성을 고용).
- ▶ 여성(해당되는 경우 청소년기 여아 포함)이 교육 관련 위원회 및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 ▶ 여성 교사와 행정가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이행하는 경우 커뮤니티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및 기타 커뮤니티 구성원의 지지를 얻는다.
- ▶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을 교육 부문 직원, 책임자, 교육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모범 사례

남수단에는 여성 교사가 거의 없다. 이는 학교에 다니는 여아에게 여성 역할 모델과 멘토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에 아프리카교육신탁(African Educational Trust, AET)에서 시작한 마을교육역량강화(Empowering Village Education, EVE) 프로젝트는 남수단 정부 및 주 교육부(Ministries of Education, MoEs)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 역할 모델과 멘토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스쿨 마더(School Mother) 계획을 개발했다. EVE 커뮤니티에서 온 100명의 여성이 선정돼 스쿨 마더로서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접근법은 학교에 여아의 등록률과 학업 지속률을 높이기 위해 도움이 되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 스쿨 마더는 교육받은 대로 학교 안팎에서 보건 및 위생과 같은 문제에 관해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며 정보를 전달하여 여아를 지원하고 격려해 주었다. 스쿨 마더는 주임 교사, PTA, MoE에 여아의 입장과 필요를 대변하며 커뮤니티 내 옹호 활동 및 가정 방문을 실시했으며 여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했다.

(인용: African Educational Trust. 2011. Empowering Village Education: Improving enrolment and retention of girls in primary schools in South Sudan, <<http://africaeducationaltrust.org/wp-content/uploads/2014/07/2011-Empowering-Village-Education.pdf>>)



2.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이행한다.

- ▶ 현지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과 상의하여 비상사태 이후 초등 및 중등 교육 시설의 신속한 (재)설립을 도모한다. 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학습장을 조성한다.
- ▶ 대안 교육, 비공식적 교육 또는 비전통적 교육 프로그램(예: 야간 수업, 원거리 학습, 방과 후 활동 또는 커뮤니티 활동, 일시적인 학습장, 컴퓨터 기반 인터랙티브 학습, 가속 학습, 통신 교육 프로그램 등)의 이행을 고려한다. 이러한 대안은 전통적인 교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나 특정 학생(예: 장애인, 미성년 엄마, 가사노동 때문에 전통적인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에게 유용할 수 있다.
- ▶ 교육 프로그램에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를 막는 실질적이고 문화적인 장애 요인에 대처한다.

- 전통적/비전통적 교육 프로그램의 장소와 시간이 가사노동 및 가족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한다.
- 자녀가 있는 여성 및 여아가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범 사례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 WFP)의 주력 프로그램인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여아의 학교 등록률과 학업지속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차드와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여아에게 장학식량(take-home ration)을 배급하자 조혼이 줄었다. 케냐에서는 건조·반건조한북부 지역의 기숙 학교에 식량을 지원하여 여아가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했다. 또한 WFP는 조혼 또는 강제 결혼에서 도망친 여아를 수용할 수 있는 정부 기숙 학교를 지원했다.

(발췌: Pattugalan, G. 2014. 'Linking Food Security, Food Assistance and Protection from Gender-Based Violence: WFP's experience', Humanitarian Exchange, Number 60, pp. 30-33, <www.odihpn.org/humanitarian-exchange-magazine/issue-60>)



모범 사례

우간다 북부의 아무루(Amuru)와 굴루(Gulu) 지역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여학생들이 생리 중에 결석하지 않도록 저렴하고 지역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생리대를 만들었다. 여아 및 남자는 폴리에틸렌으로 덮인 부드러운 면을 사용하여 생리대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여러 번 세탁할 수 있으며 몇 달간 쓸 수 있는 생리대는 현지 가게에서 판매되는 비싼 생리대(평균 5,000우간다 실링 또는 미화 2.5달러 상당, 대다수의 가정에서 구입하기 어려움)를 대체할 수 있는 반가운 대안이 됐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여아 전용 화장실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데다 생리대까지 부족하면 청소년기 여아의 결석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굴루에서는 여아의 초등학교 학업 지속률을 높이기 위해 생리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커뮤니티에서 여아를 교육해야 하는 필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개발 협력기관은 일부 학교에서 여아를 위해 탈의실을 짓도록 지원하고 여성 교사를 대상으로 지침과 상담 기술을 교육했다. 아위치 초등학교(Awich Primary School)는 이 프로젝트를 2010년에 도입했고 2010년에 268명이었던 여아의 등록이 2011년에는 310명으로 증가했다.

(인용: <www.irinnews.org/report/93291/uganda-sanitary-pads-keep-girls-in-school>)

- 새로운 건물이 보편적 설계를 기반으로 건설되도록 하고 기존 구조물의 경우에는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고려하도록 한다.
- 가능한 경우 학교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대체 자금을 통한 지원을 제공한다(예: 장학금, 조건부 현금지원, 학교 교재, 교복, 교내 급식 등).
- ▶ 중퇴를 줄이고 학교 밖 아동과 청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을 이행한다(예: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여아 및 남아를 위한 재등록 프로그램, 학교 밖 청년을 위한 연결 프로그램, 등록 학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 커뮤니티 내 젠더 사안(특히 이러한 사안은 어린 여아 및 청소년기 여아의 학교 참여율과 연결되기 때문에)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다니거나 학교에 가길 원하는 여아에 대한 GBV 위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과 협의하여 교육 환경 및 그 주변에서 신체적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을 시행한다.

- ▶ 교육 환경 내부의 잠재적인 GBV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한다(예: 사생활이 보호되고 성별로 분리된 기숙사/화장실/목욕 시설, 자체 급수장 및 위생시설이 없는 학교의 경우 기존 급수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 적절한 조명과 안전 대피 경로 제공 등).
- ▶ 학교 및 그 주변(예: 화장실, 운동장, 통학 경로 등)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 순찰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커뮤니티 보호 메커니즘을 확장한다. 필요하다면 보안 요원(해당되는 경우 평화 유지군 포함) 및 더 넓은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학생의 통학길에 동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위험 상황 시 대응을 위한 비상사태 안전 규약(예: 비상사태 시 휴대전화 사용, 2인 1조제, 주변인 개입 등)을 수립한다.

4.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해 교육 환경에서 GBV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 부문 종사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 ▶ 현지 관행을 기반으로 젠더 및 문화적 측면에서 적절한 언어와 접근법을 사용하여 모든 초등 및 중등 단계 교육 담당 직원(행정, 경비원 등 포함)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에 관해 교육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젠더 인지적인 교육 전략을 연수한다. GBV에 관한 지식을 제도화하고 현재 연수를 받는 교사가 미래에 GBV에 관해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성을 도모한다. 학습 환경에서 GBV를 용인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직원들 사이의 특정한 문화적 태도 및 관습에 대처한다.
- ▶ 교사 및 기타 모든 교육 부문 종사자가 아동 및 청년 폭력 예방과 관련된 행동 강령을 이해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행동 강령에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및 학대와 관련된 특정 조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 기존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사 자신이나 학생의 GBV 관련 사안에 대처하고 있는 교사를 지원한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GBV 위험을 높이는 교사의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대처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비폭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토론에 남성 교사와 교육 담당 직원을 참여시킨다. GBV를 용인하는 남성성에 대한 신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모든 학생과 교사를 위해 안전하고 비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다룬다.

▶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폭력을 줄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에 GBV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연계시킨다.

5.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존자를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 체계(예: 위탁 경로)를 확인하고, 교육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모범 사례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된 두 프로젝트는 교사가 만들 수 있는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웨스턴 케이프(Western Cape) 보건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전달되는 암묵적인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요구한다. 교내 젠더기반폭력의 역학에 대한 이해는 교사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일상적인 업무에 통합할 수 있게 해준다. 새로운 시각: 남아프리카 학교에서의 젠더기반폭력 대처(Opening Our Eyes: Addressing gender-based violence in South African schools)라는 제목의 매뉴얼은 교사와 학교 행정가가 GBV에 대한 학교 전체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이자 이러한 개발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매뉴얼은 GBV와 HIV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발췌: Ward, J. 2007. From Invisible to Indivisible: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 of the girl child to be free from violence. UNICEF, <https://www.unicef.at/fileadmin/media/Infos_und_Medien/Info-Material/Maedchen_und_Frauen/From_Invisible_To_Indivisible_-_Rights_of_Girl_Child.pdf>. 자세한 정보는 Department of Education, Republic of South Africa. 2011. Opening Our Eyes: Addressing gender-based violence in South African schools. Canada-South Africa Education Management Programme, <www.unicef.org/southafrica/SAF_request_openingoureyes.pdf> 참조)



모범 사례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는 분쟁과 위기를 겪은 아동과 청년이 치유하고 회복하며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안전하고 학대 및 착취로부터 자유로우며 배려적이고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을 표방하고 학문적 학습을 연령/ 발달적으로 적절한 사회정서 학습에 연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은 분쟁 피해 국가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힐링교실(Healing Classroom) 접근법은 분쟁 및 위기를 겪은 지역에서 IRC가 30년간 진행한 교육과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시에라 리온과 기니에서 시행한 4년간의 조사 및 현장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다. 힐링교실 접근법은 교사가 아동이 회복,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힐링' 학습 공간을 조성 및 유지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힐링교실은 아동과 청년의 심리사회적 회복, 웰빙과 사회정서 학습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힐링교실 접근법에 따르면 교사는 위기 시 또는 그 이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 동기, 웰빙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의미있는 지원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IRC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힐링되는 교실 환경을 만들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사용했다.

- 힐링교실 접근법을 통합한 교과과정
- 지속적인 교사 연수 및 코칭을 제공하는 학교 기반 체계
- 커뮤니티 참여 증가 및 교육 부문 폭력 감소를 위해 학교관리위원회 및 학부모교사연합회(PTA)를 지원

(인용: Fancy, K., and McAslan Fraser, E. 2014. 'DFID Guidance Note on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VAWG) in Education Programmes', p. 1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iolence-against-women-and-girls-address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in-education-programming>>)

▶ 모든 교육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존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하는 장소에 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아동 생존자가 다가갈 가능성이 높은 여성 교사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학습 센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제공하고 위탁 경로 관련 내용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한다.

▶ 모든 초등 및 중등 교육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현지화된 GBV 유형(예: 언어적 희롱 및 괴롭힘, 성착취 등)을 인식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GBV 생존자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위험 신고 및 돌봄 서비스 접근과 관련된 그들의 권리와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가능하다면 생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및 후속 돌봄 서비스를 위해 학습 시설 내 GBV 전문 사회복지사를 고용한다.

6. 비상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젠더 불평등 규범의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학교 교과과정을 개발 및 실시하고 비폭력 문화 조성,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존중하는 문화를 장려한다.

▶ 남녀 모두를 위한 GBV 관련 사안과 포괄적인 성 건강에 관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교과과정을 초등 및 중등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한다. 교과과정에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기본 정보, 신체적 변화와 사춘기, 섹슈얼리티, 건강한 생리 관리, 젠더 평등, 관계를 맺는 기술과 건강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HIV 및 기타 성매개감염병, 안전한 성관계, 가족 계획, 성폭행/데이트 폭력/아동 결혼/강제 결혼/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GBV 원인 및 유발요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 분쟁을 인지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교육(예: 갈등 전환, 여성 아동의 권리, 평화교육, 다양성 교육, 존중과 관용, 비폭력적인 남성성 등)을 다루고 장려하도록 교과과정을 확장하여 동료에 의한 폭력을 예방한다. 남아와 여아가 함께 또는 따로 폭력과 젠더에 대한 신념 등을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가급적 청년을 위해 관계와 성에 관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맞춤형 프로그램(예: 리더십 개발 교육, 생활 기술 교육, 취업 또는 생계 프로그램과 연계된 직업 교육, 스포츠/예술/기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기회, 여아(특히 청소년기 여아)가 만나고 기술을 공유하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등)을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탁 경로

‘위탁 경로’는 GBV 생존자를 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의 도움, 법률/사법 지원 등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연한 메커니즘이다.



통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역량강화를 증진한다. 학교 기반 모델이나 학교 밖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고려한다.

GBV 예방 및 대응을

교육 정책에 통합하기

1. 적절한 GBV 예방 및 대응 전략을 교육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한다.

- ▶ (1) GBV 위험을 완화하고 (2)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이 커뮤니티 기반 교육 활동에 학생, 교육 담당 직원 및 지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교육 담당 직원을 위한 보육 관련 정책
 - 여성에 대한 동등한 고용 기준
 - 교육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GBV와 성 및 생식보건에 관한 재직 중 연수 교육을 요구하는 정책
 - 임신 중인 여아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 이러한 정책이 부재한 경우 해당 교육부에서 교사 및 기타 교육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GBV와 성적 착취 및 학대가 없는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의무 행동 강령(Codes of Conduct, CoC)을 이행하도록 한다.
 - CoC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교사, 학부모, 학생, 커뮤니티 구성원, 해당되는 경우 정부 당국 및 교원단체 포함)와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그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적 방법을 활용한다.
 - 성적 착취 및 학대를 하거나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경우, 신고, 조사, 기록 및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된 민원 신고 메커니즘과 절차를 실시한다. 실행 미비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별 맞춤 전략을 개발한다.

✓ 교훈

2009년에 시에라리온의 교육부는 UNFPA와 UNICEF의 지원을 받아 교사를 위한 국가 직업 행동 강령을 도입했다. 시에라리온 전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최종 버전이 개발됐다. UNICEF는 또한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모든 학교에서 행동 강령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실 관리 및 긍정적인 행동 관리, 교직에 대한 헌신과 태도, 인권 및 아동의 권리, 아동 착취 및 학대, 거버넌스, 책무성, 부패, 기록 관리에 대한 교육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얻은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 국가 및 현지 수준에서 행동 강령을 이행하는 데 교원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학대 및 민원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빈곤과 성적 학대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여 교사가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보수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인용: Fancy, K., and McAslan Fraser, E., 2014. 'DFID Guidance Note on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VAWG) in Education Programmes', p. 1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iolence-against-women-and-girls-address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in-education-programming>>)

- ▶ 정부, 학교 위원회, 학교 관리, PTA, 교사 및 학생이 협력하여 GBV 관련 학교 기반 행동 계획을 개발하거나 기존 계획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특정 학교 상황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예: 젠더 균형적인 '안전한 커뮤니티'를 조직, 통학 시 동반 서비스 실시 커뮤니티 기반 보안 순찰대 배치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 표준화된 생존자 중심의 GBV 신고 메커니즘 및 학습 센터 내 성적 착취 및 학대 등과 관련된 돌봄 시스템(위탁 경로)을 개발하고 그 이행을 보장한다.
- ▶ 관련 정책, 기준 및 지침을 교육 부문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배포하고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공용어 및 지역별 현지어를 사용하여 더 넓은 커뮤니티에 배포한다(점자, 수화, 비문해자를 위한 시각적 콘텐츠가 포함된 포스터, 커뮤니티 회의를 통한 안내 등 접근하기 쉬운 방법 사용).

2. GBV 위험 감소 전략을 국가 및 지역의 교육 관련 법률 및 정책에 통합하기 위해 옹호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금을 할당한다.

- ▶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안전한 교육을 방해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관습적/전통적 지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관습법 및 기타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무료 초중등 교육 및 급식 프로그램과 같이 학교 관련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장려
- 난민/국내 이재민(IDP) 학교가 공식 학교로 인정되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동일한 서비스와 안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도록 옹호

- 비상사태 초기 단계에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임시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법률과 정책을 통해 여아가 초중등 교육을 마칠 권리를 보호하도록 보장

- ▶ 국가 교육 정책 및 계획에 학생과 교육 부문 종사자를 위한 GBV 관련 안보 조치가 포함되도록 한다(예: 교육 환경에서 폭력 및 착취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정부 규정 또는 행동 강령 장려).
- ▶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개발 과정에서 관련 실무 부처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GBV 관련 정책이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모범 사례

네팔에서는 분쟁 이후의 교육 전략에 여아, 낮은 신분, 원주민 및 장애 아동을 위한 용돈지급을 포함하여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장려했다.

(발췌: Holmes, R. 2010. 'The Role of Social Protection Programmes in Supporting Education in Conflict-Affected Situation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9/001913/191354e.pdf>>)



GBV 예방 및 대응을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에 통합하기

1. 교육 부문 내부적으로 또는 더 큰 범위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에 속한 협력기관과 GBV에 관한 신고를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안전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 아동 생존자와 보호자의 신원이나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기관 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국제 젠더기반폭력 정보관리시스템(Gender-Based Viole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GBVIMS)의 활용을 고려해보고 GBVIMS와 기존 교육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연결성을 찾아본다.³

2. 교육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에 GBV 메시지가 포함되도록 한다.

- ▶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GBV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제고 활동을 교육 아웃리치 이니셔티브에 통합한다(예: 커뮤니티 토론회, 워크숍,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회의, GBV 메시지 전달, PTA 및 학부모 모임과 면담 등).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GBV 예방,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 및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를 사용한다.
-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학교 기반 GBV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관해 토론한다.
- 메시지 개발 및 메시지 전달 전략 수립 과정에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가(필요에 따라 별도로) 참여하도록 하여 메시지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 ▶ 교육 아웃리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섹슈얼리티,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해 포괄적으로 교육한다(예: 생존자를 존중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와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 남성 및 남아,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를 (워크숍, 교육, 커뮤니티 지도자 면담, 젠더 및 권리 사안에 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여성 및 여아 교육을 지원하는 환경 구축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 참여시킨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교육 관련 커뮤니티 토론회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예: 교통, 회의 시간 및 장소, 이들의 참여에 대한 반발 위험, 육아 지원의 필요 등)을 고려한다. 참가자들이 GBV 사안을 편안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론회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을 이행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관련 메시지 전달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통해 GBV와 관련된 사람 등 피해 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우려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GBV 전문가가 아니라면 GBV 전문가나 GBV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³ GBVIMS는 GBV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보건시스템이나 기타 국가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GBVIMS는 여러 부문별 행위자가 다양한 접근법과 툴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 데이터 수집이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gbvims.com>을 참조한다.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조정 과정의 첫 단계로,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GBV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에서 GBV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GBV 전문가는 교육 부문 행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GBV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교육 현황 파악을 설계 및 실행하고 교육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한다.
-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안과 생존자를 존중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 담당 직원을 교육한다.
- ▶ 교육 담당 직원에게 GBV 관련 사고를 공개할 수 있는 생존자를 위한 표준 위탁 경로를 개발하고 교육 부문 종사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과 정보를 갖추도록 한다.
- ▶ 교육과 관련이 있는 젠더, GBV, 여성의 권리, 인권 사안에 대해 피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 연계하여 GBV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부문(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부문)과의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육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과이 있는 경우 이들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CCCM)

- ▶ 다음을 위해 CCCM 협력기관과 협력
 - 캠프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안전한 지역과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식별하고,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의해 확인된 안전 우려사항에 기반하여 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임시 학습장 포함)의 위치를 계획
 - 가임기 연령대의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위생용품의 배급을 원활하게 하고 여성 및 여아의 권리와 이들이 표현한 필요에 맞게 교육 환경에서 위생용품을 세탁하고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
 - 아동 및 청년의 출석/결석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 식량 배급 및 캠프 등록 기록과 학교 출석 기록을 교차 참조하고 이에 따라 인적 자원과 기반 시설을 계획

아동 보호

- ▶ 다음을 위해 아동 보호 행위자의 지원을 요청
 - 교사를 대상으로 GBV 아동 생존자에게 관여하는 방법 및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된 방식으로 즉각적인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
 - 교사 및 교육 담당 직원의 채용, 선정, 평가 시 아동 보호 사안이 고려되도록 보장
 - 생존자 공개 이후 아동 친화적인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위탁 현장에 대한 정보 얻기
 - 교육 환경을 오가는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강조
 -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커뮤니티 보호 메커니즘 강화(예: 아동 보호 위원회, 감시 위원회, 보육 센터, 여성·아동·청소년 친화적인 공간, 아동 보호 네트워크, 국가 경찰의 여성 및 아동 전담 데스크 등)

식량 안보 및 농업

- ▶ 학생과 가족을 위한 학교 급식 및 식량 패키지 제공을 위해 식량 안보 부문 행위자의 지원을 요청

보건

- ▶ 다음을 위해 보건 부문의 지원을 요청
 - 성 및 생식보건(임신, HIV, STI 등) 관련 문제에 관해 교사, 학생, 학부모,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
 - 해당되는 경우, 여학생 및 여성 교육 부문 종사자를 위한 존엄성키트 배급

생계

- ▶ 다음을 위해 생계 부문 협력기관과 협력
 - 문해력, 금융 이해력, 생활 기술, 생계 및 직업 교육 요소를 포함하는 대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
 -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제력 강화가 필요한 학교 밖 청년을 지원하는 생계 관련 프로젝트와 연계

영양

- ▶ 다음을 위해 영양 부문 행위자와 협력
 - 모유 수유 또는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하는 여성(자녀가 있는 여학생 포함) 지원
 - 출석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고아 및 소년소녀가장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

보호

- ▶ 보호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교육 환경 내부 및 주변의 보호 관련 우려사항을 모니터링
- ▶ 교육 환경을 오가는 중에 GBV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지 법 집행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

쉼터, 정착 및 복구(SS&R)

- ▶ 다음을 위해 SS&R 부문 행위자와 협력
 -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 편의에 기반하여 학생을 위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 및 기타 교육 현장을 계획 및 설계
 - 지속적인 학교 재건 과정에서 GBV 관련 안전 우려사항을 해결

지원 부문(통신)

- ▶ 교육 환경에서 GBV를 완화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통신 부문 행위자의 지원을 요청 (예: 폭행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및 기타 기술 활용)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WASH)

- ▶ 다음을 위해 WASH 부문과 협력
 - 학습 센터에 여아와 남아를 위한 별도의 화장실, 씻을 수 있는 공간 등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중위생 시설 설계 및 설치
 - GBV 메시지를 통합한 교내 개인위생 증진 활동을 수행
 - 해당되는 경우, 여학생 및 여성 교육 부문 종사자를 위해 위생키트 배포 지원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프로그램
단계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GBV 관련 질문을 교육 현황 파악에 포함 ⁴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관련 질문*이 포함된 교육 현황 파악의 수} \times 100}{\text{교육 현황 파악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또는 툴	100%	✓	✓	
* 현황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GBV 주제별 질문은 99 페이지 참조						

(계속)

⁴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30 November 2012.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ASC Transformative Agenda Reference Documen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4.%20Reference%20module%20for%20Cluster%20Coordination.pdf>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계속)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	$\frac{\text{현황 파악 응답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응답자의 수}}$ 및 $\frac{\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50%		✓	✓
교육 환경 내부 및 인근의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와 상의 ⁵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별도로 상의	양적 방법: $\frac{\text{학습 공간 내부 및 인근의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와 상의한 학습 공간의 수} \times 100}{\text{학습 공간의 수}}$ 질적 방법: 학습 공간 내부 및 인근에서 피해 인구가 경험한 GBV 관련 위험 요인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해당 조직의 기록물,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 주요 정보원 인터뷰 (Key Informant Interview, KII)	100%		✓	✓
여성이 학습 공간에 다니는 것과 관련된 GBV 위험 요인	양적 방법: $\frac{\text{학습 공간에 다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GBV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여성의 수} \times 100}{\text{학습 공간에 다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여성의 수}}$ 질적 방법: 여성이 말한 학습 공간의 안전 우려사항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설문조사, FGD	0%		✓	✓

자원 동원						
교육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에 GBV 위험 감소를 포함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위험 감소 목표, 활동 또는 지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 교육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times 100}{\text{교육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제안서 검토	100%		✓	✓
GBV 지침에 관한 교육 담당 직원 교육	$\frac{\text{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교육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교육 담당 직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	100%		✓	✓

(계속)

⁵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 <www.humanitarianresponse.info/applications/ir/indicators>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

▶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교육 위원회에서의 여성 참여 ⁵	<p>양적 방법:</p> $\frac{\text{커뮤니티 기반 교육 위원회* 참여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커뮤니티 기반 교육 위원회 참여자의 수}}$ <p>질적 방법: 여성은 커뮤니티 기반 교육 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참여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p> <p>* 커뮤니티 기반 교육 위원회에는 학부모교사연합회(PTA)를 비롯한 커뮤니티 위원회가 포함됨</p>	현황 파악 보고서, FGD, KII	50%		✓	✓
피해 지역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남녀 성비 ⁵	$\frac{\text{피해 지역에서 가르치는 여성 교사의 수}}{\text{피해 지역에서 가르치는 남성 교사의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1:1	✓	✓	
피해 지역의 학습장/학교에 다니는 남아와 여아 피해자의 성비 ⁵	$\frac{\text{피해 지역의 학습장/학교에 다니는 여아의 수}}{\text{피해 지역의 학습장/학교에 다니는 남아의 수}}$	합동 교육 필요 현황 파악, W 매트릭스	위기 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	✓		✓
연령 집단(5~13세, 14~18세)과 위험에 처한 집단에 따라 구분						
행동 강령에 서명한 현직 교육 담당 직원 ⁵	$\frac{\text{행동 강령에 서명한 현직 교육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현직 교육 담당 직원의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100%	✓	✓	
학교/학습 현장에서 GBV 생존자를 위한 신고 및 위탁 메커니즘	$\frac{\text{GBV 생존자를 위한 신고 및 위탁 메커니즘이 마련된 학교/학습 현장의 수} \times 100}{\text{학교/학습 현장의 수}}$	KII	100%	✓	✓	

▶ 정책

GBV 예방 및 대응 전략을 교육 정책, 지침 또는 기준에 포함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예방 및 대응 전략이 포함된 교육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times 100}{\text{교육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기관, 부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의) 문헌 검토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계속)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계속)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응답한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	100%		✓	
교육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GBV 위탁에 관한 정보 포함	$\frac{\text{GBV 생존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교육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times 100}{\text{교육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문헌 검토, KII,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다른 부문과 조정	$\frac{\text{현장에서 GBV 위험 감소 활동*을 위해 상의한 비 교육 부문의 수} \times 100}{\text{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비 교육 부문의 수}}$ <p>* 부문별 GBV 위험 감소 활동 목록은 113 페이지 참조</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KII, 회의록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참고자료

주요 참고자료

- **비상사태 시 교육에 관한 기구 간 네트워크(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INEE)**와 젠더 태스크 팀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개발했다.
 -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Gender-Based Violence in and through Education'.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http://toolkit.ineesite.org/resources/ineecms/uploads/1059/Preventing_and_Responding_to_GBV.pdf>
 - INEE Toolkit, <<http://toolkit.ineesite.org/>>
 - INEE Toolkit's Gender Section, <http://toolkit.ineesite.org/inee_minimum_standards/implementation_tools/%3Ch3%3Ekey_thematic_issues%3Ch3%3E/gender/>
 - Gender Equality in and through Education: INEE pocket guide to gender, <http://toolkit.ineesite.org/pocket_guide_to_gender/>
- **Joint Education Needs Assessment Toolkit**, <www.savethechildren.org.uk/sites/default/files/docs/Ed_NA_Toolkit_Final_1.pdf>. 글로벌 교육 클러스터에서 개발한 본 참고자료는 교육 클러스터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상사태 현황 파악을 위한 준비 계획
 - (신속하고 포괄적인) 교육 현황 파악의 종합적인 설계 및 시행
 - 비상사태 대응 시 효과적인 기관 간 교육을 위해 믿을 수 있고 포괄적이며 시기적절한 정보 제공
 - 비상사태에서 즉각적이고 중요한 교육 사안을 강조하고 교육 협력기관 간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
- 우간다의 레이징 보이시즈(Raising Voices)는 교육자가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를 연구하고 좋은 학교 설립 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좋은 학교 툴킷(Good School Toolkit)**을 개발했다. 우간다의 여러 학교가 이 툴킷의 개발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정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헌신과 인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ttp://raisingvoices.org/good-school/>>
- 여아에 대한 학교 폭력 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 매뉴얼은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9.** 'Doorways 1: Student training manual on school-related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and response', <http://pdf.usaid.gov/pdf_docs/pnado240.pdf>를 참조한다.
- IASC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에서 젠더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단계를 알려주는 온라인 과정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면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10.** 'Different Needs – Equal Opportunities: Increasing effectiveness of humanitarian action for women, girls, boys and men', <www.interaction.org/iasc-gender-elearning/>을 참조한다.
- 교육 부문에서 젠더 평등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06.**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Handbook%20%28Feb%202007%29.pdf>를 참조한다.
- 난민 학교의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UNHCR의 툴킷과 권고사항은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07.** Safe Schools and Learning Environment: How to prevent and respond to violence in refugee schools. Geneva: Technical Support Section, Division of Operational Services, UNHCR, <http://toolkit.ineesite.org/toolkit/INEEcms/uploads/1048/Codes_of_Conduct_Refugee_Schools.PDF>를 참조한다.
- **Fancy, K., and McAslan Fraser, E. 2014.** 'DFID Guidance Note on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VAWG) in Education Programmes'. London: VAWG Helpdes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iolence-against-women-and-girls-address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in-education-programming>>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and Save the Children. 2009.** 'Adolescen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Toolkit for Humanitarian Settings: A companion to the Inter-Agency Field Manual on Reproductive Health in Humanitarian Settings', <www.unfpa.org/publications/adolescent-sexual-and-reproductive-health-toolkit-humanitarian-settings>. 본 툴킷은 청소년의 성 및 생식보건(Adolescen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SRH)과 청소년을 포함하는 SRH 개입을 위한 옹호 활동과 관련된 정보와 지침을 담고 있다.
- 청소년의 성 및 생식보건 관련 사안에 관해 성인과 청소년의 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교과과정은 **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 (PATH)**를 참조한다. **2006.** Tuko Pamoja: Adolescent reproductive health and life skills curriculum. Nairobi, <www.popcouncil.org/uploads/pdfs/frontiers/Manuals/KARHP_guide1.pdf>를 참조한다.
- **Women's Commission for Refugee Women and Children. 2005.** "Don't Forget Us": The education and gender-based violence protection needs of adolescent girls from Darfur in Chad'. New York: WRC, <www.refworld.org/docid/48aa830f24.html>
- **World Bank. 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within the Education Sector',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GENDER/Resources/Education.pdf>>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Save the Children UK. 2002.** 'Note for Implementing and Operational Partners: Sexual violence & exploitation – The experience of refugee children in Guinea, Liberia and Sierra Leone', <www.savethechildren.org.uk/sites/default/files/docs/sexual_violence_and_exploitation_1.pdf>
-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의 종식을 목표로 남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전략에 관해서는 **Oxfam GB and KAFA. 2011.** 'Women and Men Hand in Hand against Violence: Strategies and approaches of working with men and boy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http://policy-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women-and-men-hand-in-hand-against-violence-strategies-and-approaches-of-workin-118174>>(영어) 또는 <www.kafa.org.lb/StudiesPublicationPDF/PRpdf18.pdf>(아랍어)를 참조한다.
- 생활 기술 조력자를 위한 툴과 참고자료는 **WarChild Holland's 'I Deal'** series: <www.warchildlearning.org/>를 참조한다.
- 조직의 대표적인 다국적 여아 교육 이니셔티브에서 얻은 주요 성공 및 모범 사례를 다룬 보고서는 **ActionAid. 2013.** 'Stop Violence against Girls in School: Success stories', <www.actionaid.org/sites/files/actionaid/svags_success_stories.pdf>를 참조한다.



추가 참고자료

- **Bharadwaj, S., and Patkar, A. 2004.** Menstrual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aking stock. Mumbai, India: Junction Social Development Consultants.
- **Burgers, L., and Tobin, V. 2003.**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in Schools: Accelerating progress for girls' education'. Education Update 6, pp 8-9, <www.wsp.org/Hygiene-Sanitation-Water-Toolkit/Resources/Readings/GirlsEducationUNICEFLessonsLearned.pdf>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1.** The Hidden Crisis: Armed conflict and education.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9/001907/190743e.pdf>>
- **Herz, B., and Sperling, G. 2004.** 'What Works in Girls' Education: Evidence and policies from the developing world'.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www.cfr.org/education/works-girls-education/p6947>
- **Snel, M. 2003.** School Sanitation and Hygiene Education Notes & News. Special Issue on 'How does school hygiene, sanitation and water affect the life of adolescent girls?'
- **Kane, E. 2004.** 'Girls' Education in Africa: What do we know about strategies that work?' Africa Region Human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no. 73; Africa Regional Educational Publications.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04/05/6042697/girls-education-africa-know-strategies-work>>
- **Kirk, J., and Sommer, M. 2006.** 'Menstruation and Body Awareness: Linking girls' health with girls' education'. Gender and Health Special. Royal Tropical Institute (KIT), Amsterdam. <www.susana.org/_resources/documents/default/2-1200-kirk-2006-menstruation-kit-paper.pdf>
- **Kirk, J., and Sommer, M. 2005.** 'Menstruation and Body Awareness: Critical issues for girls' education'. EQUALS, Beyond Access: Gender, Education and Development, vol. 15, Nov/Dec 2005, pp 4-5.
- **Lidonde, R. 2004.** 'Scaling Up School Sanitation and Hygiene Promotion and Gender Concerns'. Paper presented at School Sanitation & Hygiene Education Symposium, Delft, the Netherlands, <www.wsp.org/Hygiene-Sanitation-Water-Toolkit/Resources/Readings/Global-Lidonde-Scalingup.pdf>
- **Snel, M. 2003.** School Sanitation and Hygiene Education: Thematic overview paper. IRC International Water and Sanitation Centre, <www.sswm.info/library/536>
- **World Bank. 2005.** Toolkit on Hygiene, Sanitation, and Water in Schools, <www.wsp.org/Hygiene-Sanitation-Water-Toolkit/index.html>
- LGBTI에 대한 섹슈얼리티 교육 참고 자료는 **Haberland et al. 2009.** It's All One Curriculum: Guidelines and activities for a unified approach to sexuality, gender, HIV and human rights education. Population Council, <[www.popcouncil.org/research/its-all-one-curriculum-guidelines-and-activities-for-a-unified-approach-to->](http://www.popcouncil.org/research/its-all-one-curriculum-guidelines-and-activities-for-a-unified-approach-to-)를 참조한다.



식량 안보 및 농업



적용 대상

- 식량 안보 및 농업(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FSA) 조정 메커니즘
- 식품, 현금 및 바우처, 농축산 개입을 위한 종자/툴과 같은 식량 지원 제공 부문 행위자(직원 및 책임자): 커뮤니티 기반 기구(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등), 국제비정부기구(INGO), 유엔 기구
- FSA와 관련된 지역 위원회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예: 여성단체, 청소년/청년 단체, 노인 단체 등)
- 그 외 중앙 및 지방 정부, 커뮤니티 지도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FSA 이해관계자

왜 식량 안보 및 농업¹ 부문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식량 불안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가뭄, 홍수, 쓰나미, 지진, 전쟁, 기후변화, 정부 실패, 인구 증가, 물가 상승, 토지와 천연 자원의 파괴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식량 불안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놀랍게도 비슷한 방식(GBV 위험을 유발하는 방식 등)으로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많은 지역에서 주로 여성과 여아가 가족을 위한 식량 조달과 요리를 책임진다. 이를 위해 외진 곳이나 낯선 곳까지 가야 하는 경우(예: 논/밭일 또는 가축 사육, 요리를 위해 필요한 물, 장작 및 기타 비식량물품 조달, 가축용 사료/물/축사 자재 조달 등), 성폭행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식량 지원(상품 및 현금 기반 개입)에 관한 정보나 접근성의 결여는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 위험이 커질 수 있다.

¹ '식량 안보 및 농업(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FSA)'이라는 용어는 농업, 임업, 수산업, 수경재배, 양봉, 축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식량 생산 방식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현금 및 바우처 기반 개입

식량 배급은 여전히 인도주의 비상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구호 대응이지만 현금 및 바우처 기반 개입을 통해(특히 시장과 은행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 도시 환경에서) 다양한 상품 기반 필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도 점차 커지고 있다. 현금과 바우처는 급성장한 시장이 있는 농촌과 캠프에 정착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지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송금과 같은 신기술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선택은 반드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12. An Introduction to Cash-Based Interventions in UNHCR Operations, p. 5, <www.unhcr.org/515a959e9.pdf>)

필수 행동 요약표 참조

- ▶ 상품 및 현금 기반 개입 또는 농업 생계 프로그램이 가족의 식량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남성이 가장가정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특정한 위험에 처한 집단² (특히 여성가장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 독신 여성)은 식량 및 농업 투입재를 받는 대가로 강제/강요에 의한 성관계를 요구받게 될 수 있다.
- ▶ 식량 및 농업 투입재 배급소가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 배급소까지 가는 거리가 먼 경우, 식량 배급품 또는 농업 투입재가 무거운 경우(따라서 여성 및 여아가 이를 운반하기 위해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경우), 모두 성폭행 및 착취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 일부의 경우, 식량 불안은 가족이 신부 지참금을 수령하거나 여아의 경제적 웰빙을 보장하고 가족의 식량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딸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만드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GBV에 대한 노출은 결과적으로 생존자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해치는 식량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부상이나 질병은 생존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 자신과 가족을 위해 식량을 생산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사회적 낙인과 배제로 인해 생존자의 식량 배급, 식량 및 농업 관련 기술 교육 및 기타 유형의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감소될 수 있다.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식량 안보 및 농업(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FSA) 전략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할 때 GBV 위험을 고려할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사태 중 식량 안보 및 농업 생계와 위기 이후의 농촌 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사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은 FSA 활동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GBV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FSA 부문이 이행해야 하는 행동은 GBV 전문가 및 기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FSA 부문 행위자는 또한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문제를 다루는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조정' 참조)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식량 안보의 핵심

식량 안보는 다음과 같은 4대 핵심에 기반하고 있으며, 식량 안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핵심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식량의 실질적인 가용성
- 식량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접근성
- 식량 활용
- 위의 3개 핵심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 유지

(인용: European Commission an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8.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Concepts of Food Security,' <www.fao.org/docrep/013/al936e/al936e00.pdf>)

²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GBTI), HIV 보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미동반 아동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은 FSA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선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현황 파악은 가능한 한 FSA 부문 행위자가 GBV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도 협력하여 부문간 및 학제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아래에 제시된 영역별 질문은 축산 비상사태 지침 및 기준(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www.livestock-emergency.net>)과 같은 기존의 지침 자료에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적절한 영양 공급을 막는 방해 요인을 파악하고 식량의 가용성과 최적의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영양 및 FSA에 관한 현황 파악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은 '이행' 아래 자세하게 설명된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과도 연관돼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도록 FSA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하는 우선순위와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주요 현황 파악 대상 집단

- FSA의 주요 이해관계자: 정부, 시민사회, 지역 지도자, 현지 식량 지원 위원회, 영양 부문 행위자, 생계 부문 행위자, GBV, 젠더 및 다양성 전문가
- 농업 작업자, 농부, 가축 소유자, 시장 거래인 등을 포함한 피해 인구 및 커뮤니티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의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식량 안보 및 농업 프로그램

참여 및 리더십

- 1) 책임자급을 포함한 피해 인구와 직접 일하는 FSA 담당 직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특히 배급소에서 식량 배급팀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여성 직원의 연수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GBV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안보적 사안이 있는가?
- 2)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FSA 관련 커뮤니티 기반 활동(예: 커뮤니티 식량 지원 또는 농업 재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가능한 경우 이들이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 3) 식량 지원 대응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에 중점을 둔 활동을 주류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 기준(본 지침 포함)에 대해 알고 있는가?

(계속)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문화 및 커뮤니티 규범과 관행

- 4) 인도주의 비상사태가 다양한 위험에 처한 집단이 식량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가구 내 식량 사용과 접근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 식량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있는가?
- 5) 피해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이며 인도주의 비상사태가 이러한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예: 축산을 위한 목초지 및 수자원에 대한 접근, 일일 이동 및 계절에 따른 이동, 천연 자원, 노동의 젠더 구분 등)?
 - 농업 생산, 어업, 임업 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 사용과 처분 권리를 포함한 가축 소유, 통제, 돌봄, 관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 농업 및 가축의 소유와 관리는 가구의 식량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6)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농경지, 급수장, 종자 및 농기구 배포 프로그램 또는 식량/현금/바우처 배급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문화적 규범이 있는가?
- 7) 천연 자원을 사용하는 여러 집단(예: 농부, 축산업자) 사이에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GBV 위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 위험이 있는가?
- 8) 학생을 위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보상의 위험(예: 장학식량(take-home ration)을 배급받은 경우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공격당할 위험)을 고려하는가?

신체적 안전 및 GBV 위험

- 9)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식품/자산 바꾸기와 계획된 농업 또는 축산 활동(예: 종자 또는 가축 배급)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가?
 - 지원 방식(예: 식량, 현금/현물, 바우처) 이 GBV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안되었는가?
- 10) 배급소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안전한가?
 - GBV 위험을 예방,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예: 물리적 장벽이나 별도의 배급 시간대를 통해 남성과 여성을 분리, 적절한 행동과 패널티에 관한 배급팀의 인식, 식품의 하역/등록/배급과 그 이후를 감독할 담당 여성 직원의 존재 등)?
 - 배급소는 분쟁 상황에서 분쟁 세력의 급습으로부터 보호되는가?
 - 배급소/작업장이 장애인(예: 신체적 장애, 부상, 시각 또는 기타 감각 손상 등)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인 편의³ 기준을 준수하는가?
- 11) 배급소, 일터, 농업 또는 축산 활동을 위해 오가는 길과 그 거리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안전한가?
 - 배급소를 오가는 길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접근 가능하며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이 자주 사용하는가?
 - 물, 연료, 농경지 및 배급소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안보 우려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과 함께 안전 도식화를 수행했는가?
- 12) 개입이 배급받은 식량 지원이 여성, 여아, 남성, 남아에게 줄 수 있는 부담을 줄여 주는가? (예: 식량 배급 장소가 가능한 한 주거지/조리 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가? 식량 패키지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다룰 수 있을 만한 크기와 무게로 되어 있는가? 배급 시간을 GBV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했는가? 상황이 허락한다면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식량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가?)
- 13) 보안 요원이 배급소, 농경지, 급수장, 장작 수집 현장 및 시장과 그 주변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지역을 순찰하는 시스템이 실행되고 있는가?
 - 이 시스템에 커뮤니티 출신 여성이 포함돼 있는가? 이들의 참여와 관련된 안보상의 위험이 있는가?
- 14) 배급 카드가 어떻게 발급되는가(예: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직접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 15) GBV 생존자만을 위한 현금, 바우처, 식량지원 취로사업(food for work),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있는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존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거나 다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계속)

³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4 정의'를 참조한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식량 안보 및 농업 정책

- 1)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FSA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통합돼 있는가?
 - 특히 GBV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는 FSA 정책, 기준 및 지침의 개발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이러한 정책, 기준, 지침에 관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과 소통했는가?
 - FSA 담당 직원은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2) 국가 및 지역의 FSA 부문 정책과 계획에 GBV 관련 위험 감소 전략이 포함돼 있는가?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 할당돼 있는가?
 - 취사용 연료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는가?
 -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FSA 부문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예: 커뮤니티 기반 집단의 담당 직원 등의)차별적인 관행을 다루고 있는가? 농업 다각화 및 축산 프로그램에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준이 있는가?
 - 천연 자원의 배분 및 보호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식량 안보 및 농업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 1) FSA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는가?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사안
 -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2) FSA 관련 커뮤니티 동원 활동이 일반적인 안전 및 GBV 위험 감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가?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이러한 정보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참여하는가?
- 3) FSA에 관한 토론회에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는가? 이러한 토론회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함에 따라(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자원 동원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은 FSA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GBV 관련 자원 동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비상사태 대비/긴급 자금이나 비상사태 후 복구/개발 자금을 요청할 때 특정 GBV 위험을 반영하고 대처 전략을 제안하면 제안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금 조달 이후

'자원 동원'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품 및 공여자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동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도적 부문/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 제시돼 있다.

A.

인도적 필요의 개요

- ▶ 가정 및 더 넓은 커뮤니티 내에서 식량 관리, 가축 관리 및 농업에 관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이 성별, 연령, 장애와 기타 관련 취약 요소별로 파악되고 구분되었는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관련 GBV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설명하는가?
- ▶ 'GBV'로 통칭하는 대신 GBV 위험을 특정 유형 (예: 식량을 얻기 위한 성관계, 성폭행, 강제/강압적 성매매, 아동 결혼과 강제 결혼,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 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 ▶ 비상사태 대비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정부, FAS 담당자, 커뮤니티 단체를 대상으로 GBV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FSA 프로그램의 안전한 설계와 이행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자료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로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가?
- ▶ 비상사태 대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GBV에 대한 노출을 완화할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가 (예: 식량 배급 장소와 시간대, 해당되는 경우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대상으로 배급 카드 제공, 식량 패키지의 크기, 배급소를 오가는 교통 지원 등)?
 - 전략이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식량 지원 부문 여성 직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가(예: 이동을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지원, 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 직원과 동행하도록 자금을 지원)?
- ▶ 비상사태 이후와 복구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프로젝트가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한 전략과 특정 유형의 GBV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관한 설명이 있는가(예: 생산을 늘리기 위한 농업 투입재 제공, 국가 및 지역 정책을 통해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토지에 접근하거나 가축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처하도록 보장, 가구와 커뮤니티에서 폭넓은 젠더 역할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생계에 대한 여성의 접근에 기여, 농장 활동에 여성이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반영돼 있는가?



C. 프로젝트 내용

- ▶ 제안된 활동에 GBV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이행 원칙 및 주요 접근법 (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 기반)이 반영돼 있는가?
- ▶ 제안된 활동이 자원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하는가?
- ▶ 프로젝트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촉진/지원하는가(FSA 담당 직원으로 참여, 농업 및 축산 관리에 참여 등)?



이행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FSA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GBV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표현된 필요, 확인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GBV 감소 전략을

식량 안보 및 농업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1.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모든 FSA 활동의 기획, 설계, 이행에 담당 직원 및 책임자로 참여하도록 한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FSA 프로그램 담당 직원 중 여성 비율이 50%가 되도록 노력한다. 여성 직원이 책임자급이나 교육직을 맡을 수 있도록 공식 및 직무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 여성(해당되는 경우 청소년기 여아)이 FSA 위원회와 운영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 ▶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을 FSA 부문 직원, 책임자, 교육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LGBTI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인 사람은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서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식량 지원은 이성 관계라는 가정에 기반할 수 있으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를 배제할 수 있다. LGBTI인 사람은 식량 또는 농업 투입재 배급 시 더 소외되거나 배급 대기줄에서 강제로 쫓겨날 수 있다. 식량 배급에서 배제되거나 식량 배급이 지연되면 LGBTI인 사람은 생존을 위한 성관계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강요받게 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식량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는 현지 LGBTI 단체 및 전문가와 상의하여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식량 지원이 LGBTI인 사람의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GBV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필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 인지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정보제공: 휴먼 라이츠 퍼스트(Human Rights First)의 던컨 브린(Duncan Breen),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5월 20일)



2. GBV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품 및 현금 기반 개입을 고안한다.

- ▶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이 알고 있고 명확하며 일관되고 투명한 배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원 대상자 등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을 대상으로 정책과 절차를 소개하기 위해 (서면, 그림, 구두로 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배급 및 지원과 관련된 GBV 위험(예: 배우자 사이에서 지원을 관리할 권한을 두고 싸우면서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악화, 식량과 농업 투입재 배급 이후의 성폭행에 대한 노출, 여성의 현금지원/ 식량지원 취로사업 참여에 대한 보복 공격 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식량 및 농업 투입재를 얻는 대가로 성관계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되는 식량이 권장 식사량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 ▶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식량 배급 카드 또는 농업 투입재 바우처를 지급하고 그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이는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특히 GBV 생존자가 배급소까지 오갈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방법(예: 보건소에서 일일권장식사량을 제공)을 고려한다.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존자가 더 배제되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 ▶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학교 급식 프로그램(장학식량(take-home ration) 등)과 해당되는 경우 현금/ 바우처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일부다처제 가구가 있는 상황에서는 각 부인과 그 자녀를 별도의 가구로 다루거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부인이 별도의 가족 단위로서 현금/식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모범 사례

2013년 중반부터 2014년 4월까지 말리의 UNICEF와 가톨릭구호서비스(Catholic Relief Services)는 바마코(Bamako)와 몹티(Mopti) 지역에서 식량 불안에 직면한 이재민 가족 및 수용 가족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해당 가구는 직접 지급 또는 전자 송금을 통해 현금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식량을 포함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건 없이 현금을 지원하고 식량과 성관계를 교환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대처 전략이나 기타 보호 위험을 줄이는 것이었다. 운영(예: 실제 현금 지원)이 복잡하기는 했지만 최종 평가 결과와 참여자 피드백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고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개선하고 위험한 대처 전략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 성공했으며 참가자들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원은 가구의 식량, 교육,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거주 상태, 투자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얻는 능력을 개선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했다.

(정보제공: 말리 GBV 하위 클러스터,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4년 9월 24일)





모범 사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은 병원에 입원한 성폭력 생존자에게 식량을 배급하여 이들이 쉬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한 센터의 관계자(남부 키부(Kivu)에 소재한 판지 병원(Panzi Hospital))는 이를 통해 치유 과정에서 중대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식량 지원을 통해 여성이 회복에 필요한 시간에 병원에 머물며 심리 상담 및 사회경제적 사안과 법률 사안에 관한 조언을 받고 수공예품 제작과 같은 새로운 기술도 배울 수 있었다. WFP는 생존자에게 소득 창출 및 그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식량지원 직업훈련(food-for-training)에 생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생존자를 지원하는 다른 방안도 모색했다.

(인용: World Food Programme of the United Nations. 2011. Enhancing Prevention and Response to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the Context of Food Assistance in Displacement Settings, internal publication, p. 10)

3. 농축산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식량 불안에 단계적으로 대처한다.

- ▶ 인도주의 대응 시 농업 생산량 및 다각화를 확대하는 개입을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노동 부담을 늘리지 않는 (또는 주요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지 않는) 적절한 축산 대응을 파악한다.
- ▶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현지에서 실행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 투입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예: 식품 생산, 공정, 준비, 저장에 관한 전문적 기술, 가축 유지 관리, 식품 마케팅 및 유통 등에 관한 교육).
-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농축산 자산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자산이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는 여성이 주식이 되는 곡물이나 작물보다 원예 작물과 가금류의 생산, 최종 판매,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

4. 식량 안보 및 농업 생계 활동과 관련된 안전을 강화할 전략을 이행한다.

- ▶ 식량 및 농업 자산 배급소로 안전하고 중심이 되는 장소를 선택하는 스피어(Sphere) 기준을 준수한다. 배급소를 오가는 길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접근 가능하며, 커뮤니티 내 다른 구성원이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안전 우려사항으로 인해 배급소로의 접근이 제한된 경우 보호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과 동행하고 순찰하거나 배급소와 경로에 대한 커뮤니티 기반 안전을 기획한다.
- ▶ 식량 및 자산 배급소의 설계와 배치 측면에서 다음을 통해 안전을 보장한다.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한 시간에 배급 일정을 세운다(예: 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낮시간 동안 배급이 시작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 식량 및 자산 배급소에서 배급을 실시하고 여성 친화적인 공간을 설치하는 동안 이행 기관에서 파견된 여성 직원이 상주하도록 보장한다.
 - 여성을 감시원으로 배치하여(조끼, 호루라기, 기관 로고 등 지급) 식량 및 자산의 하역, 등록, 배급과 배급 이후를 감독하도록 한다.





교훈

2013년 필리핀에서 태풍 하이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군은 외진 지역과 달리 접근할 방도가 없는 산간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헬리콥터로 구호 식량을 낙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식량 안보 및 농업 클러스터는 안전한 배급을 위해 지상에서 조정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옹호했다. 이러한 조정이 없으면, 말 그대로 식량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식량을 줌기 위해 사람이 몰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가장 많은 식량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로 인해 기존의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식량을 가진 사람에게 식량이 없는 사람을 착취할 빌미를 제공하여 성폭행 및 기타 GBV 위험이 커진다. 클러스터는 지상에 조정을 위한 팀이 있는 경우에만 식량을 공중에서 낙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정보제공: 필리핀 식량 안보 및 농업 클러스터,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4년 3월 22일)

- 필요한 경우 성별에 따라 별도의 배급소를 설치하고 이러한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GBV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보장한다(예: 여성 혼자 현장을 떠나는 것이 눈에 잘 띄는 경우).
- ▶ 식량 및 농업 자산 배급이 피해 인구에게 줄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입을 고안한다(예: 식량 배급 장소를 가능한 한 거주지/조리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배치, 식량 패키지의 무게가 여성/아동/장애인이 들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보장, 무거운 패키지를 운송할 전략 개발 등).
- ▶ 경작을 위한 농경지를 마련하는 경우 토지가 안전하고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는 혼자 일하거나 몇 명이 모여 일하는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을 하거나 농경지를 오가는 동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안전 보장 방식(예: 동행, 순찰, 안전한 경로 등)을 고려한다.

5. 프로그램에 취사용 연료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접근이 포함되도록 한다.

- ▶ 피해 인구나 협의하여 천연 자원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포함한 취사용 연료 접근 전략을 수립한다. 필요한 취사용 연료와 연관된 선호를 파악하고 존중한다.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식량 배급 시 취사용 연료 배급도 함께 시행한다.
- ▶ 학교와 치료식센터(therapeutic feeding centre) 또는 안정화센터(stabilization centre)에서 연료 효율이 높은 스토브의 사용과 연료 절약 조리법을 장려한다. 사람에게 연료 효율이 높은 스토브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취사용 연료 소비를 줄이는 스토브 활용 및 유지 관리 기술에 관해 교육한다.
- ▶ 여성이 가게 수입을 장작 판매에 의존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생계 프로그램과 대체에너지 프로그램의 연계하는 것을 고려한다.





모범 사례

2009년 WFP는 북부 다르푸르(Darfur)에서 장작 및 기타 취사용 연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로 여성이 직면하는 보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장작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접근(Safe Access to Firewood and alternative Energy, SAF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여성이 연료 효율적인 스토브와 숯을 만드는 33개 센터가 포함돼 있어서 여성이 장작을 모으고 숯을 사기 위해 자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됐다. 이로 인해 강간 및 기타 성폭행에 대한 노출이 줄었다. SAFE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이 소득 창출, 문해, 영양, 위생 개선과 커뮤니티 재조림(reforestation)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적 공간도 설치했다.

(인용: Pattugalan, G. 2014. 'Linking Food Security, Food Assistance and Protection from Gender-Based Violence: WFP's experience', Humanitarian Exchange Magazine, Issue 60, <www.odihpn.org/humanitarian-exchange-magazine/issue-60>)

GBV 감소 전략을

식량 안보 및 농업 정책에 통합하기

1. GBV 예방과 완화 전략이 FSA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지침에 포함되도록 한다.

- ▶ (1) GBV 위험을 줄이고 (2)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FSA 활동에 담당 직원과 지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FSA 담당 직원을 위한 보육 관련 정책
 - 여성에 대한 동등한 고용 기준
 - GBV 사고 관련 보호/비밀 정보의 공유에 대한 절차 및 규약
 - 성적 착취 및 학대 발생 시 신고, 조사, 징계 기관의 절차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를 FSA 담당 직원, 위원회, 관리 집단에 두루 배포하고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공용어 및 지역별 현지어를 사용하여 더 넓은 커뮤니티에 배포한다(점자, 수화, 비문해자를 위한 시각적 콘텐츠가 포함된 포스터, 커뮤니티 회의를 통한 안내 등 접근하기 쉬운 방법 사용).

2. GBV 위험 감소 전략을 식량 안보 및 농업 생계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 정책과 계획에 통합하기 위한 옹호 활동을 펼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금을 할당한다.

- ▶ 정부, 관습적/전통적 지도자, 기타 이해관계자가 국가 및 지역 정책 그리고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FSA 부문에 담당 직원이나 커뮤니티 자문관으로서 안전하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 ▶ 국내 FSA 부문 정책과 계획이 GBV 관련 조치(예: 취사용 연료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위한 정책, 농업 다각화와 축산 프로그램에서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를 촉진하는 계획, 천연 자원의 보호와 관련 기술 구축 등)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 ▶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개발 과정에서 관련 실무 부처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이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GBV 감소 전략을

식량 안보 및 농업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에 통합하기

1.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존자를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 체계(예: 위탁 경로)를 확인하고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 농촌지도사를 비롯한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FSA 부문 종사자가 GBV 생존자가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서면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한다.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농촌지도사를 비롯한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FSA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성 정체성,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해 교육한다(예: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FSA 부문 내부적으로 또는 더 큰 범위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의 협력기관과 함께 GBV 관련 보고를 공유하는 FSA 프로그램이 안전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생존자 개인과 가족의 신원이나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기관 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3. FSA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에 GBV 메시지를 통합한다.

▶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GBV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제고 활동을 FSA 아웃리치 이니셔티브에 통합한다(예: 커뮤니티 토론회, 워크숍,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회의, GBV 메시지 전달 등).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취사용 연료와 GBV의 연관성(예: 장작 수집, 배급받은 취사용 연료를 판매하거나 연료를 얻기 위해 위험한 대처 행동 개발)에 관한 워크숍과 캠페인을 통해 현지 커뮤니티, 피해 인구, 인도주의 협력기관의 인식을 제고한다. 안전한 선택권과 전략에 관한 토의와 연구 개발을 장려한다.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 및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를 사용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탁 경로

‘위탁 경로’는 GBV 생존자를 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의 도움, 법률/사법 지원 등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연한 메커니즘이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관련 메시지 전달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통해 GBV와 관련된 사람 등 피해 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우려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GBV 전문가가 아니라면 GBV 전문가나 GBV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메시지 개발 및 메시지 전달 전략 수립 과정에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가 참여하도록 하여 메시지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를 GBV 예방 관련 FSA 아웃리치에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시킨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커뮤니티 토론회 및 교육 워크숍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예: 교통, 회의 시간과 장소, 참여와 관련된 반발의 위험, 육아 지원의 필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 참가자가 GBV 관련 사안을 편안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고려한 토론회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별도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을 이행한다.
- ▶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FSA 부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행동 강령 및 식량 및 농업 지원을 제공하는 담당 직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조정 과정의 첫 단계로, FSA 프로그램 담당자는 GBV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에서 GBV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GBV 전문가는 FSA 부문 행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식량 안보 및 농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GBV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식량 안보 및 농업 현황 파악을 설계 및 실시하고 FSA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한다.
- ▶ FSA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관련 사안에 관해 교육한다.
- ▶ FSA 담당 직원에게 GBV 피해 사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생존자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FSA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다.
- ▶ 식량 안보 및 농업 개입과 관련이 있는 젠더, GBV, 여성의 권리, 인권 사안에 대해 피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FSA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 연계하여 GBV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부문(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부문)과의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다음 표에 제시돼 있다.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FSA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영국 및
미국
사람들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CCCM)

▶ 안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배급소의 장소, 배치, 배급 시간과 현금지원/식량지원 취로사업에 관해 CCCM과 조정

교육

▶ 위험에 처한 여아와 남아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해 학교 급식 및 식량 패키지를 제공하도록 교육 부문 행위자와 협력

보건

▶ 병원에 입원한 GBV 생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식량 배급 전달 시간대를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보건 부문 행위자와 상의
▶ 기반 시설이 파괴된 지역에서 식량지원 취로사업 이니셔티브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병원 및 보건의로 센터의 재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 판단

주택, 토지 및
재산(HLP)

▶ 다음을 위해 HLP 부문 행위자와 협력

- FSA 목적의 토지 활용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감소(예: 식량 배급소 또는 농축산 프로그램을 위한 경우 등)
- 농업을 통해 식량 불안에 대처하는 경우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토지 보유 권리 증진

생계

▶ 다음을 위해 생계 부문 행위자와 협력

- 식량 안보 관련 생계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가장 긴급한 농업 관련 시장 수요를 확인(예: 농사, 현금 작물 재배 및 판매, 가축 사육 등)
- 식량활용 생계지원사업(food-for-assets)과 식량지원 취로사업(food-for-work) 프로그램을 통해 식량 불안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 제시
- 장작의 수집 및 판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소득 창출 활동을 파악

영양

▶ 다음을 위해 영양 부문 행위자와 협력

- 해당되는 경우, FSA 현황 파악에 위험에 처한 집단의 영양 필요가 통합되도록 보장
- GBV 생존자, 특히 치료식센터 또는 안정화센터로 이동할 수 없는 생존자를 위한 영양 지원을 제공할 혁신적인 방법을 판단

보호

▶ 다음을 위해 보호 부문 행위자와 협력

- FSA 개입과 연결된 GBV 동향을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기 위한 지원 요청
- 개인 신원 증명의 미비로 인해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현지 분쟁의 이해(예: 급수장과 목초지가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
- 안보 문제로 배급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 및 순찰

쉼터, 정착 및
복구(SS&R)

▶ 스토브와 취사용 연료를 SS&R 부문 행위자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 이들과 협의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취사용 스토브와 안전한 연료 선택권을 제공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

▶ 요리, 농경지, 가축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WASH 부문 행위자와 협력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식량 안보 및 농업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FSA) 부문에서 수행하는 현황 파악에 GBV 관련 질문을 포함 ⁴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관련 질문*이 포함된 FSA 부문 현황 파악의 수} \times 100}{\text{FSA 현황 파악의 수}}$ <p>* 현황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GBV 주제별 질문은 123 페이지 참조</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또는 툴	100%	✓	✓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	$\frac{\text{현황 파악 응답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응답자의 수}}$ <p>및</p> $\frac{\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50%	✓	✓	

(계속)

⁴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30 November 2012.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ASC Transformative Agenda Reference Documen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4.%20Reference%20module%20for%20Cluster%20Coordination.pdf>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계속)						
FSA 활동의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와 상의⁵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별도로 상의	<p>양적 방법: FSA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와 상의한 FSA 활동*의 수 × 100</p> $\frac{\text{상의한 FSA 활동*의 수} \times 100}{\text{FSA 활동의 수}}$ <p>질적 방법: FSA 활동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해 인구가 겪는 GBV 관련 위험 요인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상품 및 현금 기반 개입과 농업 및 축산 프로그램을 포함한 FSA 활동</p>	해당 조직의 기록물,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 주요 정보원 인터뷰 (Key Informant Interview, KII)	100%		✓	✓
프로그램 설계 이전의 여성 참여⁵	<p>양적 방법: 프로그램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 중 여성의 수 × 100</p> $\frac{\text{프로그램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의 수}}{\text{프로그램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 <p>질적 방법: 여성 및 여아는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자신들의 참여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설계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p>	해당 조직의 기록물, FGD, KII	현장에서 결정			✓
GBV 생존자 위탁 경로에 대한 직원의 지식	<p>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생존자 위탁 경로를 올바르게 답한 FSA 담당 직원의 수 × 100</p> $\frac{\text{설문조사에 응답한 FSA 담당 직원의 수}}{\text{설문조사에 응답한 FSA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	설문조사	100%	✓		✓

자원 동원						
GBV 위험 감소를 FSA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에 포함	<p>GBV 지침에 나온 GBV 위험 감소 목표, 활동 또는 지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FSA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 100</p> $\frac{\text{FSA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text{FSA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times 100$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제안서 검토	100%		✓	✓
GBV 지침에 관한 FSA 담당 직원 교육	<p>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FSA 담당 직원의 수 × 100</p> $\frac{\text{FSA 담당 직원의 수}}{\text{FSA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	100%		✓	✓

(계속)

⁵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 <www.humanitarianresponse.info/applications/ir/indicators>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

▶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FSA 관련 위원회에서의 여성 참여 ⁵	<p>양적 방법:</p> $\frac{\text{커뮤니티 기반 FSA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 피해 인구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커뮤니티 기반 FSA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 피해 인구의 수}}$ <p>질적 방법: 여성은 커뮤니티 기반 FSA 관련 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참여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FSA 관련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p>	현장 관리 보고서, 이재이주 추적 매트릭스, FGD, KII	50%		✓	✓
FSA 활동의 담당 여성 직원	$\frac{\text{FSA 활동 담당 직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FSA 활동 담당 직원의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50%	✓	✓	
상품 또는 현금 기반 개입의 GBV 위험 요인	<p>양적 방법:</p> $\frac{\text{상품·현금 기반 개입 참여에 대한 질문에 GBV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상품·현금 기반 개입 참여에 대한 질문을 받은 피해 인구의 수}}$ <p>질적 방법: 피해자가 상품·현금 기반 개입에 참여하는 경우 GBV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이러한 개입과 관련해 피해 인구가 말한 안전 우려사항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p>	설문조사, FGD, KII, 참여 커뮤니티 도식화	0%		✓	✓
여성 피해자에 의한 농업 투입재 또는 가축 통제	$\frac{\text{농업 투입재 또는 가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한 여성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의 수}}$	설문조사	100%	✓		✓
FSA 관련 배급소 내부와 인근의 GBV 위험 요인	<p>양적 방법:</p> $\frac{\text{FSA 관련 배급소에 관한 질문에 GBV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FSA 관련 배급소에 관한 질문을 받은 피해 인구의 수}}$ <p>질적 방법: 피해 인구가 말한 FSA 관련 배급소 내부 및 인근의 안전 우려사항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p>	설문조사, FGD, KII, 참여 커뮤니티 도식화	0%		✓	✓
연료·장작 수집을 위한 시간, 빈도, 거리의 변화	$\frac{\text{(종료선 조사에서 파악한 연료·장작 수집을 위한 시간/빈도/거리) - 기초선 조사에서 파악한 연료·장작 수집을 위한 시간/빈도/거리} \times 100}{\text{연료 또는 장작 수집을 위한 최종 시간/빈도/거리}}$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계속)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계속)

▶ 정책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FSA 정책, 지침 또는 기준에 포함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포함된 FSA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times 100}{\text{FSA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기관, 부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의) 문헌 검토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응답한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	100%	✓		
FSA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GBV 위탁에 관한 정보 포함	$\frac{\text{GBV 생존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교육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times 100}{\text{FSA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문헌 검토, KII,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다른 부문과 조정	$\frac{\text{GBV 위험 감소 활동*을 위해 상의한 비 FSA 부문의 수} \times 100}{\text{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비 FSA 부문의 수}}$ <p>* 부문별 GBV 위험 감소 활동 목록은 134 페이지 참조</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KII, 회의록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참고자료

주요 참고자료

- 비상사태 시 식량 안보, 식량 배급, 영양에 관한 프로그램의 젠더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2006.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Handbook%20%28Feb%202007%29.pdf>를 참조한다.
- **Sphere Project**를 참조한다. 2011.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www.spherehandbook.org>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2011.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0–2011: Women in agriculture – Closing the gender gap for development. FAO: Rome, <www.fao.org/docrep/013/i2050e/i2050e00.htm>
- **FAO**. 2012.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Rome, <www.fao.org/docrep/016/i2801e/i2801e.pdf>
- **FAO**. 2013. Governing Land for Women and Men: A technical guide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responsible gender-equitable governance of land tenure. Rome, <www.fao.org/docrep/017/i3114e/i3114e.pdf>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2. An Introduction to Cash-Based Interventions in UNHCR Operations. Geneva: UNHCR, <www.unhcr.org/515a959e9.pdf>
- **IASC Task Force on Safe Access to Firewood and alternative Energy in Humanitarian Settings**. 2009. 'Decision Tree Diagrams on Factors Affecting Choice of Fuel Strategy in Humanitarian Settings',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TF%20SAFE%20Matrix_FINAL.pdf>
- **IASC Task Force on Safe Access to Firewood and alternative Energy in Humanitarian Settings**. 2009. 'Matrix on Agency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Ensuring a Coordinated Multi-Sectoral Fuel Strategy in Humanitarian Settings',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TF%20SAFE%20Decision%20Trees_FINAL.pdf>
- **World Food Programme (WFP)**. 2012. Handbook on Safe Access to Firewood and Alternative Energy (SAFE), <www.wfp.org/stories/darfur-women-graduate-safe-stoves-project>
- **Pattugalan, G**. 2014. 'Linking Food Security, Food Assistance and Protection from Gender-Based Violence: WFP's experience', Humanitarian Exchange Magazine, Issue 60, <www.odihpn.org/humanitarian-exchange-magazine/issue-60>

추가 참고자료

- **글로벌 식량 안보 클러스터(Global Food Security Cluster)**. 클러스터는 인도주의 위기 시 식량 안보 대응을 조정하고 식량의 가용성, 접근 및 활용 사안에 대처한다. 이 사이트에서 다양한 참고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http://foodsecuritycluster.net>>을 참조한다.
- **FAO**. 2002.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01. FAO: Rome, <www.fao.org/docrep/003/y1500e/y1500e00.htm>
- **FAO**. 2005. Voluntary Guidelines to Support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Food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www.fao.org/docrep/009/y7937e/y7937e00.htm>
- **FAO**. 2008. Beyond Relief: Food security in protracted crises, <www.fao.org/docrep/015/a0778e/a0778e00.pdf>
- **WFP**. 2002. Emergency Field Operations Pocketbook, <<http://reliefweb.int/report/world/emergency-field-operations-pocketbook>>
- **WFP**. 2009. Emergency Food Security Assessment Handbook, second edition, <www.wfp.org/content/emergency-food-security-assessment-handbook>
- **WFP**. 2012. WFP Humanitarian Protection Policy, <<http://documents.wfp.org/stellent/groups/public/documents/eb/wfpdoc061670.pdf>>
- **WFP**. 2013. Protection in Practice: Food assistance with safety and dignity,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wfp254460.pdf>>
- **Women's Refugee Commission**. 장작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접근(Safe Access to Firewood and alternative Energy, SAFE)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어려운 상황에서 취사용 연료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안전하고 적절한 수단을 판단한다.
- **축산 비상사태 지침 및 기준(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LEGS)**. LEGS는 인도주의 위기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을 돕기 위해 축산 개입의 설계, 이행, 평가를 위한 일련의 국제 지침 및 기준을 담고 있다. LEGS는 생계 기반 개입의 적절성, 적시성과 실현 가능성을 증가하여 비상사태 대응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ww.livestock-emergency.net>
- **Maxwell D., Webb P., Coates J., and Wirth, J**. 2008. 'Rethinking Food Security in Humanitarian Response.' Paper presented to the Food Security Forum Rome, April 16–18, 2008. Tufts University and Friedman School of Nutrition Science and Policy and Feinstein International Center, <www.fanrpan.org/documents/d00523/Rethinking_food_security_Humanitarian_Response_Apr2008.pdf>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 Women),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Support Office (PBSO)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13. Women and Natural Resources: Unlocking the peacebuilding potential, <www.unep.org/disastersandconflicts/Introduction/ECP/WomenandNaturalResourcesinPeacebuilding/tabid/131156/Default.aspx>
- **HelpAge International**. 2012. Food Security and Livelihoods Interventions for Older People in Emergencies.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system/files/documents/files/Livelihoods-FINAL.pdf>>





보건

적용 대상

- 보건 조정 메커니즘
- 보건 부문 행위자(직원 및 책임자):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기반 기구(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등), 국제비정부기구(INGO), 유엔 기구
- 보건과 관련된 지역 위원회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예: 여성단체, 청소년/청년 단체, 노인 단체 등)
- 그 외 중앙 및 지방 정부, 커뮤니티 지도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보건 이해관계자

왜 보건 부문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보건 서비스는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생존자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때로는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활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존자가 보건 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예: 시설을 오가는 안전한 경로, 시설 내 충분한 조명,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진입점, 무료 서비스 등). 비상사태에서 활동하는 보건 제공자가 생존자를 위해 차별 없는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

많은 생존자는 부정적인 영향, 사회적 낙인, 파트너(배우자 등)/가족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폭력을 당했던 경험을 보건의로 제공자 (또는 다른 부문의 제공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미숙련된 보건의로 제공자는 폭력의 흔적을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생존자는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GBV 관련 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건 제공자가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의 커뮤니케이션 자료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거나

서비스가 모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보건 제공자가 GBV 공개는 존중, 공감, 비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암시한 경우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상사태는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는 보건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BV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것은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건강'의 정의

건강이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이며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현장의 전문. WHO 헌장은 1946년 6월 19~22일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보건회의(International Health Conference)에서 승인, 1946년 7월 22일 61개 회원국이 서명 [Official Record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no. 2, p. 100], 1948년 4월 7일 발표됨. WHO 현장 전문은 <www.who.int/governance/eb/who_constitution_en.pdf>를 참조)

필수 행동 요약표 참조



기회를 상실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의료 윤리 위배에 해당될 수 있다. 보건 의료 담당자가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돌봄, 즉 HIV에 대한 노출 후 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 PEP), 응급 피임, 성매개감염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STIs) 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생존자를 지원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 및 기타 서비스에 적절하게 위탁하는 것에 실패할 수 있다.

또한, 보건 의료 제공자가 생존자와 함께 일하기 위한 이행 원칙을 교육받지 않은 경우(예: 보건 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비밀 보장을 존중하지 않거나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생존자가 파트너, 가족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폭력을 당할 위험이 커진다.

비상사태의 최초 단계부터 보건 의료 시스템은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Minimum Initial Service Package, MISP) 기준에 따라 성폭행 생존자의 임상 치료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사태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건 부문 행위자가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임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예: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으로 인한 상해와 임신 합병증, 아동 결혼으로 인한 임신 및 어린 나이의 성생활 시작에 따라 발생한 건강 피해, 여성 할례(FGM/C) 관련 합병증 등). 일단 서비스가 수립되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돌봄의 혜택과 제공 장소에 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보건 서비스는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¹의 생명을 구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비상사태로 인한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보건 의료 프로그램이 안전성, 비밀 보장, 효과적인 설계, 민감성, 접근성(위치 및 물리적 접근), 우수한 품질을 보장하는 경우, 다음의 활동이 가능해진다.

- ▶ 생존자를 위한 즉각적인 돌봄을 촉진한다.
- ▶ 회복 과정을 시작한다. 회복 과정은 개별 생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 커뮤니티, 사회에도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다.

GBV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보건 부문이 이행해야 하는 행동은 GBV 전문가 및 기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 부문 행위자는 또한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문제를 다루는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조정' 참조)

¹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GBTI), HIV 보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미동반 아동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의 내용:

필수 보건 서비스—성 및 생식보건 기준 1: 생식보건

▶ 사람은 비상사태가 시작될 때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Minimum Initial Service Package, MISP)의 우선 생식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이 안정되면 포괄적인 생식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행동

- 다른 관련 부문 또는 클러스터와 협력하여 성폭력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임상 서비스의 이점과 이용 가능성에 대해 사람에게 알린다.

보건 체계 기준 2: 인적 자원

지침 안내 1: 인력 배치 수준

▶ 여성 보건 인력이나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 여성 또는 소수 민족의 보건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보건 체계 기준 5: 보건 정보 관리

지침 안내 4: 비밀 보장

▶ 개인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문이나 성폭행을 포함한 기타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 및 관련 데이터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서 다루어야 한다.

(Sphere Project. 2011.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www.sphereproject.org/resources/download-publications/?search=1&keywords=&language=English&category=22>)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

비상사태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Minimum Initial Service Package, MISP)를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 패키지는 기본적인 보건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하고 폭력이 생존자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MISP는 특히 여성과 여아의 질병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일련의 조정된 우선순위 활동으로 성폭력 예방 및 결과의 관리, 산모와 신생아의 질병과 사망 예방, HIV 전파 감소, 비상사태 초기의 포괄적인 생식보건 서비스 기획 등을 포함한다.

(MIS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omen's Refugee Commission website: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programs/reproductive-health/emergency-response/misp>> 참조)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현황 파악 과정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에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성폭행 관련 임상 치료를 포함한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Minimum Initial Service Package, MISP)를 이행해야 할 책임은 비상사태 중에 성폭행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식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MISP를 이행하기 위해 현황 파악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 대비/대응 시 GBV 관련 보건 관행, 필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GBV 관련 보건 현황 파악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해야 한다.

다음 목록은 보건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선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현황 파악은 가능한 한 보건 부문 행위자가 GBV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도 협력하여 부문간 및 학제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은 '이행' 아래 자세하게 설명된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과도 연관돼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하고 생존자 대응 서비스를 촉진 할 수 있도록 보건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하는 우선순위 및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주요 현황 파악 대상 집단

- 보건 부문 주요 이해관계자: 정부, 시민사회, 현지 및 종교 지도자, 커뮤니티 구성원, 보건 부문 관리자 및 담당 직원, 보건부 담당 직원, 보건의료 인력(외과의사, 간호사, 산파, 사회복지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관련 있는 보건 전문가, 커뮤니티 보건 담당자, 전통적인 출산 참석자, 전통 치료사 등), GBV/젠더/다양성 전문가
- 피해 인구 및 커뮤니티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의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보건 프로그램

참여 및 리더십

- 1) 보건 담당 직원은 연령, 젠더, 장애 관련 측면에서 다양성이 있는가?
 - 보건 제공 및 관리직 직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여성 직원의 연수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남성 보건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여성 생존자를 위해 비보건 여성 인력이 동행하도록 하는 임시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가?
- 2)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보건 서비스의 기획 및 감독과 관련된 커뮤니티 기반 활동(예: 커뮤니티 기반 보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가능한 경우 이들이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 3) 비상사태를 위한 보건 프로그램에서 대응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GBV 예방 및 완화에 중점을 둔 활동을 주류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 기준(본 지침 포함)에 대해 알고 있는가?

문화 및 커뮤니티 인식, 규범, 관행

- 4) 커뮤니티 구성원이 다음에 관해 알고 있는가?
 - 성폭력 및 기타 다양한 유형의 GBV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 GBV 관련 보건의료 치료를 받는 것의 혜택
 - GBV 생존자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5) 커뮤니티 구성원이 GBV 관련 보건 서비스를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가?
- 6) 생존자가 GBV 관련 보건의료에 접근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 정서적, 기타 장애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 사회적 낙인, 사생활 보호 또는 비밀 보장 결여, 언어 및 문화적 문제, 서비스의 이점이나 장소에 관한 정보의 부족, 시설을 오가는 이동, 비용 등)?
- 7)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생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협조자가 커뮤니티 안에 있는가(예: 산파, 여성단체, 가족 구성원, 종교 지도자)?

기반 시설

- 8) 강간 생존자에 대한 임상 치료(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포함)와 기타 유형의 GBV(예: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 여성 할례(FGM/C)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의료 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이들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가?
 - 진료소는 안전한 지역에 있는가? 진료소에 여성 경비원이 있는가?
 - 생존자가 비밀이 보장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이 의료 시설에 있는가?
 - 교육받은 직원을 주 7일 매일 24시간 만날 수 있는가?
 - 성폭행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돌봄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 장비, 관리 물품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
 - 보건 서비스 담당 직원이 돌봐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가?
 - 농촌 인구를 위한 이동식 진료소 선택권이 있는가?
 - 서비스가 장애인(예: 신체적 장애, 부상, 시각 또는 기타 감각 손상 등)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 편의² 기준을 준수하는가?
 - 커뮤니티와 보건 담당 직원, 기타 서비스 제공자(예: 변호사, 경찰, 생존자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자 등)가 이용할 수 있는 참조 문서(예: 서비스 목록)에 서비스 도식화가 포함돼 있는가?
- 9) 가능하다면 생존자가 커뮤니티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가 사회적 낙인을 찍지 않는 방식으로 (독립된 센터를 설립하는 대신) 기존 보건의료센터에 통합됐는가?

(계속)

² 보편적 설계와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4 정의'를 참조한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서비스

- 10) GBV 생존자의 의학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는 어떠한가? (예: HIV 예방을 위한 PEP, 응급 피임, STI 치료, 임신 중 돌봄, 낙태가 합법적인 경우 그에 대한 안전한 접근, 기본 정신건강 치료 등)
 - 추적 관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예: HIV에 대한 PEP 전체 과정 준수 보장, 지정된 간격으로 자발적 상담 및 검사, 필요 시 장기간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등)?
 - 보건 시설에 생존자에게 돌봄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받은 GBV 사회복지사가 있는가?
- 11) 성폭행 및 기타 유형의 GBV 임상 치료를 위해 기관별로 구체적인 정책 또는 규약이 실시되고 있는가?
 - 이러한 정책/규약이 윤리 및 안전 기준(사생활 보호, 비밀 보장, 존중, 비차별주의 및 사전동의)을 준수하는가?
 - 여기에 병력, 검사, 가능한 경우 법의학적 증거 수집, 치료, 위탁 및 보고, 임신 상담, 생존자 안전 계획,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기록 보관, 다른 부문 및 부문 행위자와의 조정이 포함돼 있는가?
 - 이러한 정책 및 규약을 간편하게 찾아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가? 담당 직원이 여기에 관해 알고 있는가?
 - 남성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돌봄 및 지원 제공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는가?
 - 특히 GBV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는 보건 정책, 기준 및 지침의 개발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12) 보건 시설에 GBV 생존자를 위한 위탁 경로가 실시되고 있는가(보안/경찰, 안전 쉼터,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법률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등)?
 - 이러한 제도가 안전한가(즉, 이러한 제도로 인해 생존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하지는 않는가)?
 - 위탁 제공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13) GBV 보고 및 위탁을 위한 기록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 현지어로 된 동의서, 의학진단서, 의학/법적 증명서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
 - 기록으로 남겨지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GBV는 무엇인가?
 - 기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기록이 비밀 보장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적절하게 암호화(예: 고유 식별 번호)되어 보관되고 있는가?
- 14) 보건 부문 행위자 간에 또는 보건 부문 행위자와 기타 다부문 서비스 제공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 공유, 조정, 피드백, 시스템 개선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모든 부문 행위자/기관이 서로의 활동에 관해 알고 있는가?
 - 서비스 제공의 격차와 문제는 어떻게 식별되는가?
 - 다부문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가 개발됐는가? 보건 부문 행위자가 여기에 서명했는가?
- 15) GBV 생존자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건의료 인력의 태도는 어떠한가(예: 응급 피임 및 낙태가 합법인 지역에서 이러한 조치에 관한 태도)? 이러한 태도가 제공되는 돌봄의 종류와 수준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
- 16) 전문 의료진(예: 생존자의 건강 검진을 수행하는 의사와 간호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이 지속적인 감독을 받으며 다음에 관해 교육을 받았는가?
 -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성폭행에 대한 치료
 - 비밀 보장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반하지 않고 환자를 추가적인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다양한 기타 유형의 GBV를 식별하고 치료하는 방법
 - 안전하고 윤리적인 위탁 경로를 제공하는 방법
- 17) 커뮤니티 보건 인력(전통적인 보건 제공자 포함)은 다음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가?
 - 다양한 유형의 GBV가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생존자에게 즉시 대응하는 방법
 - 안전하고 윤리적인 위탁 경로를 제공하는 방법

(계속)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보건 정책

- 1) GBV 관련 국가 및 지역 법률은 무엇인가?
 - 어떠한 유형의 GBV가 법률에 언급돼 있으며 이들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예: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 성폭행, 성희롱, 여성 할례(FGM/C), 아동 결혼 및 강제 결혼, 명예 범죄, 아동 성학대, 강제/강압적 성매매 등)
- 2) 성행위를 위한 법적 동의 연령은 몇 살인가? 여아와 남아의 법적 동의 연령이 다른가? 결혼 이외의 성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가? 이러한 법률 체제는 생존자가 돌봄에 접근하고 돌봄을 받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에 대한 응급 피임과 낙태가 합법인가? 이러한 법률 체제는 생존자가 돌봄에 접근하고 돌봄을 받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4) 성폭행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임상 치료와 위탁에 관한 국가 정책 및 규약이 실행되고 있는가(예: PEP, 응급 피임, 낙태/낙태 이후 돌봄, 문서 증거 요구, 아동 관련 법률 등)?
 - 이러한 정책 및 규약이 국제적인 윤리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가?
 - 관련 보건 담당 직원이 이러한 정책 및 규약에 관해 잘 알고 있는가?
- 5) GBV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정책과 계획은 무엇인가?
 - 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GBV 유형은 무엇인가?
 - 보건 부문이 어떻게 관여하는가?

보건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 1) 보건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가 GBV 위험 및 보호 요인에 관한 커뮤니티의 인식을 제고하는가?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를 위한 위탁 경로에 관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이러한 정보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이러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가?
- 2) 보건 관련 토론회에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는가? 이러한 토론회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함에 따라(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 교훈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는 케냐 다답(Dadaab)의 하가데라 난민 캠프(Haagadera Refugee Camp)에 보건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으며 생존자에게 대응하는 보건 시설의 역량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에는 생존자를 위한 사생활이 보호되는 상담실의 부재, 교육받은 직원의 부재, 물품 부족, 열악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었다. 생존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해당 보건 시설에 오게 되었는지 추적한 결과, 한 생존자가 여섯 곳의 시설을 거쳐서야 비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경우, 생존자의 비밀보장권과 사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GBV 사건 경험을 수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하므로 정신적 외상이 재발될 위험이 있다.

다답의 보건팀은 행동계획을 만들어 보건 담당자와 병원 관리자가 의료진 및 비의료진(경비원 등)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교육은 환자의 비밀 보장, 성폭행에 대한 인식제고, 생존자에 대한 태도 개선, 직접적인 환자 돌봄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 행동 계획에 따라 보건팀은 동의서, 검사에 필요한 물품, 환자 정보 등 누락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위탁 데이터베이스와 예약 카드를 개발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획의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 계획별로 전담 직원과 목표 달성일을 지정했다.

그 결과, 이제는 생존자가 사생활이 보호되고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규약이 이용 가능할 뿐 아니라 전시돼 있으며, 교육받은 담당 의사가 대기하고 있다. 생존자를 위해 사생활이 보장되고 안전하며 필요한 기기가 갖춰진 방을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의약품과 물품은 한 장소에 보관돼 있으며, 잠금장치가 있는 기록 보관용 파일 캐비닛이 마련돼 있어서 환자 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은 같은 센터에서 제공되며 다른 심리사회 및 법률 서비스에 대한 위탁 네트워크가 확립돼 있으며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연락처가 게시돼 있다.

(인용: Smith Transcript. 2011. Johns Hopkins Training Series, <<http://moodle.ccghe.net/course/search.php?search=GBV>>)





자원 동원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은 보건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GBV 관련 자원 동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비상사태 대비/긴급 자금이나 비상사태 후 복구/개발 자금을 요청할 때 특정 GBV 위험을 반영하고 대처 전략을 제안하면 제안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MISP에서 성폭력 예방 및 관리를 질병,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장애, 사망을 예방하는 구명 활동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MISP는 중앙긴급대응기금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의 구명 기준을 충족하며 보건 의료 프로그램을 위해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금 조달 이후

'자원 동원'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품 및 공여자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동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도적 부문/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 제시돼 있다.



A. 인도적 필요의 개요

- ▶ 보건의로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 인구의 GBV 관련 안전 위험, 보호 필요 및 권리가 제안서에 명시돼 있는가?
- ▶ 'GBV'로 통칭하는 대신 GBV 위험을 특정 유형(예: 성폭행,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가정 폭력, 여성 할레(FGM/C), 아동 결혼 등)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 ▶ 비상사태 대비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성폭행 임상 치료를 위한 합의된 정책과 규약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전략이 있는가? 기타 유형의 GBV도 포함되는가?
 - 정부, 보건 시설 담당자, 커뮤니티 보건 담당자 (전통적인 산파 및 전통적인 치유자 포함)를 대상으로 이러한 규약에 관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전문 담당 직원을 사전에 배치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물품(예: PEP 키트, 의약품,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단막 등)을 사전에 배치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자료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로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가?
- ▶ 비상사태 대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보건 프로그램이 어떻게 GBV 생존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와 필요에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가? (기반 시설, 인적 자원, 규약 및 정책, 성폭행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임상 치료 이행 등)
 - 격차를 좁히기 위해 비상사태 대응팀을 동원해야 하는가?
 - 보건 부문 여성 직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가(예: 이동을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지원, 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 직원과 동행하도록 자금을 지원)?
- ▶ 비상사태 이후와 복구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보건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존자의 건강 및 안전 필요를 충족하고 특정 유형의 GBV를 줄이는 지속 가능한 전략에 기여할 것인가에 관한 설명이 있는가?
 -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반영돼 있는가?

C. 프로젝트 내용

- ▶ 제안된 활동이 GBV를 다루기 위한 이행 원칙 및 주요 접근법(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 기반)을 반영하는가? 이들이 생존자를 위한 임상 치료 제공에 관한 윤리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하는가?
- ▶ 프로젝트에서 GBV 생존자에게 안전하고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적절한 물품 및 직원을 갖추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두는가? 프로젝트가 성폭행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조기 신고를 촉진하는가? 생존자가 물품과 후속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니터링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가?
- ▶ 프로젝트가 커뮤니티 기반 보건 체계 및 구조를 촉진하고 지원하는가? 프로젝트가 GBV 생존자와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이러한 구조 안에서 참여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는가?
- ▶ GBV의 근본 원인과 유발 요인에 대처함으로써(예: 예방을 목표로 한 보건 교육을 통해) 환경을 변화 또는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 있는가?





이행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보건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GBV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필요, 식별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야 한다.

GBV 예방 및 대응을

보건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1.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보건 프로그램의 설계 및 제공에 참여시킨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의료직, 비의료직, 관리직, 교육직에 여성을 고용하여 보건 프로그램 및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의 모든 측면에서 젠더 균형을 보장하도록 한다. 여성 직원 책임자급이나 교육직을 맡을 수 있도록 공식 및 직무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 여성(해당되는 경우 청소년기 여아)이 현지 보건 위원회와 커뮤니티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 ▶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을 보건 부문 직원, 책임자, 교육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2. GBV 관련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는 보건 및 생식보건 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 보건 시설 및 그 주변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조명 설치, 시설 내 여성 경비원 고용, 잠금장치가 있는 성별로 분리된 화장실 및 샤워 시설, 생존자가 시설을 오가는 길에 안전하고 도움이 되며 비밀이 보장되는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보건 담당자와 협력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 GBV 관련 서비스 비용을 낮추거나 무료로 한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가사 노동 및 학교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편한 시간을 운영 시간으로 정한다. 가능한 경우 성폭행에 대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하여 시설의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한다.
 - ▶ 가능한 경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성의 보건 담당자가 있도록 보장한다. 생존자 돌봄에 관한 이행 원칙을 교육받은 번역사 및 수화 통역사를 배치한다.
 - ▶ GBV 서비스를 기존 시설(특히 1차 보건의료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통합할 것인지 독립된 센터로 설립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생존자가 눈에 띄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 문제에 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 ▶ 외진 지역을 위한 이동식 진료소를 도입한다.



-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보건 공무원과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GBV 관련 보건 서비스 목록을 취합한다. 커뮤니티와 보건 담당 직원, 기타 서비스 제공자(생존자 돌봄에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자, 변호사, 경찰 등)가 이 목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비상 연락망을 수립하여 주 7일 하루 24시간 직원을 배치하고 공공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홍보한다. 이를 통해 보건 비상사태 대응을 더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피해 공개를 망설이는 생존자에게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제공한다.

3. 보건 시설에서 생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료의 질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이행한다.

- ▶ 보건 시설이 성폭행 생존자의 임상 치료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갖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보건 시설이 관련 국가 및 지역 규약과 승인된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다음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도록 보장한다.
 - 신체검사를 하기 전에 사전동의³를 받는다.
 -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를 제공한다(예: HIV 노출에 대한 PEP, 응급 피임, STI 예방 및 증후군 치료, 상처 및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 치료, 임신 상담).
 - 심리적 응급 처치와 생존자 중심의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돌봄을 제공한다(지역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고 혜택과 부작용을 모니터링한다).
 - 현지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상을 문서화하고 최소한의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한다(생존자가 동의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역량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즉각적인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생존자와 함께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에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된 방식으로 위탁한다(예: 보다 장기 적이거나 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후속 돌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및 위탁 현황(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 안보, 법률, 커뮤니티 기반 지원에 위탁)을 주의 깊게 서면 기록으로 보관한다. 생존자가 고소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위해 문서화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생존자가 사전동의를 한 경우, 생존자를 대신하여 관련 보건, 사회, 법, 안보 기관과 함께 옹호한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생존자가 요청한 경우 이러한 기관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 ▶ 다양한 위험에 처한 집단(예: 아동 생존자, LGBTI 생존자, 장애인 생존자 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고려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트랜스젠더

사회적 낙인과 소외로 인해 트랜스젠더 여성, 트랜스젠더 남성 및 기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폭력을 당할 위험이 특히 크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건의로 시설에서 더 심각한 차별, 괴롭힘, 폭력을 당할까봐 돌봄이나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보건 프로그램은 모든 트랜스젠더와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성 및 생식 보건의로 등 필요한 모든 보건의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건 부문 행위자는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이 폭력을 경험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보건 담당 직원이 모든 트랜스젠더 생존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transequality.org>를 참조한다.)

³ 사전동의에 관한 설명은 '부록 4'를 참조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비밀 보장

사생활 보장권은 국제인도법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여기에는 개인의 생식보건, 성생활 또는 섹슈얼리티, 모든 GBV 사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따라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비스 제공자 및 그 외 담당자는 이러한 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보건으로 환경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정보가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를 돌보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장권에는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나 보건 시설에 동행한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환자의 허락 없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해 논의하는 경우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비밀 보장 위반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커뮤니티의 거부, 폭력/폭력 위협, 서비스 접근 시 차별적인 대우 등 해당 개인과 관련된 심각한 보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을 명심한다.

- GBV 사건을 포함하여 건강 또는 생식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의 비밀 보장은 항상 지켜져야 한다.
- GBV 사건을 포함하여 건강 또는 생식보건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데이터 수집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동의를 해야 한다.

보건으로 환경에서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는 아동에게도 해당된다. 아동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가 아동의 동의 없이 제3자(부모 포함)에게 공개될 수 없지만, 이러한 공개 여부는 물론 아동의 연령 및 성숙도,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전제로 한다.

(인용: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Reproductive Health in Crises**. 2010. Inter-Agency Field Manual on Reproductive Health in Humanitarian Settings: 2010 revision for field testing, p. 66, <<http://iawg.net/resource/field-manual>> 아동 생존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 비밀 보장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2.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Guidelines for health and psychosocial service providers in humanitarian settings, <www.unicef.org/protection/files/IRC_CCSGuide_FullGuide_lowres.pdf> 참조)

- ▶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생존자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실과 진료실을 설치한다.
- ▶ GBV 관련 돌봄을 위해 보건 시설에 적절한 물품을 갖춘다.
 - 성폭행,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으로 인한 부상과 임신 합병증, 아동 결혼과 어린 나이의 임신으로 인한 생식보건 사안, 여성 할레(FGM/C)와 관련된 건강 문제 및 기타 GBV 관련 임상 치료를 위해 충분한 양의 의약품, 물품과 기기를 보유한다.
 - 아동을 위해 상담실에 장난감을 구비한다.
 - 현지어로 된 동의서, 의학진단서, 의학/법적 증명서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입원 환자 중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생존자를 위해 간병(예: 식사, 목욕, 화장실 갈 때 도움 등)을 제공한다.
- ▶ 보건 시설 내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방식을 수립하고, 확실한 비밀 보장 및 의학적 기록 저장을 위해 사건 파일의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문서화하도록 보장한다.
- ▶ 생존자를 위한 후속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후속 서비스에는 생존자의 HIB에 대한 PEP 전체 과정 준수 여부를 추적, 지정된 간격에 따른 자발적 상담 및 검사, 필요한 경우 장기적인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장애인

장애인의 입원, 치료, 퇴원을 위한 절차를 조정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 담당 직원이 장애인 생존자와 커뮤니케이션하거나 이들을 돌보기 위해 제3자(예: 수화 통역사)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 생존자의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모든 제3자는 생존자와 함께 일하기 위한 이행 원칙을 교육받아야 하며 비밀 보장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 보건 및 커뮤니티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는 경사로, 난간, 장애인용 화장실, 들것과 같은 의료 장비를 갖춰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제나 격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이나 부상자에게 지원/보조 기구(예: 목발, 휠체어, 삼륜 휠체어, 보청기, 교정기, 보철 기구)를 제공해야 한다.
- 보건 및 예방 메시지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예: 큰 글자,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
- 보건의료 및 커뮤니티 담당 직원은 장애를 배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장애에 따라 나누어진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건의료 담당 직원은 부상, 질병 또는 폭력으로 인한 장애 및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보제공: 핸디캡 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2월 7일)

4. 교육, 지원, 감독을 통해 보건 제공자로부터 생존자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 ▶ 모든 보건 시설 담당 직원 (행정직, 안보 경비, 접수원 등 포함)과 커뮤니티 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생존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섹슈얼리티,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해 교육한다. 민감성 교육을 통해 여성 및 남성 생존자에 대한 윤리적인 돌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직원의 차별적인 태도에 대처한다. 모든 보건 담당 직원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행동 강령을 이해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 ▶ 생존자 돌봄과 관련하여 명확한 책임이 있는 특정 제공자를 지정하고 교육(예: 부상자 분류, 임상 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위탁 등)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아동 및 청소년 생존자

보건 시설 및 보건 제공자는 아동 및 청소년 생존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돌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권리와 필요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 연령의 여아(또는 결혼하지 않은 여아)는 생식보건 서비스를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보건 센터 내 생식 보건과 관련된 곳에 여아가 있는 경우 눈에 쉽게 띄고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익명성, 비밀, 접근성을 침해한다.

아동 및 청소년 생존자를 인터뷰하고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아동 발달 및 성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다.
- 창의적인 방법(예: 게임, 인형, 스토리텔링, 그림 그리기)을 활용하고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언어와 용어를 사용한다.
- 적절한 경우 아동/청소년을 믿고 지원하며 정상 생활 복귀를 도와줄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킨다.

(아동 생존자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동 보호에 관한 주제별 지침을 참조. 추가 참조: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2.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Guidelines for health and psychosocial service providers in humanitarian settings**, <www.unicef.org/protection/files/IRC_CCSGuide_FullGuide_lowres.pdf>)



- 높은 이직률을 감안하고 한 명의 지정된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기 위해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자 인력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GBV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배려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돌봄을 위한 특정 규약에 관해 전문적인 보건 제공자(즉, 생존자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의사와 간호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 보건 의료 제공자가 GBV 사건을 다루는 관련 법률과 정책을 숙지하고 있도록 보장한다(예: 낙태법, 사법 정의를 추구하는 절차, 경찰과의 교류, 경찰서의 문서 양식, 의무신고법, 법정 증언 등).
 - 가능하다면 보건 시설에 GBV 사회복지사를 담당 직원으로 두어 생존자를 돌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 보건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기타 다양한 유형의 GBV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한다(예: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폭력/학대 경험에 관해 체계적으로 질문하는 방법). 보건 시설에서는 보건 제공자가 다양한 유형의 GBV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충분한 교육 이력과 경력이 있고, 환자의 사생활, 안전, 비밀을 보장하며, 식별 과정에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감독을 받는 경우에만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여성 할례(FGM/C)

생식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여성 할례(FGM/C)를 받은 여성에 대한 인터뷰 및 신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정보, 상담, 지원, 치료, FGM/C 합병증의 추가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은 비밀과 사생활이 보장되며 비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FGM/C 유형 III(음부봉쇄술)이 흔한 환경에서 보건 제공자는 필요한 경우 봉쇄된 음부를 열거나 이러한 수술을 언제 어디에 위탁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보건 제공자는 FGM/C를 철폐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의 공통된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현지 이해관계자(특히 여성 NGO 및 전문 기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인용: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Reproductive Health in Crises**. 2010. *Inter-Agency Field Manual on Reproductive Health in Emergencies*, <iawg.net/resources2013/tools-and-guidelines/field-manual>)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남성 생존자

모든 의료진은 남성 성폭행 생존자를 민감하고 능숙하게 대할 직업적·윤리적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의료진은 남성 성폭행이 실제로 발생하며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한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성학대나 강간을 나타내는 신체적 징후가 있는 경우 의료진은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남성 생존자를 조사하고 상담하며 치료 및 위탁을 해야 한다. 남성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강간과 관련된 신체적인 부상이 없더라도 의료진은 성폭행과 관련된 다른 행동적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불안, 수면 장애 및 악몽, 침입자에 대한 두려움, 설명하기 어려운 분노, 성 관련 문제,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낮은 자존감, 눈을 맞추는 것을 피하는 행동과 같은 징후는 성폭행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의료진이 남성 환자의 행동에서 이러한 '위험 신호'를 많이 발견한 경우 개방형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환자의 반응에 따라 보다 직접적인 추가 질문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에 필요한 질문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의료진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인용: **Yeager, J., and Fogel, J.** 2006. 'Male Disclosure of Sexual Abuse and Rape', *Topics in Advanced Practice Nursing eJournal*. 2006;6(1). 자세한 정보는 <www.medscape.com/viewarticle/528821> 참조)



- ▶ 보건의료 담당자와 다부문 시스템(경찰, 법조계 등) 제공자 사이의 조정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차 교육을 실시한다.
- ▶ 보건의료 담당자가 생존자와 함께 일하는 데서 오는 감정적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 '번아웃(burn-out)' 문제를 다룰 기회를 제공한다.

5. 위기의 최초 단계를 넘어 지속 가능성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보건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 ▶ 비상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생존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보건 서비스 재건, 의사/간호사/산파/기타 보건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과과정에 성폭행 및 기타 다양한 유형의 GBV에 관한 임상 치료 내용을 포함, 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더 자주 집중 교육을 제공, 장기적인 공급 관리 전략 개발, 의료 관련 법적 증거 수집을 위한 규약 개선 등이 포함된다.

GBV 예방 및 대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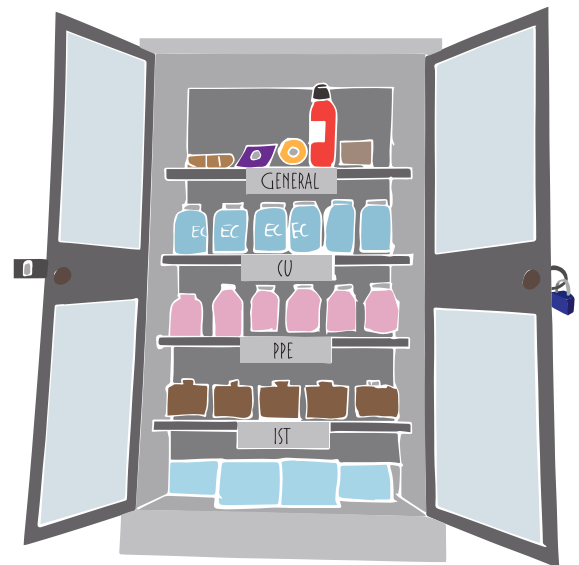
보건 정책에 통합하기

1. 생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생존자를 배려하는 양질의 돌봄 및 다부문 지원을 위한 위탁 경로를 보장하기 위해 GBV 관련 보건 프로그램을 위한 규약과 정책을 개발하거나 표준화한다.

- ▶ 성폭행 생존자의 임상 치료에 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합의된 규약을 수립한다.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아동 결혼, 여성 할례(FGM/C)와 관련된 보건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규약을 수립한다. 이러한 규약이 널리 보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존자를 추가적인 서비스(예: 법적/사법 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 서비스 등)에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된 방식으로 연계하는 표준화된 돌봄 시스템(즉, 위탁 경로)과 절차(예: 표준운영절차)를 개발하고 제도화한다. 이러한 시스템과 절차를 현지의 주요 보건 부문 행정가와 제공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보건 부문 종사자가 생존자를 위탁할 장소에 관한 서면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한다. 위탁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2. GBV 생존자 또는 GBV 위험에 처한 집단이 양질의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국가 및 지역의 법률 및 정책의 개혁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금 할당을 위해 옹호한다.

- ▶ GBV 생존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옹호한다. GBV 우려사항을 통합한 국가적 행동 계획(예: 보건 전략)의 개발 및 이행을 위해 중앙 및 지방 당국, NGO, INGO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지원한다.



- ▶ 생존자가 양질의 돌봄(예: PEP 접근, 응급 피임 관련 정책, 낙태 후 관리에 관한 법률, 강간의 정의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GBV 관련 법률(관습법 포함), 법의 정의, 정책을 검토하고 개혁하는 것을 지원한다.
- ▶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개발 과정에서 관련 실무 부처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이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 ▶ 다양한 유형의 GBV에 대한 보건의료가 의대 교과과정과 보건 관련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건 관련 실무 부처 및 기타 핵심 이해관계자와 협력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이중 의무와 GBV

두 가지의 윤리적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국제 기준과 윤리적 원칙에 따르면 고문이나 학대에 관한 정보를 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보고가 법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환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다른 대상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가해질 보복의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 전문가는 환자와 사회 전반에 대해 두 가지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학대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는 '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기본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보건 전문가는 환자의 비밀보장, 안전, 안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가 의료협회나 비정부기구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조언을 구해야 한다. 생존자는 자신의 비밀 정보를 관련 당국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강제나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위임을 받은 모든 보건의료 제공자는 생존자와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이러한 위임 사항에 대해 생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중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orld Medical Association. 2009. Medical Ethics Manual**, <www.wma.net/en/30publications/30ethicsmanual/pdf/ethics_manual_en.pdf> and the **Istanbul Protocol**, <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training8Rev1en.pdf> 참조. 추가 정보: **Physicians for Human Rights and University of Cape Town. 2002. Dual Loyalty and Human Rights in Health Professional Practice: Proposed guideline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https://s3.amazonaws.com/PHR_Reports/dualloyalties-2002-report.pdf>)

GBV 예방 및 대응을

보건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에 통합하기

1. 보건 부문 내부적으로 또는 더 큰 범위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에 속한 협력기관과 함께 **GBV 관련 신고를 공유하는 보건 프로그램이 안전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 생존자 개인과 가족의 신원이나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기관 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국제 젠더 기반폭력 정보관리시스템(Gender-Based Viole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GBVIMS)의 활용을 고려하고 GBVIMS와 기존 보건 정보관리시스템(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⁴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⁴ GBVIMS는 GBV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 보건 시스템이나 기타 국가 정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GBVIMS는 여러 부문별 행위자가 다양한 접근법과 틀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 데이터 수집이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gbvims.com>을 참조한다.



2. 보건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에 GBV 메시지를 통합한다.

- ▶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보건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설계하고 GBV 관련 정보를 통합(예: 커뮤니티 토론회, 워크숍,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회의, 보건 메시지 전달 등)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GBV 위험과 유발 요인, 희생자 비난/거부/격리, 여성과 남성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성폭행에 대한 즉각적인 돌봄의 중요성, 다부문 서비스, GBV 예방 메시지 전달, 서비스 제공 과정과 커뮤니티 내 비밀 보장 등 생존자 권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한다.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 및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를 사용한다.
 - 메시지 개발 및 메시지 전달 전략 수립 과정에(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가 참여하도록 하여 메시지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 ▶ 보건 아웃리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섹슈얼리티, 심리적 응급 처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교육한다(예: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 남성과 청소년기 남아를 대상으로 성폭력이 남성 및 여성 모두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생존자가 돌봄을 받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GBV 관련 예방 노력 및 생존자가 돌봄을 받을 권리를 증진하는 데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시킨다.
-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커뮤니티 아웃리치와 토론회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예: 교통, 반발 위험, 육아 책임 등)에 대처할 전략을 개발한다. 참가자가 GBV 관련 사안을 편안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론회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을 이행한다.
- ▶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보건 부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행동 강령 및 보건 부문 종사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서비스에 관해 커뮤니티에 알리기

생존자를 위한 보건 서비스가 수립되면 제공자는 커뮤니티에 GBV를 당한 이후 해야 할 일, 보건의료의 혜택, 서비스 장소, 요일, 시간에 관해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된 그림 템플릿을 <<http://iawg.net/resource/template-g>>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템플릿은 현장 검증을 거쳐 제작된 것으로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절하도록 수정하고 기관의 로고와 서비스 장소, 요일, 시간에 관한 정보를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GBV 전문가가 아니라면 GBV 전문가나 GBV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모범 사례

북부 다르푸르(Darfur)의 임상 담당 직원은 응급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on, EC)과 함께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돌봄이 주는 혜택과 이용 안내를 담은 MISP 조정관이 개발한 전단지를 마을 산파에게 배포했다. MISP 조정관은 북부 다르푸르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지휘관에게 모든 강간 생존자를 현지 클리닉에 위탁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라고 공지했다. AU 민간 경찰(AU civilian police, CIVPOL) 순찰대 역시 이러한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MISP 조정관은 CIVPOL 구성원과 강간 생존자의 임상 치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회의를 실시했고, 전통적인 산파는 커뮤니티에 성폭력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부 다르푸르에서 산파는 성폭력 보호 연락관으로 확인됐다. 국내 이재민 여성은 이러한 연락관에게 비밀이 보장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며 연락관은 이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했다. 남부 다르푸르의 여성 보건팀은 성폭력 생존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즉시 캠프 내 여성센터를 설치했다. 이러한 센터는 여성과 여아를 위해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성폭력 생존자에게도 사회적 낙인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비밀이 보장되고 포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다음의 주요 전략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다.

- 현지어에 익숙한 보건 의료 제공자가 응급 피임에 관한 정보를 현지어로 전달했다.
- 경찰이 강간 생존자의 조기 위탁에 참여했다.
- 위임을 받은 직원이 성폭력과 이용 가능한 돌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 커뮤니티 내 존경도 및 접근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락관을 확인했다.

(인용: **Women's Refugee Commission. 2006 [revised 2011]. 'Minimum Initial Service Package [MISP] for Reproductive Health in Crisis Situations: A distance learning module', <<http://misp.iawg.net>>**)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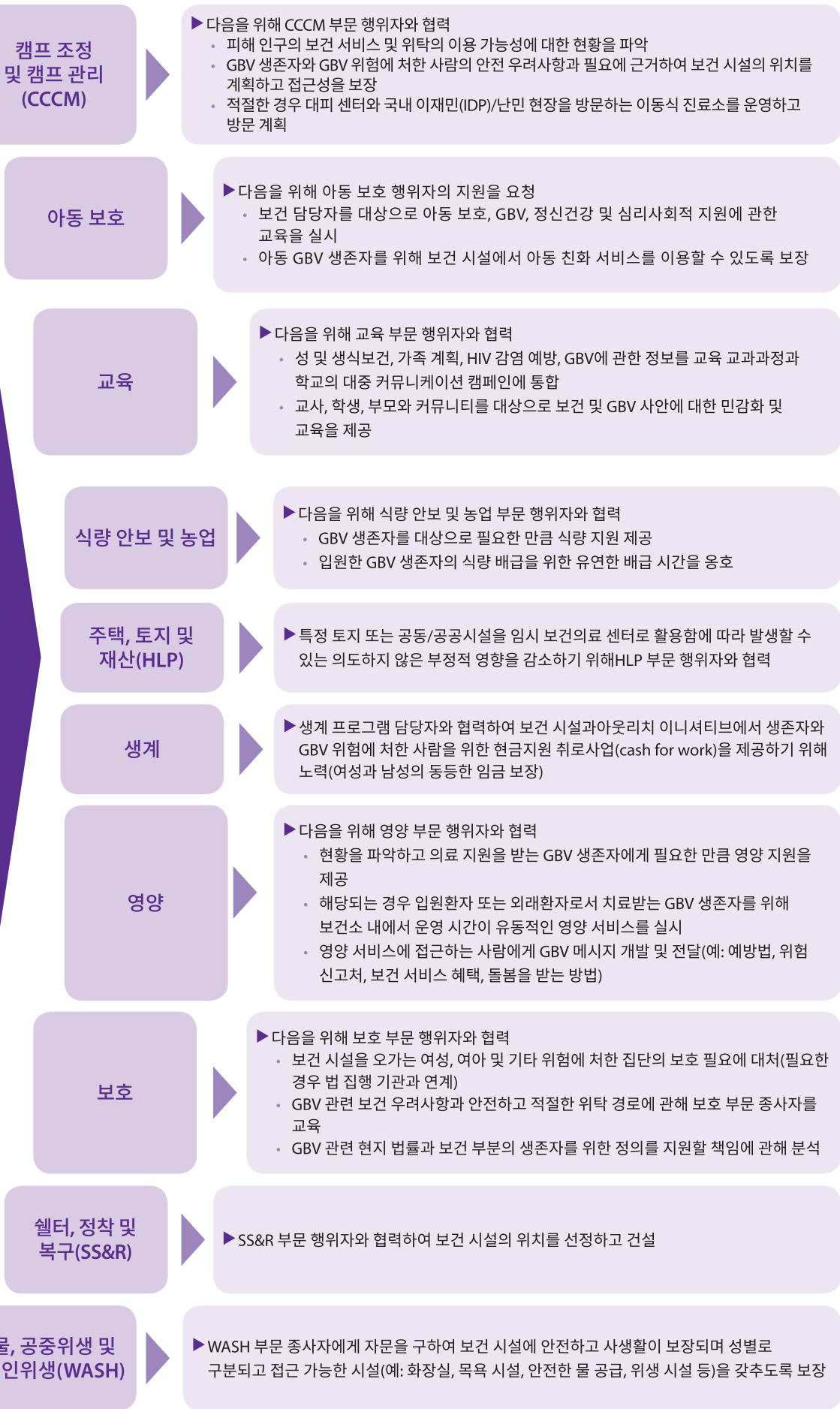
주요 GBV 고려사항

조정 과정의 첫 단계로, 보건 프로그램 담당자는 조정 과정의 첫 단계로 GBV 전문가는 보건 부문 행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보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GBV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보건 현황 파악을 설계 및 실시하고 보건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한다.
-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안과 생존자를 존중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배려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해 보건 부문 종사자(의료진 및 비의료진 포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 ▶ 보건 부문 종사자에게 GBV 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 GBV 생존자를 위한 표준 위탁 경로를 개발하고 보건 부문 종사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위탁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 GBV 임상 치료에 관한 기존 국가 보건 지침과 규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옹호 한다.
- ▶ 피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에 관한 사안을 보건과 관련지어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보건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 연계하여 GBV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부문(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부문)과의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다음 표에 제시돼 있다.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건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보건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프로그램
단계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GBV 관련 질문을 보건 현황 파악에 포함 ⁵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관련질문*이 포함된 보건 현황파악의 수} \times 100}{\text{보건 현황 파악의 수}}$ <p><small>* 현황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GBV 주제별 질문은 143 페이지 참조</small></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또는 틀	100%	✓	✓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	$\frac{\text{현황 파악 응답자 중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응답자의 수및현황 파악 팀 구성원 중여성의 수} \times 100}$ $\frac{\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50%	✓	✓	

(계속)

⁵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30 November 2012.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ASC Transformative Agenda Reference Documen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4.%20Reference%20module%20for%20Cluster%20Coordination.pdf>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계속)

<p>GBV 관련 보건 서비스 접근에 관해 피해 인구나 상의⁶</p> <p>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별도로 상의</p>	<p>양적 방법: GBV 관련 서비스 접근에 관한 논의를 위해 피해 인구나 상의한 보건 서비스의 수 × 100 ----- 보건 서비스의 수</p> <p>질적 방법: GBV 관련 보건 서비스 접근 과정에서 피해 인구가 직면하게 되는 장애물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p>	<p>해당 조직의 기록물,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 주요 정보원 인터뷰 (Key Informant Interview, KII)</p>	100%		✓	✓
<p>성폭행 임상 치료 (Clinical Care for Sexual Assault, CCSA) 및 기타 유형의 GBV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있는 보건 시설</p> <p>교육받은 의료진을 성별로 구분</p>	<p>CCSA 및 기타 유형의 GBV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있는 보건 시설의 수 × 100 ----- 보건 시설의 수</p>	<p>보건 시설 현황 파악</p>	100%		✓	✓

자원 동원

<p>GBV 위험 예방 및 대응을 보건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에 포함</p>	<p>GBV 지침에 나온 GBV 위험 감소 목표, 활동 또는 지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 보건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 100 ----- 보건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p>	<p>(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제안서 검토</p>	100%		✓	✓
<p>GBV 지침에 관한 보건 담당 직원 교육</p>	<p>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보건 담당 직원의 수 × 100 ----- 보건 담당 직원의 수</p>	<p>(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p>	100%		✓	✓
<p>CCAS에 대비하여 사전 배치된 물품 재고의 가용성⁶</p>	<p>재고량이 최저 기준 미만인 CCSA 물품의 수 × 100 ----- CCSA 물품의 수</p>	<p>기획 또는 조달 기록, 보건 시설 현황 파악</p>	0%		✓	✓

(계속)

⁶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 <www.humanitarianresponse.info/applications/ir/indicators>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이행

▶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계 이전의 여성 참여 ⁶	<p>양적 방법:</p> $\frac{\text{프로그램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프로그램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의 수}}$ <p>질적 방법: 여성 및 여아는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된 자신의 참여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계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p>	해당 조직의 기록물, FGD, KII	현장에서 결정		✓	
보건 서비스 제공 시 담당 여성 직원 ⁶	$\frac{\text{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직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직원의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50%	✓	✓	
CCSA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내부 및 인근의 GBV 위험 요인	<p>양적 방법:</p> $\frac{\text{CCSA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접근에 관한 질문에서 GBV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CCSA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접근에 관한 질문에 답한 피해 인구의 수}}$ <p>질적 방법: CCSA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접근하는 피해 인구가 GBV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는가? 피해 인구가 말한 현장 내부 및 인근의 안전 우려사항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p>	설문조사, FGD, KII, 참여 커뮤니티 도식화	0%	✓		✓
보건 시설에서 CCSA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무료 서비스 이용 가능성	$\frac{\text{CCSA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시설의 수} \times 100}{\text{CCSA가 있는 보건 시설의 수}}$	보건 시설 현황 파악, KII	0%	✓		✓
CCSA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보건 서비스에 관한 커뮤니티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CCSA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올바르게 답한 피해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피해자의 수}}$	설문조사	100%	✓		✓
보건 시설에서 양질의 CCSA 치료를 안전하게 제공	$\frac{\text{응급 피임약, 노출 후 예방조치, 성매개감염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STI) 추정 치료를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건 시설의 수} \times 100}{\text{현황을 파악한 보건 시설의 수}}$ <p>* 제공은 물품, 교육받은 직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표준 규약을 포함한다.</p>	MISP 필요 현황 파악 보건 시설 질문지	현장에서 결정	✓		✓

(계속)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계속)

▶ 프로그램

GBV에 대한 다부문적인 돌봄을 위한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담당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생존자 위탁 경로를 올바르게 답한 보건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답한 보건 담당 직원의 수}}$	설문조사	100%	✓	✓	
---	---	------	------	---	---	--

▶ 정책

GBV 생존자를 위한 표준 위탁 경로의 존재	$\frac{\text{GBV 생존자를 위한 표준 위탁 경로가 있는 의료 현장의 수} \times 100}{\text{의료 현장의 수}}$	KII	100%	✓	✓	
CCSA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 정책의 존재	$\frac{\text{CCSA에 대한 WHO 기준을 준수하는 검토한 국가 정책*의 수} \times 100}{\text{검토한 국가 정책의 수}}$ <p>* PEP, 응급 피임, 낙태/낙태 후 돌봄, STI 치료를 포함한 국가 정책</p>	문헌 검토	0%	✓		✓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응답한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	100%	✓		✓
커뮤니티 아웃리치에서 CCSA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한 시기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그 혜택에 관한 정보의 포함	$\frac{\text{GBV 생존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보건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times 100}{\text{보건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횟수}}$	문헌 검토, KII	현장에서 결정	✓	✓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다른 부문과 조정	$\frac{\text{GBV 위험 감소 활동*을 위해 상의한 비 보건 부문의 수} \times 100}{\text{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비 보건 부문의 수}}$ <p>* 부문별 GBV 위험 감소 활동은 158 페이지 참조</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KII, 회의록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참고자료

주요 참고자료

성폭행 및 기타 다양한 GBV 유형에 대한 임상 치료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Guidelines for Medical and Legal Care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Geneva, <<http://whqlibdoc.who.int/publications/2004/924154628X.pdf>>
-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생존자를 치료하는 경우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력 및 검사 양식의 예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and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04.** Clinical Management of Rape Survivors: Developing protocols for use with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 Revised Edition, pp. 44–47, <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emergencies/924159263X/en>을 참조한다.
-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2009 (revised 2014).** Clinical Care for Sexual Assault Survivors, <<http://iawg.net/ccsas/ccsas-resources>>. 이 교육 툴의 목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배려적이고 효과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치료를 장려하여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폭행 생존자가 더 나은 임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Clinical Management of Rape Survivors: E-Learning programme’, <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emergencies/9789241598576/en>. 이 코스는 강간 생존자 임상 치료에 관한 WHO/UNHCR 지침 및 UNHCR과 UNFPA에서 현장 기반 대면 교육 세션에서 사용하는 교육 자료의 내용에 바탕을 둔 독학을 위한 양방향성 이러닝 프로그램이다.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Responding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HO clinical and policy guidelines, <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violence/9789241548595/en>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Joint Programme on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2009.** ‘The End Is in Sight: Moving toward the abandonment of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www.unfpa.org/publications/end-sight-2009-annual-report>
- 영국과 웨일스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FGM/C 임상 치료에 관한 지침은 **HM Government, 2011.** Multi-Agency Practice Guidelines: Female Genital Mutilation,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80125/MultiAgencyPracticeGuidelinesNov14.pdf>를 참조한다.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2.** ‘Research, Health Care and Preventive Measures for FGM/C and the Strengthening of Leadership and Research in Africa’, <www.unfpa.org/resources/research-health-care-and-preventive-measures-fgmc-and-strengthening-leadership-and>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Health Care for Women Subjected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or Sexual Violence: A clinical handbook. WHO/RHR/14.26, Field testing version, September 2014, <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violence/vaw-clinical-handbook/en>
- **Yeager, J., and Fogel, J. 2006.** ‘Male Disclosure of Sexual Abuse and Rape’, Topics in Advanced Practice Nursing eJournal 2006;6(1), <www.medscape.com/viewarticle/528821>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

- **Women’s Refugee Commission. 2006 (revised 2011).** ‘Minimum Initial Service Package (MISP) for Reproductive Health in Crisis Situations: A distance learning module’, <<http://misp.iawg.net>>
-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Reproductive Health in Crises. 2010.** Inter-Agency Field Manual on Reproductive Health in Humanitarian Settings, <<http://iawg.net/resource/field-manual>>. 이 현장 가이드는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Minimum Initial Service Package, MISP)와 포괄적인 생식보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젠더기반폭력에 관한 장이 따로 있으며 여기에서 성폭력,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여성 할례, 아동 결혼 및 강제 결혼을 다루고 있다.
-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Reproductive Health in Crises. 2011.** Inter-Agency Reproductive Health Kits for Crisis Situations, fifth edition, <http://iawg.net/resources/184151_UNFPA_EN.pdf>. MISP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품, 기기와 물품이 특별히 고안되고 사전 포장된 키트 모음인 기관 간 생식보건 키트(Agency Reproductive Health Kit)에 포함돼 있다. 이 키트는 Reproductive Health in Humanitarian Settings: An inter-agency field manual에 제시된 목표를 보완한다. 참고자료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도 이용할 수 있다.
- **Women’s Refugee Commission.** ‘Universal and Adaptable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EC) Templates on the MISP’. 생식보건을 위해 MSP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여성난민위원회는 두 가지 MISP 관련 목표에 관한 정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EC) 템플릿을 개발했다. 이 템플릿은 언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현장 기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커뮤니티에 더 잘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행자를 위한 툴킷의 전자 문서 및 인쇄본은 여성 난민 위원회 <<http://iawg.net/resource/iec-misp>>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생존자와 일하기

-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2.**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Guidelines for health and psychosocial service providers in humanitarian settings, <www.unicef.org/protection/files/IRC_CCSGuide_FullGuide_lowres.pdf>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and Save the Children. 2009.** Adolescen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Toolkit for Humanitarian Settings, <www.unfpa.org/sites/default/files/pub-pdf/UNFPA_ASRHtoolkit_english.pdf>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and Save the Children.** E-Learning Course on Adolescent and Sexual Reproductive Health in Humanitarian Settings, <<http://iaawg.net/resource/interactive-e-learning-course>>. 이 이러닝(E-Learning) 코스는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의 청소년의 성 및 생식보건 필요에 관한 입문 과정이다.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10.** Caring for Survivors Training Guide, <www.unicefnemergencies.com/downloads/eresource/docs/GBV/Caring%20for%20Survivors.pdf>. 이 교육 패키지는 다부문적 역량(예: 보건, 심리사회, 법률/사법, 안보)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전문 보건의로 제공자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 경찰, 여성단체와 커뮤니티 담당 직원, 교사 및 종교인과 같은 기타 관련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위해 개발됐다. 이 교육에는 성폭행의 의학적 관리를 위한 진행자 가이드도 포함돼 있다.
-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UNAction. 2012.**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for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Principles and interventions', <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violence/rhr12_18/en>
-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07.**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www.who.int/hac/network/interagency/news/mental_health_guidelines_checklist/en>
- **World Health Organization, War Trauma Foundation, and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1.** 'Psychological First Aid: Guide for field workers'. 이 문서는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있으며 <www.who.int/mental_health/publications/guide_field_workers/en>에서 볼 수 있다.
-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Reference Group. 2013.**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Assessment Guide'. 이 문서의 목적은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사태의 단계와 관계없이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에 관여하는 모든 부문 행위자에게 유용한 주요 현행 파악 질문을 포함하는 툴을 제공하는 것이다. <www.who.int/mental_health/publications/IASC_reference_group_psychosocial_support_assessment_guide.pdf>
-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UNAction, 2012.**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for conflict-related sexual health: 10 myths', <www.unicef.org/protection/files/Policy_brief_10_myths_English_19-7.pdf>

- **Sveaass, N., et al. 2014.** Mental Health and Gender-Based Violence: Helping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 A training manual, <<http://hhri-gbv-manual.org>>

데이터 수집

- **GBVIMS.** GBVIMS는 브룬디,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콩고민 주공화국, 에티오피아, 기니, 이라크, 케냐, 라이베리아, 네팔, 시에라리온, 남수단, 태국과 우간다에서 시행됐다. 기관에서 GBVIMS 툴을 확보하고 GBVIMS에 관해 학습하려면 다음을 따라야 한다.
 - 직접 GBVIMS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거나 웨비나(webina)를 통해 참여한다.
 - 기관의 상황과 프로그램에 GBVIMS 툴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운영 위원회에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GBVIMS 글로벌팀의 구성원과 상의한다. 이를 통해 GBVIMS를 개발한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GBVIMS이행할 수 있다.

GBVIM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gbvims.com>을 참조한다. GBVIMS 웹사이트는 다음을 참조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8Ziqef2X4aA&utm_source=Listserve+Emails+September&utm_campaign=%20defe51ceea-GBVIMS_Website_Updates10_29_2012&utm_medium=emailww>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Ethical and Safety Recommendations for Researching, Documenting and Monitoring Sexual Violence in Emergencies, <www.who.int/gender/documents/OMS_Ethics&Safety10Aug07.pdf>
- **United Nations Action Guidance Note. 2008.** 'Reporting and Interpreting Data on Sexual Violence from Conflict-Affected Countries: Dos and don'ts', <www.stoprapenow.org/uploads/advocacyresources/1282164733.pdf>

표준운영절차

-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Gender Sub-Working Group. 2008.** Establishing Gender-Based Violenc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 for Multisectoral and Inter-Organizational Prevention and Response to Gender-Based Violence in Humanitarian Settings, <<http://gbvaor.net/wp-content/uploads/sites/3/2015/03/Gender-Based-Violence-Resource-Tools-2005.pdf>>. 이 가이드는 인도주의 비상사태 환경에서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위탁 경로와 기타 절차를 개발하는 과정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 **GBV SOP 워크숍 패키지는**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의 글로벌 젠더기반폭력 책임 영역(GBV Area of Responsibility, AoR)에서 개발했다. UNHCR의 커뮤니티 개발, 젠더 평등 및 아동 부서와 UNFPA의 인도주의 대응 지부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협력 과정을 통해 이러한 자료가 만들어졌다. SOP 가이드와 워크숍 패키지는 <<http://gbvaor.net/resources/gbv-sop-workshop-manual>>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추가 참고자료

-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보건 부문의 책임에 관한 개요를 보려면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가상 지식 센터 (**Virtual Knowledge Centr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에서 분쟁/분쟁 후 모듈을 참조한다. 센터 웹사이트에는 인도적 지원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 모듈은 물론 주요 톨 및 비상사태 시에 협력하는 보건의로 제공자와 관련된 리소스에 대한 링크가 포함돼 있다. <www.endvavnow.org>를 참조한다.
- 젠더적으로 평등한 보건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06.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Handbook%20%28Feb%202007%29.pdf>를 참조한다.
- **Sphere Project. 2011.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www.spherehandbook.org>
-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2010. Resource Manual: Improving the health sector response to gender-based violence**, <<https://www.ippfwhr.org/en/publications/improving-the-health-sector-response-to-gender-based-violence>>. 이 설명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보건의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로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톨과 지침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제공자의 태도, 법의 정의, 보건의로 제공자의 책임과 돌봄의 질을 판단하기 위한 실용적인 톨이 포함돼 있다.
- **World's Abortion Laws Map**, <<http://worldabortionlaws.com/map>>. 1998년부터 생식권을 위한 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는 전 세계의 낙태 관련 법적 지위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세계 낙태법 지도를 제작해오고 있다. 이 지도는 여성의 생식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지 거부하는지에 관한 국가의 변화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12. Working with Men and Boy Survivors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Forced Displacement**, <www.refworld.org/docid/5006aa262.html>
- 케냐에서 2007~2008년 선거 이후 폭력 시기에 핸디캡 인터내셔널 (**Handicap International**)의 GBV와 HIV를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UNAIDS의 다큐멘터리는 <www.youtube.com/watch?v=DW8qFVJtQg&feature=email>에서 볼 수 있다.





주택, 토지 및 재산



적용 대상

- 주택, 토지 및 재산(Housing, Land and Property, HLP) 조정 메커니즘
- HLP 업무에 관여하는 부문 행위자(직원 및 책임자):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기반 기구(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등), 국제비정부기구(INGO), 유엔 기구
- HLP와 관련된 지역 위원회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예: 여성단체, 청소년/청년 단체, 노인 단체 등)
- 기타 HLP 이해관계자: 국가 및 지역 정부(예: 주택, 토지, 농업, 기획, 환경, 공공 사업, 사법 관련 정부 부처 등), 커뮤니티 지도자, 전문가 단체(변호사협회 등) 및 관련 시민사회 단체, HLP 사안과 관련된 (특히 관습법, 제정, 사법 절차에 친숙한) 국내 및 현지 전문가

왜 주택, 토지 및 재산 부문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인도주의 위기에는 주로 난민과 국내 이재민(IDP)의 이재이주 비율이 둘 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토지 갈등, 퇴거, 그리고 주택, 토지, 재산(housing, land and property, HLP)의 몰수 또는 점유는 이재이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난민과 국내 이재민(IDP), 귀환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 ▶ 전통적인 보호 메커니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거주한다.
- ▶ 자신의 HLP 권리를 증명할 문서가 없다.
- ▶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돌아간다면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년간 캠프와 같은 환경에서 거주한다.
- ▶ 임시 정착 또는 영구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수용 커뮤니티와 토지를 둘러싼 갈등을 겪게 된다.
- ▶ 비공식적인 정착촌에 거주하거나 강제 퇴거 위험이 있는 공공/사유 건물을 점유한다.
- ▶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이 점유하여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토지/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HLP'의 정의

HLP의 개념은 집, 즉 살 곳을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주택, 토지 및 재산에 대한 다양한 접근 권리를 포함한다. 세입자, 합동 거주자, 관습법에 의한 토지 소유자 및 사용자, 보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비공식 부분의 거주자도 HLP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인용: Norwegian Refugee Council. 2014. 'Life Can Change: Securing housing, land and property rights for displaced women', <<http://womenshlp.nrc.no>>)

◀ 필수 행동 요약표 참조

기존의 불평등과 차별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위험이 커지게 한다. 예를 들어 토지나 재산의 점유, 주택의 파괴 및 강제 퇴거는 무력분쟁 시 분쟁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인 경우가 많다. 이때 집에 남겨진 사람(주로 여성)은 그들을 쫓아내려는 사람과 언쟁, 협상, 대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폭행, 구타, 성폭행, 살인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재이주 및 재정착을 위한 적절한 주거 공간(이러한 주택이 도시 빈민가, 무단 점유 정착촌,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난민 정착촌이든 그 형태와 상관없이, 그리고 수용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지의 여부와 상관없이)이 부족하면 성폭행과 착취를 조장할 수 있다. 집주인이 가난하고 소외된 세입자를 학대하고 착취할 수 있다.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¹의 HLP 임대, 소유, 상속을 금지하는 법률과 관행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들이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수 있다. 미망인, 별거/이혼한 여성은 토지 보유권을 소유한 가장으로 문서에 기록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취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고 토지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 결혼과 같은 관습을 따라야 하거나 폭력적인 가정 환경에 머무를 수 밖에 없게 될 수 있다. 토지 보유권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가족이나 커뮤니티 구성원에 의한 착취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이 토지의 가치를 높인 경우(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를 위해 준비한 경우)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산/미동반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가정의 구성원 역시 HLP와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술 부족, 신체적 한계 또는 관련 기관의 지원을 구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거나 집을 짓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토지 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주택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 토지권이 침해당했을 때 사법 체계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피네로 원칙(PINHEIRO PRINCIPLES)

2005년에 수립된 난민과 이재민을 위한 주택/재산 보상 원칙(Principles on Housing and Property Restitution for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은 이재이주 상황에서 HLP 권리를 다루는 규범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피네로 원칙'으로 알려진 이 원칙에서는 모든 이재민(국내 이재민, 난민, 귀한 여부 불문)이 어떠한 주택, 토지 및 재산의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박탈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재산이 복원되도록 하거나 적절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피네로 원칙은 여성과 여아가 HLP 보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원칙 4에서는 HLP 배상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과 남아와 여아의 동등한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다. 여기에는 임대의 법적 보장, 토지 소유권, 상속에 대한 동등한 접근, HLP의 사용/통제/접근이 포함된다. 특히 HLP 보상 프로그램, 정책, 관행이 여성과 여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젠더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용: United Nations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5. Principles on Housing and Property Restitution for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E/CN.4/Sub.2/2005/17, <www.refworld.org/docid/41640c874.html>)

¹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GBTI), HIV 보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미동반 아동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GBV 생존자도 HLP 문제를 겪을 위험이 크다. 도시 환경에서 GBV 생존자가 일을 할 수 없거나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수 있다. 토지를 할당받았더라도 거주자가 스스로 집을 지어야 하는 캠프 환경에서 일부 생존자의 경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감정적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HLP와 GBV 사이의 상황에 따른 관련성을 식별하는 HLP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폭력 위험을 완화할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설계된 경우 다음을 할 수 있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인도주의 비상사태 이후 HLP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젠더 불평등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젠더 평등을 증진한다.
- ▶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족의 안보를 증진한다.
- ▶ 위기 이후 재건 및 장기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GBV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HLP 부문이 이행해야 하는 행동은 GBV 전문가 및 기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HLP 부문 행위자는 또한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문제를 다루는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조정' 참조)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은 HLP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선택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현황 파악은 가능한 한 HLP 부문 행위자가 GBV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도 협력하여 부문간 및 학제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은 '이행' 아래 자세하게 설명된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과도 연관돼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도록 HLP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하는 우선순위 및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주요 현황 파악 대상 집단

- 주요 HLP 이해관계자: 정부 기관(예: 주택, 토지, 농업, 계획, 환경, 공공 사업, 사법 관련 부서 등), HLP 사안에 관한 (특히 관습법, 제정법, 사법 절차에 친숙한 변호사나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국가 및 지역 전문가, GBV/젠더/다양성 전문가 환경단체
- 피해 인구 및 커뮤니티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의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HLP 프로그램

참여 및 리더십

- 1) 책임자급을 포함한 HLP 담당 직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여성 직원의 교육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GBV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안보적 사안이 있는가?
- 2)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HLP와 관련된 커뮤니티 활동(예: 커뮤니티 HLP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가능한 경우 이들이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 3) HLP 대응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에 중점을 둔 활동을 주류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 기준 (본 지침 포함)에 대해 알고 있는가?

토지 보유 및 소유권 보장

- 4) HLP에 대한 권리 및 사안과 관련된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질문에 등록, 프로파일링, 의도 조사가 포함돼 있는가(예: 비상사태 이전 주거 형태, 비상사태 이전의 개인 또는 가족 소유권, 제정법 또는 관습법적 소유권, 목회자의 권리, 사회적 임대 또는 임대 계약과 같은 토지 및 재산에 대한 접근 및 관리와 관련된 상황, 재산 파손 또는 차지에 관한 서면 보고를 포함한 증빙 문서의 소유 또는 분실)?
- 5)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임대, 무단 점유, 토지 소유 및 토지 취득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 장벽(예: 사회적 낙인, 차별, 사회적 규범 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6)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의 HLP 권리를 박탈당했는가?
 - 세입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임대료 상승에 대한 통제와 같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통제 장치나 있는가?
 - 의도적인 강제 퇴거 전략이 사용되고 있는가?
 - 무단 점유자와 토지가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 7) HLP 사안으로 인해 GBV 위험이 증가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GBV 위험이 증가하는가(예: 집주인에 의한 성폭력 및 성차취, 문서 미비 및 퇴거와 관련된 폭력 위험, 아동 결혼 및 강제 결혼, 토지에 대한 권리 또는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해로운 관행에 연루,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등)?
- 8)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HLP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가? (예: 증서, 임대차 계약서, 무단점유 증명서 등)
 - 이러한 문서가 누구의 이름으로 HLP 권리에 관한 서면 증거를 제공하는가?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강제로 이러한 문서를 포기하거나 강압에 못 이겨 재산을 양도했는가?
 - 이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기록하는 대안적인 수단이 있는가?
- 9) 보상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보유 유형(예: 임대인, 무단 점유자, 노숙자, 세입자 등)을 고려하는가? 여성과 남성에게 그들의 HLP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단계의 개입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가?
- 10)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귀환 시 자신의 HLP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는가?
 - 이러한 지역에서 이들이 HLP 권리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경제/문화/법률/지리적 장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 캠프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가 토지 경계를 찾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계에 관해 어른들의 지식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재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처리 방안이 실시되고 있는가?
 - 재통합, 재정착 및 토지 프로그램의 접근성 측면에서 전직 여성 전투원이 고려되는가?

(계속)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 11) 캠프 설치 등을 위해 사용될 지역과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토지 보유권 처리 방법(토지, 물, 목초지 및 기타 천연 자원에 대한 제정법적/관습법적 접근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이는 수용 커뮤니티의 권리, 특히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이러한 자원을 통제하면서 재정적,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도적 기반

- 12) 토지 분쟁 및 기타 사안을 다루는 국가 또는 지역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이러한 제도의 능력과 기반은 무엇인가?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공평한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가?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예: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 이혼한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가?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이러한 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있는가(예: 비용, 장소, 제도를 관리하는 사람의 태도, 보복에 대한 공포, 문맹 등)?
- 13) 여성의 이름으로 상속권 등 HLP 권리의 등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또는 지역 제도가 있는가?
- 14) 국가 또는 지역 제도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권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예: 여성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두 증거를 수용하는가?)

HLP 정책

- 1)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HLP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통합돼 있는가?
- 특히 GBV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는 HLP 정책, 기준 및 지침의 개발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이러한 정책, 기준, 지침에 관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과 소통했는가?
 - HLP 담당 직원은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2) HLP와 광범위한 토지 사안(예: 토지 및 주택 법률, 강제 퇴거/재배치/재정착, 집에서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과 관련된 국가의 법률과 부문별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법률과 정책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차별하는가?
 - 이들은 피난 이후 주택을 버리는 것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3)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토지 및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남성 친족에게 유리하도록 여성의 HLP 권리가 거부되는가(예: 상속법, 관습, 관행 등)?
 - 배우자가 재산에 대한 공동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가?
 - 토지에 대한 권리와 기타 문서가 여성과 남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가장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가?
 - 토지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승인이 필요한가?
- 4)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가?
- 강제 퇴거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법률이 있는가?
 - 강제 퇴거에 대해 실행 및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커뮤니티 주도의 이니셔티브가 있는가?
 - 퇴거가 발생한 경우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특정 권리와 필요를 어떻게 고려하는가?
- 5) HLP와 관련하여 관습법과 제정법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예: 부부의 권리 및 상속 관련) 관습법과 제정법의 적용에 관여하는 행위자가 HLP 정책 및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권리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가?
- 6) 모든 사람의 평등권과 관련하여 토지 개혁의 현황은 어떠한가?
- 국가 토지 개혁 정책이 있는가?
 - 토지개혁법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권리를 얼마나 개선하는가?
 - 국가 토지 위원회가 있는가?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얼마나 관여하는가?

(계속)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HLP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 1) HLP 아웃리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는가?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사안
 -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2) HLP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가 일반적인 안전과 GBV 위험 감소에 대한 커뮤니티 내 인식을 제고하는가?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이러한 정보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가?
- 3) HLP에 관한 토론회에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는가? 이러한 토론회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함에 따라(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자원 동원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은 HLP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GBV 관련 자원 동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비상사태 대비/긴급 자금이나 비상사태 후 복구/개발 자금을 요청할 때 특정 GBV 위험을 반영하고 대처 전략을 제안하면 제안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금 조달 이후

'자원 동원'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품 및 공여자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동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도적 부문/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 제시돼 있다.



A. 인도적 필요의 개요

- ▶ 토지 소유 및 취득과 관련하여 피해 인구의 GBV 관련 안전 위험, 보호 필요 및 권리가 제안서에 명시돼 있는가(예: 강제 퇴거, 문서의 부재 등)?
- ▶ 'GBV'로 통칭하는 대신 GBV 위험을 특정 유형(예: 성폭행, 성착취, 성희롱, 강제/강압적 성매매, 아동 결혼 및 강제 결혼 등)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이 인식되고 설명되는가?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 ▶ 비상사태 대비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이재 인구(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가 새로운 장소에서 HLP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예: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토지를 임대, 점유, 소유하는 것을 막는 문화적 장벽, 토지 분쟁과 사안을 처리할 국가 또는 지역 기관의 부재 등)?
 -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자료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로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가?
 - 정부, 인도주의 담당 직원,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GBV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HLP 프로그램의 안전한 설계와 이행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 비상사태 대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계획된 개입이 어떻게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GBV 위험을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가(예: HLP 보유권의 확보를 원하는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에 대한 법적 지원 제공)?
 - HLP 부문 여성 직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가(예: 이동을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지원, 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 직원과 동행하도록 자금을 지원)?
- ▶ 비상사태 이후와 복구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계획된 개입이 어떻게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HLP 권리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한 설명이 있는가(예: 토지 개혁과 평화 과정에서 여성이 논의에 포함되도록 옹호)?
 - 프로젝트에서 귀환민이 HLP에 대한 권리에 접근 시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문화적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가?
 -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반영돼 있는가?

C. 프로젝트 내용

- ▶ 제안된 활동에 GBV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이행 원칙 및 주요 접근법(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 기반)이 반영돼 있는가?
- ▶ 제안된 활동이 자원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하는가?
- ▶ 프로젝트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촉진/지원하는가(HLP 담당 직원으로 참여, 토지나 주택과 관련된 커뮤니티 기반 위원회에 참여 등)?





이행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HLP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GBV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표현된 필요, 확인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GBV 감소 전략을

HLP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1.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HLP 프로그램에 직원과 책임자로 참여시킨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HLP 프로그램 담당 직원 중 여성 비율이 50%가 되도록 노력한다. 여성 직원이 책임자급이나 교육직을 맡을 수 있도록 공식 및 직무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 여성(해당되는 경우 청소년기 여아)이 커뮤니티 기반 HLP 위원회와 토지 운영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 ▶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을 HLP 부문 직원, 책임자, 교육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트랜스젠더(Transgender)

트랜스젠더, 특히 여성 트랜스젠더는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소외되고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를 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주택 보유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없고, 적절한 보상이나 정당한 대체 주택 없이 강제로 퇴거될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으로 인해 집주인이나 공무원에 의해 희롱당하거나 위협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HLP 권리가 상실되고 심지어 기본적인 서비스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생존을 위해 성 노동이나 기타 위험한 소득 창출 활동에 연루되기도 한다. 가능한 경우 HLP 프로그램 담당자는 LGBTI 전문가 및 현지 LGBTI 단체와 상의하여 HLP 프로그램에서 트랜스젠더의 기본권과 필요를 보장하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보제공: 휴먼 라이츠 퍼스트(Human Rights First)의 던컨 브린(Duncan Breen),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5월 20일)

2. GBV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HLP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의 노력을 지원한다.
 - ▶ 이재이주한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등록, 프로파일링, 의도 조사에 HLP 권리와 더 광범위한 토지 관련 질문이 포함되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질문은 이주 커뮤니티와 수용 커뮤니티 내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HLP 권리를 보호 및 보장하며 이들이 GBV에 덜 취약하도록 한다. HLP 부문 행위자는 다음에 관해 조사해야 한다.
 - 비상사태 이전 출신지 및 거주 형태
 - 비상사태 전에 만들어진 토지 및 재산 접근과 관련된 처리 방안(예: 개인 또는 가족 소유권, 제법 또는 관습법에 따른 소유권, 목축권, 사회적 차용, 임대 조건 등)



- 비상사태 시 이주 캠프 및 기타 유형의 정착지에서 만들어진 토지 소유권 처리 방안(예: 토지, 물, 목초지 및 기타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 등)

- 보충 서류 소유 여부
- 재산 파손 또는 점유에 관한 모든 서면 보고서

▶ 다음을 포함하여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HLP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옹호하는 현지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를 지원한다.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HLP 접근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토지와 천연 자원 소유 보장
- 여아와 남아에 대한 동등한 상속권

▶ 법치주의와 토지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습적/전통적 지도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관해 교육한다.

- 토지권 보호 및 확보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권리와 필요
- HLP 권리 부재와 GBV 사이의 연관성

▶ 토지 행정과 관리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다음을 장려한다.

-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HLP 권리 등록
- 남성과 여성의 이름으로 토지권을 공동 등록
- 접근 가능한 HLP 권리 등록 절차(비용, 장소, 과정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태도 등을 고려)

3. 소유권을 확보하고 HLP 를 통제할 수 있도록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강화한다.

▶ 자신의 HLP 권리를 주장하고 법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에 관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과 같은 토지 소유권 주장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완화하기 위해 GBV 전문가와 협력한다.

▶ 훼손되거나 파괴될 위험이 있는 HLP 관련 공식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노력한다. HLP 등록 시스템을 복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지원한다.

▶ 토지가 없는 위험에 처한 사람(예: 여성가장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가정, 미망인 등)이 무료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와 협력하여 젠더 인지적인 보상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구두 증거 인정, 절차를 현지어로 번역, 법적 지원 제공 등)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토지 문제에 대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한다.



모범 사례

바드(Baad)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전통적인 강제 결혼 관행을 말한다. 이 관행에 따라 현지 협의회(지르가(jirga))에서는 토지 분쟁이나 다른 다툼의 해결을 위해 한 가족이 여성이나 여아를 다른 가족에게 양도하도록 명령한다. 이러한 교환은 두 가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싸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성사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은 교환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버릴 수 있는 재산으로 전락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여성, 남성과 마을 지도자와 함께 일하며 이들에게 이슬람법, 국가법,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해 알려주었다.

(인용: Norwegian Refugee Council. 2014. 'Life Can Change: Securing housing, land and property rights for displaced women', <<http://womenshlp.nrc.no>>)





모범 사례

많은 국가에서 그렇듯이 라이베리아에서도 토지 보유권은 남성이나 남성이 통제하는 친족 집단이 소유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주로 아버지나 남편 등 남성 친족을 통해서만 토지에 접근할 수 있다. 토지의 소유, 상속 및 사용에 관한 결정은 여성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제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스템은 여성을 매우 취약하고 남성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 여성이 폭력적인 상황이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 NRC)의 GBV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을 받은 많은 여성은 남성 친족이 자신이나 딸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집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여성은 자기 자신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달리 갈 곳이 없다고 느낀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RC GBV 프로젝트에서는 토지, 재산 및 상속권에 관한 1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NRC의 정보, 상담 및 법률 지원팀(Information, Counselling and Legal Assistance, ICLA)의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교육은 25명의 여성이 매달 한 번씩 만나 여성의 권리에 관해 토론하고 배우며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NRC의 'WISE' 민감화 모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해당 교육에서는 GBV 및 ICLA 팀이 공동 개발한 라이베리아 여성의 (공식적인 법률 시스템 또는 관습법적 시스템을 통한) 토지 접근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그림과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플립북이 사용됐다. 이러한 교육은 많은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에서 관습적인 지도자가 내린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처음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후 남수단,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에서 채택되고 시행됐다. 최초 실행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제고 및 이러한 권리에 접근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NRC,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4년 2월 10일)

GBV 감소 전략을

HLP 정책에 통합하기

1. GBV 예방 및 감소 전략을 HLP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지침에 통합한다.

- ▶ (1) GBV 위험을 줄이고 (2)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HLP 활동에 직원이나 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HLP 담당 직원을 위한 보육 관련 정책
 - 여성에 대한 동등한 고용 기준
 - GBV 사고 관련 보호/비밀 정보의 공유에 대한 절차 및 규약
 - 성적 착취 및 학대 발생 시 신고, 조사, 징계 기관의 절차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를 HLP 담당 직원, 위원회, 관리 집단에 두루 배포하고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공용어 및 지역별 현지어를 사용하여 더 넓은 커뮤니티에 배포한다(점자, 수화, 비문해자를 위한 시각적 콘텐츠가 포함된 포스터, 커뮤니티 회의를 통한 안내 등 접근하기 쉬운 방법 사용).

2. GBV 위험 감소 전략을 HLP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 법률과 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옹호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금을 할당한다.

- ▶ HLP 권리 및 토지 문제와 관련된 차별 관행을 다루기 위한 법률과 정책(관습법 포함)의 검토 및 개정을 위해 정부, 관습/전통적인 지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지원한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이 국제법과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 GBV 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개발 과정에서 관련 실무 부처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GBV 관련 정책이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 ▶ 여성 및 위험에 처한 집단(소수자와 원주민 포함)이 평화 협상, 협약과 토지 개혁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모범 사례

상황에 따른 특수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HLP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성 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샤리아법과 그 학술적 해석이 언제나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판사, 검사, 지방 의회 의원, 기타 법을 적용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람이 부족한 관습과 샤리아를 구분하기 위한 충분한 법률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됐다. 아동 결혼이나 미망인의 권리 및 여성의 상속권 거부와 같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관행이 샤리아를 준수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 NRC)의 ICCLA 프로그램은 정보 제공, 상담, 법적 지원 및 협력적 분쟁 해결을 통하여 이재민을 지원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관습적인 시스템에 관여하는 귀환민 여성을 대상으로 제공한 도움과 지원이 이들의 토지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고 상속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

(인용: NRC. 2014. 'Life Can Change: Securing housing, land and property rights for displaced women', <<http://womenshlp.nrc.no>> 인용: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6.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Yakin Ertürk, Mission to Afghanistan, [9 to 19 July 2005], E/CN.4/2006/61/Add.5, para 38, <www.refworld.org/pdfid/441182170.pdf>)

GBV 감소 전략을

HLP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에 통합하기

1.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존자를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 체계

(예: 위탁 경로)를 확인하고 HLP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HLP 부문 종사자가 생존자가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서면 정보를 가지고 있게 한다.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HLP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섹슈얼리티,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해 교육한다(예: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탁 경로

‘위탁 경로’는 GBV 생존자를 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의 도움, 법률/사법 지원 등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연한 메커니즘이다.



2. HLP 부문 내부적으로 또는 더 큰 범위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에 속한 협력기관과 함께 GBV 관련 신고를 공유하는 HLP 프로그램이 안전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 생존자 개인과 가족의 신원이나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기관 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3. HLP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에 GBV 메시지를 통합한다.

- ▶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GBV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제고 활동을 HLP 아웃리치 이니셔티브에 통합한다(예: 커뮤니티 토론회, 워크숍,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회의, GBV 메시지 전달 등).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GBV 예방,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 및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를 사용한다.
- 메시지 개발 및 메시지 전달 전략 수립 과정에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가 참여하도록 하여 메시지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 ▶ 여성과 남성의 HLP에 관한 폭넓은 커뮤니티 대화를 장려한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상속을 포함한 HLP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에 관해 커뮤니티 및 종교 지도자의 인식을 제고한다.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를 HLP 관련 GBV 예방에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시킨다.
-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HLP 관련 커뮤니티 토론회 및 교육 워크숍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예: 교통, 회의 시간과 장소, 이들의 참여에 대한 반발 위험, 육아 지원의 필요, 장애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 참가자가 GBV 관련 사안을 편안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론회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을 이행한다.
- ▶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HLP 부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행동 강령 및 HLP 부문 종사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관련 메시지 전달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통해 GBV와 관련된 사람 등 피해 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우려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GBV 전문가가 아니라면 GBV 전문가나 GBV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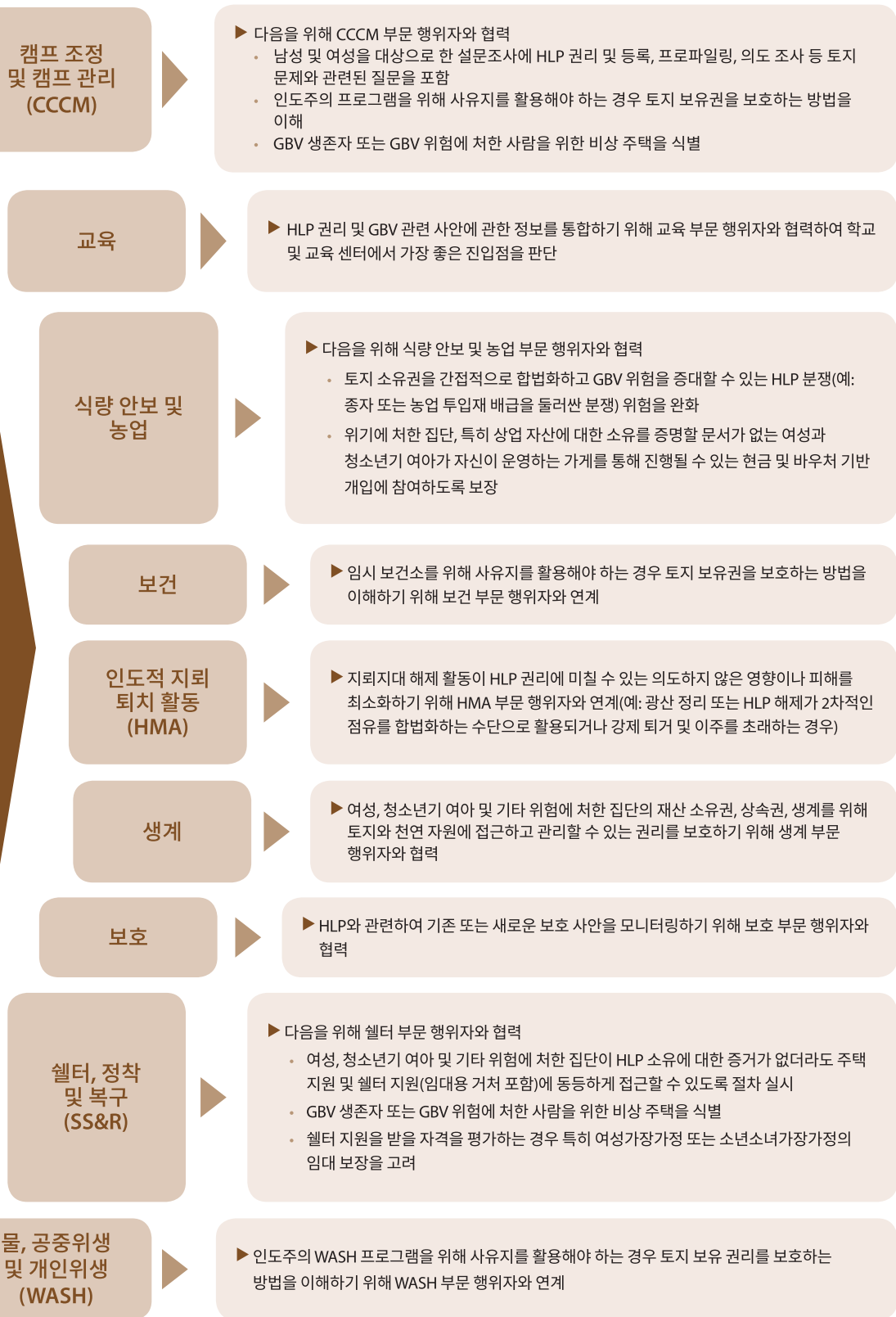
조정 과정의 첫 단계로, HLP 프로그램 담당자는 GBV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에서 GBV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GBV 전문가는 HLP 부문 행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HLP 프로그램과 관련된 GBV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HLP 현황 파악을 설계 및 시행하고 HLP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한다.
- ▶ HLP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관련 사안에 관해 교육한다.
- ▶ HLP 담당 직원에게 GBV 피해 사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생존자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HLP 담당 직원이 생존자를 격려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다.
- ▶ HLP와 관련이 있는 젠더, GBV, 여성의 권리, 인권 사안에 대해 피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HLP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 연계하여 GBV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부문(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부문)과의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다음 표에 제시돼 있다.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HLP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을 다루는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주택, 토지 및 재산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프로그램 단계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GBV 관련 질문을 HLP 현황 파악에 포함 ²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관련 질문*이 포함된 HLP 현황 파악의 수} \times 100}{\text{HLP 현황 파악의 수}}$ <small>* 현황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GBV 주제별 질문은 169 페이지 참조</small>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또는 툴	100%	✓	✓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	$\frac{\text{현황 파악 응답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응답자의 수}}$ $\frac{\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50%	✓	✓	

(계속)

²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30 November 2012.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ASC Transformative Agenda Reference Documen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4.%20Reference%20module%20for%20Cluster%20Coordination.pdf>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계속)

여성 및 기타 GBV 위험에 처한 집단의 HLP 권리를 증진하는 제도의 존재	여성 및 기타 GBV 위험에 처한 집단의 HLP 권리를 증진하는 제도의 수	주요 정보원 인터뷰 (Key informant interview, KII)	현장에서 결정	✓	✓	
HLP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나 상의 ³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별도로 상의	양적 방법: HLP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나 상의의 수 × 100 이재이주 현장의 수 질적 방법: 피해 인구가 HLP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GBV 관련 위험 요인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해당 조직의 기록물,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 핵심 KII	100%	✓	✓	
GBV 생존자 위탁 경로에 대한 직원의 지식	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생존자 위탁 경로를 올바르게 답한 HLP 담당 직원의 수 × 100 설문조사에 응답한 HLP 담당 직원의 수	설문조사	100%	✓		✓

자원 동원

HLP 자금 조달 제안서/전략에 GBV 위험 감소 전략을 포함	GBV 지침에 나온 GBV 위험 감소 목표, 활동 또는 지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 HLP 자금 조달 제안서/전략의 수 × 100 HLP 자금 조달 제안서/전략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제안서 검토	100%	✓	✓	
GBV 지침에 관한 HLP 담당 직원 교육	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HLP 담당 직원의 수 × 100 HLP 담당 직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	100%	✓	✓	

이행

▶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HLP 위원회에서의 여성 참여 ³	양적 방법: 커뮤니티 기반 HLP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 피해 인구 중 여성의 수 × 100 커뮤니티 기반 HLP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 피해 인구의 수 질적 방법: 여성은 커뮤니티 기반 HLP 위원회와 관련된 자신의 참여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HLP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현장 관리 보고서, 이재이주 추적 매트릭스, FGD, KII	50%		✓	✓
---------------------------------------	---	-----------------------------------	-----	--	---	---

(계속)

³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 <www.humanitarianresponse.info/applications/ir/indicators>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계속)

▶ 프로그램

HLP 프로그램의 담당 여성 직원	$\frac{\text{HLP 프로그램의 담당 직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HLP 프로그램의 담당 직원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50%	✓	✓	
HLP 접근 시 GBV 위험 요인	양적 방법: $\frac{\text{GBV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적절한 HLP가 없는 여성의 수} \times 100}{\text{적절한 HLP가 없는 여성의 수}}$ 질적 방법: 적절한 HLP가 없는 여성이 GBV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적절한 HLP가 없는 여성이 말한 GBV 관련 안전 우려사항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설문조사, FGD, KII, 참여 커뮤니티 도식화	0%	✓		✓
여성의 HLP를 복원하기 위한 법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	특정 장소에서 HLP를 복원하기 위한 법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지원 단체의 수	KII	현장에서 결정	✓	✓	

▶ 정책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HLP 정책, 지침 또는 기준에 포함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포함된 HLP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times 100}{\text{HLP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기관, 부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의) 문헌 검토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응답한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	100%	✓		
HLP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GBV 위탁에 관한 정보 포함	$\frac{\text{GBV 생존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HLP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times 100}{\text{HLP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문헌 검토, KII,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다른 부문과 조정	$\frac{\text{GBV 위험 감소 활동*을 위해 상의한 비 HLP 부문의 수} \times 100}{\text{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비 HLP 부문의 수}}$ <small>* 부문별 GBV 위험 감소 활동 목록은 180 페이지 참조</small>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KII, 회의록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참고자료

주요 참고자료

- **Housing Land and Property Area of Responsibility (HLP AoR). 2013.** The HLP Coordination Toolkit, <www.globalprotectioncluster.org/en/tools-and-guidance/essential-protection-guidance-and-tools/hlp-essential-guidance-and-tools.html >
- **EU-UN Inter-Agency Framework Team for Preventive Action. 2012.** Toolkit and Guidance for Preventing and Managing Land and Natural Resources Conflict, <www.un.org/en/events/environmentconflictday/pdf/GN_Land_Consultation.pdf>
- **Norwegian Refugee Council (NRC). 2014.** 'Life Can Change: Securing housing, land and property rights for displaced women', <womenshlp.nrc.no>
- **NRC and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2013.** Security of Tenure in Humanitarian Shelter Operations, <www.ifrc.org/Global/Documents/Secretariat/201406/NRC%20IFRC%20Security%20of%20Tenure.pdf>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n.d.** Gender-Based Violence and Livelihood Interventions: Focus on populations of humanitarian concern in the context of HIV. Guidance Note, <www.fao.org/fileadmin/templates/dimitra/pdf/guidance_note_gbv_livelihoods.pdf>
- **United Nations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5.** 'Principles on Housing and Property Restitution for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E/CN.4/ Sub.2/2005/17, <www.refworld.org/docid/41640c874.html>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2012.** Voluntary Guidelines on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 in the Context of National Food Security. Rome, <www.fao.org/docrep/016/i2801e/i2801e.pdf>
- **FAO. 2013.** Governing Land for Women and Men: A technical guide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responsible gender-equitable governance of land tenure. Rome, <www.fao.org/docrep/017/i3114e/i3114e.pdf>. 국가적 식량 안보 측면에서 토지 보유권, 수산 자원, 산림의 책임있는 가버넌스에 대한 FAO의 자발적 지침의 이행에 도움을 주는 기술적 지침이다.
- **Sphere Project. 2011.**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www.spherehandbook.org/>
- **FAO. 2003.** Gender and Access to Land, <www.fao.org/docrep/005/Y4308E/Y4308E00.HTM>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12.** Women and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WomenHousing_HR.PUB.11.2.pdf>
- **UN-Habitat. 1999.** Women's Rights to Land, Housing and Property in Post-Conflict Situations and during Reconstruction: A global overview, <http://unhabitat.org/?wpdmact=process&did=OTI4LmhvdGxpbnms=>
- **UN-Habitat. 2004.** 'Women's Rights to Land and Property', <http://es.unrol.org/files/womensrightstolandandproperty.pdf>
- **UN-Habitat. 2005.** Shared Tenure Options for Women: A global overview, <http://unhabitat.org/books/shared-tenure-options-for-women>
- **UN-Habitat. 2006.** Progress Report on Remov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Respect of Property and Inheritance Rights, Tools on Improving Women's Secure Tenure, Series 1, <http://www.globalprotectioncluster.org/_assets/files/tools_and_guidance/housing_land_property/By%20Themes/Womens%20HLP%20Rights/Progress_Report_Removing_Discrimination_2006_EN.pdf>
- **UN-Habitat-GLTN. 2008.** 'Land Registration in Ethiopia: Early impacts on women',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NEWS/Resources/land_eegistration_in_ethiopia.pdf>
- **UNIFEM. 2001.** Women's Land and Property Rights in Situations of Conflict and Reconstruction, <www.refworld.org/docid/46cadad90.html>



추가 참고자료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FAO, NRC, Inter-Agency Internal Displacement Division (IDD), OHCHR, UN-Habitat. 2007.** Handbook on Housing and Property Restitution for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Implementing the 'Pinheiro Principles', <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pinheiro_principles.pdf>
- **Mooney, E. 2004.** 'Liberia and the Implications of Women's Inheritance Rights for IDP Return and Reintegration: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rom mission in April-May 2004', <www.globalprotectioncluster.org/_assets/files/field_protection_clusters/Liberia/Women_s_Inheritance_Rights_IDP_Return_Liberia_2004_EN.pdf>
- **UN Women. 2012.** Colombia's Law on Victims and Restitution: A challenge for gender-sensitive transitional justice, <<http://landwise.landesa.org/record/1934>>
- **Protection and Early Recovery Working Groups. 2009.** Humanitarian Coordinator and Resident Coordinator Checklist of Housing, Land and Property Rights and Broader Land Issues Throughout the Displacement Timeline from Emergency to Recovery, <www.globalprotectioncluster.org/_assets/files/tools_and_guidance/housing_land_property/HLP_Checklist_for_Humanitarian_Coordinators_and_Resident_Coordinators-EN.pdf>
- **Richardson, A., and Hanney, L., for Norwegian Refugee Council (NRC). 2013.** Violence against Women and Housing, Land and Property in Monrovia, <<http://womenshlp.nrc.no/wp-content/uploads/2014/02/Violence-against-women-and-HLP-Liberia.pdf>>
- **Global Land Tool Network (GLTN):** <www.gltn.net/index.php/land-tools/cross-cutting-issues/gender>
- **Urban Humanitarian Response Portal:** <www.urban-response.org>





인도적 지뢰 퇴치 활동



적용 대상

- 인도적 지뢰 퇴치 활동(Humanitarian Mine Action, HMA) 조정 메커니즘
- 다음 업무에 관여하는 HMA 부문 행위자(직원 및 책임자): 지뢰지대 해제(비기술적 조사, 기술 조사 및 토지 정리, 해제된 토지의 양도), 지뢰 위험 교육(사람이 지뢰 관련 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하도록 커뮤니티와 협력), 피해자 지원(생활 재건 및 재통합)
-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기반 기구(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등), 국제비정부기구(INGO), 유엔 기구
- HMA 관련 지역 위원회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예: 여성, 청소년/청년, 노인 모임 등)
- 그 외 중앙 및 지방 정부, 커뮤니티 지도자, 시민사회 단체 및 기타 HMA 이해관계자

왜 인도적 지뢰 퇴치 활동 부문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인도적 지뢰 퇴치 활동(Humanitarian Mine Action, HMA)¹ 부문은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뢰/전쟁잔류폭발물(Explosive Remnants of War, ERW) 생존자의 회복과 재통합을 지원한다. 지뢰/ERW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대부분 남성과

남아지만 여성과 여아의 피해도 상당히 크다. 여성은 지뢰/ERW로 인해 직접적으로 부상당하기도 하고 가장의 사망 또는 부상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한다.

지뢰/ERW로 인해 부상당한 사람은 장애로 인해 차별, 소외, 사회적 낙인에 직면할 위험이 크며, 이에 따라 젠더기반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²의 경우 예전부터 존재하던 불평등과 차별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지뢰지대 해제' 정의

지뢰 퇴치 활동과 관련하여 '지뢰지대 해제(Land Release)'라는 용어는 비기술적 조사, 기술적 조사와 토지 정리를 통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뢰/ERW를 식별하고 정의하며 제거하기 한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모든 합당한 노력'을 위한 기준은 국가 지뢰 퇴치 활동 당국(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에서 정의한다.

(발췌: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UNMAS)**. 2010.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Glossary of terms and definitions'. IMAS 04.10, <www.mineactionstandards.org>)

¹ '인도적 지뢰 퇴치 활동'이라는 용어는 지뢰뿐만 아니라 집속탄, 폭탄, 포탄, 수류탄, 기타 발사/투하되었으나 의도한 대로 폭발하지 않은 탄약 및 기타 불발탄(Unexploded Ordnance, UXO)과 같은 모든 전쟁잔류폭발물(Explosive Remnants of War, ERW) 그리고 버려진 비축물 또는 무기 은닉처에 보관된 것과 같은 버려진 폭발물(Abandoned Explosive Ordnance, AXO)을 의미한다.

²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GBTI), HIV 보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미동반 아동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필수 행동 요약표 참조

이들이 폭발로 인해 직접적인 부상을 입을 경우 재활이나 사회·경제적 재통합을 위한 지원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장애로 인해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가정 폭력에 노출될 위험 또한 커질 수 있다.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은 직접적으로 부상을 입지 않더라도 지뢰/ERW로 인해 가장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지뢰 오염으로 인해 토지를 잃게 되면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독신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과 여아는 토지 증명서나 사후 심사 권한을 얻기 어려워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이 특히 크다. 이로 인해 빈곤이 심화되면 성적 착취 및 학대에 대한 노출 위험이 증가한다.

HMA 프로그램에 GBV 위험 감소를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토지 정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가장 먼저 토지 이용과 관련된 피해 인구 내에서 다양한 권리, 필요 및 역할에 대해 철저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현황 파악 과정을 통해 토지 소유권, 토지 박탈, 생계와 관련된 GBV 위험을 이해할 수 있다.
- 지뢰 위험 교육(Mine Risk Education, MRE)³ 활동 프로그램에 GBV에 관한 정보(예: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를 포함할 수 있다.
- 지뢰/ERW 생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 및 재활 시설은 GBV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

GBV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HMA 부문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GBV 전문가 및 기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문제를 다루는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조정' 참조)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은 HMA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선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현황 파악은 가능한 한 HMA 부문 행위자가 GBV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도 협력하여 부문간 및 학제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은 '이행' 아래 자세하게 설명된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과도 연관돼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도록 HMA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하는 우선순위 및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³ 지뢰 위험 교육(Mine Risk Education, MRE)은 대중 정보 캠페인, 교육 및 훈련, 커뮤니티와의 연락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 변화를 장려하여 지뢰/ERW로 인한 부상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요 현황 파악 대상 집단

- HMA의 주요 이해관계자: 정부, 현지 및 국제 지뢰 퇴치 활동 관계자(예: UNMAS, 국제적십자위원회, UNICEF, UNDP, UNOPS, 마인 어드바이저리 그룹(Mines Advisory Group), 할로 트러스트(HALO Trust), 핸디캡 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Norwegian People's Aid), 덴마크 지뢰제거단체 등), 지역 지도자, GBV/젠더/다양성 전문가
- 농축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피해 인구 및 커뮤니티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의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HMA 프로그램

참여 및 리더십

- 1) 책임자 직책을 포함한 지뢰지대 해제, MRE 및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의 담당 직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여성과 남성 모두 기술적 조사 및 토지 정리 활동에 고용되었는가? 업무 준비 과정에서 젠더에 대해 고려하는가(예: 필요에 따라 성별로 구분된 팀/시설/교통, 적절한 육아 휴직 및 보육 관련 규정 등)?
 - 여성 직원의 교육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GBV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안보적 사안이 있는가?
- 2)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HMA 관련 커뮤니티 기반 활동(예: 커뮤니티 지뢰 퇴치 활동 위원회에 참여, 커뮤니티 연락 담당자 또는 지뢰 위험 교육가로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가능한 경우 이들이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 3) 지뢰지대 해제, MRE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관계자가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주류화하기 위한 (본 지침을 포함한) 국제 기준에 관해 알고 있는가?

지뢰지대의 해제

- 4) 피해 커뮤니티의 여성, 여아, 남성, 남아로부터 수집한 지뢰/ERW 오염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 해당 정보는 (팀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혼성 또는 동성으로 이루어진 팀에 의해 수집되었는가?
 - 팀원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행동 강령에 서명했는가?
- 5)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 인구의 서로 다른 권리, 필요,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이것이 토지 정리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정리할 토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가?
 -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 박탈, 토지 이용 관련 사안으로 인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성폭행, 성착취 또는 기타 유형의 GBV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징후가 있는가?
- 6)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토지 정리 이후 커뮤니티로의 토지 양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
- 7)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토지 정리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 장벽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러한 문화적 장벽이 이들에 대한 GBV 위험을 커지게 하는가(예: 강제 성매매, 성착취 등)?
- 8)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토지 접근 및 소유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지 단체 또는 국제 단체가 있는가? HMA에서 이러한 단체와 연계하고 있는가?

HMA 피해자 지원

- 9)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문화적 제약이 있는가?
 - 지뢰/ERW로 인해 직접적인 부상을 당한 여성 및 여아가 신체 재활과 보철 기구 등 응급 치료 및 장기적 의료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 이들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경제적 지원, 생계 지원 및 기타 사회경제적 재통합 조치에 접근할 수 있는가?
- 10) 희생자 지원 서비스가 지뢰/ERW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필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예: 지뢰/ERW로 인해 가장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계속)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HMA 정책

- 1)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지뢰지대 해제, MRE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돼 있는가?
 - 특히 GBV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는 HMA 정책, 기준 및 지침 개발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이러한 정책, 기준, 지침에 관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과 소통했는가?
 - HMA 담당 직원은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책의 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2) 국가 및 지역의 부문 정책과 계획이 지뢰/ERW 폭발로 인한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는가? 국가 및 지역의 부문 정책과 계획에서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예: 커뮤니티 기반 집단의 담당 직원으로서) HMA 부문에 안심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차별적 관행을 다루고 있는가?

HMA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 1) MRE 활동은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가?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대중에게 전달하는 정보 메시지의 개발에 관여하는가?
 - 오염된 토지의 기호/표시/지표와 전달 방법이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가? 이미지에 여성, 여아, 남성, 남아의 그림이 포함돼 있는가?
 - 이미지가 비문해자, 시각 장애인 및 기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절한가?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교육 및 훈련 활동과 커뮤니티 연락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
- 2) 다음 사안에 관해 HMA 담당 직원 및 피해 커뮤니티에 위험 교육과 희생자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했는가?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사안
 - GBV 생존자에게 힘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3) MRE, 토지 정리, 귀환 및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HMA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일반적인 안전 및 GBV 위험 감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가?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이러한 정보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가?
- 4) HMA에 대한 토론회에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는가? 이러한 토론회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함에 따라(예: 기밀 유지,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교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함께 여행할 수 없다는 문화적 제약에 따라 국가 지뢰 조사를 시행하는 NGO에서 초창기에는 혼성 팀을 모집할 수 없었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팀이 고용되자 토지의 다른 구역에 대한 정보가 있는 여성의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됐다. 여성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그들의 필요와 우려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지뢰 퇴치 활동 조정 센터(Mine Action Coordination Centre of Afghanistan, MACCA)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제네바 인도주의 지뢰 퇴치 국제 센터(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GICHD)는 지뢰와 생계에 관한 젠더 인지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인용: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06.** Gender Handbook for Humanitarian Action,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Handbook%20%28Feb%202007%29.pdf>, **MACCA. 2009.** Attitudes towards Mine Action: An Afghan women's perspective, <www.gmap.ch/fileadmin/External_documents/Afghanistan_-_Attituded_towards__MA_An_Afghan_Women_s_Perspective.pdf>, **GICHD. 2012.** Livelihoods Analysis of Landmine/ERW Affected Communities in Herat Province Afghanistan, <www.gmap.ch/fileadmin/Others/Landmines_and_Livelihoods_Report_-_Herat_Province_2012.pdf>)





자원 동원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은 HMA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GBV 관련 자원 동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비상사태 대비/긴급 자금이나 비상사태 후 복구/개발 자금을 요청할 때 특정 GBV 위험을 반영하고 대처 전략을 제안하면 제안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금 조달 이후

'자원 동원'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품 및 공여자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동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도적 부문/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 제시돼 있다.

A. 인도적 필요의 개요

- ▶ HMA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 인구의 GBV 관련 안전 위험, 보호 필요 및 권리가 제안서에 명시돼 있는가?
- ▶ 'GBV'로 통칭하는 대신 GBV 위험을 특정 유형(예: 지뢰와 관련된 장애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가정 폭력과의 연관성, 토지 상실과 성착취와의 연관성 등)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 ▶ 비상사태 대비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HMA 운영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이 계획에 GBV 위험 감소 전략이 통합돼 있는가?
 -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자료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로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가?
 - 정부, 인도주의 담당 직원과 자원봉사자, HMA 프로그램에 참여한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GBV 위험을 줄일 수 있는 HMA 프로그램의 안전한 설계와 이행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 비상사태 대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HMA 프로그램이 GBV에 대한 노출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가 (예: 토지 정리 이후 반환된 토지에 대한 여성의 접근 및 사용, 희생자 지원 활동의 가용성 및 접근성, 지뢰/ERW로 피해를 입은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생계 지원 등)?
 - HMA 부문 여성 직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가 (예: 이동을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지원, 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 직원과 동행하도록 자금을 지원)?
- ▶ 비상사태 이후와 복구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 및 특정 유형의 GBV를 감소하는 장기적인 노력에 HMA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예: 지뢰/ERW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사회경제적 재통합 및 혜택 이니셔티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젠더 및 GBV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관련 국가 지뢰 퇴치 활동 기준의 개발 지원 등)이 있는가?
 -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반영돼 있는가?

C. 프로젝트 내용

- ▶ 제안된 활동에 GBV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이행 원칙 및 주요 접근법(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 기반)이 반영돼 있는가?
- ▶ 제안된 활동이 자원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하는가?
- ▶ 프로젝트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와 역량강화(HMA 담당 직원으로 고용, 현지 지뢰지대 해제 업무, MRE, 희생자 지원 위원회에 참여를 포함)를 촉진/지원하는가?





이행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HMA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GBV와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표현된 필요, 확인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HMA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1.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지뢰지대 해제와 MRE, 희생자 지원 활동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직원 및 지도자로 참여시킨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HMA 프로그램 담당 직원(MRE 및 희생자 지원 활동 포함) 중 여성의 비율이 50%가 되도록 노력한다. 적절한 장소에서의 지뢰 제거 활동을 포함한 지뢰지대 해제 활동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인다. 여성 직원이 책임자급 및 교육직을 맡을 수 있도록 공식 및 직무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여성(해당되는 경우 청소년기 여아 포함)이 지뢰 우선 제거 토지 기획 집단 및 해제된 토지의 양도에 관한 결정 등 커뮤니티 기반 HMA 위원회 및 관리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특히 지뢰/ERW로 인한 남성 사상자가 많은 경우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 시 남성과 대화하여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다.

▶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을 HMA 부문 직원, 책임자, 교육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루질 수 있도록 한다.

2. 지뢰/ERW로 오염된 적이 있는 토지의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고 강화한다.

▶ 비기술조사 및 기술조사를 수행 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과 상의하고 토지 이용, 토지 소유권 및 토지 소유권 박탈이 GBV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GBV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는지 생각해 본다.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토지 정리 우선 지역 및 토지 정리 이후 양도 방안에 대한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여성 및 여아 지뢰/ERW 생존자

지뢰/ERW로 인해 부상 및 피해를 입은 여성 및 여아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응급 및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신체 재활(물리치료, 보철 기구 및 보조 장치 포함),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과 사회경제적 재통합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문화적 여건에서는 여성 및 여아가 여성 의료진에 의한 치료만 받을 수 있으며, 여성 의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여성 생존자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인용: Calza Bini, A., and Massleberg, A. 2011. 'Gender-Sensitive Victim Assistance', The Journal of ERW and Mine Action 15(2), <www.jmu.edu/cisr/journal/15.2/focus/bini/bini.shtml>)



- ▶ 지뢰 퇴치 활동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예: 토지 사안을 다루는 정부 및 국제 단체)와 협력한다.
- ▶ 토지 양도 이후 토지 권리와 토지 소유권 주장 및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토지 정리 이후의 모니터링 과정을 지원하거나 시행한다.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지뢰지대 해제와 관련된 GBV 위험(예: 성착취,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가정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3.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안정성, 가용성,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이행한다.

- ▶ 지뢰/ERW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응급치료와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 신체적 재활을 지원한다. 지뢰/ERW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심리적 응급처치 포함)을 제공한다. 여성 전문가와 남성 전문가에 의한 돌봄과 지원을 모든 연령 집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일정에 따라 희생자를 지원하는 경우 모든 사용자와 협력하여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한다. 보건 및 재활 시설에서 보내거나 오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전략(예: 혼잡, 긴 대기시간, 새벽/밤 시간 이동을 피하기 위한 서비스 준비)을 개발한다.
- ▶ 보건 및 재활 시설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 필요 시 여성 및 남성에게 별도의 재활 시설과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 ▶ 지뢰/ERW 피해를 입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이동에 제한이 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 가사노동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여성)에 대비하여 이동식 재활 클리닉의 활용을 고려한다.



4.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사회경제적 재통합 및 혜택 이니셔티브에 포함되도록 지원한다.

- ▶ 지뢰/ERW로 인한 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생계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뢰/ERW 피해 또는 토지 상실로 인해 빈곤해진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지원한다. 다른 지뢰/ERW 생존자보다 더 빈곤하고 취약할 가능성이 큰 여성이나 소년소녀가정과 장애 여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 ▶ 지뢰/ERW에 의한 피해를 입은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생계 지원 프로그램과 재정 보상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 ▶ 주양육자가 된 남성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방법에 대해 고려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HMA 정책에 통합하기

1. 적절한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HMA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한다.

- ▶ (1) GBV 위험을 완화하고 (2)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이 HMA 프로그램에 직원이나 지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지뢰 퇴치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젠더 지침의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
 - HMA 직원을 위한 보육 관련 정책
 - 여성에 대한 동등한 고용 기준
 - GBV 사고 관련 보호/비밀 정보의 공유에 대한 절차 및 규약
 - 성적 착취 및 학대 발생 시 신고, 조사, 징계 기관의 절차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를 HMA 담당 직원, 위원회, 관리 집단에 두루 배포하고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공용어 및 지역별 현지어를 사용하여 더 넓은 커뮤니티에 배포한다(점자, 수화, 비문해자를 위한 시각적 콘텐츠가 포함된 포스터, 커뮤니티 회의를 통한 안내 등 접근하기 쉬운 방법 사용).

2. GBV 위험 감소 전략을 국가 및 지역의 HMA 관련 정책과 계획에 통합하기 위해 옹호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금을 할당한다.

- ▶ 지뢰/ERW 피해를 입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사람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정부, 관습적/전통적 지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HMA 정책 및 계획에 젠더 및 GBV에 관한 인식을 통합하도록 지원한다.
- ▶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관련 부처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이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HMA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에 통합하기

1.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존자를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 체계 (예: 위탁 경로)를 확인하고 HMA 담당 직원은 생존자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HMA 부문 종사자가 GBV 생존자가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서면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한다. GBV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HMA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성 정체성,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해 교육한다(예: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탁 경로

'위탁 경로'는 GBV 생존자를 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의 도움, 법률/사법 지원 등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연한 매커니즘이다.

2. HMA 부문 내부적으로 또는 더 큰 범위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에 속한 협력기관과 GBV에 관한 신고를 공유하는 HMA 프로그램이 안전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 생존자 개인과 가족의 신원이나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기관 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3. HMA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에 GBV 메시지가 포함되도록 한다.

- ▶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GBV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제고를 교육 아웃리치 이니셔티브에 통합한다 (예: 커뮤니티 토론회, 워크숍,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회의, GBV 메시지 전달 등).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GBV 예방,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 및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를 사용한다.
 - GBV 관련 메시지 개발 및 메시지 전달 전략 수립 과정에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가 참여하도록 하여 메시지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한다.
-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를 GBV 예방 관련 HMA 아웃리치에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관련 메시지 전달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통해 GBV와 관련된 사람 등 피해 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우려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GBV 전문가가 아니라면 GBV 전문가나 GBV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HMA 부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강령과 HMA 부문 종사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4. MRE 활동(예: 대중 대상 정보 전파, 교육 및 훈련, 커뮤니티 연락 서비스)에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를 장려한다.

- ▶ 대중에게 전달할 정보 메시지를 개발하거나 오염 토지의 기호/표시/지표를 선택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를 참여하게 하여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한다.
- ▶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거나 커뮤니티 연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이러한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예: 교통, 회의 시간 및 장소, 참여와 관련된 반발의 위험, 육아 지원의 필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론회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예: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을 이행한다.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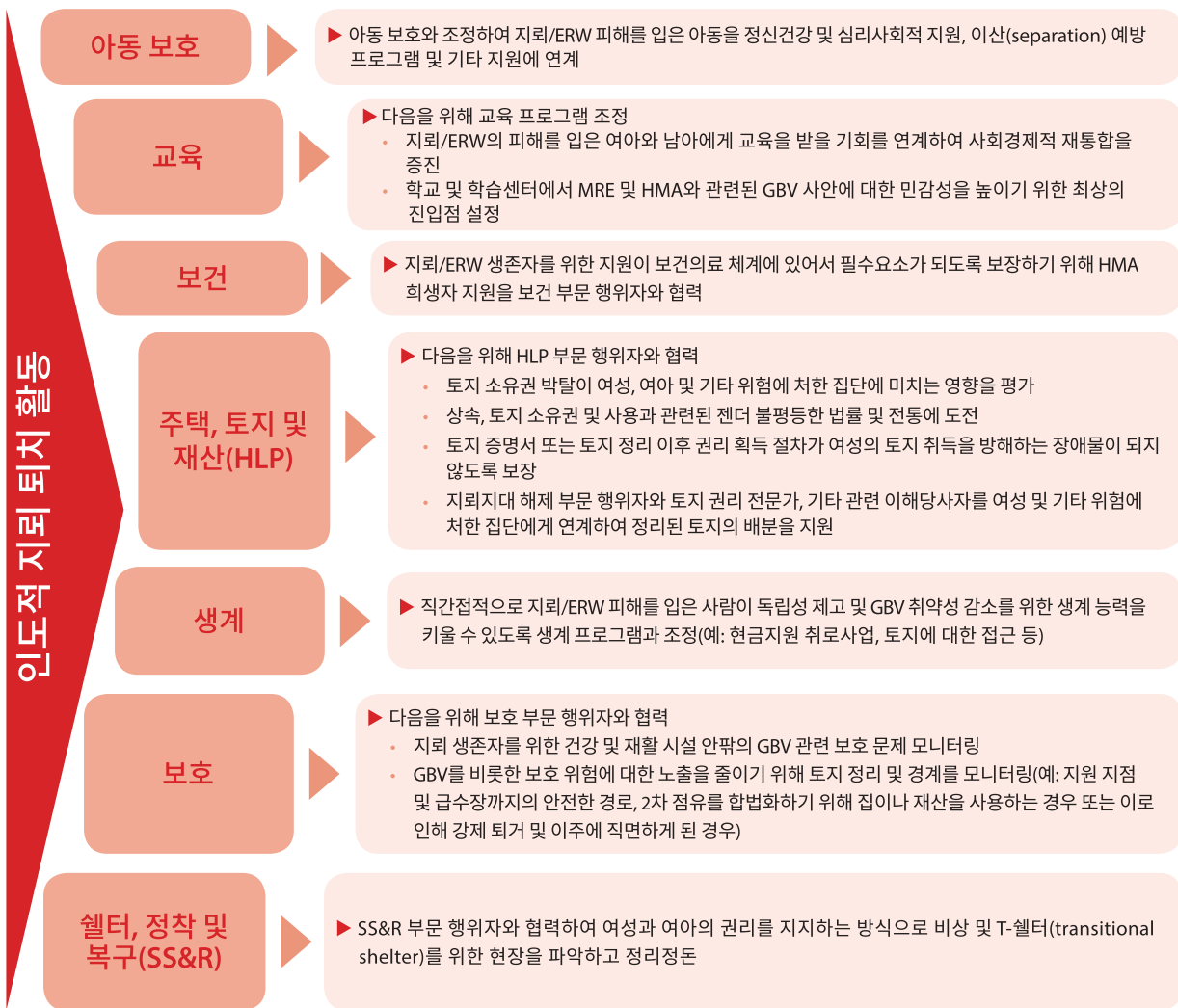
조정 과정의 첫 단계로, HMA 프로그램 담당자는 GBV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에서 GBV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GBV 전문가는 HMA 부문 행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HMA 프로그램과 관련된 GBV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HMA 현황 파악을 설계 및 실시하고 HMA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한다.
- ▶ HMA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안에 관해 교육한다.



- ▶ HMA 담당 직원에게 GBV 피해 사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생존자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HMA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힘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다.
- ▶ HMA와 와 관련이 있는 젠더, GBV, 여성의 권리, 인권 사안에 대해 피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HMA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른 인도적 지원 부문과 연계하여 GBV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부문(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부문)과의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다음 표에 제시돼 있다.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HMA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프로그램
단계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GBV 관련 질문을 HMA 현황 파악에 포함 ⁴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관련 질문*이 포함된 HMA 현황 파악의 수} \times 100}{\text{HMA 현황 파악의 수}}$ <p>* 현황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GBV 주제별 질문은 188 페이지 참조</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또는 톨	100%	✓	✓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	$\frac{\text{현황 파악 응답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응답자의 수}}$ $\frac{\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50%	✓	✓	

(계속)

⁴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30 November 2012.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ASC Transformative Agenda Reference Documen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4.%20Reference%20module%20for%20Cluster%20Coordination.pdf>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계속)						
HMA 활동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와 상의 ⁵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별도로 상의	양적 방법: $\frac{\text{HMA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와 상의한 HMA 활동*의 수} \times 100}{\text{HMA 활동의 수}}$ 질적 방법: HMA 활동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GBV 관련 위험 요인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HMA 활동은 지뢰지대 해제, MRE,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	해당 조직의 기록물,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 주요 정보원 인터뷰 (Key Informant Interview, KII)	100%		✓	✓
프로그램 설계 이전의 여성 참여 ⁵	양적 방법: $\frac{\text{프로그램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프로그램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의 수}}$ 질적 방법: 여성 및 여아는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자신들의 참여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설계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해당 조직의 기록물, FGD, KII	현장에서 결정			✓
HMA 프로그램의 여성 직원	$\frac{\text{HMA 프로그램의 직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HMA 프로그램의 직원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50%	✓	✓	
GBV 생존자 위탁 경로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생존자 위탁 경로를 올바르게 답한 HMA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답한 HMA 담당 직원의 수}}$	설문조사	100%	✓		✓

자원 동원						
HMA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에 GBV 위험 감소를 포함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위험 감소 목표, 활동 또는 지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 HMA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times 100}{\text{HMA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제안서 검토	100%	✓	✓	
GBV 지침에 관한 HMA 담당 직원 교육	$\frac{\text{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HMA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HMA 담당 직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	100%	✓	✓	

이행						
▶ 프로그램						
HMA 거버넌스 구조에서의 여성 참여 ⁵	양적 방법: $\frac{\text{HMA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는 여성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HMA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는 피해 인구의 수}}$ 질적 방법: 여성은 HMA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된 자신의 참여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HMA 거버넌스 구조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현장 관리 보고서, 이재이주 추적 매트릭스, FGD, KII	50%		✓	✓

⁵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 <www.humanitarianresponse.info/applications/ir/indicators>

(계속)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 프로그램(계속)						
지뢰/ERW로 오염된 적이 있는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여성이 참여	<p>양적 방법:</p> $\frac{\text{지뢰/ERW로 오염된 적이 있는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지뢰/ERW로 오염된 적이 있는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의 수}}$ <p>질적 방법: 지뢰/ERW로 오염된 적이 있는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벽은 무엇인가?</p>	해당 조직의 기록물, FGD, KII	현장에서 결정		✓	✓
희생자 지원 서비스에 여성 포함	$\frac{\text{희생자 지원 서비스를 받는 여성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희생자 지원 서비스를 받는 피해 인구의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현장에서 결정	✓	✓	
사회경제적 통합과 혜택 이니셔티브에서의 여성 참여	$\frac{\text{사회경제적 통합 서비스를 받는 여성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사회경제적 통합 서비스를 받는 피해 인구의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현장에서 결정	✓	✓	
▶ 정책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HMA 정책, 지침 또는 기준에 포함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포함된 HMA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times 100}{\text{HMA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기관, 부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의) 문헌 검토	현장에서 결정	✓		✓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답한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	100%	✓		
HMA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GBV 위탁에 관한 정보 포함	$\frac{\text{GBV 생존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교육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times 100}{\text{HMA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문헌 검토, KII,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다른 부문과 조정	$\frac{\text{현장에서 GBV 위험 감소 활동*을 위해 상의한 비 HMA 부문의 수} \times 100}{\text{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비 HMA 부문의 수}}$ <p>* 부문별 GBV 위험 감소 활동 목록은 197 페이지 참조</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KII, 회의록	현장에서 결정	✓	✓	



참고자료

- 지뢰 퇴치 활동에서의 젠더 평등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최신 체크리스트는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United Nations. 2010.** Gender Guidelines for Mine Action Programmes, <www.mineaction.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MA-Guidelines-WEB.pdf>
- **Swiss Campaign to Ban Landmines. 2008.** Gender and Landmines from Concept to Practice, <<http://reliefweb.int/report/world/gender-and-landmines-concept-practice>>
-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3.** 'Mainstreaming Mine Action into Child Protection: Key actions for child protection actors', <http://cpwg.net/starter_pack/mainstreaming-mine-action-cp>
- **Calza Bini, A., and Massleberg, A. 2011.** 'Gender-Sensitive Victim Assistance', The Journal of ERW and Mine Action 15(2), <www.jmu.edu/cisr/journal/15.2/focus/bini/bini.shtml>
- **Handicap International and RAVIM. 2013.** Shattered Dreams: Living conditions, needs and capacities of mines and Explosive Remnants of War survivors in Mozambique, <www.hiproweb.org/uploads/tx_hidrtdocs/ShatteredDreams.pdf>
-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2010.** 'Glossary of mine action terms, definitions and abbreviations, 04.10', <www.mineactionstandards.org/fileadmin/MAS/documents/imas-international-standards/english/series-04/IMAS-04-10-Ed2-Am3.pdf>
- 지뢰 퇴치 활동 개입에서 관련 젠더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하고 피해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이 지뢰 퇴치 활동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역량강화를 포함한 기술적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Gender and Mine Action Programme (GMAP)**: <www.gmap.ch>을 참조한다.





생계



적용 대상

- 생계 조정 메커니즘
- 생계 부문 행위자(직원 및 책임자):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기반 기구(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등), 국제비정부기구(INGO), 유엔 기구
- 생계와 관련된 지역 위원회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예: 여성 단체, 청소년/청년 단체, 노인 단체 등)
- 그 외 중앙 및 지방 정부, 커뮤니티 지도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생계 이해관계자

왜 생계 프로그램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인도주의 비상사태와 그에 따른 이주이재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피해 인구는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는다. 예를 들어 캠프에 거주하는 난민은 캠프 밖에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캠프 내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도시 환경에서 거주하는 난민 역시 일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이재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면 위험한 활동에 관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재민이 강제적으로 실업 상태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생계'의 정의

'생계'라는 용어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활용하는 능력, 재산, 전략을 의미한다. 생계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 복원(가축, 도구, 장비) • 교육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 • 캠프 내 경제 구축 • 농업 개입 • 시장 개입 • 소액금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창출 활동(Income-Generating Activities, IGAs) • 기업 개발 • 마을저축대부조합(Village Savings and Loans Associations, VSLAs) • 현금 프로그램(식량지원 취로사업, 무조건적/조건부 현금 지원, 현금지원 취로사업(cash for work), 바우처 등) |
|--|---|



필수 행동 요약표 참조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¹은 주로 젠더나 문화적 규범과 관련된 특정한 장애물을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전통적인 남성 일자리보다 임금이 낮은 일을 하도록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여성이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거나 여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과 관행은 이들의 수입 창출 능력을 더 제한할 수 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LGBTI인 사람, 소수민족, 장애인 및 기타 경제적 기회로부터 소외된 집단은 소외될 수 있다. 보육 시설이 없으면 독신 가정의 가장은 집 밖에서 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생계 수단이 없을 경우 타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취약성도 심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경제적 취약성은 구호 활동가, 가족 및 커뮤니티 구성원에 의한 성착취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착취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거나 학대적인 관계에 의존하거나 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거나 강요/강제된 매춘에 연루될 수 있다.
- ▶ 공식적인 일자리가 없을 경우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은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예: 장작과 숯을 수집하여 판매, 소품을 파는 좌판대 운영, 방문 판매, 수용자 또는 수용 커뮤니티의 집안일 담당).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오가거나 낮 또는 밤 중 위험한 시간대에 이동하게 될 수 있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은 고객, 공급자, 시장 관리자에 의한 착취, 괴롭힘, 학대에 더 취약하며, 특히 이들이 돈을 빌리거나 가격을 흥정하고 홀로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시장이 규제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젠더와 문화적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반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게 참가자,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파트너 또는 가족 구성원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거나 분노하는 경우 가정 폭력이 늘어날 수 있으며, 특히 남성 가족 구성원이 '가장'으로서의 전통적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는 더 심해질 수 있다.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에서 이재민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 이니셔티브는 수용자/수용 커뮤니티와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수용자/수용 커뮤니티는 이재민이 경제적 기회를 뺏거나 추가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수용 커뮤니티는 새로운 자원이 안전하게 배급 또는 관리되지 않을 경우, 자원을 받은 사람을 폭력과 절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설계된 생계 프로그램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보호 메커니즘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폭력과 착취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기술 교육과 사회적 자본 및 금융 자본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안전한 소득 창출 대안을 제공한다.
- ▶ 극소기업(micro-enterprise), 재무 관리, 천연 자원 관리 및 리더십에 관한 지식과 기술 기반을 강화한다.

¹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GBTI), HIV 보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미동반 아동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 ▶착취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들의 독립심을 육성하고 강화한다.
- ▶개인, 가족, 커뮤니티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웰빙을 강화한다.
- ▶가족과 커뮤니티 내의 GBV, 젠더 규범, 권력 불균형과 관련된 사안을 민감한 방식으로 제기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 ▶천연 자원의 관리를 개선하여 더 지속 가능하거나 대안적인 생계를 지원한다.

GBV 위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생계 부문이 이행해야 하는 행동은 GBV 전문가 및 기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생계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조정' 참조)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은 생계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선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현황 파악은 가능한 한 생계 부문 행위자가 GBV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도 협력하여 부문간 및 학제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아래에 제시된 영역별 질문은 축산 비상사태 지침 및 기준(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www.livestock-emergency.net>) 등 기존의 지침 자료에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은 '이행' 아래 자세하게 설명된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과 연관돼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도록 생계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하는 우선순위 및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주요 현황 파악 대상 집단

- 생계의 주요 이해관계자: 정부, 시민사회, 지역 지도자, 시장 판매자와 회사, 비즈니스 집단, 커뮤니티 구성원, 인도주의 활동가, GBV/젠더/다양성 전문가
- 피해 인구 및 커뮤니티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의 수용자/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생계 프로그램

참여 및 리더십

- 1)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생계 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의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가?
- 2) 책임자급을 포함한 생계 담당 직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여성 직원의 교육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GBV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안보적 사안이 있는가?
- 3) 생계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에 중점을 둔 활동을 주류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 기준(본 지침 포함)에 대해 알고 있는가?

문화 및 커뮤니티 규범과 관행

- 4) 위기가 특히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커뮤니티의 경제적 대처 전략, 가족 관리 전략, 안전한 생계 활동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생계 활동에서 변화로 인한 해로운 심리적, 물리적, 사회적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5)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시장, 생계 활동, 가족 관리 전략,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 장벽(예: 특정 유형의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젠더 규범, 일터 또는 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6)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생계 기회에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소득 창출 활동에서 젠더 이분화를 고착화시키는 물리적, 물리적, 법적, 교육적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예: 이동 또는 교통 문제, 보육 및 기타 가정에서의 책임, 장애, 난민이 공식 부문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벽, 재산/토지/기타 생산적인 자산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장벽, 문맹, 교육의 부재 등)?
- 7) 생계 프로그램으로 인해 고착될 수 있는 불평등한 젠더 규범이 있는가(예: 여성에게 육아 및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업무만을 배정, 남성에게 경비 및 기계 유지보수와 같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해왔던 업무만을 배정,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 생계 활동이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가?
- 8) 시장 조사를 통해 특히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이익이 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생계 활동을 파악했는가?
- 9) 생계 활동, 장소, 서비스와 상품의 유형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선호와 문화적 관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비상사태 이전에 사람의 생계 관행은 어떠한가?
 - 가족 소유, 통제, 돌봄 및 관리와 관련된 여성, 여아, 남성, 남아의 역할은 어떠한가?
 - 현지 관습으로 인해 여성이나 남성에게 금지된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생산적 자산에 접근하고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남성과 여성의 권력 균형은 어떠한가?
 - 경제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과 연관된 특히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반발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신체적 안전 및 GBV 위험

- 10) 돈을 벌기 위해 피해 인구, 특히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직면하는 GBV 관련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성폭행, 성희롱, 성착취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물류 및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예: 돈을 벌림, 경찰에게 검문을 당함, 방문 판매, 야간에 이동,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이동, 가게에서 혼자 일함 등)?
 - 어떠한 생계 관계(예: 소비자, 공급자, 시장 관리자, 친밀한 파트너 등)가 성폭행, 성희롱, 성착취의 위험을 증가시키는가? 무엇이 안전하도록 하는가? 누가 폭력이 자행되도록 지휘하고 조장하며 허용하는가?
- 11) 생계 자산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인해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안전하지 않은 생존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가? 채택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무엇이 이러한 생존 전략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계속)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생계 정책

- 1)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생계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통합돼 있는가?
 - 특히 GBV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권리 및 필요를 다루는 생계 정책, 기준 및 지침의 개발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이러한 정책, 기준, 지침에 관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과 소통했는가?
 - 생계 담당 직원은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책의 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2) 합법적 고용, 재산 소유, 상속, 토지 및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 교육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여성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가? 여성이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 착취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3) 법에서 난민의 일할 권리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난민과 생계에 관한 공식적/비공식적 관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4) 합법적 고용 연령은 어떠한가? 아동 노동과 관련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5) 빈곤 감소를 위한 국가적 실행 계획이 있는가? 청년 및 젠더 전략/실행 계획이 있는가?
 - 이러한 계획이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지원하는가?
 - 생계 프로그램이 이러한 계획에 부합하도록 구축되었는가?

생계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 1) 생계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는가?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사안
 -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2) 생계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가 생계 활동과 관련된 GBV 위험 및 보호 요인에 관한 커뮤니티의 인식을 제고하는가?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이러한 정보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참여하는가?
- 3) 생계에 관한 토론회에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는가? 이러한 토론회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함에 따라(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자원 동원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은 생계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GBV 관련 자원 동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비상사태 대비/긴급 자금이나 비상사태 후 복구/개발 자금을 요청할 때 특정 GBV 위험을 반영하고 대처 전략을 제안하면 제안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금 조달 이후

'자원 동원'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품 및 공여자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 동원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도적 부문/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 제시돼 있다.

A. 인도적 필요의 개요

- ▶ 생계 활동 참여과 관련하여 피해 인구의 GBV 관련 안전 위험, 보호 필요 및 권리가 제안서에 명시돼 있는가?
- ▶ 'GBV'로 통칭하는 대신 GBV 위험을 특정 유형(예: 성폭행, 성희롱,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 등)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 ▶ 비상사태 대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생계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GBV 위험을 감소하는 방식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가(예: 프로그램의 장소와 설계, 커뮤니티 내 반발을 줄이기 위한 전략 등)?
 - 정부, 인도주의 활동가, 여성단체,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GBV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생계 프로그램의 안전한 설계와 이행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자료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로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가?
- ▶ 비상사태 이후와 복구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생계 프로그램이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역량강화, 안전과 경제적 웰빙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한 전략과 특정 유형의 GBV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관한 설명이 있는가?
 - 프로그램에서 젠더 평등 목표를 인식하고 지원하는가?
 -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반영돼 있는가?

C. 프로젝트 내용

- ▶ 제안된 활동에 GBV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이행 원칙 및 주요 접근법(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 기반)이 반영돼 있는가?
- ▶ 실현 가능하고 해당되는 경우에 이러한 활동이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가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왔던 직업보다 소득과 지위가 높은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직업을 갖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지도자 및 정부 협력 기관이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를 대상으로 어떠한 직업이 안전한지,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이 하지 않았던 직업이 안전한지에 대해 상담했는가?





이행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생계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GBV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표현된 필요, 확인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GBV 감소 전략을

생계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1. 피해 인구의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생계 프로그램에 직원 및 책임자로 참여시킨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생계 프로그램 담당 직원 중 여성 비율이 50%가 되도록 노력한다. 여성 직원이 책임자급이나 교육직을 맡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을 생계 부문 직원, 책임자, 교육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최소 근로 연령

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최소 근로 연령에 대한 국가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생계 활동이 아동 노동을 조장하거나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를 결석하도록 부추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여아와 남자는 리더십, 문해력, 수리력뿐만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생존자를 생계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GBV 생존자가 특정 생계 프로그램의 유일한 참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각해지고 그들의 비밀보장권, 안전,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예: 여성가장가정, GBV 생존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여성, 장애인, LGBTI인 사람 등)을 식별하는 것은 좋은 접근법이다. 프로그램은 생존자를 분리하거나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여성, 여아, 남성, 남아와 상의하여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생계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기획 회의와 생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이동 관련 장애물에 대처한다.

- 가사 노동 등 가정 내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의 필요에 맞춰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한다.
-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생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문화적 장애물에 대처한다.
 -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특정한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막는 젠더 및 문화적 규범에 대처할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실시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안전한 공간에서 서로 교류하고 자원과 기술을 공유하며 생계 관련 주요 사안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기관, 커뮤니티 단체, 기업을 지원한다.

3. 여성, 여아, 남성, 남자와 상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GBV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생계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 ▶ 참가자와 상의하여 생계 활동과 관련된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참가자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가능한 경우 생계 활동을 안전한 곳에서 GBV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대에 실시하도록 한다. 참가자가 위험한 상황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예: 경찰 검문, 방문 판매, 가게를 혼자 운영, 해가 진 후 이동 등).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커뮤니티에서 제안한 해결책을 지원한다.
- ▶ (고객이나 공급업체, 시장 관리자, 경찰 또는 기타 보안 요원 등에 의한) 착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참가자를 믿을 수 있는 납품 업체, 운송 회사 및 최종 시장과 연결시켜 준다.

모범 사례

아르바 위 누스(Arba wy Nuss)에 위치한 이집트-수단 개발센터는 가사 서비스 교육 및 직업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디렉터는 프로그램을 수료한 난민 여성이 배정된 가정에 동행하여 고용주의 이름과 연락처 및 합의된 급여를 기록함으로써 난민 여성이 보호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사소한 절차를 통해 난민 여성을 고용한 가정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고 커뮤니티 센터가 난민 여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용: Heller, L., and Timoney, J. 2009. 'Earning Money/Staying Safe: The links between making a living and sexual violence for refugee women in Cairo', New York: Women's Refugee Commission, p. 7,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programs/88-programs/livelihoods>>)

모범 사례

UNHCR이 후원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콕틱복음주의단체(Coptic Evangelical Organization for Social Services, CEOSS)에서 운영하는 한 프로그램은 이집트 난민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과 취업 알선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300명의 난민(여성 43%)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그 중 94명이 졸업 전 취업에 성공했다. 전문 컨설턴트가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노동 수요가 있는 분야를 파악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간병/간호, 자수, 인터넷 기반 기업, 컴퓨터 수리 등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별했다. 난민 여성에게 있어서 재택 근무는 일터에서의 GBV 위험과 육아 지원의 필요를 줄여 주었다. CEOSS는 프로그램 수료생의 취업을 주선하기 위한 '직업은행'을 만들고자 이집트 고용주와의 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선정된 회사에 교육생이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CEOSS는 면접 교육도 실시했다. 많은 교육생은 견습생 기간을 거쳐 고용됐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심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

(인용: Heller, L., and Timoney, J. 2009. 'Earning Money/Staying Safe: The links between making a living and sexual violence for refugee women in Cairo'. New York: Women's Refugee Commission, p. 6,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programs/88-programs/livelihoods>>)



▶ 현지 당국, 커뮤니티와 기타 관련 부문 (CCCM, WASH 등)과 협력하여 참가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조정된 전략에는 일하기 위해 오가는 경로에 안전 순찰, 동행 시스템, 경찰 및 커뮤니티 감시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과 핵심적인 구호 노력의 일환으로 태양 손전등을 제공하거나 이동 경로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경제적 역량강화가 가족이나 커뮤니티 내 긴장을 커지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커뮤니티의 여성 및 남성과 상의한다. 참가자의 반발이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실시한다.



- 참가자, 가족, 커뮤니티 구성원이 GBV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한다.
- 남성과 청소년기 남아를 병행 생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거나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를 위한 생계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한다.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에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수용자 또는 수용 커뮤니티와 협력한다. 생계 프로그램이 천연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이용을 조장하거나 천연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에 직접적인 경쟁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보장한다. 두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문화 인지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생계 활동을 통해 두 커뮤니티 구성원이 모두 혜택을 받는지 모니터링한다.
- 잠재적인 갈등을 줄이고 상호 협조를 장려하기 위해 단체 회의, 토론회 및 기타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서로 다른 생계 집단(예: 목축민, 농민) 간의 이해를 증진한다.

✓ 교훈

에티오피아 소말리 지역 내 캠프에서 덴마크난민위원회(Danish Refugee Council, DRC)는 가게 운영 자금을 위한 소액대출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라 커뮤니티 내 남성으로부터 늘어나는 언어폭력 등 강한 반대를 받게 된 여성가장가정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반대에 대처하기 위해 DRC는 남성도 참가자로 받기 시작했고 프로그램 참여 촉진을 위해 커뮤니티 지도자와 상의했다.

(인용: Krause-Vilmar, J. 2011. 'Preventing Gender-Based Violence, Building Livelihoods: Guidance and tools for improved programming'. New York: Women's Refugee Commission, p. 7,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resources/document/798-preventing-gender-based-violence-building-livelihoods-guidance-and-tools-for-improved-programming>>)

4. 사업 개발, 농업 교육, 가치 사슬 통합, 직업 기술 교육, 역량 구축과 교육을 통해 참가자의 경제적,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

- ▶ 피해 인구와의 상담 및 전문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수익성 있는 일을 위한 진입점을 식별한다.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고 피해 인구, 특히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가 상업적인 성매매나 기타 위험한 소득 창출 대안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
- ▶ 경제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접근법을 취한다. 먼저 소비 지원을 통해 긴급한 필요가 충족되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피해 인구를 지속 가능한 생계 전략이나 금융 서비스에 연결한다.
- ▶ 적절한 경우, 비전통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의 지위와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남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통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고용의 기회가 주어졌던 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LGBTI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에게 수익성 있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생계 활동에 관한 지역별 고유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 ▶ 금융 지식, 사업 관리, 컴퓨터 활용 능력, 마케팅과 같은 시장성, 수익성, 전용성 있는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 교육 시간과 장소, 진행자의 성별, 보육 등 접근성과 관련된 사안을 고려한다.
 - 안전을 위해 적절하게 선별하고 모니터링한 견습생 제도나 취업 알선 서비스를 교육과 연계한다.
 - 학교를 마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문해력 및 수리력과 같은 주제에 대한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해 보는 방안을 고려한다.



모범 사례

2004년 인도 남부에서 일어난 쓰나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NGO는 비전통적인 기술 교육(예: 석공 기술, 핸드 펌프 수리, 배달업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동 및 서비스 시장 내 이분화된 젠더 규범에 도전했다. 또한 참가자의 남편, 자녀, 그리고 전체 커뮤니티의 눈을 통해 참가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다.

(인용: Pincha, C. 2007.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tial Impacts of Tsunami an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in Tsunami Response in Tamil Nadu, India. Anawhim Trust and Oxfam America, p. 11, <https://www.gdonline.org/resources/Gender_mainstreaming_Pincha_etal.pdf>)

5. 절도나 재정적 착취의 위험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참가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이행한다.

- ▶ 현금 지급보다 은행이나 모바일 계좌를 통해 지원금, 임금, 대출금을 직접 송금하는 것을 고려한다.
- ▶ 참가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임금, 대출금이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지급하도록 한다.
- ▶ 피해 인구에 대한 상업적 착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협동조합, 기타 집단의 발전을 지원한다.
- ▶ 대출로 인해 빈곤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이들이 다른 금융 기관을 통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빚을 늘리지 않도록 보장한다.



6. 위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생계를 구축한다는 틀 안에서 모든 생계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 ▶ 단기 생계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여파와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프로그램 종료 후 경제적 위험이나 생존 관련 위험에 처하게 되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민감한 출구 전략을 개발한다(예: 참가자를 취업 알선 또는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경우 단기 생계 프로그램을 빈곤 감소 및 시장 주도적인(즉, 수익성 있는) 경제적 역량강화 전략과 연계한다.
- ▶ 해당되는 경우, 프로그램 설계 시 계절을 고려해야 한다(예: 자원 등이 부족하게 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건기가 끝날 무렵이 다가오면 더 집중된 생계 지원을 제공).
- ▶ 해당되는 경우, 주기적 자연 재해로 인한 사업 손실 완화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보험이나 위험 전가 메커니즘을 조정하는 것을 지원한다.

GBV 감소 전략을

생계 정책에 통합하기

1. 적절한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생계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통합한다.

- ▶ (1) GBV 위험을 줄이고 (2)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생계 프로그램에 담당 직원이나 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생계 담당 직원을 위한 보육 관련 정책
 - 여성에 대한 동등한 고용 기준
 - GBV 사고 관련 보호/비밀 정보의 공유에 대한 절차 및 규약
 - 성적 착취 및 학대 발생 시 신고, 조사, 징계 기관의 절차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를 생계 담당 직원, 위원회, 관리 집단에 두루 배포하고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공용어 및 지역별 현지어를 사용하여 더 넓은 커뮤니티에 배포한다(점자, 수화, 비문해자를 위한 시각적 콘텐츠가 포함된 포스터, 커뮤니티 회의를 통한 안내 등 접근하기 쉬운 방법 사용).

2.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경제적 및 직업적 역량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률, 정책, 계획을 개혁하도록 지원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금을 할당한다.

- ▶ 정부 당국, NGO, INGO,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다음을 위한 국가적 실행 계획(예: 빈곤 감소 전략)을 개발 및 이행한다.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경제적 역량강화 기회가 증진되고 국가적 전략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GBV 위험 감소 전략을 빈곤 감소 전략에 통합한다.
- ▶ 피해 인구나 협력하여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합법적인 고용(예: 난민의 일할 권리), 재산 소유, 상속, 결혼 생활에서의 보호, 토지 및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 학교 및 기타 교육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권리를 옹호한다.



- ▶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개발 과정에서 관련 실무 부처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이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GBV 감소 전략을

생계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에 통합하기

1.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존자를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 체계(예: 위탁 경로)를 확인하고 생계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생계 부문 종사자가 생존자가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서면 정보를 가지고 있게 한다.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생계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성 정체성,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해 교육한다(예: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협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생계 부문 내부적으로 또는 더 큰 범위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에 속한 협력기관과 함께 GBV 관련 신고를 공유하는 생계 프로그램이 안전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 생존자 개인과 가족의 신원이나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안보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기관 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3. 생계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에 GBV 메시지를 통합한다.

- ▶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GBV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제고를 생계 아웃리치 이니셔티브에 통합한다(예: 커뮤니티 토론회, 워크숍, GBV 메시지 전달 등).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GBV 예방,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협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 및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를 사용한다.
- 메시지 개발 및 메시지 전달 전략 수립 과정에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가 참여하도록 하여 메시지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탁 경로

‘위탁 경로’는 GBV 생존자를 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의 도움, 법률/사법 지원 등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연한 메커니즘이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관련 메시지 전달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통해 GBV와 관련된 사람 등 피해 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우려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GBV 전문가가 아니라면 GBV 전문가나 GBV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를 (워크숍, 교육, 커뮤니티 지도자 면담, 젠더 및 권리 사안에 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의 생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변화의 주체로 참여시킨다.
-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교육 관련 커뮤니티 토론회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예: 교통, 반발의 위험, 육아 책임 등)을 고려한다. 참가자가 GBV 관련 사안을 편안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론회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을 이행한다.
- ▶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생계 부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행동 강령 및 생계 부문 종사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모범 사례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의 여성 보호 및 역량강화(Women's Protection and Empowerment, WPE) 프로그램은 경제 및 사회적 역량강화(Economic and Social Empowerment, EA\$E)를 통해 여성의 사회 및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EA\$E 프로그램은 다음의 3대 전략을 통해 가정 내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증진함으로써 더 안전한 젠더 역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마을저축대부조합(Village Savings and Loan Associations, VSLAs)을 통한 재정 서비스 접근:

VSLA를 통해 15~30명의 여성이 그룹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저축하고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 이러한 공동 펀드는 개별 회원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대출자는 적절한 이자와 함께 대출금을 상환한다. 결과적으로 VSLA는 여성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젠더 토론—토론회에 관해 이야기해 보기: 사전 조사에 따르면 (여성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젠더 토론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A\$E 프로그램은 VSLA 구성원과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 지속적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가정의 재정 상태와 경제 관련 의사결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권력 불균형, 가정 내 여성의 가치, 폭력에 대한 대안과 같은 심도있는 주제들도 다루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경제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이지 않는 여성 폭력, 의사결정, 관계 역학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다룬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러한 토론의 주목표인 가정 내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이 아닌) 웰빙을 증진함으로써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 비즈니스 교육: VSLA 구성원은 대출금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기회 탐색 및 소규모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비즈니스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EA\$E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내 9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엄격한 영향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브룬디에서 진행된 시범 프로그램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토론 시리즈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수준 및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가 감소된 반면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와 배우자 사이에서 상호 협의하는 경우는 증가했다.

(자세한 정보는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www.rescue.org/sites/default/files/resource-file/Burundi%20EA\\$E%20Impact%20Eval%20Formatted%20Final.pdf](http://www.rescue.org/sites/default/files/resource-file/Burundi%20EA$E%20Impact%20Eval%20Formatted%20Final.pdf)>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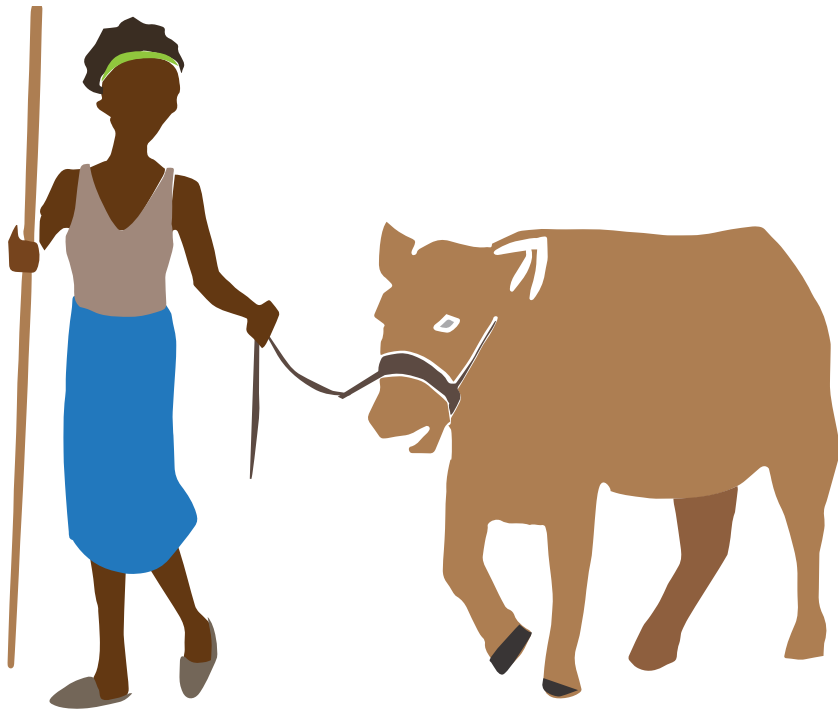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조정 과정의 첫 단계로, 생계 프로그램 담당자는 GBV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에서 GBV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GBV 전문가는 생계 부문 행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생계 프로그램과 관련된 GBV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생계 현황 파악을 설계 및 실시하고 생계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한다.
- ▶ 생계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관련 사안에 관해 교육한다.
- ▶ 생계 담당 직원에게 GBV 피해 사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생존자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생계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다.
- ▶ 피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에 관한 사안을 생계와 관련지어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또한 생계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 연계하여 GBV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부문(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부문)과의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다음 표에 제시돼 있다.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생계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 (CCCM)

- ▶ 다음을 위해 CCCM 협력기관과 협력
 - 캠프 내에서 생계 활동을 위해 안전한 지역과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식별
 - 여성과 청소년기 여아의 지원을 받아 안전 우려사항과 연료, 물, 기타 주요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여 생계 활동의 장소를 계획

아동 보호

- ▶ 다음을 위해 아동 보호 부문 행위자와 협력
 - 피해 지역의 아동 노동에 관한 분석 시행
 - 아동 보호 기준이 생계 개입에 통합되도록 보장
 - 청소년기 여아를 위한 안전한 생계 기회 계획

교육

- ▶ 다음을 위해 교육 부문 행위자와 협력
 - 문해력, 금융 지식, 생계 및 직업 교육 요소를 포함하는 비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탐색하고 그 이행을 고려
 - 복구가 필요한 훼손된 학교를 찾고 생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재)건축 기회를 식별

식량 안보 및 농업

- ▶ 다음을 위해 식량 안보 및 농업 부문 행위자와 협력
 - 생계 프로그램을 위한 기회로 개발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가장 긴급한 농업 시장 요구를 식별(예: 농사, 현금 작물 재배 및 판매, 가축 사육 등)
 - 기업을 위한 기회뿐만 아니라 농업 기반 작업의 전통적이지 않은 고용 선택권도 고려
 - 캠프와 도시 환경에서 이재 인구의 토지에 관한 접근을 협상
 - 시장과 농촌지도사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농업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파악하고 지원

보건

- ▶ 보건 부문 행위자로부터 신고 이후 생존자의 보건의료를 위한 위탁 경로에 관한 정보를 얻음
- ▶ 생계 계획과 관련된 모든 보건 위험에 관해 보건 담당자의 지원을 요청(예: 연기가 자욱한 부엌과 같이 해로운 환경)

주택, 토지 및 재산(HLP)

-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토지 소유권, 상속권 및 토지와 천연 자원에 접근할 권리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HLP 부문 행위자와 협력

영양

- ▶ 다음을 위해 영양 부문 행위자와 협력
 - 영양 부족에 대처하는 생계 기회를 고려(예: 고영양 작물 재배 확대)
 - 생계 프로젝트를 영양/요리 수업과 연계(예: 농업 발전 또는 그룹 비즈니스)
 - 모유수유 또는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워킹맘을 지원

보호

- ▶ 생계 활동 및 그 주변의 보호 사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호 부문 행위자와 협력
- ▶ 법 집행 기관을 협력 기관으로 연계하여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안전하게 출퇴근하거나 (착취 등으로부터)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안전 필요에 대처

쉼터, 정착 및 복구(SS&R)

- ▶ SS&R 프로그램에서 숙련/비숙련 노동자 멘토링을 위한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SS&R 부문 행위자와 협력
- ▶ 쉼터의 건축, 설계,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해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생계 기회를 식별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WASH)

- ▶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해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생계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WASH 부문 행위자와 협력(예: 화장실의 건축, 설계,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회 및 관리되는 캠프 환경에서의 기타 WASH 시설)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프로그램 단계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GBV 관련 질문을 생계 현황 파악에 포함 ²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관련 질문*이 포함된 생계 현황 파악의 수} \times 100}{\text{생계 현황 파악의 수}}$ <p>* 현황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GBV 주제별 질문은 205 페이지 참조</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또는 틀	100%	✓	✓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	$\frac{\text{현황 파악 응답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응답자의 수}}$ $\frac{\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50%	✓	✓	

(계속)

²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30 November 2012.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ASC Transformative Agenda Reference Documen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4.%20Reference%20module%20for%20Cluster%20Coordination.pdf>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계속)

<p>생계 접근에서의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나 상의³</p> <p>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별도로 상의</p>	<p>양적 방법: 생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나 상의한 생계 프로그램의 수 × 100 생계 프로그램의 수</p> <p>질적 방법: 피해 인구가 생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GBV 관련 위험 요인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p>	<p>해당 조직의 기록물,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 주요 정보원 인터뷰 (Key Informant Interview, KII)</p>	100%		✓	✓
<p>프로그램 설계 이전의 여성 참여³</p>	<p>양적 방법: $\frac{\text{프로그램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프로그램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의 수}}$</p> <p>질적 방법: 여성 및 여아는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된 자신의 참여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계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p>	<p>해당 조직의 기록물, FGD, KII</p>	현장에서 결정			✓
<p>GBV 생존자 위탁 경로에 대한 직원의 지식</p>	<p>$\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생존자 위탁 경로를 올바르게 답한 생계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답한 생계 담당 직원의 수}}$</p>	<p>설문조사</p>	100%	✓		✓
<p>GBV 위험에 처한 사람과 관련된 시장 분석 설계</p>	<p>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 분석을 개발했는가? 시장 분석에 관련 안전 및 젠더 고려사항이 포함됐는가?</p>	<p>시장 분석</p>	해당 사항 없음	✓		

자원 동원

<p>GBV 위험 감소를 생계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에 포함</p>	<p>GBV 지침에 나온 GBV 위험 감소 목표, 활동 또는 지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 생계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 100</p> <p>생계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p>	<p>(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제안서 검토</p>	100%	✓	✓	
<p>GBV 지침에 관한 생계 담당 직원 교육</p>	<p>$\frac{\text{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생계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생계 담당 직원의 수}}$</p>	<p>(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p>	100%	✓	✓	

(계속)

³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 <www.humanitarianresponse.info/applications/ir/indicators>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

▶ 프로그램

생계 프로그램에서의 여성 참여 ³	<p>양적 방법:</p> $\frac{\text{생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생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해 인구의 수}}$ <p>질적 방법: 여성과 여아는 생계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신의 참여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p>	현장 관리 보고서, 이재이주 추적 매트릭스, FGD, KII	50%		✓	✓
생계 프로그램의 담당 여성 직원	$\frac{\text{생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 생계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생계 담당 직원의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50%	✓	✓	
생계 프로그램 참여 시 GBV 위험 요인	<p>양적 방법:</p> $\frac{\text{생계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질문에서 GBV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생계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질문에 답한 피해 인구의 수}}$ <p>질적 방법: 피해자가 생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GBV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피해 인구가 생계 프로그램과 관련해 말한 안전 우려사항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p>	설문조사, FGD, KII, 참여 커뮤니티 도식화	0%		✓	✓
피해 인구의 소득 지원	$\frac{\text{생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구 중 소득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수} \times 100}{\text{소득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수}}$ <p>주의: 이러한 소득 지원이 기존에 생존을 위한 성관계나 착취적인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대체하는 경우, 소득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p>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연령별 및 여성가장가정/남성가장가정으로 구분						
생계 수혜자의 순소득 변화	$\frac{(\text{종료선 조사 시 생계 수혜자의 소득} - \text{기초선 조사 시 생계 수혜자의 소득}) \times 100}{\text{종료선 조사 시 생계 수혜자의 소득}}$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성별에 따라 구분						
▶ 정책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생계 정책, 지침 또는 기준에 포함	<p>GBV 지침에 나온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포함된 생계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 100</p> <p>생계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p>	(기관, 부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의) 문헌 검토	현장에서 결정	✓		✓

(계속)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 (계속)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	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응답한 직원의 수 × 100 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	100%	✓		✓
생계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GBV 위탁에 관한 정보 포함	GBV 생존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교육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 100 생계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문헌 검토, KII,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다른 부문과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위해 상의한 비 생계 부문의 수 × 100 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비 생계 부문의 수 부문별 GBV 위험 감소 활동은 217 페이지 참조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KII, 회의록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참고자료

양질의 생계/경제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반적인 참고 자료

- **The Small Enterprise Education and Promotion (SEEP) Network. 2010.** Minimum Economic Recovery Standards. 이 핸드북은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 및 기업의 소득, 현금 흐름, 자산 관리를 개선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전략 및 개입을 제시하고 있다. <www.seepnetwork.org/filebin/Minimum_Econ_Recovery_Standards2_web.pdf>
- **현금 학습 파트너십(Cash Learning Partnership, CaLP).** 현금 학습 파트너십은 인도주의 부문에서 실시되는 현금 지급 및 바우처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ww.cashlearning.org>
- **Women’s Refugee Commission. 2009.** Building Livelihoods: A field manual for practitioners in humanitarian settings. New York: Women’s Refugee Commission. 이 문서는 생계 프로그램에 관한 포괄적 개요를 다루고 있으며 현황 파악, 설계, 모니터링 및 평가 툴을 제공한다. <www.unhcr.org/4af181066.pdf>

- **Emergency Market Mapping and Analysis Toolkit (EMMA). 2011.** <<http://emma-toolkit.org>>. EMMA 툴킷은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발생 시 인도주의 담당 직원을 위한 지침 안내서이다. 구호 기관이 재해 지역의 현지 시장 시스템을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원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생계 기회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핸디캡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이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습득한 특정 경험에 기반한 활동과 툴은 **Lessons Learnt: Socio-Economic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in a victim assistance framework in Uganda and Congo**, <www.hiproweb.org/uploads/tx_hidrtdocs/handicap_lessons_final.pdf>를 참조한다.
- **MercyCorps. 2007.** Guide to Cash-for-Work Programming, <www.mercycorps.org/files/file1179375619.pdf>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nd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2007.** Guidelines for Cash Transfer Programming. Geneva, <www.ifrc.org/Global/Publications/disasters/finance/cash-guidelines-en.pdf>

- **Chaffin, J., and Kalyanpur, A. 2014.** What Do We Know about Economic Strengthening for Family Reintegration of Separated Children? Inter-Agency Group on Reintegration, Child Protection in Crisis, Women's Refugee Commission, <www.cpcnetwork.org/wp-content/uploads/2014/11/What-do-we-know-about-economic-strengthening-for-family-reintegration-of-separated-children.pdf>
- **축산업 비상사태 지침 및 기준(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 LEGS).** 이 지침은 인도주의 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을 돕기 위해 축산 부문 개입의 설계, 이행, 평가를 위한 일련의 국제 기준을 담고 있다. LEGS 는 생계 기반 개입의 적절성, 적시성과 실현 가능성을 증대하여 비상사태 대응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ww.livestock-emergency.net>

GBV에 따른 생계 프로그램에 관한 참고자료

-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Program Manual for Economic and Social Empowerment. 현장 기반 실무자를 대상으로 EA\$E(경제 및 사회적 역량강화)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모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A\$E는 여성이 재정적 안정에 대한 접근을 돕고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해 가정에서 더 평등하고 안전한 젠더 역학을 조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Natalia.Strigin@rescue.org로 문의한다.
- **Ray, S., and Heller, L. 2009.** 'Peril or Protection: The link between livelihoods and gender-based violence in displaced settings'. New York: Women's Refugee Commission,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peril-or-protection-making-work-safe>>
- **Chynoweth, S., and Patrick, E. 2007.** 'Sexual Violence during Firewood Collection: Income-Generation as protection in displaced settings'. In Terry, G., and Hoare, J. (eds.) Gender- Based Violence. Oxford: Oxfam GB.
- **Women Savings and Credit Association. 2013.** Manual for Community Volunteers to Facilitate Group Meetings about Domestic Violence. 이 안내서는 탄자니아 가정 폭력 프로그램인 WSCA에서 제작했으며, 가정 폭력, 젠더, 문화, 예방에 대한 모임을 진행하기 위한 틀이 포함돼 있다. <<http://preventgbv africa.org/wp-content/uploads/2013/11/WOSCA.ManualforCVs-engl.pdf>>
- **Heller, L., and Timoney, J. 2009.** 'Earning Money/ Staying Safe: The links between making a living and sexual violence for refugee women in Cairo'. New York: Women's Refugee Commission, <<https://womensrefugeecommission.org/resources/document/277-earning-money-staying-safe-the-links-between-making-a-living-and-sexual-violence-for-refugee>>

젠더에 따른 생계 프로그램에 관한 참고자료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8.** 'Empowered and Equal: Gender equality strategy, 2008–2011'. UNDP: New York, Document1<www.peacewomen.org/assets/file/PWandUN/UNImplementation/ProgrammesAndFunds/UNDP/gender-equality-strategy-2008-2011.pdf>. 본 문서는 이 문서는 배경, 개념적 프레임워크, 세계 각국의 프로그램 사례, 젠더 주류화를 위한 실용적인 제안, 결과 내용, 성과 측정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의 사회 및 경제적 역량강화에 관한 훌륭한 개요를 담고 있다.
- 젠더 평등한 생계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06.**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Handbook%20%28Feb%202007%29.pdf>를 참조한다.

-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2012.** Let Me Not Die before My Time: Domestic violence in West Africa. New York: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이 글에는 경제력 강화에 대한 반발의 증거 사례가 포함돼 있다. <www.rescue.org/sites/default/files/resource-file/IRC_Report_DomVioWAfrica.pdf?q=domesticviolencereport>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and Dimitra Project. 2009.** Guidance Note. 'Gender-Based Violence and Livelihood Interventions', <http://www.fao.org/fileadmin/templates/dimitra/pdf/guidance_note_gbv_livelihoods.pdf>
- **Krause-Vilmar, J. 2011.** Preventing Gender-Based Violence, Building Livelihoods: Guidance and tools for improved programming. New York: Women's Refugee Commission, pp. 13–24,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resources/document/798-preventing-gender-based-violence-building-livelihoods-guidance-and-tools-for-improved-programming>>
- **Women's Refugee Commission. 2012.** 'Integrating Protection/GBV Mitigation into Livelihood Programs',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resources/document/857-integrating-protectiongbv-mitigation-into-livelihood-programs-checklist>>



영양



적용 대상

- 영양 조정 메커니즘
- 영양 부문 행위자(직원 및 책임자):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기반 기구(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등), 국제비정부기구(INGO), 유엔 기구
- 영양 관련 지역 위원회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예: 여성, 청소년/청년, 노인 모임 등)
- 그 외 중앙 및 지방 정부, 커뮤니티 지도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영양 이해관계자

왜 영양 부문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영양, 젠더 불평등과 젠더기반폭력은 서로 연관된 경우가 많다. 급성/만성 영양실조 상태인 여성 및 여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영양가 높은 음식, 양질의 보건의료,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서비스에 대한 젠더 불평등적인 접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증명됐다. 식량과 서비스에 대한 젠더 불평등적 접근성은 또 다른 형태의 GBV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젠더기반폭력이다.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¹은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영양, 젠더 불평등 및 GBV 위험 간의 연관성은 식량 및 기타 기본적인 필요가 부족한 환경에서 특히 심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빈곤 가정에서는 딸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 결혼을 주선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 ▶ 제대로 먹지 못한 여성 및 여아는 음식을 얻는 대가로 성매매를 할 위험이 높다.
- ▶ 가정 내 제한된 식량 보급품의 관리 및 배급 방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형태의 가정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GBV 생존자,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영양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특히 부상을 당했거나 약 복용 전후 음식 섭취가 수반되어야 하는 생존자의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¹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GBTI), HIV 보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미동반 아동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필수 행동 요약표 참조

대부분의 비상사태 중 영양 프로그램이 임신 또는 모유수유 중인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5세 미만 아동 등 생리적 및 사회적 기준에 기반으로 분류된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 부문 행위자는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안전 관련 필요를 모니터링하고 생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영유아 대상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모유수유 중인 여성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한 괴롭힘이나 폭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 치료식센터와 안정화센터는 위험을 신고하거나 GBV에 노출된 경우 돌봄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비밀이 보장되고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 커뮤니티 기반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의 자원 부족과 그로 인해 가족 및 커뮤니티 수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GBV 전문가와 공유하여 최대한 초기 단계에서 예방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를 위한 특정한 영양필요량이 있는 사람을 비롯한 생존자에게 영양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GBV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영양 부문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GBV 전문가 및 기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양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문제를 다루는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다음에 나오는 '조정' 참조).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은 영양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선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별 권고사항이다. 현황 파악은 가능한 한 영양 부문 행위자가 GBV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도 협력하여 부문간 및 학제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영양 및 식량 안보에 대한 현황 파악을 동시에 수행하여 적절한 영양 공급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식량 가용성, 식량 이용, 식량 섭취의 최적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은 '이행' 아래 자세하게 설명된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과도 연관돼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도록 영양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하는 우선순위 및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주요 현황 파악 대상 집단

- 영양 관련 주요 이해 담당자: 정부(예: 농업부, 보건부), 지역 지도자, 식량 안보/보건/물과 공중위생 부문 행위자, GBV/젠더/다양성 전문가
- 임신한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포함한 피해 인구 및 커뮤니티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의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영양 프로그램

참여 및 리더십

- 1) 책임자급을 포함한 영양 담당 직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여성 직원의 교육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GBV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안보적 사안이 있는가?
- 2)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영양과 관련된 커뮤니티 기반 활동(예: 커뮤니티 영양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가능한 경우 이들이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 3) 영양 대응을 선도하는 행위자가 GBV 예방 및 완화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치기 위한 관련 국제 기준(본 지침 포함)에 대해 알고 있는가?

문화 및 커뮤니티 인식, 규범과 관행

- 4) 보건 및 영양 사안과 관련하여 가정 내 역학 관계는 어떠한가?
 - 누가 먼저 먹는가? 누가 가장 많이 먹는가?
 - 가족 구성원 간에 건강 및 영양 상태는 얼마나 다른가?
 -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관련 취약성 요인에 따라 분석한 데이터는 식량을 동등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 이 요인은 여성 및 여아가 처한 특정 GBV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5) GBV 위험을 높이는 식량 부족 및 영양과 관련된 전통적 관행 또는 식사 관행이 있는가(예: 식량 부족으로 인한 아동 결혼 또는 강제 결혼, 식량 분쟁과 관련된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다른 형태의 가정 폭력,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이 식량을 얻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 6) 여성 및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 특히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이 치료식센터나 안정화센터에서 외래 환자나 입원환자로서 돌봄을 받기 위해 혼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적 제약이 있는가?

신체적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 7)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시간 및 방법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 영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나 경로와 관련된 안보 위험이 있는가?
 - 필요한 경우 GBV 위험에 처한 집단과 동행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전략이 실행되고 있는가?
 - 필요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 영양실조에 걸린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어린 나이에 자녀를 둔 여성이 자녀와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는가?
 - 영양 서비스를 누가 이용하고 있는가? 배제된 사람이 있는가?
 - 서비스 제공 장소가 장애(예: 신체적 장애, 부상, 시각 또는 기타 감각 손상 등)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 편의²에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가?
- 8) 치료식센터와 안정화센터에 GBV 사례 관리 전문 사회복지사가 존재하는가?
- 9) 필요 시 위탁하기 쉽도록 영양 서비스가 안전 쉼터와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고 있는가?
- 10)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사용 연료 필요 및 확보와 관련된 GBV 위험 감소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는가?

(계속)

² 보편적 설계와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4 정의'를 참조한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영양 정책

- 1)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영양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돼 있는가?
 - 특히 GBV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는 영양 정책, 기준 및 지침의 개발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이러한 정책, 기준, 지침에 관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과 소통했는가?
 - 영양 담당 직원이 적절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2) 국가 및 지역 법률과 부문 정책에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예: 커뮤니티 기반 단체의 직원으로서) 영양 부문에 안심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차별적 관행을 다루고 있는가?
- 3) 국가 및 지역의 법률과 부문 정책에 GBV 관련 위험 감소 전략(예: 특히 주기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영양 관련 GBV 위험 감소에 관해 정부에 조언할 수 있는 GBV 전문가의 영입)이 포함돼 있는가?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 할당돼 있는가?

영양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 1) 영양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는가?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사안
 -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2) 영양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가 일반적인 안전과 GBV 위험 감소에 대한 커뮤니티 내 인식을 제고하는가?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이러한 정보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이러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가?
- 3) 영양에 관한 토론회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가? 이러한 토론회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함에 따라(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자원 동원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은 영양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GBV 관련 자원 동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비상사태 대비/긴급 자금이나 비상사태 후 복구/개발 자금을 요청할 때 특정 GBV 위험을 반영하고 대처 전략을 제안하면 제안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금 조달 이후

'자원 동원'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품, 공여자의 기여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동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도적 부문/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 제시돼 있다.



A. 인도적 필요의 개요

- ▶ 피해 인구가 영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직면할 수 있는 GBV 관련 안전 위험, 보호 필요 및 권리가 제안서에 명시돼 있는가(예: 딸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자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빈곤 가정, 제대로 먹지 못해 음식을 얻는 대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 및 여아 등)?
- ▶ 가정 및 커뮤니티 내에서 구성원이 식량 및 영양과 관련된 역할과 책임(의사결정 등)을 이해하고 있는가? GBV 관련 위험 요인을 인식하고 이를 설명하고 있는가?
- ▶ 'GBV'로 통칭하는 대신 GBV 위험을 특정 유형(예: 아동 결혼 또는 강제 결혼, 성적 착취,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다른 형태의 가정 폭력 등)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 ▶ 비상사태 대비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치료식센터나 안정화센터에서 외래환자/입원환자 치료를 통해 어떻게 여성 및 여아에게 도움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하여 이들이 GBV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예: GBV 사회복지사를 영양 담당 직원으로 영입)?
 - 정부, 영양 담당 직원 및 커뮤니티 영양 집단을 대상으로 GBV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영양 프로그램의 안전한 설계와 이행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자료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로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가?
- ▶ 비상사태 대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영양 프로그램이 어떻게 GBV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는지 설명하고 있는가(예: 차별적인 식사 관행에 대한 대처 방안,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가족이 아동/강제 결혼의 위험을 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
 - 영양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가(예: 이동을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지원, 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 직원과 동행하도록 자금을 지원)?
- ▶ 비상사태 이후와 복구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영양 프로그램이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과 웰빙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전략과 특정 유형의 GBV를 감소하려는 장기적 노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하는가(예: 국가 및 지역 정책에서 차별적 식사 관행을 다루도록 노력)?
 -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반영돼 있는가?

C. 프로젝트 내용

- ▶ 제안된 활동에 GBV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이행 원칙 및 주요 접근법(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 기반)이 반영돼 있는가?
- ▶ 제안된 활동이 자원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하는가?
- ▶ 프로젝트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촉진/지원하는가(영양 담당 직원으로 참여, 지역 영양 위원회에 참여 등)?





이행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영양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GBV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표현된 필요, 확인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영양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1.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영양 관련 활동의 기획, 설계, 이행 및 모니터링에 직원

또는 책임자로 참여시킨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여성 비율이 50% 미만인 시설 내에서 이행하는 영양 프로그램 담당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50%가 되도록 노력한다. 여성 직원이 책임자급이나 교육직을 맡을 수 있도록 공식 및 직무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 여성(해당하는 경우, 청소년기 여아 포함)이 커뮤니티 기반 영양 위원회 및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 ▶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을 영양 부문 직원, 책임자, 교육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모범 사례

모잠비크에서 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 FH)은 모성/아동 영양실조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차원의 행동을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또래집단에 의해 선택된 커뮤니티 기반 자원봉사자('리더 마더스(Leader Mothers)'라고 함)가 그들의 이웃 중 10~15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그룹(Care Group) 모델을 사용했다. 이러한 가정 방문 활동을 통해 리더 마더스는 FH 담당자로부터 배운 바를 공유하고 가정 차원에서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도움을 줬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FH가 활동한 커뮤니티 내 영양부족률이 15개월 만에 42% 감소했으며, 5세 미만 사망률은 26% 감소했다. 또한 GBV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결과를 얻었다.

- 기초선 조사 인터뷰에서 12~59개월의 아이를 둔 엄마 중 64%가 GBV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 최종 인터뷰에서 프로젝트의 핵심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리더 마더스의 61%가 남편이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됐다고 말했고, 64%는 커뮤니티 지도자가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지 3%만 GBV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 아동을 둔 모든 어머니에 대한 배우자 학대가 감소했다. (2004년 12~59개월 된 아이를 둔 엄마 중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한 비율은 64%였으나 2010년 0~23개월 된 아동을 둔 엄마 중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한 비율은 34%로 감소했다.)

기초선 조사 인터뷰와 최종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향후 조사에서는 여성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참여가 그들에 대한 존중 확대와 GBV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케어그룹이 접촉한 여성 사이의 사회적 지원 증가가 GBV 자체나 GBV를 용인하는 태도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용: <<http://caregroupinfo.org>>의 케어그룹인포(Care Groups Info) 및 피드더칠드런(Feed the Children) 수석 프로그램 책임자 톰 데이비스(Tom Davis)의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4년 10월 29일)



2.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영양 서비스의 안전성, 가용성 및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이행한다.

- ▶ 커뮤니티 구성원과 협력하여(해당하는 경우 CCCM 클러스터 협력) 서비스(예: 치료식센터나 안정화센터의 외래환자/입원환자 간호)가 안보 위험이 있는 장소 근처에서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예: 배급소, 보안검문소, 급수 및 공중위생 시설, 엔터테인먼트 센터, 부지 주변,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등).
- ▶ 일정에 따라 영양 보충식을 제공하는 경우 모든 관련자와 협력하여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한다. 영양 서비스 제공 시설에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예: 많은 대기 인원, 긴 대기시간, 새벽/밤 시간 이동 등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준비한다).
- ▶ 영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찰한다. 서비스 제공 시설 및 그 주위의 안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피드백을 요청한다(가능한 경우 정기적인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련 질문을 포함한다).
- ▶ 안전 쉼터에 있는 GBV 생존자와 그 자녀를 위해 영양 지원을 체계화하고 그들에게 영양 공급 보충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 모범 사례

파키스탄에서는 WFP가 GBV 하위 클러스터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위험에 처한 가족이나 GBV 생존자를 영양 지원 서비스 또는 현금지원 치료사업 프로그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는 파키스탄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식량 지원 형태이며 여성은 이러한 활동의 기획 및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행 협력기관 역시 GBV 인식 교육에 참여한다.

(정보제공: 파키스탄 세계식량계획,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8월 20일)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 장애인**
- 질병, 신체장애, 신체적·정신적 발달 장애인은 치료식센터, 안정화센터, 보건의료센터 및 기타 서비스에까지 이동하거나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자신을 도와줄 가족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은 착취 및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의 권리와 필요에 따라 절차를 조정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는 경사로, 난간, 장애인용 화장실, 의료 기구(예: 들것, 보행기, 휠체어, 목발, 지팡이 등)를 갖춰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이동수단 마련을 고려한다.
 - 혼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보조 기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식기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개조된 식사 도구, 스푼, 빨대를 제공한다.
 - 부상자와 장애인은 치유 과정을 돕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웰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한 식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 영양 메시지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예: 큰 글자, 수화, 픽토그램 및 그림과 같은 단순화된 메시지 등).
 - 영양 및 커뮤니티 아웃리치 담당 직원은 서비스 제공 시 장애를 배려하는 방법과 장애에 따라 나누어진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인식제고 워크숍은 영양에 대한 일반 지식이 널리 보급되도록 커뮤니티 차원(커뮤니티 기반 기구, 대상자의 가족)에서 시행해야 한다.

(정보제공: 핸디캡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2월 7일. 장애인과 부상자의 영양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andicap International. n.d.** Disability Checklist for Emergency Response, <www.handicap-international.de/fileadmin/redaktion/pdf/disability_checklist_booklet_01.pdf>를 참조한다.)

- ▶ 영양 서비스, 영양 지원 신청 조건,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국내 이재민 (IDP)/난민 및 수용 커뮤니티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3. 영양 서비스 이용자의 GBV 관련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전략을 실시한다.

- ▶ 음식 섭취와 관련된 가정 내 역학 관계와 이러한 역학 관계가 가족 구성원의 건강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젠더와 관련된 경우가 많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영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 가능하다면 영양 시설을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이나 의료 시설 가까이 배치한다. 이렇게 하면 영양 담당 직원에게 GBV 피해를 신고한 사람을 위탁하고 후속 돌봄을 받도록 지원하는데 도움이 된다.
- ▶ GBV 사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영양 담당 직원으로 포함시킨다. 이 사회복지사는 GBV 사례를 파악하고 GBV 생존자에게 추가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돌봄과 지원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길에 생존자와 동행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다.
- ▶ 영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를 위해 이들의 관심 사안(예: 육아, 생식보건, 가정 문제, 여성의 권리/인권 등)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동료 역량강화 및 지원 모임을 조직한다.
- ▶ 보조적인 영양 서비스를 직접 가정에 제공하는 경우, 식량 안보, 생계 및 기타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가정의 자원 부족과 폭력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러한 과정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안전 쉼터와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

본 지침에서 사용된 ‘안전 쉼터’라는 용어는 위협을 피해 도망쳐 온 개인에게 독점 또는 부수적으로 임시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물리적인 공간 또는 그러한 공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안전 가옥’ 또는 ‘보호/안전 피난처’와 같은 다양한 용어도 장소에 따라 쉼터를 가리킨다.

(안전 쉼터 제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eelinger, K.T., and Freccero, J. 2013. Safe Haven: Sheltering Displaced Persons from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Comparative Report. Human Rights Center Sexual Violence Program,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www.unhcr.org/51b6e1ff9.pdf>**를 참조한다.)

‘여성 친화적인 공간’은 여성이 자녀에게 모유를 수유하고 영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웰빙과 관련된 사안(예: 여성의 권리, 성 및 생식보건, GBV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공간은 여성이 자신의 상황에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커뮤니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상담 서비스(GBV 생존자를 위한 상담이 포함될 수 있음)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또한 생계 활동을 위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아동 친화적인 공간’ 및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은 아동과 청소년이 자유롭게 체계적인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 활동 및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말한다.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2012.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http://toolkit.ineesite.org/toolkit/INEEcms/uploads/1103/Minimum-standards-Child_Protection.pdf >**.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Global Protection Cluster, IASC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Reference Group, Global Education Cluster, and International Network of Education in Emergencies. 2011. Guidelines for Child Friendly Spaces in Emergencies, <www.unicef.org/protection/Child_Friendly_Spaces_Guidelines_for_Field_Testing.pdf>**를 참조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영양 정책에 통합하기

1. 적절한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영양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되도록 한다.

- ▶ (1) GBV 위험을 완화하고 (2)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 구성원이 영양 관련 활동에 직원이나 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영양 담당 직원을 위한 보육 관련 정책
 - 여성에 대한 동등한 고용 기준
 - GBV 사고 관련 보호/비밀 정보의 공유에 대한 절차 및 규약
 - 성적 착취 및 학대 발생 시 신고, 조사, 징계 기관의 절차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를 영양 담당 직원, 위원회, 관리 집단에 두루 배포하고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공용어 및 지역별 현지어를 사용하여 더 넓은 커뮤니티에 배포한다(점자, 수화, 비문해자를 위한 시각적 콘텐츠가 포함된 포스터, 커뮤니티 회의를 통한 안내 등 접근하기 쉬운 방법 사용).

2. GBV 위험 감소 전략을 국가 및 지역의 영양 관련 법률과 정책에 통합하기 위해 옹호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금을 할당한다.

- ▶ 정부, 관습적/전통적 지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법률과 정책(관습법 포함)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영양 관련 차별적 관행에 대처하도록 지원한다.
 - 차별적인 식사 관행
 - 필요한 식량 및 취사용 연료와 관련된 천연 자원의 보호 및 관리
 - 농업 및 식량 안보를 위한 토지 확보와 관련된 토지 개혁
- ▶ 영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하는 조치가 국가 정책에 포함되도록 한다(예: 청소년기 여아 및 임신한 여성이 의료 시설 및 보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유해한 젠더 규범 및 관행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
- ▶ GBV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위한 이행 전략을 개발하는 데 관련 실무 부처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GBV 관련 법률 및 정책이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영양 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에 통합하기

1.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존자를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 체계 (예: 위탁 경로)를 확인하고 영양 담당 직원은 생존자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 ▶ 피해 인구나 교류하는 모든 영양 부문 종사자는 생존자가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서면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한다.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 피해 인구나 교류가 있는 모든 영양 부문 종사자에게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성 정체성, 심리적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예: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해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탁 경로

‘위탁 경로’는 GBV 생존자를 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의 도움, 법률/사법 지원 등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연한 메커니즘이다.



모범 사례

소말리아의 유엔아동기금(UNICEF) 영양부서 책임자는 영양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여성 및 여아가 영양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영양센터를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양 부문은 아동보호부서에 이를 알렸고 아동보호부서는 이러한 정보를 UNICEF의 GBV 프로그램과 공유했다. 영양센터 운영시간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여성 및 여아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를 조성했다. 성폭행 피해를 공개한 사람에게는 강간 생존자를 위한 정서적 지원 및 임상 치료와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권고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위탁 체계에 관해 영양 센터 직원을 교육했다.

(정보제공: UNICEF 소말리아 아동보호부서,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4년 8월)

2. 영양 부문 내부 또는 더 큰 범위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에 속한 협력기관과 GBV 관련 신고를 공유하는 영양 프로그램이 안전성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게 한다.

- ▶ 생존자 개인과 가족의 신원이나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기관 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3. 영양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에 GBV 메시지를 포함한다.

- ▶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GBV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제고 활동을 영양 아웃리치 이니셔티브에 통합한다(예: 커뮤니티 토론회, 워크숍,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회의, GBV 메시지 전달 등).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관련 메시지 전달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통해 GBV와 관련된 사람 등 피해 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우려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GBV 전문가가 아니라면 GBV 전문가나 GBV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 및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를 사용한다.
 - 메시지 개발 및 메시지 전달 전략 수립 과정에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가 참여하도록 하여 메시지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한다.
 - 영양 서비스 제공 장소(예: 치료식센터 또는 안정화센터 등)에 포스터 및 기타 GBV 메시지를 게시한다.
-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를 GBV 예방과 관련된 영양 아웃리치(가족 구성원간의 불평등한 음식 섭취 행태와 관련된 아웃리치)에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한다.
 -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영양 관련 커뮤니티 토론회 및 교육 워크숍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예: 이동 수단, 회의 시간 및 장소, 참여와 관련된 반발의 위험, 육아 지원의 필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 참가자가 GBV 관련 사안을 편안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론회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을 이행한다.
 - ▶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영양 부문 종사자의 행동 강령 및 영양 부문 종사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조정 과정의 첫 단계로, 영양 프로그램 담당자는 GBV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에서 GBV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GBV 전문가는 영양 부문 행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영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GBV 위험을 조사하기 위한 영양 현황 파악을 설계 및 실시하고, 영양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한다.
- ▶ 영양 담당 직원에게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 GBV 피해 사례를 영양 담당 직원에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생존자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고 영양 담당 직원에게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기본적인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다.
- ▶ 보호 권리 및 필요와 관련이 있는 젠더, GBV, 여성의 권리, 인권 사안에 대해 피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 ▶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을 영양 시설과 가까이 배치하여 어머니가 영양 활동에 좀 더 쉽게 참여하게 한다.

이외에도 영양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른 인도적 지원 부문과 연계하여 GBV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부문(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부문)과의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다음 표에 제시돼 있다. 또한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영양 현황 파악에 GBV 관련 질문 포함 ³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관련 질문*이 포함된 영양 현황 파악의 수} \times 100}{\text{영양 현황 파악의 수}}$ <p><small>* 현황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GBV 주제별 질문은 224 페이지 참조</small></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또는 툴	100%	✓	✓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	$\frac{\text{현황 파악 응답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응답자의 수}}$ <p>및</p> $\frac{\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50%	✓	✓	

(계속)

³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30 November 2012.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ASC Transformative Agenda Reference Documen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4.%20Reference%20module%20for%20Cluster%20Coordination.pdf>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계속)

급성영양실조에 걸린 6~59개월된 유아의 남녀 성비	$\frac{\text{급성영양실조에 걸린 6~59개월된 여아의 수}}{\text{급성영양실조에 걸린 6~59개월된 남아의 수}}$	설문조사, 보건 정보 체계	현장에서 결정	✓		✓
프로그램 설계 이전 단계의 여성 참여 ⁴	<p>양적 방법:</p> $\frac{\text{프로그램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프로그램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의 수}}$ <p>질적 방법:</p> 여성 및 여아는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자신들의 참여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설계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해당 조직의 기록물,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 주요 정보원 인터뷰 (Key Informant Interview, KII)	현장에서 결정		✓	
영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GBV 위험 요인에 대해 피해 인구와 상의 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별도로 상의	<p>양적 방법:</p> $\frac{\text{영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GBV 위험 요인에 대해 피해 인구와 상의하는 영양 서비스 시설의 수} \times 100}{\text{영양 서비스 시설의 수}}$ <p>질적 방법:</p> 영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GBV 관련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해당 조직의 기록물, FGD, KII	100%	✓	✓	
GBV 생존자 위탁 경로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생존자 위탁 경로를 올바르게 답한 영양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답한 영양 담당 직원의 수}}$	설문조사	100%	✓		✓

자원 동원

영양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에 GBV 위험 감소를 포함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위험 감소 목표, 활동 또는 지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 영양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times 100}{\text{영양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제안서 검토	100%	✓	✓	
영양 담당 직원에 대한 GBV 지침 교육	$\frac{\text{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영양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영양 담당 직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	100%	✓	✓	

(계속)

⁴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 <www.humanitarianresponse.info/applications/ir/indicators>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이행						
커뮤니티 기반 영양 위원회에 대한 여성 참여 ⁴	<p>양적 방법:</p> $\frac{\text{커뮤니티 기반 영양 위원회에 참여한 피해 인구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커뮤니티 기반 영양 위원회에 참여한 피해 인구의 수}}$ <p>질적 방법: 여성은 커뮤니티 기반 영양 위원회와 관련된 자신의 참여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성이 영양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p>	현장 관리 보고서, 이재이주 추적 매트릭스, FGD, KII	50%	✓		✓
영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 직원	<p>영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 중 여성의 수 × 100</p> $\frac{\text{영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의 수}}{\text{영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의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50%	✓	✓	
영양 서비스 이용 시 GBV 위험 요인	<p>양적 방법:</p> $\frac{\text{영양 서비스에 관한 질문에 GBV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영양 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받은 피해 인구의 수}}$ <p>질적 방법: 피해자는 영양 서비스에 접근할 때 GBV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피해 인구가 말한 안전 우려사항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p>	설문조사, FGD, KII, 참여 커뮤니티 도식화	0%	✓		✓
영양 프로그램이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을 포함하는 비율	<p>GBV 위험에 처한 사람 중 영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영양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수 × 100</p> $\frac{\text{GBV 위험에 처한 사람 중 영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수}}{\text{GBV 위험에 처한 사람 중 영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수}}$ <p>* 이러한 데이터를 GBV 전문가와 함께 수집하여 안전하고 윤리적인 서비스를 보장</p>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 정책						
영양 정책, 지침 또는 기준에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포함	<p>GBV 지침에 나온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포함하는 영양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 100</p> $\frac{\text{영양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text{영양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기관, 부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의) 문헌 검토	현장에서 결정	✓		✓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	<p>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응답한 직원의 수 × 100</p> $\frac{\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	100%	✓		

(계속)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 (계속)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영양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GBV 위탁 정보를 포함	$\frac{\text{GBV 생존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교육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times 100}{\text{영양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문헌 검토, KII,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다른 부문과 조정	$\frac{\text{GBV 위험 감소 활동*을 위해 상의한 비 영양 부문의 수} \times 100}{\text{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비 영양 부문의 수}}$ <p>* 부문별 GBV 위험 감소 활동은 235 페이지 참조</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KII, 회의록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참고자료

주요 참고자료

- **Global Nutrition Cluster.** 2013. 'Harmonised Training Package (HTP). Module 22: Gender-Responsive Nutrition in Emergencies', <www.enonline.net/htpv2module22>
- **World Food Programme (WFP).** 2011. Enhancing Prevention and Response to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the Context of Food Assistance in Displacement Settings.
- 영양 부문에서 젠더 평등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2006.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Handbook%20%28Feb%202007%29.pdf>를 참조한다.
- **Mucha, N.** 2012. 'Enabling and equipping women to improve nutrition.' Briefing Paper no. 16, Bread for the World Institute, <<http://thousanddays.org/wp-content/uploads/2013/03/Bread-briefing-paper-16.pdf>>
- **Crawford, N., and Pattugalan, G. (eds.).** 2013. Protection in Practice: Food assistance with safety and dignity. WFP: Rome,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wfp254460.pdf>>
- **Handicap International.** n.d. Disability Checklist for Emergency Response. 이 책에는 영양 등 6개의 주요 부문별로 부상자 및 장애인 보호 및 포용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수록돼 있음. <www.handicap-international.de/fileadmin/redaktion/pdf/disability_checklist_booklet_01.pdf>
- **Sphere Project.** 2011.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www.spherehandbook.org>

추가 참고자료

- **Owen, M.** 2002. Cooking Options in Refugee Situations: A handbook of experiences in energy conservation and alternative fuels. UNHCR: Geneva, <www.unhcr.org/406c368f2.pdf>
- **Women's Refugee Commission.** 2011. 'Cooking Fuel and the Humanitarian Response in the Horn of Africa: Key messages and guidance for action'. New York: WRC,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fuel-and-firewood-rss/1457-cooking-fuel-and-the-humanitarian-response-in-the-horn-of-africa?highlight=WYJb29raW5nliwiZnVlbCIsImNvb2tpbmcgZnVlbCJd>>
- **Seelinger, K.T., and Freccero, J.** 2013. Safe Haven: Sheltering displaced persons from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 Comparative report. Human Rights Center Sexual Violence Program,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www.law.berkeley.edu/files/HRC/SS_Comparative_web.pdf>
- **Global Protection Cluster, IASC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Reference Group, Global Education Cluster and International Network of Education in Emergencies.** 2011. Guidelines for Child Friendly Spaces in Emergencies, <<http://resourcecentre.savethechildren.se/library/guidelines-child-friendly-spaces-emergencies>>



보호



적용 대상

- 보호 조정 메커니즘
- 정부 관계자(특히 내무부, 사법부, 국방부, 가족/여성/아동부, 사회개발부 등), 국가 및 지역 경찰, 사법 및 법조 부문 협회 구성원, 전통적인 사법 부문 행위자, 커뮤니티 지도자, 인권 및 기타 보호 관련 시민사회 단체 등 목표한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국내 행위자(직원 및 책임자)
- 비상사태 시 목표한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동원된 유엔 및 INGO 시스템의 전문적인 보호 부문 행위자
- 보호 관련 지역 위원회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예: 여성, 청소년/청년, 노인 모임 등)

왜 보호 부문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무력분쟁, 자연재해 및 기타 인도주의 비상사태로 인해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GBV)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GBV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헬터 유실, 무력 공격 및 학대, 가족 이산, 가족과 커뮤니티 보호 메커니즘의 붕괴, 토지, 집 및 기타 재산의 임의적인 박탈, 새로운 환경 내 소외/차별/적대감, 지뢰 또는 전쟁 잔류 폭발물에 대한 노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젠더 불평등, 비상사태 이전 GBV에 대한 대처 실패 등이 있다.

인도주의 비상사태는 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¹에 대한 GBV 발생 빈도와 정도를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의 내용:

보호 원칙 3

- ▶ 폭력과 강압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

지침 안내 13: 여성과 여아는 젠더기반폭력을 당할 위험이 특히 크다.

- ▶ 인도주의 기관이 이들 집단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면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강간 또는 가정 폭력을 비롯한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적 착취 및 학대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기준 및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관행에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지급되는 것을 얻기 위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고립되거나 장애가 있는 여성처럼 특정 취약성이 있는 피해 주민이 연루될 수 있다.

보호 원칙 4:

- ▶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용 가능한 치료법에 접근하며 학대의 영향에서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Sphere Project. 2011.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www.sphereproject.org/resources/download-publications/?search=1&keywords=&language=English&category=22>)

¹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GBTI), HIV 보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미동반 아동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악화시킨다. 사회적, 법적 보호가 약해지면 가해자를 면책하는 문화가 만연해지고 생존자가 돌봄이나 지원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도시, 비공식적인 정착지, 수용 커뮤니티 또는 캠프 중 어디로 이주했든 이재이주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GBV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 ▶ 문서가 유실되면 이재민이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인도적 지원에 접근할 때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 ▶ 수용 당국이 난민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 제공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도시에 스스로 정착한 난민은 캠프에 정착한 난민보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더 적을 수 있다.
- ▶ 수용자/수용 커뮤니티의 국내 이재민(IDP)/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폭력, 착취, 학대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 난민 캠프를 국경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지 않으면 출신국의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당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 외딴 지역에 위치한 인도주의 기관은 생존자의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훈련된 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호는 모든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우려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주요 보호 문제에 대한 운영적인 대응을 담당하는 사람은 비상사태 시 GBV 관련 안보 및 정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장에서는 인도주의 비상사태 시 목표한 (또는 독립적인) 보호 활동 수행을 위해 파견된 전문 보호 담당 직원에게 해당되는 GBV 관련 책임을 설명한다. 이러한 보호 활동과 관련된 GBV 예방 및 완화 권고사항은 아래에 강조 표시된 보호 부문의 4대 주요 영역으로 분류된다. 즉, 전문 보호 부문 행위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 ▶ 모든 보호 모니터링 활동에 GBV 위험을 커지게 할 수 있는 안보 사안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또한, GBV 사건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모든 보호 모니터링은 GBV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 ▶ 문서화, 프로파일링, 등록 과정에서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전략을 이행한다.**
- ▶ GBV를 예방하고 완화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안보 및 법률/사법 부문 행위자의 역량을 쌓아 안보를 강화한다.
- ▶ GBV를 예방하고 생존자를 위한 돌봄과 보호를 보장하는 법률 및 정책의 이행을 옹호하여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권리 행사

UNHCR 집행위원회는 “강제로 이재이주한 남성과 남아도 보호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여성과 여아는 그들의 젠더, 문화/경제 사회적 위치 및 법적 상태와 관련된 특정 보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남성 및 남아에 비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언급했다. 집행위원회는 따라서 “남성 및 남아와 동등하게 보호와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과 여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UNHCR Executive Committee. 2006. 'Conclusion on Women and Girls at Risk', No. 105 [LVIII], <www.unhcr.org/45339d922.html>)



GBV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보호 부문이 이행해야 하는 행동은 GBV 전문가 및 기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호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과 조정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조정' 참조).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은 보호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선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현황 파악은 가능한 한 보호 부문 행위자가 GBV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도 협력하여 부문간 및 학제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은 '이행' 아래 자세하게 설명된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과도 연관돼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하고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호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하는 우선순위 및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주요 현황 파악 대상 집단

- 보호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정부(경찰, 군대, 사법부 포함), 지역 및 전통적 지도자, 평화유지군, GBV/젠더/다양성 전문가, 보호 전문가
- 피해 인구 및 커뮤니티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 내 수용 커뮤니티의 구성원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보호 프로그램

참여 및 리더십

- 1) 책임자급을 포함한 보호 담당 직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여성 직원의 교육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GBV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안보적 사안이 있는가?
- 2)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커뮤니티 기반 보호 관련 활동(예: 커뮤니티 보호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가능한 경우 이들이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 3) 보호 대응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에 중점을 둔 활동을 주류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 기준(본 지침 포함)에 대해 알고 있는가?

(계속)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GBV 관련 보호 환경

- 4) 특정 환경에서 GBV 위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광범위한 보호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예: 이재이주, 무장세력과의 인접성, 일터/학교/의료 시설을 가거나 물 길기/장작 수집을 위해 오가는 안전하지 않은 경로,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의 안전 문제, 식량 및 비식량물품의 배급 시간 및 장소, 과밀 수용된 캠프/거주지/쉼터/아파트, 가족 이산, 급수 및 공중위생 시설의 배치, 개인의 신원 증명 서류의 분실 등)?
- 5) 성별, 연령, 인종적 배경, 국적, 성 정체성, 장애, 특정 지위(예: 도시 국내 이재민(IDP)/난민, 망명 신청자, 미동반 소아 등) 또는 가족 구성(예: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으로 인해 일부 집단이 더 큰 보호 위험 또는 남들과 다른 보호 위험에 직면하는가?
- 6) GBV 사안의 모니터링을 돕는 커뮤니티 기반 보안 순찰대/단체가 이미 존재하는가?
 - 이들은 언제 활동하는가(예: 매일 24시간, 주 7일)?
 - 해당되는 경우 커뮤니티의 여성 및 남성 구성원 모두가 포함되는가?
 - 보안 순찰대 요원이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관련 사안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가?
 - 생존자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윤리적으로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위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는가?

문서화, 프로파일링 및 등록

- 7) 국내 이재민(IDP) 프로파일링 및 난민 등록 과정에서 취약성 위험 요인으로 GBV가 포함돼 있는가? 프로파일링 및 등록 데이터가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관련 취약 요소별로 구분됐는가?
- 8)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프로파일링 및 등록에 포함되도록 하는 데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예: 여성이 집을 비우는 것 또는 여성의 사진을 찍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 있는가?
- 9) 피해 인구를 위해 개인의 신원 증명 서류(예: 출생증명서 및 출생 등록, 결혼/이혼 증명서,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의 발급, 복원, 교체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가?
 - 문서 발급, 복원, 교체에 비용이 드는가?
 - 개인의 신원 증명 서류를 분실하면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인도적 지원을 받거나 재산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가(예: 식량 지원, 주택 및 재건 지원, 교육과 보건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 등)?
 - 여성이나 아동의 이름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부부 재산의 경우)로 신원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 10) 등록 양식과 절차가 젠더를 남성/여성으로만 제한하는가? 아니면 '제3의 젠더' 또는 '기타' 젠더를 허용하는가?
- 11) 현재 이재이주 상황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GBV 생존자를 위한 재정적 대안이 있는가?

안보 부문/행위자의 역량

- 12) 경찰과 보안 요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13) GBV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안보 부문 행위자(예: 경찰 및 군대, 평화유지군, 보안 요원, 행정 담당 직원 등)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범위와 수준은 어떠한가?
- 14) 평화유지 임무는 성폭력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처할 것을 명령하는가?
- 15) 경찰 및 기타 보안 요원을 위한 행동 강령이 마련돼 있는가? 보안 요원이 자행한 차별,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정책이 있는가?
 - 위법 행위 또는 정책 위반의 경우 적절한 조치가 기록되고 적용되는가?
- 16) GBV 생존자 지원, 민원 조사, GBV 사건 문서 기록 과정에서 보안 요원에게 지침이 되는 표준운영절차가 실시되고 있는가(예: 사생활이 보호되는 회의실, 표준 조사 및 증거 수집 절차 등)?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생존자가 다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제한되는가?
 - 더 많은 지원을 위한 위탁 경로가 명확하게 도식화되고 공개적으로 제공되는가?
- 17) GBV 사건을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된 환경이 있는가(예: 전담 경찰서,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위한 데스크 또는 태스크포스, GBV 범죄 수사를 위한 전담 부서 등)?
- 18) 의료 및 법률 양식(및 GBV 사건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공식 양식)에 젠더가 포함돼 있는가? (예: 여성, 남성,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생존자의 신고를 정확하게 문서로 기록할 수 있는가?)

(계속)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 19) 구류/감금 시설에 구금된 여성, 여아, 남성, 남아에 대한 GBV 및 기타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 아동 및 성인 억류자를 따로 구금했는가?
 - 이러한 정책이 LGBTI인 사람의 필요를 포함하는가?

사법 부문/행위자의 역량

- 20) GBV 사건을 윤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가 사법 시스템의 역량은 어떠한가?
- 사법 부문 내 모든 행위자(예: 판사, 변호사, 검사, 법원 행정 직원, 전통적 지도자 등)가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관련 사안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가?
 - 사법 시스템에서 생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며 이들이 다시 피해자가 될 위험을 완화하는가?
- 21) GBV 생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렴한 법적 지원 서비스가 있는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예: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서비스 장소 및 서비스 제공 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 등)
- 22) 사법 과정을 통해 GBV 생존자와 증인이 보호받는가(예: 증인 및 생존자 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기반 제도, 별도의 청문회 또는 녹화 청문회 등)?
- GBV와 관련된 기존 법 및 법적 절차가 준수되도록 노력하는 판사, 변호사, 검사 또는 기타 법률 부문 행위자에 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 23) 피해 인구가 전통적 사법 메커니즘 또는 기타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의지하는가?
- 이러한 메커니즘은 어떤 유형의 상황을 다루는가?
 - 이러한 메커니즘은 국가 사법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또한, GBV 사건을 포함한 심각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국가 사법 시스템에 회부하는가?
 -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GBV 생존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이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 피해 인구나 수용 커뮤니티가 이러한 메커니즘의 이용을 지원하는가?
 - 남성과 여성이 이러한 메커니즘의 가치에 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이러한 메커니즘이 생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데 일조할 위험이 있는가?
- 24) 독립적인 중앙 및 지방 인권 위원회가 있는가?
- 이들의 업무에 GBV 사건에 관한 모니터링 및 보고가 포함되는가?
 - 인권 및 GBV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부문 행위자가 구금 현장을 방문하도록 허용되고 구금된 사람과 비밀이 보장된 채 소통할 수 있는가?

보호 정책

- 1)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인도적 보호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가?
- 특히 GBV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는 보호 프로그램 정책, 기준 및 지침의 개발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이러한 정책, 기준, 지침에 관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과 소통했는가?
 - 보호 담당 직원은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책의 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2) 국가 및 지역 법률이 GBV 예방 및 대응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가(예: 법적 지원을 받을 권리와 생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가해자 기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등)?
- 이러한 법률이 국제법과 인권 기준²(예: CEDAW, CRC 등)을 준수하는가?
- 3) 어떠한 유형의 GBV가 법률에 언급되었으며 이들은 어떻게 정의되는가(예: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 강간, 성희롱, 여성 할례(FGM/C), 아동 결혼 및 강제 결혼, 강제/강압적 성매매 등)?
- 강간의 정의가 음경을 사용한 강간만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물건을 사용한 강간도 인정하는가?
 - 강간의 정의에서 여성과 남성 강간 생존자 모두를 인정하는가?
 - 법률에서 여성과 여아의 결혼, 이혼, 아동 양육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가?
 - 국가 및 전통적인 법률에서 GBV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예: '명예'의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이 있는가?
- 4) GBV 생존자를 위한 조정되고 신속하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 행동 계획 또는 전략 (예: 젠더, 청년, 법률 강화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이 실시되고 있는가?
- 보호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이 이러한 정책 및 계획과 부합하는가?

(계속)

² 국제법과 인권 기준에서 GBV에 대처할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6'을 참조한다.



보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 1) 보호 부문 행위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는가?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사안
 -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2) 보호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가 일반적인 안전과 GBV 위험 감소에 대한 커뮤니티 내 인식을 제고하는가?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인식제고 캠페인을 통해 사람에게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 이러한 정보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이러한 아웃리치에 참여하는가?
- 3) 보호 관련 토론회에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는가? 이러한 토론회가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함에 따라(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자원 동원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은 보호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GBV 관련 자원 동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비상사태 대비/긴급 자금이나 비상사태 후 복구/개발 자금을 요청할 때 특정 GBV 위험을 반영하고 대처 전략을 제안하면 제안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금 조달 이후

'자원 동원'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품 및 공여자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동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도적 부문/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 제시돼 있다.



A. 인도적 필요의 개요

- ▶ 더 넓은 보호 환경과 관련된 피해 인구의 특정 GBV 관련 안전 위험, 보호 필요 및 권리가 제안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가(예: 법치주의의 붕괴, GBV 사안에 대응하는 안보 부문의 역량, 문서 유실과 이것이 인도적 지원을 받는 데 미치는 영향,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차별에 일조할 수 있는 인도주의 담당 직원의 태도 등)?
- ▶ 신체적 안전 문제가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관련 취약 요소별로 이해되고 구분되었는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특정 위험 요인을 인식되고 설명되는가?
- ▶ 'GBV'로 통칭하는 대신 GBV 위험을 특정 유형(예: 성폭행, 성착취, 강제/강압적 성매매,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 등)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 ▶ 비상사태 대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프로젝트가 즉각적인 GBV 관련 보호 필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설명이 있는가(예: 보호 모니터링이 일반 보호 사안과 GBV 위험 사이의 연계를 다루도록 보장, 개인 문서의 시기적절한 복원 및 교체 촉진, 캠프 및 기타 상황에서의 안전한 환경 지원 등)?
 - 보호 부문 여성 직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가(예: 이동을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지원, 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 직원과 동행하도록 자금을 지원)?
 - 안전하고 윤리적인 프로그램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GBV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가?
 - 보호 부문 행위자(긴급 대응의 일환으로 현장에 파견된 국제 보호 부문 행위자 포함), 안보 및 법률/사법 부문 종사자, 정부, 관련 커뮤니티 구성원(예: 전통적 지도자와 여성 모임)를 대상으로 GBV 위험 완화를 위한 보호 프로그램의 안전한 설계와 이행에 관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할 전략이 있는가?
 -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자료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로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가?
- ▶ 비상사태 이후와 복구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 및 특정 유형의 GBV를 감소하는 장기적인 노력에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예: 안보 및 법률/사법 부문 행위자의 역량 구축과 법치주의 증진, GBV 생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서비스에 관한 인식제고 캠페인 개발 등)이 있는가?
 -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반영돼 있는가?

C. 프로젝트 내용

- ▶ 제안된 활동에 GBV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이행 원칙 및 주요 접근법(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 기반)이 반영돼 있는가?
- ▶ 제안된 활동이 자원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하는가?
- ▶ 프로젝트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와 역량강화(보호 담당 직원으로 참여, 커뮤니티 기반 보호 위원회에 참여 등)를 촉진/지원하는가?
- ▶ GBV의 근본 원인 및 유발요인을 다루어 환경을 변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는가(예: 사법 체계에 대한 접근 부족과 폭력에 대한 면책에 대처하는 법적 체계의 개발을 위한 옹호 활동)?





이행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목표한 보호 활동을 이행할 때 GBV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표현된 필요, 확인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GBV 예방 및 대응을 보호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1.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보호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 참여시킨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보호 프로그램 담당 직원 중 여성 비율이 50%가 되도록 노력한다. 여성 직원이 책임자급을 맡을 수 있도록 정식 교육, 현장 교육,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 여성(해당되는 경우 청소년기 여아 포함)이 커뮤니티 기반 보호 위원회, 협회 및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 ▶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을 보호 부문 직원, 책임자, 교육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 ▶ 보호 담당 모니터링 직원(유급직과 자원봉사자 모두 포함)으로서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참여하게 하고 보호 관련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보장한다.



모범 사례

여러 커뮤니티 기반 보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이 유의미한 방식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된다. 네팔 난민 캠프 내 장애인의 비율은 약 10%이다(전 세계 장애인 비율과 유사함). 이들 대다수가 청각 또는 언어에 장애가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특히 장애인 여성과 여아는 특히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의 위험에 처해 있다. 네팔 캠프 내 SGBV 피해자는 당국이나 서비스 제공자와 소통할 수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UNHCR은 협력 기관과 함께 그림을 활용한 대안적인 커뮤니케이션 툴킷을 개발하였고 사용 방법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인과의 상담을 통해 여러 명의 수화 교사와 통역가를 교육했고 서비스 제공자 및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수화를 가르쳤다. 또한 장애인이 캠프 기관에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인용: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n.d.** 'Protection Policy Paper: Understanding community-based protection', <www.refworld.org/pdfid/5209f0b64.pdf>. 장애인 관련 보호 위험 및 개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omen's Refugee Commission. March 2014.** Disability Inclusion: Translating policy into practice in humanitarian action,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programs/disabilities/disability-inclusion>>을 참조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LGBTI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스(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인 사람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으로 인해 폭력, 차별과 억압을 당할 위험이 크다. 비상사태 시 안전 요인을 평가하는 경우, 보호 부문 행위자는 LGBTI 전문가와 협력하여 LGBTI에 대한 편견이나 이를 범죄화하는 법률로 인해 경찰이나 보안 요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LGBTI인 사람이 직면할 수 있는 특정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LGBTI인 사람은 가능한 경우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감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련하여 상담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보제공: 휴먼 라이츠 퍼스트(Human Rights First)의 던컨 브린(Duncan Breen),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5월 20일)

2. GBV 예방 및 완화를 보호 모니터링 활동에 통합하고 커뮤니티 기반 보호 전략의 개발을 지원한다.

- ▶ 보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 환경에서 GBV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광범위한 보호 요소를 고려한다(예: 이재이주, 무장세력이나 국경과의 인접성, 일터/학교에 오가거나 물 길기/장작 수집을 위해 오가는 안전하지 않은 경로,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의 안전 문제, 식량 및 비식량물품의 배급 시간 및 장소, 과밀 수용된 캠프/거주지/텔러/아파트, 가족 이산, 급수 및 공중위생 시설의 배치, 각종 문서화 작업에 대한 접근 등).
- ▶ 가급적 GBV 전문가 또는 GBV 전문성을 갖춘 보호 담당 직원을 1명 이상 포함한다. 이는 GBV 사안 또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보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보호 모니터링 과정 전반에 걸쳐 GBV 관련 이행 원칙이 준수되도록 한다.
- ▶ 고위험 지역의 모니터링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전략을 지원한다. 특정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목표한 선제적인 배치와 더불어 피보호자와 잠재적인 범법자에게 누군가가 '항상 주변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보다 광범위한 이동형 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배치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커뮤니티 감시 프로그램 또는 안보 단체
 - 보안 순찰대
 - 안보상 허용되는 경우, 커뮤니티(캠프, 마을 등)의 GBV 관련 우려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보호 모니터링 요원이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현장을 방문

3. 문서화, 프로파일링, 등록 과정에서 GBV 위험에 처한 집단을 보호하는 전략을 이행한다.

- ▶ 국내 이재민(IDP) 프로파일링 및 난민 등록 과정에서 취약성에 대한 위험 요인에 GBV를 포함한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재민(IDP) 문서화, 프로파일링, 난민 등록 과정을 수행한다.
- ▶ 피해 인구가 GBV 위험 또는 GBV 내력을 문서화, 프로파일링, 등록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보고하도록 권장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 인터뷰하는 동안 비밀이 보장되고 사회적 낙인의 우려가 없는 별도의 공간을 고려한다.
 - 직원이 다양한 위험에 처한 집단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한다.
 - GBV 관련 인터뷰 중에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질문을 하게 한다.

- 가능한 경우 직원에 GBV 전문가를 포함한다.
- 여성 등록 담당 직원이 여성을 인터뷰할 수 있게 한다.
- 성인 가족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인터뷰한다.

- ▶ 여성과 여아가 신원을 증명하고 재산권을 주장하며 인도적 지원(예: 식량 지원, 주택 및 재건 지원, 교육과 보건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 서류를 발급, 복원,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 GBV에 처할 위험이 높은 개인들을 위해 전문 안전 조치(예: 재배치, 안전한 쉼터)에 대한 필요를 고려한다. 이러한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예: 가족 또는 커뮤니티 관계 및 지원 메커니즘의 해체, 사회적 낙인 등)를 충분히 고려한다. 생존자 및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안전한 주택 대안을 파악하기 위해 (특히 위험에 처한 집단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구성원 및 지도자와 협력한다.



모범 사례

말레이시아에 있는 UNHCR은 등록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 모든 망명 신청자와 난민, 특히 여성과 여아의 보호를 개선했다. 이동 등록팀을 밀림 지역과 말레이시아 북부 고지대의 구치소에 배치하여 우려되는 사람을 등록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UNHCR의 사무실에 올 수 없었던 사람을 파악하고 지원했다. GBV 생존자, 여성 가장, 미동반 여성과 아동을 쉽게 식별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난민 지위와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모든 여성은 개인 문서를 수령했으며 이 문서를 검토한 후 이들을 다시 인터뷰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보호 우려사항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인용: UNHCR. 2008. UNHCR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Women and Girls, p. 117, <www.unhcr.org/protect/PROTECTION/47cfae612.html>)

4.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보 기관/부문 종사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 ▶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적절한 GBV 교육을 받은 경찰 및 보안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옹호한다. 해당되는 경우, 안보 부문에서 여성을 고용(예: 경찰, 경비원, 평화유지군 등)할 수 있도록 옹호하고 지지한다. 안보 서비스가 좀 더 젠더를 대변하고 젠더에 민감하며 GBV에 잘 대처하기 위해 담당 직원 중 여성 비율이 50%가 되도록 노력한다.
- ▶ 안보 부문에 속한 모든 행위자(예: 경찰 및 군대, 평화유지군, 사설 보안 요원, 행정 직원, 커뮤니티 지도자, 종교 단체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옹호한다. 이러한 교육에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사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성폭력 및 기타 유형의 GBV에 대처할 것을 명하는 평화유지 임무의 이행을 지원한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보안 요원을 위한 필수 행동 강령의 이행을 옹호한다. CoC에 보안 요원이 저지른 차별, 성희롱, 성폭력과 보고 및 조사 절차와 성적 착취 및 학대 발생 시 징계 조치에 관한 정책이 포함되게 한다.



- ▶ GBV 사건을 보안 요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경찰 및 기타 보안 요원/기관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옹호한다.
 - 생존자의 비밀 보장, 권리, 선택권, 존엄성을 존중한다.
 - GBV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약 및 절차를 개발하고 서명 및 준수한다(예: 사생활이 보호되는 회의실 지정, 생존자와 함께 일하는 동성의 경찰관 포함, GBV 생존자가 돌봄과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지 사정을 고려하고 표준화된 규약 제공 등). 규약 및 절차가 생존자 중심적이고 인권을 기반하도록 보장한다.
 - (GBV 생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선택한 경우) 사건 기소에 도움이 되도록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표준 절차를 수립한다. 이러한 절차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한다.
 - 구치소(소년원 포함)가 기본적인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구금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에 대한 폭력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보장한다.



모범 사례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서비스 위원회(Unitarian Universalist Service Committee)가 개발하고 UNIFEM이 2008~2011년 캠프 11개소에서 이행한 이 프로그램은 여성의 발언권과 여성 기관을 강화하고 GBV에 대처하는 커뮤니티 지도자와 경찰의 역량을 개선하여 여성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커뮤니티 민감화를 실시한 결과 캠프 지도자는 젠더위원회와 장작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작위원회를 통해 여성은 정기적으로 순찰에 관한 피드백을 할 수 있었으며 유엔 경찰이 여성의 우려사항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커뮤니티와의 관계는 다르푸르(Darfur)의 평화유지활동국(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PKO)의 수장이 모든 경찰에게 젠더 민감성에 관해 교육하는 데 동의할 정도로 변화됐다. 수단 경찰 또한 교육을 요청했고 캠프에 더 많은 여성 경찰을 배치하는 데 동의했으며, 캠프 내 남성은 여성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요청했다. 여러 캠프에서 커뮤니티 치안 유지단을 조직했으며 구성원 중 절반 정도는 여성이었다. 커뮤니티 경찰은 커뮤니티와 유엔 경찰을 매우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여성의 사건 신고를 크게 개선하고 안보감을 증진했다.

(인용: Thompson, M., Okumu, M., and Eclai, A. 2014. 'Building a Web of Protection in Darfur', Humanitarian Exchange, Number 60, pp. 24-27, <www.odihpn.org/humanitarian-exchange-magazine/issue-60>)

- ▶ 다양한 GBV 범죄를 다루기 위한 전담 경찰서, 데스크(예: 여성 전담 데스크), 부서와 태스크포스의 창설을 지원한다. 이러한 전담 경찰서 및 부서가 사회적 낙인을 찍지 않고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도록 보장한다.
- ▶ 여성 단체, 문화/종교 지도자 및 기타 당국과 협력하여 희생자 비난 및 사회적 낙인에 대항하고 생존자가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 ▶ 해당되는 경우 생존자를 위한 독립적인 자립 단체의 설립을 지원한다. 이러한 단체는 서로를 지원하며 서비스(법률 지원 포함)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범 사례

난민법프로젝트(Refugee Law Project)는 우간다에서 증가하는 개별적인 남성 생존자를 지원하던 중 2011년 9월 현재까지 상담을 받았던 남성 생존자 중 5명을 선별하여 지원 단체를 만들도록 장려했다. 이 단체는 2년 만에 캄팔라(Kampala)에서만 100명 이상의 구성원이 참여할 정도로 성장했다. 2013년 1월 우간다 서부에 있는 나키발레(Nakivale)의 오래된 난민 정착촌 중 한 곳에서는 이러한 단체가 설립된 지 12개월 만에 구성원이 2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들 단체에서는 집 짓기, 물 길기, 병원 방문 등을 서로 돕는 것과 같이 매우 필요한 실용적인 지원과 심리적 동료 지원을 제공한다. 단체의 구성원은 캠프 당국(도시 지역) 및 현지 당국과 관련된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하게 됐다. 그 예로 국내외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특정 필요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도 있었다.

(정보제공: 난민법프로젝트(Refugee Law Project)의 크리스 돌란(Chris Dolan),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4년 6월)

5. 국가의 제도적 역량과 기존 사법 부문 행위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GBV 생존자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해를 입히지 말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률/사법 상황에서 사법에 대한 접근성 증진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함).

- ▶ 법원 소송 과정에서 GBV 생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는 사법 절차를 지원한다(예: 적절한 시기에 시행된 공평한 재판, 목격자 및 생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기반 제도, GBV 생존자를 위한 별도의 청문회 또는 녹화 청문회, 생존자를 위한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및 의료적 지원 연결 등).
- ▶ GBV 생존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지원 클리닉을 지원한다.
- ▶ GBV 범죄에 대한 전담 기소 부서 및 사법 시스템에 속한 모든 행위자(예: 판사, 변호사, 검사, 법원 행정 직원, 전통적 지도자, 관습법 판사, 경찰, 교도관 등)의 지속적인 교육을 옹호한다. 이러한 교육에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사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 ▶ 생존자의 법률 및 사법 서비스의 활용 여부 선택을 비롯한 생존자의 권리, 필요, 존엄성과 선택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생존자 중심의 사법 접근성을 위해 옹호한다.
- ▶ GBV 사건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법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이를 식별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강점에 기반하여 관습법 및 절차가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되도록 한다. 커뮤니티 준법률가, 인권 단체, 여성 단체 및 기타 커뮤니티 기반 위험에 처한 집단이 관습적 지도자와 교류하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 GBV 사건의 효과적인 해결 여부/방식 및 법원 소송 과정 전반에서 생존자 중심적인 인권 기반 접근법 적용 여부/방식에 관한 모니터링을 위해 여성 단체와 국가 인권 위원회를 지원한다.
- ▶ 무력분쟁의 피해를 입은 환경에서 분쟁 관련 성폭력 생존자의 배상 과정을 지원한다.





모범 사례

말라위 인권 센터(Malawi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MHRRC)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포괄적인 돌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성폭행 생존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응급 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on, EC)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관을 교육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 지역에서 대부분의 성폭행 생존자가 경찰에게 처음으로 신고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강간 이후 돌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 피임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찰관은 경찰이 직면한 체계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생존자에게 EC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경찰과 보건 제공자가 서로 협력하면서 경찰서와 병원 사이의 위탁 관계도 강화됐다. 경찰서에서 EC를 받은 생존자의 일부는 보건의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 그쳤지만, 위탁 후에 돌봄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위탁을 찾는 생존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시행돼야 한다. 특히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서에 신고하는 생존자의 거의 대부분이 아동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프로젝트 결과는 다음을 비롯한 여러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1. SGBV는 경찰 교육 및 서비스에서 주류화될 필요가 있다.
2. 아동 친화적인 서비스는 SGBV 생존자를 위한 모든 차원의 돌봄에 통합돼야 한다.
3. 경찰과 보건 시설 간 위탁 과정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주요 문서에 대한 경찰과 보건 제공자의 공동 교육을 포함한 다부문 교육 접근법이 이러한 개입을 지원하는 데 권장된다.

(인용: Malawi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2012. Testing the Feasibility of Police Provision of Emergency Contraception in Malawi, <www.svri.org/MHRRCEVALUATIONREPORT.pdf>)

GBV 예방 및 대응을

보호 관련 정책에 통합하기

1. 적절한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표적 보호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한다.

▶ (1) GBV 위험을 완화하고 (2)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보호 프로그램과 활동에 직원과 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보호 담당 직원을 위한 보육 관련 정책
- 여성에 대한 동등한 고용 기준
- GBV 사고 관련 보호/비밀 정보의 공유에 대한 절차 및 규약
- 성적 착취 및 학대 발생 시 신고, 조사, 징계 기관의 절차 관련 정보

▶ 관련 정보를 보호 부문 종사자에게 두루 배포하고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공용어 및 지역별 현지어를 사용하여 더 넓은 커뮤니티에 배포한다(점자, 수화, 비문해자를 위한 시각적 콘텐츠가 포함된 포스터, 커뮤니티 회의를 통한 안내 등 접근하기 쉬운 방법 사용).

2. 사법 및 법치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금을 할당하도록 국가 및 지역의 법률(관습법 포함)과 정책의 개혁을 지원한다.



- ▶ 공식 및 비공식 사법 시스템의 법률, 규정, 정책, 행동 계획, 절차 및 관행을 검토하고 관련 이해 관계자와 함께 GBV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옹호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법적 지원을 받을 권리 및 생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인도주의 비상사태 중 GBV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소
 -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진하는 사법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책정
- ▶ 국가가 주요 인권 협약(여성차별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포함)을 비준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요 인권 협약의 채택 및 이행을 옹호한다. 협약을 채택했지만 유보된 경우 이러한 유보를 없애도록 옹호한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권리를 충족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한 법치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을 위해 옹호한다. 예를 들어 성 범죄,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과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 여성의 권리, 재산권과 상속권, 임시 보호 명령/접근 금지 명령 및 기타 GBV 관련 사안과 관련된 법률의 작성이나 개정을 지원한다.
- ▶ 귀환, 재배치 및 재통합 체계, 개발 행동 계획 및 여성, 여아, 남성, 남아의 무장 해제, 동원 해제, 재통합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 GBV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체계와 행동 계획에는 GBV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며 생존자에게 적절한 돌봄과 지원(예: 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 GBV 관련 법률, 정책 및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개발 과정에서 관련 실무 부처와 비공식 사법 시스템 부문 행위자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이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GBV 예방 및 대응을

보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에 통합하기

1.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존자를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 체계(예: 위탁 경로)를 확인하고 보호 담당 직원은 생존자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보호 부문 종사자가 생존자가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서면 정보를 가지고 있게 한다.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보호 부문 종사자 (예: 보호 담당 모니터링 직원 및 기록, 프로파일링, 등록 과정을 담당하는 보호 담당 직원 등)를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섹슈얼리티와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예: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협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탁 경로

‘위탁 경로’는 GBV 생존자를 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의 도움, 법률/사법 지원 등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연한 메커니즘이다.

2. 보호 부문 내부적으로 또는 더 큰 범위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에 속한 협력기관과 함께 GBV에 관한 신고를 공유하는 보호 프로그램이 안전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 생존자 개인과 가족의 신원이나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안보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기관 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국제 젠더기반폭력 정보 관리시스템(Gender-Based Viole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GBVIMS)의 활용을 고려해보고 GBVIMS와 기존 보호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연결성을 찾아본다.³

3. GBV 메시지를 보호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에 통합한다.

- ▶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GBV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제고 활동을 보호 아웃리치 이니셔티브에 통합한다(예: 커뮤니티 토론회, 워크숍,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회의, 문서화, 프로파일링 또는 등록 과정에 관한 정보 등).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다른 이해관계자(예: 법률/사법 기관, 정부, NGOs, INGOs)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생존자의 법적 권리와, 특히 관습적 관행(예: 아동 결혼 및 강제 결혼)이라 범죄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 유형 및 기타 다양한 유형의 GBV 자행과 관련된 인권 사안에 관한 인식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여성과 여아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 및 언어를 사용한다(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
 - 메시지 개발 및 메시지 전달 전략 수립 과정에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가 참여하도록 하여 메시지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관련 메시지 전달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통해 GBV와 관련된 사람 등 피해 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우려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GBV 전문가가 아니라면 GBV 전문가나 GBV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³ GBVIMS는 GBV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보건시스템이나 기타 국가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GBVIMS는 오히려 여러 행위자가 다양한 접근법과 툴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 데이터 수집이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gbvim.com>을 참조한다.



-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를 GBV 예방 관련 보호 아웃리치에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한다.
- ▶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교육 관련 커뮤니티 토론회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예: 가사노동, 교통, 반발의 위험, 육아 책임 등)을 고려한다. 참가자가 GBV 관련 사안을 편안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론회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을 이행한다.
- ▶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보호 부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행동 강령 및 보호 부문 종사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조정 과정의 첫 단계로, 보호 담당 직원은 GBV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에서 GBV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GBV 전문가는 보호 부문 행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보호 프로그램과 관련된 GBV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보호 현황 파악을 설계 및 실시하고 보호 부문 행위자와 함께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와 인권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보호 담당 직원(안보 부문 행위자 및 법률/사법 행위자 포함)에게 시행한다.
- ▶ 안보 부문 행위자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개발한다.
- ▶ 보호 담당 직원에게 GBV 피해 사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생존자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보호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다.
- ▶ 보호 권리 및 필요와 관련이 있는 젠더, GBV, 여성의 권리, 인권 사안에 대해 피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 ▶ GBV 관련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정법과 관습법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보호 담당 직원은 다른 인도주의 지원 부문과 연계하여 GBV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부문(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부문)과의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다음 표에 제시돼 있다.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호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프로그램 단계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GBV 관련 사안을 보호 현황 파악에 포함 ⁴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관련 질문*이 포함된 보호 현황 파악의 수} \times 100}{\text{보호 현황 파악의 수}}$ <small>* 현황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GBV 주제별 질문은 243 페이지 참조</small>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또는 툴	100%	✓	✓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	$\frac{\text{현황 파악 응답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응답자의 수}}$ 및 $\frac{\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50%	✓	✓	

(계속)

⁴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30 November 2012.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ASC Transformative Agenda Reference Documen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files/4.%20Reference%20module%20for%20Cluster%20Coordination.pdf>>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계속)

현황 파악 시 남성과 여성 보호 부문 종사자 고용	$\frac{\text{현황 파악 시 인도적 보호 부문 종사자 중 여성의 수}}{\text{현황 파악 시 인도적 보호 부문 종사자 중 남성의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1:1	✓	✓	
현장의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와 상의 ⁵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별도로 상의	<p>양적 방법: $\frac{\text{현장과 그 주변의 GBV 위험 요인에 관한 논의를 위해 피해 인구와 상의한 현장의 수} \times 100}{\text{현장의 수}}$</p> <p>질적 방법: 현장과 그 주변에서 개인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GBV 관련 위험 요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p>	해당 조직의 기록물,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 주요 정보원 인터뷰 (Key Informant Interview, KII)	100%	✓	✓	
GBV 생존자 지원을 위한 안보 부문 표준운영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 의 존재	$\frac{\text{GBV 생존자를 지원하는 보안 요원의 SOP가 있는 현장의 수} \times 100}{\text{의료 현장의 수}}$	KII	100%	✓	✓	
GBV 생존자 위탁 경로에 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생존자 위탁 경로를 올바르게 답한 보호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답한 보호 담당 직원의 수}}$	설문조사	100%	✓	✓	

자원 동원

보호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에 GBV 위험 감소를 포함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위험 감소 목표, 활동 또는 지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 보호 자금 조달 제안서/전략의 수} \times 100}{\text{보호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제안서 검토	100%	✓	✓	
GBV 지침에 관한 보호 담당 직원 교육	$\frac{\text{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보호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보호 담당 직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	100%	✓	✓	

이행

▶ 프로그램

보호 프로그램의 여성 직원	<p>양적 방법: 보호 프로그램의 여성 직원 수</p> <p>질적 방법: 이러한 프로그램에 여성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p>	해당 조직의 기록물, FGD, KII	현장에서 결정		✓	
----------------	---	----------------------	---------	--	---	--

(계속)

⁵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 <www.humanitarianresponse.info/applications/ir/indicators>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 (계속)

▶ 프로그램

최소 1명 이상의 GBV 전문가가 보호 모니터링팀에 참여	최소 1명 이상의 GBV 전문가가 있는 보호 모니터링팀의 수 × 100 보호 모니터링팀의 수	KII, 해당 조직의 기록물	100%	✓	✓	
피해 커뮤니티의 GBV 관련 안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 전략의 존재	안보 모니터링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전략*이 있는 피해 커뮤니티의 수 × 100 피해 커뮤니티의 수 <small>* 커뮤니티 감시 프로그램, 보안 순찰대, 보호 모니터링 요원을 포함하는 전략</small>	KII, FGD	현장에서 결정	✓		✓
프로파일링, 문서화 또는 등록 과정에서 취약성에 대한 위험 요인에 GBV 포함	취약성에 대한 위험 요인에 GBV를 포함한 등록 현장의 수 × 100 등록 현장의 수	KII	100%	✓	✓	
수립된 규약에 따라 GBV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안보 담당 직원	수립된 규약*에 따라 GBV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에 참여한 안보 담당 직원의 수 × 100 안보 담당 직원의 수 <small>* 규약에는 사생활이 보호되는 방 지정, 같은 성별의 경찰관, 돌봄을 위한 위탁 등이 포함되어야 함</small>	교육 출석, KII	현장에서 결정	✓	✓	
특정 장소에서의 여성 보안 요원의 존재	특정 장소에 있는 여성 보안 요원의 수 × 100 특정 장소의 이재민 수	KII, 안전 감사	현장에서 결정	✓	✓	
GBV 생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의 이용 가능성	특정 장소에서 GBV 생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수 × 100 법률 지원 기관의 수	KII	현장에서 결정	✓	✓	

▶ 정책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보호 정책, 지침 또는 기준에 포함	GBV 지침에 나온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포함된 보호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 100 보호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기관, 부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의) 문헌 검토	현장에서 결정	✓		✓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법 과정과 관련된 중앙 및 지방 법의 존재	검토한 국가 및 지역 법률 중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법 과정과 관련된 법률*의 수 × 100 검토한 법률의 수 <small>* 무료 법적 지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법률, 가해자 기소, 형사 처벌 및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small>	문헌 검토	현장에서 결정	✓		✓

(계속)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 (계속)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응답한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	100%	✓		
보호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GBV 위탁에 관한 정보 포함	$\frac{\text{GBV 생존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교육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times 100}{\text{보호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문헌 검토, KII,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다른 부문과 조정	$\frac{\text{GBV 위험 감소 활동*을 위해 상의한 비 보호 부문의 수} \times 100}{\text{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비 보호 부문의 수}}$ <p>* 부문별 GBV 위험 감소 활동은 257 페이지 참조</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KII, 회의록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참고자료

주요 참고자료

-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and Global Protection Cluster Working Group. 2010.**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www.unhcr.org/4c2355229.pdf>
- **Global Protection Cluster.** Coordination Toolbox and Natural Disaster Reference Sheets, <www.globalprotectioncluster.org/en/tools-and-guidance/protection-cluster-coordination-toolbox.html>
- **Global Protection Cluster. 2014.** Protection Mainstreaming Package, <www.globalprotectioncluster.org/en/areas-of-responsibility/protection-mainstreaming.html>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08.** UNHCR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Women and Girls, <www.unhcr.org/protect/PROTECTION/47cfae612.html>
- **UNHCR. 2011.** Action against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n updated strategy, <www.refworld.org/pdfid/4e01ffeb2.pdf>
- **UN Women.** Virtual Knowledge Centr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cludes, among others, Programming Modules on Security, Justice and Legislation. <www.endvawnow.org>
- **Women's Refugee Commission. 2006.** Displaced Women and Girls at Risk: Risk factors, protection solutions and resource tools,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images/stories/WomRisk.pdf>>

추가 참고자료

- **UNHCR. 2012. Need to Know Guidance Series:**
 - Working with Men and Boy Survivors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Forced Displacement, <www.refworld.org/pdfid/5006aa262.pdf>
 - Working with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Intersex Persons in Forced Displacement, <www.refworld.org/docid/4e6073972.html>
 - Working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Forced Displacement, <www.refworld.org/docid/4e6072b22.html>
 - Working with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in Forced Displacement, <www.refworld.org/docid/4ee72a2a2.html>
- **Valasek, K. 2008.** 'Security Sector Reform and Gender'. In Bastick, M., and Valasek, K. (eds.) Gender and Security Sector Reform Toolkit. Geneva: DCAF, OSCE/ODIHR, and UN-INSTRAW, <www.osce.org/odihr/30662>
-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DCAF). 2009.** 'Gender and Security Sector Reform Training Resource Package', <www.dcaf.ch/Publications/Training-Resources-on-Security-Sector-Reform-and-Gender>
-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DCAF). 2014.**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Men: A guidance note for security sector institutions', <www.dcaf.ch/Publications/Preventing-and-Responding-to-Sexual-and-Domestic-Violence-against-Men-A-Guidance-Note-for-Security-Sector-Institutions>
-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AW/DESA). 2010.** Handbook for Legisl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New York, <www.un.org/womenwatch/daw/vaw/handbook/Handbook%20for%20legislation%20on%20violence%20against%20women.pdf>
-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2014.** Guidance Note on Reparations for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www.ohchr.org/Documents/Press/GuidanceNoteReparationsJune-2014.pdf>
- **American Refugee Committee International. 2005.** 'Gender-Based Violence Legal Aid: A participatory tool kit'. 이 시리즈는 특히 커뮤니티와 인도주의 활동가가 그들이 처한 특정 환경의 상황 및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그 다음 단계로 GBV 대처를 위한 포괄적 다부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 간과된 적이 많은 법률적 지원 제공 부문이 특히 강조됐다. <www.arcrelief.org/site/PageServer?pagename=programs_GBv_bookspage>
-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Red Cross (ICRC). 2013.** Professional Standards for Protection Work, <<https://www.icrc.org/eng/assets/files/other/icrc-002-0999.pdf>>



쉘터, 정착 및 복구



적용 대상

- 쉘터, 정착 및 복구(SS&R) 조정 메커니즘
- 인도주의 SS&R 대응과 비식량물품(NFI) 배급에 관련된 행위자(직원 및 책임자):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기반 기구(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등), 국제비정부기구(INGO), 유엔 기구
- SS&R 관련 지역 위원회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예: 여성, 청소년/청년, 노인 모임 등)
- 그 외 중앙 및 지방 정부, 커뮤니티 지도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SS&R 이해관계자

왜 쉘터, 정착 및 복구 부문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쉘터, 정착 및 복구(SS&R) 부문의 업무는 인도주의 비상사태로 인해 이재이주 상태에 처한 인구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재이주의 발생지가 국경 안인지 밖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쉘터 및 정착 방안이 실시될 수 있다. SS&R 내 GBV 관련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거주민이 GBV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도시 지역 또는 캠프 상황에서의 과밀 수용은 가족 간 긴장을 증가시킴에 따라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형태의 가정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밀 수용은 특히 여러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텐트, 다가구 거주 공간 또는 대규모 공동 공간에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성폭행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부 가족의 경우 혼잡함을 해소하거나 공동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결혼을 주선할 수도 있다. 과밀 수용을 피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캠프라 할지라도, 수용 인구는 증가하는데 토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쉘터(예: 취침 공간에 문이나 칸막이가 불충분함, 잠금장치가 부적절함, 탈의나 목욕을 위한 사생활 보호 결여, 기상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단열 처리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쉘터' 정의하기

본문에서 사용되는 쉘터라는 용어는 쉘터의 기본 정의(거주민에게 사생활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주 가능하고 지붕이 씌워진 공간)와 이러한 거주 가능한 공간이 비상 쉘터에서 항구적인 해결책으로 진화하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을 모두 의미한다.

(UN, DFID, 쉘터 센터(Shelter Centre). 2010. 'Shelter after Disaster: Strategies for transitional settlement and reconstruction', p. 321, <<http://sheltercentre.org/node/12873>>)

필수 행동 요약표 참조



결여 등)는 거주민이 성희롱 및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쉼터 안이 너무 더워 남성이 밖에서 잠을 자게 되면 밤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하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인 사람은 특히 탈의, 목욕 등 기본적인 활동을 할 때 사생활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낙인, 차별, 물리적 위협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¹(특히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미동반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쉼터에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구역이나 캠프 경계선에 있는 경우, GBV 위험이 증가한다.
- ▶ 캠프 환경과 비캠프 환경 양쪽에서, 쉼터와 관련된 비식량물품(취사용 및 난방용 연료, 연료 대용품, 쉼터를 위한 건축 자재, 위생키트 및 존엄성키트, 개인용 조명 등의 NFI)이 부족할 경우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거나 다른 호의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 ▶ 주거와 관련된 임대 지원(예: 현금 보조금, 임대 지원금 또는 취업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 의한 성폭행 및 착취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은 임대 자산을 확보할 수 없거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공공 장소(교회 또는 회교 사원)나 다가구 거주지에서 지낼 수 밖에 없게 된다.
- ▶ 쉼터 현장 내부 및 주변에 보안 순찰대 및 기타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경우, 잠재적인 가해자가 면책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GBV 위험은 쉼터, 정착, 비식량물품(NFI)과 관련된 새로운 GBV 관련 안전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SS&R 프로그램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비상사태가 시작된 후부터 문화적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더 회복력이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복구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SS&R 부문 행위자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참여시키고, 쉼터 자재를 배분하며 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GBV 위험 감소를 최우선으로 다루며, SS&R 관련 NFI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배급해야 한다.

GBV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SS&R 부문이 이행해야 하는 행동은 GBV 전문가 및 기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SS&R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과 조정해야 한다(다음에 나오는 '조정' 참조).

¹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GBTI), HIV 보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미동반 아동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의 내용:

쉼터, 정착 그리고 비식량물품 기준 1: 전략적 기획

- ▶ 쉼터와 정착 전략은 이재민과 비이주 피해 인구 모두의 안보, 안전, 건강, 웰빙에 기여하며, 가능한 경우 복구와 재건을 촉진한다.

지침 안내 7:

위험, 취약성 및 유해성 현황 파악

- ▶ 위험, 취약성 그리고 위험 현황 파악 시 실제 또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과 연령, 젠더(GBV 포함),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피해 인구의 자연 환경 자원에 대한 의존, 피해 인구와 수용 커뮤니티 사이의 관계로 인한 특정 위험과 취약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Sphere Project. 2011.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 인도주의 대응에서의 인도주의 현장과 최소 기준<www.spherehandbook.org>)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은 SS&R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선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현황 파악은 가능한 한 SS&R 부문 행위자가 GBV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도 협력하여 부문간 및 학제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은 '이행' 아래 자세하게 설명된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과도 연관돼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하고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SS&R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하는 우선순위 및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주요 현황 파악 대상 집단

- SS&R의 주요 이해관계자, SS&R 부문 관리자와 담당 직원, 쉼터와 NFI 위원회, 캠프 조정과 캠프 관리(CCCM) 부문 행위자, 경찰과 평화 유지군 같은 보안 요원, GBV, 젠더 및 다양성 전문가
- 피해 인구 및 커뮤니티
- 도시 환경에서 시 당국, 시민사회단체, 개발 부문 행위자, 보건 관리자, 학교 이사회, 사기업 등의 행위자가 SS&R과 연계했다.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의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SS&R 프로그램

참여 및 리더십

- 1) 책임자급을 포함한 SS&R 담당 직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여성 직원의 교육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GBV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안보적 사안이 있는가?
- 2)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SS&R과 관련된 커뮤니티 활동(예: 커뮤니티 SS&R 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가능한 경우 이들이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 3)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대상으로 SS&R 부문 내에서 생계와 기술 교육 기회(예: 쉼터 건축, 배급 등)가 제공되는가?
- 4) SS&R 대응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에 중점을 둔 활동을 주류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 기준(본 지침 포함)에 대해 알고 있는가?

쉼터 설계와 안전

- 5) 쉼터 배분 방법을 결정하는 시스템/기준이 실시되고 있는가?
 - 쉼터 지원에 취약성 지표가 사용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GBV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쉼터 선택권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가?
 - 여성을 위한 개인 숙소에 대한 접근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마련돼 있는가?
 - 미동반 여자를 위한 안전한 공동 쉼터 또는 위탁 가정에 대한 접근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마련돼 있는가?
 - 추가적인 쉼터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예: 장애인, 여성가장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가정, 노인 등)이 있는가? 이들의 특정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돼 있는가?
 - 안전하고 비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서, 독신 LGBTI가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쉼터 배치(예: 다른 LGBTI 사람과 공유, 혼자 거주, 비 LGBTI 사람과 공유 등)에 대해 이들과 상의하는가?
- 6) 쉼터가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설치됐는가?
 - 쉼터가 잠금장치가 있는 문과 창문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되는가?
 - 쉼터 자재로 인해 낮과 밤에 사람이 쉼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기가 어려운가?
 - 쉼터 내부 및 주변에 충분한 조명(예: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대체 조명, 충분한 백열 전구 등)이 있는가?
 - 쉼터가 장애인(예: 신체적 장애, 부상, 시각 또는 기타 감각 손상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인 편의²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됐는가?
 - 화장실, 목욕 시설과 급수장이 잠을 자는 장소로부터(인도적 지원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에 배치돼 있는가?
 - 쉼터 현장 내부 및 주변에 법 집행기관 부문 종사자, 보안 순찰대 및 기타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가?
- 7) 얼마나 많은 사람/가족이 같은 쉼터를 공유하는가(도시 환경 포함)?
 - 과밀 수용이 문제가 되는가?
 - 연령과 성별이 다른 사람 사이에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적절한가? 방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 8) 세입자인 경우
 - 임대료는 얼마인가? 임대료는 어떻게 지불하는가? 임대인에 의한 성적 착취나 학대의 증거가 있는가?
 - 특히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높은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 9) 쉼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쉼터가 건축되는 땅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 간의 갈등(즉, 강제 퇴거, 폭력 또는 GBV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절차가 실시되고 있는가?
- 10)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독신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쉼터 배치에 대해 이들의 의견을 묻는가(예: 자신들의 거주지 또는 구역에 수용, 혼자 거주 등)?
 -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 또는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특히 새로 도착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안보상의 위험이 있는가?
- 11) 현장에 지정된 공동 구역이 있는가?
 - 공동 구역이 안전한 장소에 있는가? 이러한 공간의 조명은 충분한가?
 - 공동 구역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누가 사용하는가?
 -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이 있는가? 이러한 공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됐는가?

²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4 정의'를 참조한다.

(계속)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지원/비식량물품 배급

- 12) 우선적으로 어떤 비식량물품(NFI)이 SS&R 부문의 책임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가(예: 위생키트 및 존엄성키트, 개인용 조명 등)?
- 13) 쉼터 자재와 쉼터와 관련된 NFI를 성적 착취나 학대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급하기 위한 기준(예: 젠더 구분 대기 줄/구역)이 있는가?
 - 배급 과정에서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필요를 인식하는 취약성 지수가 사용되고 있는가?
 - 쉼터 관련 NFI에 대한 추가 지원(예: 물품 운송 또는 쉼터 건축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집단(예: 미동반 아동, 임신한 여성, 장애인, GBV 생존자 등)이 있는가?
- 14) 쉼터 자재 및 쉼터 관련 NFI가 안전한 지역에서 배급되고 있는가?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이를 얻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가?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할 전략이 마련돼 있는가?
 - 안전을 위해 이러한 장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가?
- 15) 취사용 및 난방용 연료와 관련된 필요, 문제점, 제약사항은 무엇인가?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연료를 얻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성폭행, 납치, 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가?
 - 연료 확보와 관련된 성착취의 위험이 있는가(예: 성관계와 연료를 교환)?
 - 보안 순찰대가 연료 수집 경로를 따라 배치됐는가?
- 16) 상황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를 전달할 수 있는가?
 - 배급 장소는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배급되는가?
 - 이러한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는가?
 - 소년소녀가장가정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 대상 집단에 포함돼 있는가?

SS&R 정책

- 1) GBV 예방과 완화 전략이 SS&R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가?
 - 특히 GBV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는 SS&R 정책, 기준 및 지침의 개발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이러한 정책, 기준, 지침에 관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과 소통했는가?
 - SS&R 담당 직원은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책의 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2) 국가 및 지역의 부문 정책에서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예: 커뮤니티 기반 단체의 직원으로서) SS&R 부문에 안심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차별적 관행을 다루고 있는가?
- 3) 국가 및 지역의 SS&R 부문 정책과 계획에 GBV 관련 위험 감소 전략(예: 특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쉼터 관련 GBV 위험 감소에 관해 정부에 조언할 수 있는 GBV 전문가의 영입)이 포함돼 있는가?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 할당돼 있는가?

SS&R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 1) SS&R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에 관한 교육을 제공했는가?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사안
 -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는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2) SS&R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가 일반적인 안전과 GBV 위험 감소에 대한 커뮤니티 내 인식을 제고하는가?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이러한 정보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이러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가?
- 3) SS&R에 대한 토론회에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는가? 이러한 토론회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함에 따라(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자원 동원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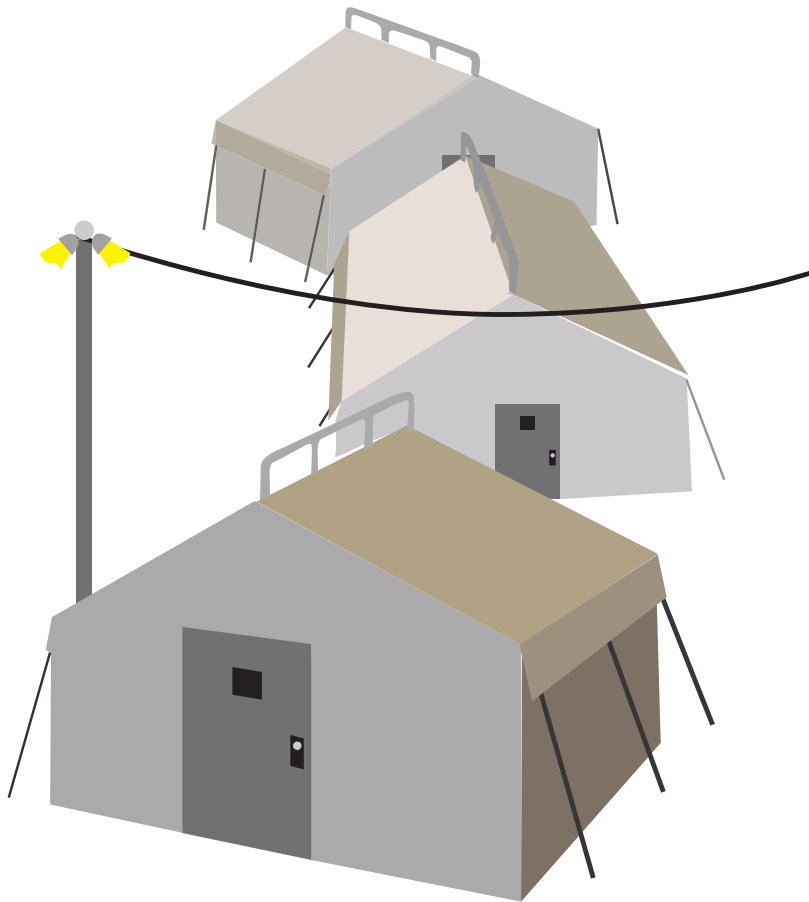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은 SS&R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GBV 관련 자원 동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비상사태 대비/긴급 자금이나 비상사태 후 복구/개발 자금을 요청할 때 특정 GBV 위험을 반영하고 대처 전략을 제안하면 제안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금 조달 이후

'자원 동원'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품 및 공여자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동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도적 부문/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 제시돼 있다.



A. 인도적 필요의 개요

- ▶ 쉼터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 인구의 GBV 관련 안전 위험, 보호 필요 및 권리가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는가(예: 비좁은 방, 사생활 보호 결여, 부적절한 쉼터, 여성과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인도주의 담당 직원의 태도 등)?
- ▶ 'GBV'로 통칭하지 않고 GBV 위험을 특정 유형(예: 성폭행,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기타 형태의 가정 폭력, 성착취, 희롱 등)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 ▶ 위험에 처한 특정 집단의 취약성과 그에 따른 쉼터 필요(예: 장애인, 여성가장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가정, 독신 여성, 이산/미동반 아동 등)를 인식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 ▶ 비상사태 대비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GBV 위험 감소를 통합하는 신속한 SS&R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물품(예: 칸막이 시트, 손전등, 문, 잠금장치,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 기능 등)이 예측되고 있는가?
 -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인 편의 원칙에 따른 시설 신축 및 기존 시설 보수를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한가?
 - 정부, SS&R 담당 직원, 커뮤니티 단체를 대상으로 GBV 위험 완화를 위한 SS&R 프로그램의 안전한 설계 및 이행에 관한 교육을 준비 및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자료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로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가?
- ▶ 비상사태 대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쉼터 설계 측면에서 SS&R 프로그램이 GBV 노출을 완화시키는 방법(예: 사용된 물품의 종류, 칸막이 사용, 잠금장치의 이용 가능성, 충분한 조명 시설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가?
 - 여성이 쉼터 자재 배급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쉼터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가?
 - 전략이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충족하는가?
 - SS&R 부문 여성 직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가(예: 이동을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지원, 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 직원과 동행하도록 자금을 지원)?
- ▶ 비상사태 이후와 복구에 대한 제안서의 초안을 작성할 때:
 -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 및 특정 유형의 GBV를 감소하는 장기적인 노력에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예: 사전 배치된 텐트 물품에 포함된 칸막이의 규격 표준화, 비상사태 초기부터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과 안전한 쉼터를 고려하여 주기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전략 개발 등과 같은 GBV 위험 감소 전략을 국가 및 지역 정책에 통합)이 있는가?
 -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가?

C. 프로젝트 내용

- ▶ 제안된 활동에 GBV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이행 원칙 및 주요 접근법(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 기반)이 반영되어 있는가?
- ▶ 제안된 활동이 자원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하는가?
- ▶ 프로젝트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와 역량강화(SS&R 담당 직원으로 고용 및 커뮤니티 기반 SS&R 위원회에 참여를 포함)를 촉진/지원하는가?



이행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SS&R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GBV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표현된 필요, 확인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SS&R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1.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SS&R 프로그램의 설계와 이행 과정에 직원 및 책임자로 참여시킨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SS&R 프로그램 담당 직원 중 여성 비율이 50%가 되도록 노력한다. 쉼터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서 여성 직원이 책임자급이나 교육직을 맡을 수 있도록 공식 및 직무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 여성(해당되는 경우, 청소년기 여아 포함)이 커뮤니티 기반의 SS&R 프로그램과 운영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 ▶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을 SS&R 부문 직원, 책임자 및 교육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LGBTI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인 사람은 이재이주 동안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들은 극심한 괴롭힘, 차별, 신체적 또는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SS&R 전략 또는 지침은 LGBTI인 사람의 권리와 필요를 포함하고 특히 LGBTI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상황에서 특정한 안전 우려사항에 대처해야 한다. LGBTI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SS&R 프로그램 담당자는 현지 LGBTI 기구와 상의하고 LGBTI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 인지적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해당되는 경우에 LGBTI인 사람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SS&R 위원회에서 LGBTI의 참여를 권장하고 안전한 쉼터 설계에 대해 이들과 상의하도록 보장한다.
- 특정 상황에서는 분산된 주거 메커니즘이 공동의 '안전 가옥'보다 LGBTI인 사람에게 더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스스로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주거안을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이들이 안전을 기반으로 다른 선호도를 표시하는 않는 한, 쉼터가 성별에 따라 분리된 곳에서 남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여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
- 폭행과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트랜스젠더 거주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은 야간 담당 직원 근처에서 잘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보제공: 휴먼 라이츠 퍼스트(Human Rights First)의 던컨 브린(Duncan Breen),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5월 20일)

2. 쉼터 자재 배분과 쉼터 건축 과정에서 GBV 위험 감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 쉼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고 투명한 기준을 이행한다. 이러한 기준이 남성 친인척 없이 숙소를 구하는 GBV 생존자나 여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 여성, 여아 및 위험에 처한 집단을 위한 개인 숙소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위탁이 결정될 때까지 미등반 아동을 위해 개별적인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가능한 한 배급 장소와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먼 곳에 정한다.
- ▶ 주거 환경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공간과 밀도에 대한 스피어 기준을 이행한다. 과밀 수용은 가족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가정의 WASH 필요에 따라 먼 곳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하지 않도록 스피어 기준에 따라 급수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 단단하고 불투명한 건축 자재, 잠금장치가 있는 문과 창문, 가족과 성별로 구분된 칸막이(연령·젠더·문화·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경우)를 제공함으로써 취침 공간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증진한다.
- ▶ 조명을 SS&R 부문에서 담당할 경우, 특히 GBV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구역에서 쉼터 내부 및 주변에 적절한 조명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전등과 태양열 조명을 배급한다.
- ▶ 커뮤니티가 GBV와 관련된 쉼터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교훈

2001년 엘살바도르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 이후 쉼터 대응에 참여하는 독신 여성은 임시 쉼터에 튼튼하고 불투명한 시트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에 제공됐던 반투명 소재의 시트는 외부인이 밖에서 훑쳐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혼자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소재는 쉽게 자를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

(발췌: **Active Learning Network for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Humanitarian Action**. 2003. Participation by Crisis-Affected Populations in Humanitarian Action: A handbook for practitioners. 런던. 해외 개발 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p. 299, <www.alnap.org/pool/files/gs_handbook.pdf>)

3. SS&R 관련 비식량물품(NFI)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배급될 수 있도록 한다.

- ▶ 우선적으로, NFI를 SS&R 부문에서 담당할지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NFI의 충분하고 지속적인 배급을 통해 GBV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을 확인한다.
 - 취사용 연료, 난방용 연료, 연료 대용품
 - 쉼터를 위한 건축 자재
 - 위생키트 및 존엄성키트
 - 개인용 조명
- ▶ 피해 커뮤니티와 상의하여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특히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독신 여성, 어린 여아, 노인, 장애인 및



모범 사례

소말리아에서는 UNICEF의 아동보호부서, WASH 부서, 교육 부서가 여아의 학업지속률을 높이고 아동 결혼 또는 강제 결혼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생리와 관련된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가 개인위생 관리(공중위생 수건 종류, 속옷 종류, 비누, 물에 대한 접근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UNICEF는 이 기회를 통해 존엄성키트에 포함할 품목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SS&R 부문이 존엄성키트의 주요 제공자이기 때문에 UNICEF 협력기관은 설문조사를 개발하는 과정에 SS&R 부문을 참여시켰다. 이는 피해 인구의 혜택을 위한 부문 간의 협력 증진으로 이어졌다.

(정보제공: UNICEF 소말리아 아동보호부서,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4년 8월)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NFI에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배급의 불평등을 즉시 처리한다.
 -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쉼터 자재를 배급(예: 물품을 지정된 현장에 직접 배송)하는 동안 추가적인 필요를 고려한다.
 - NFI 배급 시 장애인, 소외되거나 집에 갇혀 있는 GBV 생존자의 필요를 고려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람은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물품(비누, 옷감, 요실금 패드, 물통 등)이 필요할 수 있다.
- ▶ 캠프가 아닌 환경에서는 적절한 쉼터가 부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GBV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대지원금, 취업지원금 또는 바우처 지원을 고려한다.
- ▶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이 아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배급 체계를 구축한다. 여성, 여아, 남아, 남성에게 배급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한다.



모범 사례

현금 지원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불이익, 차별, 학대에 대응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들 중에서 여성가장가정의 55%가 소득이 없다. 가족은 생존을 위해 여아의 아동 결혼, 아동 노동(특히 임금 착취에 취약하고 위험한 조건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남아),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압력으로 가족 구성원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됨에 따라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다른 형태의 가정 폭력의 위험도 증가했다. 2012년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불 ATM 카드는 난민의 자립심과 존엄성을 증진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지원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 IRC. 2012. 현황 파악 보고서: Cash transfer program to Syrian refugees in Jordan, <<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download.php?id=1176>>)

4. 조리 기구를 배급하고 취사용 연료 사용을 줄이는 조리 시설을 설계하여 안전하지 않은 구역에서 연료를 구해야 할 필요성을 줄인다.

- ▶ SS&R 부문 행위자가 취사용 연료 및 난방용 연료에 대한 배급을 책임질 경우, GBV 전문가와 연계하여 여성과 여아가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장작이나 숯을 판매하는지, 이러한 생계 활동으로 인해 이들이 성폭행과 성착취의 위험에 노출되는지 모니터링한다.
- ▶ 가능한 경우 연비가 우수한 난로, 연료에 대한 현금 지원/바우처를 제공한다. 연비가 우수한 난로 및 취사용 및 난방용 연료 배급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유형에 대해 여성과 상의한다. 이러한 난로 사용법을 여성 및 남성에게 교육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SS&R 정책에 통합하기

1. 적절한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SS&R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한다.

- ▶ (1) GBV 위험을 완화하고 (2)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SS&R 활동에 직원 및 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SS&R 담당 직원을 위한 보육 관련 정책
 - 여성에 대한 동등한 고용 기준
 - GBV 사고 관련 보호/비밀 정보의 공유에 대한 절차 및 규약
 - 성적 착취 및 학대 발생 시 신고, 조사, 징계 기관의 절차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를 SS&R 담당 직원, 위원회 및 관리 집단에 두루 배포하고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공용어 및 지역별 현지어를 사용하여 더 넓은 커뮤니티에 배포한다(점자, 수화, 비문해자를 위한 시각적 콘텐츠가 포함된 포스터, 커뮤니티 회의를 통한 안내 등 접근하기 쉬운 방법 사용).

2. GBV 위험 감소 전략을 국가 및 지역의 SS&R 관련 정책과 계획에 통합하기 위해 옹호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금을 할당한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SS&R 부문에 안전하게 참여(직원 및 책임자로서) 하지 못하게 막는 차별적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검토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 정부, 관습적/전통적 지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지원한다.
- ▶ 국가 SS&R 정책에 GBV 관련 안전 조치(예: 사전 배치된 텐트 물품에 포함되는 칸막이의 규격 표준화를 고려, 비상사태 초기부터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 설치 고려, 재건 정책이 공간 및 밀집과 관련된 위험 감소 조치를 포함하도록 보장)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 ▶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개발 과정에서 관련 실무 부처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이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SS&R 관련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에 통합하기

1.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존자를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 체계(예: 위탁 경로)를 확인하고 SS&R 담당 직원은 생존자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SS&R 부문 종사자가 돌봄과 지원을 받도록 생존자를 위탁할 곳에 대한 정보를 기록했는지 확인한다.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탁 경로

‘위탁 경로’는 GBV 생존자를 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의 도움, 법률/사법 지원 등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연한 메커니즘이다.



- ▶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모든 SS&R 부문 종사자에게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성 정체성, 심리적 응급 처치(예: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SS&R 부문 내부적으로 또는 더 큰 범위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에 속한 협력기관과 GBV에 관한 신고를 공유하는 SS&R 프로그램이 안전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 생존자 개인과 가족의 신원이나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기관 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3. GBV 메시지를 SS&R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 및 인식제고 활동에 통합한다.

- ▶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GBV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제고 활동을 SS&R 아웃리치 이니셔티브에 통합한다(예: 커뮤니티 토론회, 워크숍,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회의, GBV 메시지 전달 등).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GBV 예방,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 및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를 사용한다.
 - 메시지 개발 및 메시지 전달 전략 수립 과정에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가 참여하도록 하여 메시지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한다.
-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를 GBV 예방 관련 SS&R 아웃리치에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시킨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교육 관련 커뮤니티 토론회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예: 교통, 회의 시간과 장소, 참여와 관련된 반발의 위험, 육아 지원의 필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론회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예: 기밀 유지,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을 이행한다.
- ▶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SS&R 부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행동 강령 및 SS&R 부문 종사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관련 메시지 전달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통해 GBV와 관련된 사람 등 피해 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우려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GBV 전문가가 아니라면 GBV 전문가나 GBV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SS&R 프로그램 담당자는 조정 과정의 첫 단계로 GBV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에서 GBV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GBV 전문가는 SS&R 부문 행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SS&R 프로그램과 관련된 GBV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SS&R 현황 파악을 설계 및 실시하고 SS&R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한다.
- ▶ SS&R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안에 관해 교육한다.
- ▶ SS&R 담당 직원에게 GBV 피해 사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생존자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SS&R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 ▶ SS&R과 관련이 있는 젠더, GBV, 여성의 권리, 인권 사안에 대해 피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 ▶ 여성·청소년·아동 친화적인 공간 및 안전한 쉼터의 위치와 물리적 구조가 안전하도록 자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SS&R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 연계하여 GBV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부문(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부문)과의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다음 표에 제시돼 있다.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SS&R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모범 사례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을 위한 아즈락(Azraq) 캠프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GBV 예방을 우선시하기 위해, SGBV 하위 워킹그룹(SGBV SWG)의 태스크포스가 설립됐다. UNHCR, UNFPA, UNICEF, IMC 그리고 IRC 가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다. 2013년 태스크포스는 UNFPR 및 UNICEF와의 조정을 통해 계획된 현장에 UNHCR의 방문을 추진했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쉼터 부문 행위자, 현장 계획 담당자, 기타 부문 동료에게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그 결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캠프 계획이 수정되고 변형됐다.

- 취약 난민 여성과 자녀를 위한 별도의 접수처
- 여성과 여아를 위한 안전한 공간, 각 캠프 구역을 위한 기타 커뮤니티 서비스(난민 2만 명당 1개)

또한, 태스크포스는 쉼터 부문 행위자 및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자와 조정하여 가장 위험에 처한 난민(여성이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독신 여성, 미동반 아동, 노인, 장애인)이 T-쉼터(transitional shelter)를 짓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그에 따른 성착취 위험을 방지했다. 이러한 T-쉼터를 사전에 건설하고 난민 도착 시 가족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이 합의됐다. T-쉼터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분전반이 추가된 배선 시스템이 설치됐다. 난민이 지속적으로 도착함에 따라, 일부 난민은 현금지원 취로사업(Cash-for-Wor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 쉼터 건축에 참여했다. SGBV SWG는 캠프 관리 부문 및 다른 부문과 함께 GBV 예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각 부문은 추가적인 보호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매우 수용적이었다.

(정보제공: 요르단 UNFPA와 UNHCR,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4년 10월 7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프로그램 단계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GBV 관련 질문을 셸터, 정착 및 복구 부문(SS&R) 현황 파악에 포함 ³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관련 질문*을 포함하는 SS\&R 현황 파악의 수} \times 100}{\text{SS\&R 현황 파악의 수}}$ <p><small>* 현황 파악 시 활용할 수 있는 GBV 주제별 질문은 265 페이지 참조</small></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또는 톨	100%		✓	✓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	$\frac{\text{현황 파악 응답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응답자의 수와 현황 파악 팀 내 여성 구성원의 수} \times 100}$ $\frac{\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50%		✓	✓

(계속)

³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30 November 2012.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ASC Transformative Agenda Reference Documen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files/4.%20Reference%20module%20for%20Cluster%20Coordination.pdf>>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계속)

<p>쉼터의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와 상의</p> <p>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별도로 상의</p>	<p>양적 방법: $\frac{\text{쉼터 내부 및 주변에서 GBV 위험 요인에 관해 피해 인구와의 상의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특정 지역의 수} \times 100}{\text{지정된 지역의 수}}$</p> <p>질적 방법: 쉼터 내부 및 주변에서 개인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GBV 관련 위험 요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p>	해당 조직의 기록물,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 주요 정보원 인터뷰 (Key Informant Interview, KII), 현황 파악 보고서	100%		✓	✓
<p>쉼터 시설 설계 전 여성 참여⁴</p>	<p>양적 방법: $\frac{\text{쉼터 시설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쉼터 시설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p> <p>질적 방법: 여성과 여아는 쉼터 시설 설계와 관련된 자신의 참여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계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p>	해당 조직의 기록물, FGD, KII	현장에서 결정			✓
<p>GBV 생존자 위탁 경로에 대한 직원의 지식</p>	<p>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생존자를 위한 위탁 경로를 정확하게 말하는 SS&R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p> <p>설문조사에 응답한 SS&R 담당 직원의 수</p>	설문조사	100%	✓		✓

자원 동원

<p>GBV 위험 감소를 SS&R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에 포함</p>	<p>GBV 지침에 나온 GBV 위험 감소 목표, 활동 또는 지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 SS&R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times 100$</p> <p>SS&R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제안서 검토	100%	✓	✓	
<p>GBV 위험 완화를 위한 사전 배치된 물품 재고의 가용성</p>	<p>재고량이 최저 기준 미만인 GBV 위험 감소 물품의 수 $\times 100$</p> <p>GBV 위험 감소 물품의 수</p>	기획 또는 조달 기록, 예측 기록	0%	✓	✓	
<p>SS&R 담당 직원에 대한 GBV 지침 교육</p>	<p>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SS&R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p> <p>SS&R 담당 직원의 수</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	100%	✓	✓	

(계속)

⁴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 <www.humanitarianresponse.info/applications/ir/indicators>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

▶ 프로그램

<p>쉼터 내부 및 인근의 GBV 위험 요소</p>	<p>양적 방법: $\frac{\text{쉼터 내부 및 인근에 대한 질문에 GBV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쉼터 내부 및 인근에 대해 질문을 받은 피해 인구의 수}}$ <p>질적 방법: 피해 인구가 쉼터 내부 및 주변에서 GBV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피해 인구가 말한 쉼터 내부 및 인근의 안전 우려사항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p> </p>	<p>설문조사, FGD, KII, 참여 커뮤니티 도식화</p>	<p>0%</p>			
<p>비식량물품(NFI)의 범위⁴</p> <p>여성이 가장 가정 및 남성이 가장 가정으로 구분</p>	<p>$\frac{\text{NFI*가 필요하고 NFI를 받은 가정의 수} \times 100}{\text{NFI가 필요하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가정의 수}}$ <p>* NFI는 위생키트 및 존엄성키트, 개인용 조명, 취사용 및 난방 연료, T-쉼터(transitional shelter) 자재를 포함할 수 있음</p> </p>	<p>설문조사, W 매트릭스</p>	<p>현장에서 결정</p>			
<p>SS&R 물품 배급 장소와 시간에 대한 지식</p>	<p>$\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SS&R 물품이 배급되는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말하는 가정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답한 가정의 수}}$ </p>	<p>설문조사, FGD</p>	<p>현장에서 결정</p>			
<p>취사용 연료/장작을 수집하는 데 있어 GBV 위험 요소</p>	<p>$\frac{\text{취사용 연료와 장작 수집에 대한 질문에 GBV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답한 피해 인구의 수}}$ </p>	<p>설문조사, FGD, KII</p>	<p>0%</p>			

▶ 정책

<p>GBV 예방과 완화 전략을 SS&R 정책, 지침 또는 기준에 포함</p>	<p>$\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예방과 완화 전략을 포함하는 SS&R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times 100}{\text{SS&R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p>	<p>(기관, 부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의) 문헌 검토</p>	<p>현장에서 결정</p>			
---	--	--------------------------------------	----------------	--	--	--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p>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p>	<p>$\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응답한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p>	<p>(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p>	<p>100%</p>			
<p>SS&R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GBV 위탁 정보를 포함</p>	<p>$\frac{\text{GBV 생존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SS&R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times 100}{\text{SS&R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p>	<p>(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문헌 검토, KII, 설문조사</p>	<p>현장에서 결정</p>			

(계속)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다른 부문과 조정	$\frac{\text{GBV 위험 감소 활동*을 위해 상의한 비 SS\&R 부문의 수} \times 100}{\text{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비SS\&R 부문의 수}}$ <p>* 부문별 GBV 위험 감소 활동 목록은 276 페이지 참조</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KII, 회의록	현장에서 결정		✓	✓

참고자료

주요 참고자료

- 쉼터 현장의 선택, 설계, 건설, 배분에 있어 젠더 평등한 프로그램의 현황 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를 참조한다. 2006.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Handbook%20%28Feb%202007%29.pdf>
-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2008.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Gender-Based Violence', ch. 10장 '젠더기반폭력의 예방과 대응', pp. 319-323, <www.refworld.org/pdfid/526f6cde4.pdf>. NRC 톨킷의 해당 페이지는 커뮤니티 보호 시스템과 함께 보호에 민감한 쉼터 및 현장 기획에 중점을 두고 있다.
- Norwegian Refugee Council (NRC) and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2013. Security of Tenure in Humanitarian Shelter Operations, <www.ifrc.org/Global/Documents/Secretariat/201406/NRC%20IFRC%20Security%20of%20Tenure.pdf>
-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10.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지침, <www.sheltercentre.org/sites/default/files/Collective_Centre_Guidelines_2010_small.pdf>. 이 지침은 젠더기반폭력과 이에 대한 해결 전략을 포함하여 이재민 임시수용시설과 관련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제안을 제공한다.
- 전미트랜스젠더평등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NCTE). 2011. 'Making Shelters Safe for Transgender Evacuees', <www.transgenderlaw.org/resources/MakingSheltersSafeForTransgenderEvacuees.pdf>. 트랜스젠더 피난민이 직면하는 고유한 문제를 고려할 때 NCTE, 람다리걸(Lambda Legal), 전미게이레즈비언태스크포스(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는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위한 안전한 공간 조성에 있어서 쉼터를 지원하기 위한 간단한 지침을 발표했다.
- 글로벌 쉼터 클러스터(Global Shelter Cluster). 2012. 'Guidance on Mainstreaming the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Emergency Shelter Programmes', <www.urban-response.org/resource/7193>
- 글로벌 쉼터 클러스터(Global Shelter Cluster). 2013. 'Guidance on Mainstreaming Protection in Shelter Programmes', <http://www.sheltercluster.org/sites/default/files/docs/Protection%20Matrix_v4%20120924.doc>
- 존스(Jones), A., 브렌서튼(Bretherton), J., 보울스(Bowles), R., 크로우처(Croucher), K. 2010. 'Sanctuary Schemes for Households at Risk of Domestic Violence'. 커뮤니티와 지방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anctuary-schemes-for-households-at-risk-of-domestic-violence-guide-for-agencies>>
- 국제적십자사 및 적신월사(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2012. Assisting Host Families and Communities after Crises and Natural Disaster: A step-by step guide. Geneva: IFRC, <www.ifrc.org/PageFiles/95186/IFRC%20DRC%20Assisting%20host%20family%20guidelines-EN-LR.pdf>
- 유엔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쉼터 센터(Shelter Centre). 2010. Shelter after Disaster: Strategies for transitional settlement and reconstruction, <<http://sheltercentre.org/node/12873>>
- Sphere project, 2011. 2011.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 인도주의 대응에서의 인도주의 현장과 최소 기준(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www.spherehandbook.org>.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은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는 인도주의 대응을 위한 공동 원칙과 보편적인 최소 기준이다.
- House, S., Mahon, T., and Cavill, S. 2012. Menstrual Hygiene Matters: A resource for improving menstrual hygiene around the world, <www.wateraid.org/what-we-do/our-approach/research-and-publications/view-publication?id=02309d73-8e41-4d04-b2ef-6641f6616a4f>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적용 대상

-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 조정 메커니즘
- WASH 부문 행위자(직원 및 책임자):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기반 기구(국내 적십자사/적신월사 등), 국제비정부기구(INGO), 유엔 기구
- WASH 관련 지역 위원회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예: 여성, 청소년/청년, 노인 모임 등)
- 그 외 중앙 및 지방 정부, 커뮤니티 지도자, 시민사회 단체 및 기타 WASH 이해관계자

왜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부문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무력분쟁, 자연재해, 인도주의 비상사태는 커뮤니티에서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과 관련된 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비상사태 시 WASH 프로그램과 시설을 잘 설계하면 피해 인구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제대로 기획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 내 젠더 역학을 고려하지 않은 WASH 프로그램은 성폭력 및 기타 유형의 젠더기반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는 특히 WASH 문제로 인해 특히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¹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은 집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고립된 위치에 있는 제한된 수의 WASH 시설(급수장, 취사 시설, 공중위생 시설 등)로 이동하는 동안 성폭행과 성폭력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한다. 일부 비상사태의 경우, 여성 및 여아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통과하거나 해가 진 후에 이동해야 한다.
- ▶ 물이 부족한 경우(예: 가뭄),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어 벌을 받게 되거나 급수장의 대기줄이 길어 물을 얻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느라 귀가가 늦어질 수 있다.
- ▶ 물을 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취약 연령대의 여아는 수업에 빠지거나 결석할 위험이 커지며, 따라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결국 이들에 대한 미래의 GBV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자세한 정보는 교육 부문 참조).

¹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GBTI), HIV 보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미동반 아동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정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필수 행동 요약표 참조

- ▶ 여아를 위한 개인위생 물품을 갖추지 못한 학교에서는 여아, 특히 생리를 하는 청소년기 여아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 조명, 잠금장치, 사생활 보호가 불충분하거나 성별로 분리된 공공위생 시설이 부족하면 여성 및 여아에 대한 괴롭힘 또는 폭행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부적절한 건축 자재(내구성이 약한 플라스틱 시트 등) 및 부실한 설계(상류 제방이 위치한 지역에 설치된 지붕이 없는 형태의 건물 등)도 이러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
- ▶ 이재이주의 경우 수자원을 둘러싼 수용 커뮤니티와의 긴장은 국내 이재민(IDP)/난민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식수 확보에 대한 책임을 주로 맡고 있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은 비누, 개인위생 물품, 물 및 기타 WASH 물품을 받는 대가로 WASH 담당 직원에게 착취당할 수 있다.

WASH 개입을 설계하는 데 있어 WASH 관련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다양한 권리, 필요와 역할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WASH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할 때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WASH 부문의 직원 및 커뮤니티 기반 자문가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참여는 인명 구조 필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젠더 평등과 GBV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GBV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WASH 부문이 이행해야 하는 행동은 GBV 전문가 및 기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WASH 부문 행위자는 또한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문제를 다루는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다음에 나오는 '조정' 참조).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와 WASH

도시와 농촌의 모든 환경에서 여아 및 여성은 화장실을 갈 때마다 괴롭힘에 직면한다. 배변과 생리에 대한 금기가 존재하고 사생활이 잘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여성과 여아는 밤시간대에 화장실을 가거나 목욕을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심지어 해질녘까지 기다리기 위해 음식물 섭취를 늦추기도 한다. 그러나 밤시간대의 WASH 시설 이용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취약 집단에 대한 괴롭힘과 성폭행의 위험성을 높인다.

(인용: House, S. 2013. Gender-Based Violence and Sanitation, Hygiene and Water, WaterAid. Blog series by th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www.communityledtotalsanitation.org/blog/gender-based-violence-and-sanitation-hygiene-and-water>)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의 내용:

프로그램 설계와 이행

- ▶ 모든 사용자가 WASH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한 결과, 안보가 증진되고 존엄성이 회복됐다는 것에 만족했다.

공동 세탁과 목욕 시설

- ▶ 사람은 사생활 보호와 존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가구별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된 공용 시설이 필요하다... 시설의 수, 위치, 설계, 안전, 적절성과 편리성은 사용자, 특히 여성, 청소년기 여아, 장애인과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접근성이 좋고 조명이 설치돼 있고 주변 환경이 잘 보이는 곳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절하고 충분한 화장실

- ▶ 화장실이 설치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여성 및 여아를 공격(특히 야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화장실 사용 시 여성 및 여아가 안전하게 느끼도록 보장한다.

(발췌: Sphere Project. 2011.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www.spherehandbook.org>)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생존자, 부상 및 WASH

비상사태 시 잘 설계된 WASH 프로그램과 시설을 통해 성폭행 생존자가 부상을 치료하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 생존자는 요도, 생식기 또는 직장 외상으로 인해 기본적인 씻기와 개인위생 활동 시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WASH 시설에 대한 예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은 또한 확실하고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요실금 패드와 같은 비식량물품(NFI)이 필요하다.

(정보제공: UNHCR,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4년 9월)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하기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은 WASH 부문 행위자가 다양한 현황 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선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현황 파악은 가능한 한 WASH부문 행위자가 GBV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부문과도 협력하여 부문간 및 학제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주제별 가능한 질문은 '이행' 아래 자세하게 설명된 3대 주요 책임(프로그램,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공유)과도 연관돼 있다. 이러한 주제별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GBV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하고 생존자를 위한 대응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WASH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다루어야 하는 우선순위 및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안전하고 윤리적인 현황 파악,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교훈

인도에서는, 공공 위생 서비스 장소의 설계 및 유지보수 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아 및 여성은 성희롱, 폭행, 학대의 표적이 된다. 남아 및 남성은 공중 화장실 안에 있는 여성 및 여아를 뺨히 쳐다보거나 훑쳐보고 괴롭히거나 그 주변을 배회하기도 한다. 여성 및 여아는 적대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설치된 급수장에서 물을 길는 것을 두려워한다. 열악한 배수로와 폐기물 더미가 길을 좁게 만들고, 이로 인해 남아 및 남성은 여성 및 여아가 그들의 걸을 지나갈 때 옆으로 밀어 버리는 사건이 증가했다.

(인용: **Women in Cities International, Jagori. 2011. Gender and Essential Services in Low-Income Communities: Report findings of the Action Research Project – Women's rights and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in Asian cities, <www.idrc.ca/Documents/105524-Gender-and-Essential-Services-in-Low-Income-Communities-Final-Technical-Report.pdf>**)



주요 현황 파악 대상 집단

- WASH 내 주요 이해관계자: 정부, 지역 WASH 위원회, 지역 지도자, 인도적 지원 활동가, 젠더 및 다양성 전문가
- 피해 인구 및 커뮤니티
- 국내 이재민(IDP)/난민 환경의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WASH 프로그램

참여 및 리더십

- 1) 책임자급을 포함한 WASH 담당 직원의 남녀 성비는 어떠한가?
 - 여성 직원의 교육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체계가 실시되고 있는가?
 -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GBV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또는 안보적 사안이 있는가?
- 2)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WASH와 관련된 커뮤니티 기반 활동(예: 커뮤니티 물 관리 및 공중위생 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가능한 경우 이들이 책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 3) WASH 대응을 선도하는 행위자가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에 중점을 둔 활동을 주류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 기준(본 지침 포함)에 대해 알고 있는가?

문화 및 커뮤니티 규범과 관행

- 4) WASH 관련 젠더와 연령 관련 책임은 무엇인가(예: 물 길기, 저장과 취급, 폐기물 처리, 일반적인 청소, 아동의 개인위생 관리, 세탁, WASH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리 등)?
 - 물의 다양한 용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 여성 및 여아는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예: 식수, 취사, 공중위생, 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
 - 가족과 커뮤니티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 양 및 질적 측면을 포함한) 물이 분배되는 양식은 어떠한가?
 - 물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가?
- 5) 화장실, 목욕 시설, 세탁실, 주방, 급수장의 유형을 결정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선호도 및 문화적 관습은 무엇인가?
 - 피해 커뮤니티 내 WASH 관행과 관련된 문화적, 민족적, 젠더적 차이는 무엇인가(예: 다양한 뒤처리 관습, 기도실 근처의 목욕 시설 등)?
 -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은 어떠한 물과 공중위생 관습에 익숙했는가?
 - 비상사태 시 WASH 관행과 관련된 특정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거나 변화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권고사항이 있는가?
- 6) 위기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WASH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비상사태 전과 비교할 때 위기가 개인위생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화장실 이용, 목욕 또는 물 길기를 막는 요인은 무엇인가(예: 사생활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음,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낮 또는 밤의 안전하지 못한 시간 등)?
 - 위기로 인해 새롭거나 추가적인 (특히 신체적 부상과 외상으로 인한) WASH 필요가 생겨났는가?

기반 시설

- 7) 현재 물 공급원은 어디인가? 인도적 지원 기준에 근거하여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물 공급원은 충분한가?
- 8)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얼마나 자주 물을 길거나 다른 WASH 시설을 이용하는가?
 - 하루 중 언제 그러한 활동을 하는가?
 - 하루 중 몇 시간을 WASH 시설에 오가는 데 사용하는가?
 - 이러한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GBV 노출 위험을 악화시키는가?
 - 아동, 특히 여아가 WASH 관련 책임(예: 물 길기)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가?

(계속)



주제별 가능한 질문 (주의: 본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추가의 여지가 있음)

- 9) 물이 한정된 시간에 배급 또는 펌프되는 경우
 - 물 길기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시간이 설정되었는가?
 - 물을 얻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충분한 급수장이 있는가?
 - 어떠한 물 운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누가 이러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가(예: 남성이 자전거, 당나귀 또는 오토바이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권을 갖고 있는가? 아동과 노인을 위한 소형 물통이 있는가? 등)?
- 10) 물을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 전달 장소가 편리하고 안전한가?
- 11) 급수장과 화장실 및 기타 WASH 시설과의 거리는 얼마인가?
 - 이동 경로는 안전한가?
 - 잠재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대한 안보 순찰 또는 커뮤니티 감시 시스템이 있는가?
- 12) WASH 시설은 안전한가?
 - 충분한 조명이 있는가(예: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대체 조명, 충분한 백열전구 등)?
 -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되는가?
 - 욕실과 목욕 시설의 문 안쪽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는가?
 - 시설이 장애(예: 신체적 장애, 부상, 시각 또는 기타 감각 손상 등)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인 편의²에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됐는가?
 - 피해 인구의 권리와 필요를 충족할 만큼 개수(예: 스피어 기준에 따라 남성용 칸막이 1개당 약 3개의 여성용 칸막이의 비율 사용)가 충분한가?
 - 가족용 화장실이 있는가?
 - 공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분명하게 표시되고 사생활이 보호되며 적절하게 떨어져 있는가?
- 13) 특히 생리와 관련하여 어떤 유형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물품이 여성과 여아에게 배급하기에 적절한가?
 - 이러한 물품이 이용 가능하며, 재공급되고 정기적으로 배급되는가?
 - 배급 일정과 과정이 여성과 여아를 더 큰 GBV 위험에 노출시키는가?
 - 위생용품을 세척하고 폐기하기 위한 적절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메커니즘이 있는가?
- 14) 부상을 입은 여성과 남성 성폭행 생존자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용품이 필요한가? 비밀이 보장되고 사회적 낙인의 우려가 없는 방식으로 이러한 물품을 배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실시되고 있는가?

WASH 정책

- 1)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WASH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돼 있는가?
 - 특히 GBV와 관련된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와 필요를 다루는 WASH 정책, 기준 및 지침 개발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이러한 정책, 기준, 지침에 관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과 소통했는가?
 - WASH 담당 직원은 적절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책의 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2) 국가 및 지역의 부문 정책에서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예: 커뮤니티 기반 단체의 직원으로서) WASH 부문에 안심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차별적 관행을 다루고 있는가?
- 3) 국가와 지역의 WASH 부문 정책과 계획에 GBV 관련 위험 감소 전략이 포함돼 있는가?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 할당돼 있는가?
 -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GBV 전문가가 WASH 관련 GBV 위험 감소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기 위한 정책 조항이 있는가?

(계속)

² 보편적 설계 및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4 정의'를 참조한다.

WASH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 1) WASH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는가?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및 섹슈얼리티 사안
 -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했는가?
- 2) WASH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가 일반적인 안전과 GBV 위험 감소에 대한 커뮤니티 내 인식을 제고하는가?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이러한 정보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이러한 커뮤니티 동원 활동에 참여하는가?
- 3) 개인위생과 공중위생에 관한 토론회에서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는가? 이러한 토론회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접근성을 보장함에 따라(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 참가자가 GBV 문제를 제기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 교훈

아이티에서 물과 위생 필요에 대한 현황파악은 전반적으로 젠더적 및 문화적 측면을 간과했다. 신속한 현황 파악 1단계 및 2단계에서 젠더나 GBV를 다루는 구체적인 질문이 없었다. 평가역량프로젝트(Assessment Capacities Project, ACAPS)는 젠더 연락관에게 현황 파악 결과의 분석 내용을 공지하기 위해 젠더 문제에 대한 간결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젠더 연락관은 WASH에 대한 신속 현황 파악 보고서 전체를 검토하고 포르토프랭스 밖에서 화장실의 83%가 성별로 구분돼 있지 않으며 84%가 충분한 조명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신속 초기 필요 파악(Rapid Initial Needs Assessment)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젠더 인지적인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젠더 연락관은 WASH 개입의 효율성이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요 우려사항으로 화장실의 성별 미분리, 사생활 보장 결여, 거주지로부터 먼 곳에 위치, 잠금장치의 부재, 문화적인 부적절함(예: 사람이 찌그러 앉을 수 없음)이 대두됐다. 이러한 요소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성희롱과 성폭행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현장 내 29% (21곳 중 6곳)에서 성폭행이 신고됨에 따라 주요 보호 문제가 제기됐다.

(인용: Mazurana, D., Benelli, P., Gupta, H., and Walker, P. August 2011. 'Sex and Age Matter: Improving humanitarian response in emergencies. Feinstein International Center, Tufts University, pp. 79-80, <www.care.org/sites/default/files/documents/sex-and-age-disag-data.pdf>)

★ 모범 사례

UNICEF의 WASH, 아동 보호와 교육 부문은 생리와 관련된 개인위생 관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소말리아에 도착했다. 이들의 목표는 아동 결혼을 줄이고 여아의 학업 지속을 보장하며 여성과 여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었다. 설문조사의 초점은 생리 개인위생 관리(예: 생리대의 종류, 속옷의 종류, 물에 대한 접근 등)에 있었지만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어떤 종류의 품목이 존엄성을 지키고 '존엄성키트(dignity kit)'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UNICEF의 부서들은 존엄성키트를 주로 제공하는 기관/담당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개발 과정에 헬터 클러스터를 포함시켰다. 모든 부서가 조사 결과와 부서 간 조정 수준에 만족했다.

(정보제공: UNICEF 소말리아 아동보호부서,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4년 8월)





자원 동원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은 WASH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GBV 관련 자원 동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비상사태 대비/긴급 자금이나 비상사태 후 복구/개발 자금을 요청할 때 특정 GBV 위험을 반영하고 대처 전략을 제안하면 제안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금 조달 이후

'자원 동원'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물품 및 공여자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동원과 관련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추가적으로 다른 인도적 부문/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동원 전략은 다음에 나오는 '조정'에 제시돼 있다.



A. 인도적 필요의 개요

- ▶ WASH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 인구의 GBV 관련 안전 위험, 보호 필요 및 권리가 제안서에 명시돼 있는가?
- ▶ 가정 및 더 넓은 커뮤니티 내에서 WASH 관련 책임이 이해되고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관련 취약 요소별로 구분되는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관련 위험 요소들이 인식되고 설명되는가?
- ▶ 'GBV'로 통칭하는 대신 GBV 위험을 특정 유형(예: 성폭행, 강요에 의한 성매매, 아동 결혼과 강제 결혼,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B. 프로젝트의 근거/타당성

- ▶ 비상사태 대비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GBV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신속한 WASH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배치해야 하는 연령, 젠더와 문화 인지적으로 적절한 WASH 물품(예: 생리용품, 화장실과 목욕 시설에 대한 견고한 잠금장치, 화장실 조명, 세탁실, 주방과 목욕 시설, 견고한 문과 사생활 보호 울타리, 여성/여아 친화적이고 익숙한 수동펌프와 물통,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기능 등)이 예측되고 있는가?
 - 정부, WASH 담당 직원과 커뮤니티 WASH 집단을 대상으로 GBV 위험을 완화하는 WASH 프로그램의 안전한 설계와 설치에 관한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가?
 - GBV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자료를 다양한 형식과 언어(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로 제작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드는가?
- ▶ 비상사태 대응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WASH 프로그램이 GBV 노출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가(예: 시설의 위치와 설계 측면)?
 - 전략이 스피어 핸드북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충족하는가?
 - WASH 부문 여성 직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가(이동을 포함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여성 직원을 지원, 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이 여성 직원과 동행하도록 자금을 지원)?
- ▶ 비상사태 이후와 복구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 GBV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 및 특정 유형의 GBV를 감소하는 장기적인 노력에 WASH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 제안서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반영돼 있는가?

C. 프로젝트 내용

- ▶ 제안된 활동에 GBV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이행 원칙 및 주요 접근법(인권 기반, 생존자 중심,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 기반)이 반영돼 있는가?
- ▶ 제안된 활동이 자원을 극대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부문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하는가?
- ▶ 프로젝트가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참여와 역량강화(WASH 담당 직원으로 고용 및 지역 WASH 위원회에 참여를 포함)를 촉진/지원하는가?





이행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WASH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GBV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커뮤니티의 기본권, 표현된 필요, 확인된 자원을 항상 감안해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WASH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1.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급수 및 공중위생 시설의 위치 선정, 설계, 설치, 유지보수 활동 및 개인위생 홍보 활동에 참여시킨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WASH 프로그램 담당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50%가 되도록 노력한다. 여성 직원이 안전한 WASH 시설의 설치, 운영과 유지보수에서 책임자급 및 교육직을 맡을 수 있도록 공식 및 직무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 여성(해당되는 경우 청소년기 여아)이 커뮤니티 기반의 WASH 프로그램과 관리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 ▶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을 WASH 부문의 직원, 책임자, 교육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모범 사례

모로코에서 시행된 세계은행의 농촌 물 공급과 공중위생 프로젝트는 “전통적으로 물 길기를 책임지고 있는 여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로젝트가 시행된 6개 지역에서 여성 및 어린 여아가 물 길는데 사용한 시간은 50~90% 감소했다. 물에 대한 보다 편리한 접근성 덕분에 여아의 학교 출석률은 4년 만에 20% 증가했다.

(인용: World Bank. 2003. Report No. 25917, <www-wds.worldbank.org/servlet/WDSContentServer/WDSP/IB/2003/06/17/000090341_20030617084733/Rendered/PDF/259171MA1Rural1ly010Sanitation01ICR.pdf>)

2.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물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이행한다.

- ▶ 스피어(Sphere) 기준에 따라 가정에서 500미터 이내에 급수장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방에서 급수가 되지 않는 경우, 주방이 급수장에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도록 설계한다.
- ▶ 수동펌프와 물통은 여성 및 여아 친화적이고, 물 길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 물이 배급되거나 펌프되는 시간이 한정된 경우, 일정을 계획하기 위해 피해 커뮤니티와 협력한다.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시간을 설정해야 하며, 급수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장애인

장애인과 노인은 인도주의 비상사태 시 WASH 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장애가 있는 여아와 여성(여성 노인 포함)은 여성으로서의 취약성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제한된 능력과 관련된 위험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WASH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통해 이들에게 WASH 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을 위한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EC) 자료를 수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예: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자료 등). 안전 및 접근성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커뮤니티 내 노인 및 장애인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접근성 조치에는 급수장 및 물배급, 급수펌프 설계, 물통,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된 화장실 및 목욕/샤워칸의 설계, 화장실 개별 칸별 내부 공간 확보, 화장실 변기 및 핸드레일을 위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정보제공: 핸디캡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2월 7일. WASH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핸디캡인터내셔널의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장애 체크리스트: <www.handicap-international.de/fileadmin/redaktion/pdf/disability_checklist_booklet_01.pdf>를 참조)

- ▶ 국내 이재민(IDP)과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유된 수자원을 둘러싼 긴장은 물을 길는 사람(대개 여성 및 여아)에 대한 공격 위험을 높이므로 수용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이러한 긴장을 완화한다.
- ▶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물 공급을 지원하는 배급 패턴을 이행한다. 이는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GBV 위험에 빠지게 하는 물부족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 지하수자원의 과도한 취수를 제한한다.
 - 캠프 거주자들 사이에서 물 절약법을 권장한다.
 - 수자원이 취약한 난민/국내 이재민(IDP) 캠프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가뭄 대책의 개발을 지원한다(예: 농촌 지역에서 빗물집수시설 설치).

3. WASH 시설의 안전, 사생활 보호와 존엄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이행한다.

- ▶ 전통 지식과 관습을 활용하여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WASH 시설(화장실, 세탁실, 주방, 목욕 시설 등)을 설치한다. 공중위생과 개인위생과 관련된 문화적 규범과 관행을 고려한다(예: 화장실 청소를 누가 담당하는지 관찰, 남성이 청소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성이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관찰 등).
- ▶ 피해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WASH 시설을 안전한 장소와 집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둔다. 스피어 기준에 따르면, 화장실은 집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각 화장실의 사용 인원은 최대 2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WASH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한다.



모범 사례

옥스팜(Oxfam)의 2007년 솔로몬 제도 쓰나미 대응 기간 동안, 여성 커뮤니티 활동가들은 여성이 세면장에서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아 걱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러한 정보는 운영팀에 전달됐고, 여성과 추가적으로 상의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보장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했다.

(인용: Oxfam. 2011.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in Emergencies, p. 57)



- ▶ WASH 시설 내부와 외부에 모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한다. 전기가 없어도 조명을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비상사태 초기에 임시 조명이나 태양광 조명을 제공한다.
 -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전력 공급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실시한다.
 - 가족/개인에게 손전등을 제공한다.
- ▶ 가족 단위에 기반하거나 성별로 분리되어 문화적으로 적절한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설치한다. 이러한 시설에 그림 및 문자로 분명하게 표시하고 문, 견고한 내부 잠금장치, 사생활 보호 울타리 및 기타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성별로 분리된 자료를 사용하여 남성 칸막이 대 여성 칸막이의 비율을 계획한다 (스피어 기준에 따르면 약 3:1의 적절함).
- ▶ 피해 인구가 WASH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일정 거리를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이동 경로를 따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예: 이동 경로에 대한 안전 순찰, 동행 시스템, 커뮤니티 감시 시스템 등). 이러한 전략 개발을 위해 커뮤니티, 보안 요원, 평화유지군(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관련 부문(생계, CCCM, 보호 부문 등)과 협력한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해가 진 후 화장실 및 기타 WASH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 가정 차원의 대용품(유아용 변기, 요강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전용 공간의 사용이 문화적으로 금지되거나, 남성 전용 공간에서 폭력 및 폭행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와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 남성은 성별로 분리된 공간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이러한 공간을 사용하려고 할 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가능한 경우, LGBTI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WASH 부문 행위자는 현지 트랜스젠더 기구와 상의하여 프로그램이 트랜스젠더의 기본권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네팔에서는 전통적인 성별 구분에 따라 분리된 공간에 속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위한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문화나 상황에 따라 매우 특수적이며 일부의 경우 트랜스젠더에 대한 GBV 위험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험 감소 전략을 이행하기 전에 현지 커뮤니티 및 LGBTI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보제공: 던컨 브린(Duncan Breen), Human Rights First,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5월 20일, Knight, K. 2012. 'Nepal Flushes Out Genderism', <www.huffingtonpost.com/kyle-knight/nepal-flushes-out-genderism_b_1464279.html>)

4. 개인위생 관련 물품에 대한 존엄성 있는 접근성을 보장한다.

- ▶ 가임기 연령대의 여성 및 여아를 위해 생리혈의 흡수 및 처리를 위해 적절한 물품을 지급한다.
 - 여성 및 여아와 상의하여 문화적으로 가장 적절한 물품을 파악한다.
 - 비상사태 전 단계에 걸쳐서 그리고 신규 도착 시 속옷, 생리 개인위생 용품 및 기타 위생용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비상사태 이후에도 이러한 물품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예: 생계 부문 행위자와 함께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극소기업이 현지에서 필요한 위생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
 - 이러한 물품 배급의 시기와 절차로 인해 여성 및 여아에 대한 GBV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한다.



- ▶ 요도, 생식기, 직장에 손상을 입은 (그리고 재건 수술을 받았을 수 있는) 남성 및 여성 성폭행 생존자가 존엄성과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요실금 패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여자 화장실에 일회용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폭행이나 괴롭힘의 위험이 높은 장소나 시간에 위생용품을 버리러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한다. 남자 화장실에도 일회용 요실금 패드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남성 성폭행 생존자의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위생용품을 정기적으로 최종 폐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여성 및 여아가 속옷과 위생용품을 세탁할 수 있는 빨랫줄이 설치된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을 제공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생키트 및 존엄성키트

위생키트(Hygiene kit)는 주로 WASH 프로그램, 위생 홍보담당자, CCMM 및 보호 담당 직원이 비상사태 발생 시 배급한다. 위생키트에는 개인의 청결 개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품목(예: 비누,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위생용품, 칫솔 및 치약 등)이 포함된다. 이와 달리, 존엄성키트(Dignity kit)는 보건 부문 행위자나 쉼터, 정착 및 복구(SS&R) 부문 행위자가 주로 배급한다. 이들은 위생용품 외에도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으로 적절한 의류나 기타 품목(히잡, 숄, 호루라기, 손전등, 속옷, 개인 용품을 세탁할 수 있는 작은 용기)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및 여아의 존엄성, 존중, 안전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위생 부문 행위자가 물류관리사, 보건 및 SS&R 부문 행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품목의 배급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배급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격차와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생키트 및 존엄성키트는 그 안에 포함될 가장 적절한 품목을 파악하고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한 GBV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최상의 배급 시기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피해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제작되어야 한다.

(인용: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7. 'Hygiene Promotion in Emergencies: A briefing paper'. WASH Cluster, <www.unicef-emergencies.com/downloads/eresource/docs/WASH/WASH%20Hygiene%20Promotion%20in%20Emergencies.pdf>)

GBV 위험 감소 전략을

WASH 정책에 통합하기

1. 적절한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WASH 프로그램의 정책, 기준 그리고 지침에 포함한다.

- ▶ (1) GBV 위험을 완화하고 (2) 여성, 청소년기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이 WASH 지원 활동에 직원이나 지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WASH 담당 직원을 위한 보육 관련 정책
 - 여성에 대한 동등한 고용 기준
 - GBV 사고 관련 보호/비밀 정보의 공유에 대한 절차 및 규약
 - 성적 착취 및 학대 발생 시 신고, 조사, 징계 기관의 절차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를 WASH 담당 직원, 위원회, 관리 집단에 두루 배포하고 (해당되는 경우) 국가 공용어 및 지역별 현지어를 사용하여 더 넓은 커뮤니티에 배포한다(점자, 수화, 비문해자를 위한 시각적 콘텐츠가 포함된 포스터, 커뮤니티 회의를 통한 안내 등 접근하기 쉬운 방법 사용).



2. GBV 위험 감소 전략을 국가 및 지역의 WASH 관련 정책과 계획에 통합하기 위해 옹호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금을 할당한다.

- ▶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WASH 부문에 안전하게 참여(커뮤니티 기반 단체에 직원이나 커뮤니티 전문가로 참여 등)하는 것을 방해하는 차별적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검토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 정부, 관습적/전통적 지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지원한다.
- ▶ 국가 WASH 정책과 계획에 GBV 관련 안전 조치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예: 급수장 및 기타 공공 WASH 시설의 안전한 배치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치).
- ▶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개발 과정에서 관련 실무 부처를 지원한다. 커뮤니티의 지원을 얻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GBV 관련 정책 및 계획이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GBV 위험 감소 전략을

WASH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에 통합하기

1.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존자를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 체계(예: 위탁 경로)를 확인하고 WASH 담당 직원이 생존자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 ▶ 피해 인구나 관계를 맺는 모든 WASH 부문 종사자가 생존자 돌봄과 지원을 위해 이들을 위탁할 곳에 대한 서면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보장한다.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 피해 인구나 관계를 맺는 모든 WASH 부문 종사자에게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성 정체성,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예: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탁 경로

‘위탁 경로’는 GBV 생존자를 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의 도움, 법률/사법 지원 등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연한 메커니즘이다.

2. WASH 부문 내부적으로 또는 더 큰 범위의 인도주의 커뮤니티에 속한 협력기관과 GBV 관련 신고를 공유하는 WASH 프로그램이 안전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 생존자 개인과 가족의 신원이나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며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기관 내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기준을 개발한다.

3. GBV 메시지를 개인위생 홍보 및 기타 WASH 관련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통합한다.

- ▶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GBV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제고 활동을 WASH 아웃리치 이니셔티브에 통합한다(예: 커뮤니티 토론회, 워크숍, 커뮤니티 지도자와의 회의, GBV 메시지 전달 등).
 -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에 생존자의 권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 보장 등), GBV 위험 신고처 및 돌봄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했는가?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 및 언어 (예: 점자, 수화, 그림 및 사진과 같이 단순화된 메시지 등)를 사용한다.
- 메시지 개발 및 메시지 전달 전략 수립 과정에 (필요에 따라 별도로)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가 참여하도록 하여 메시지가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 ▶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특히 공유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성별에 따라 구분된 화장실과 목욕 시설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커뮤니티 기반의 메커니즘을 조직하고 개별적인 사용이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 ▶ 남성, 특히 커뮤니티 지도자가 GBV 예방과 관련된 WASH 교육 활동에서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시킨다.
- ▶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이 공중위생과 개인위생 관련 커뮤니티 토론회 및 교육 워크숍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인(예: 교통, 회의 시간과 장소, 참여와 관련된 반발의 위험, 육아 지원의 필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을 고려한다. 참가자가 GBV 관련 사안을 편안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고려한 토론회를 실시하기 위한 전략(예: 비밀 보장, 여성 및 여아의 별도 토론 모임에 여성 진행자 배치 등)을 이행한다.
- ▶ WASH 부문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존 행동 강령뿐 아니라 WASH 부문 종사자가 저지르는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보고할 곳에 대한 정보를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제공한다.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GBV 관련 메시지 전달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를 통해 GBV와 관련된 사람 등 피해 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우려 사항 및 안전 조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GBV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GBV 전문가가 아니라면 GBV 전문가나 GBV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다른 인도적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조정 과정의 첫 단계, WASH 프로그램 담당자는 GBV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에서 GBV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GBV 전문가는 WASH 부문 행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 WASH 프로그램과 관련된 GBV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WASH 현황 파악을 설계 및 실시하고 WASH 부문 행위자와 협력하여 위험 완화 전략을 수립한다.
- ▶ WASH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관련 사안에 관해 교육한다.
- ▶ GBV 피해 사례를 WASH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는 생존자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WASH 담당 직원에게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기본적인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다.
- ▶ 보호 권리 및 필요와 관련된 젠더, GBV, 여성의 권리, 인권 사안에 대해 피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WASH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른 인도적 지원 부문과 연계하여 GBV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부문(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부문)과의 조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다음 표에 제시돼 있다.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WASH 부문 행위자는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 환경 관련 협력기관이 있는 경우 이들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모범 사례

2009~2010년, 콩고민주공화국(DRC) 북키부(North Kivu) 주에서는 GBV 예방과 WASH, 보호, 보건 부문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사생활이 보호되는 화장실이 부족함에 따라 공중위생과 GBV간의 연계 필요성이 명확해졌다. 여성은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밤 시간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성폭행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했다. 또한 여성은 마을 밖에 있는 샘으로 물을 길으러 갈 때 강간을 포함한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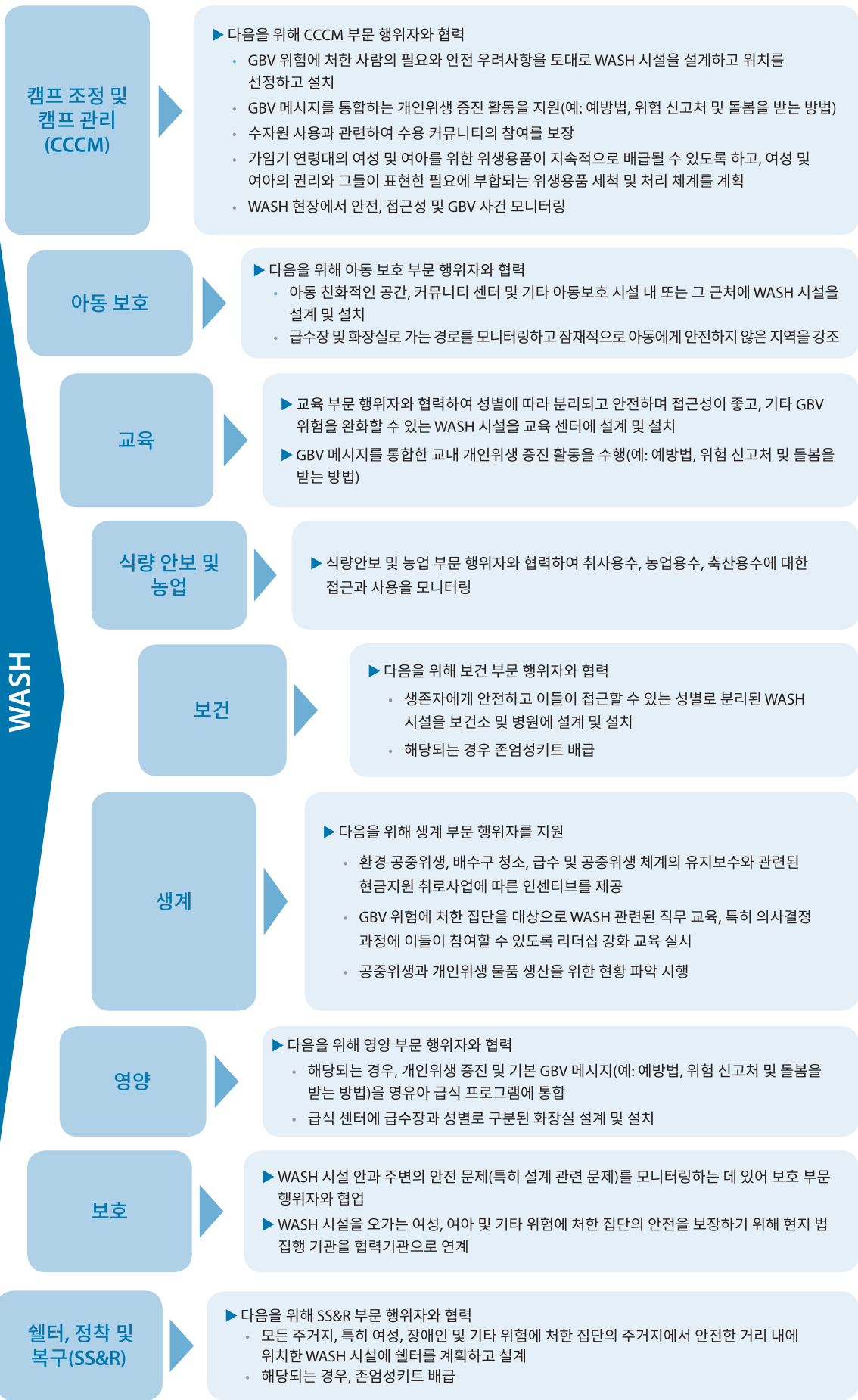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에는 보건, WASH 및 보호 부문을 포함했다. WASH는 공공장소(학교, 병원, 보건소, 시장 등) 내 기본적인 WASH 시설 설치, 가정 위생의 증진, 보건 증진, 신중한 급수장 설계와 유지보수(예: 경로 확보, 급수장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 더 안전한 구역 만들기, 안정된 급수 보장 등), 집에서 적절한 거리에 화장실 설치에 집중했다.

또한, 남성, 여성, 커뮤니티 지도자, 교회 구성원, 현지 당국과 경찰 대표로 구성된 보호 위원회가 설립됐다. 이들의 목표는 커뮤니티 내에서 성폭력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GBV와 HIV를 연계하고, 인권침해 행태를 비난하고,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시설, 급수장으로 가는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강간 혐의 신고를 위한 커뮤니티 내 최초 연락망을 구성함으로써, 생존자가 의료 및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여성들은 급수장, 보호 위원회, 가족 화장실의 위치 선정과 설계에 참여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WASH, 보호, 보건 프로그램을 통합할 경우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러한 접근법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인용: House, S., Cavill, S., Ferron, S., and Sommer, M. 'Violence, Gender and WASH: A practitioner's toolkit - Making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safer through improved programming and services'. WaterAid/SHARE, <http://r4d.dfid.gov.uk/pdf/outputs/sanitation/Violence_Gender_and_WASH_SHARE_presentation.pdf>)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						
GBV 관련 질문을 WASH 현황 파악에 포함 ³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관련 질문*이 포함된 WASH 현황 파악의 수} \times 100}{\text{WASH 현황 파악의 수}}$ <small>* 현황 파악 시 질문에 적용할 수 있는 GBV 관련 주제별 질문은 283 페이지 참조</small>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또는 툴	100%	✓	✓	
현황 파악 시 여성 참여	$\frac{\text{현황 파악 응답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응답자의 수}}$ 및 $\frac{\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현황 파악 팀 구성원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현황 파악 보고서	50%	✓	✓	

(계속)

³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30 November 2012. Reference Module for Cluster Coordination at the Country Level. IASC Transformative Agenda Reference Documen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files/4.%20Reference%20module%20for%20Cluster%20Coordination.pdf>>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현황 파악, 분석 및 기획(계속)

<p>WASH 시설 내 또는 주변의 GBV 위험 요소에 대해 피해 인구와 상의⁴</p> <p>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별도로 상의</p>	<p>WASH 시설 내 또는 주변의 GBV 위험 요소에 대한 피해 인구와의 상의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WASH 시설 현장의 수 × 100</p> <p>WASH 시설 현장의 수</p>	<p>해당 조직의 기록물, 표적집단토론 (Focus Group Discussion, FGD), 주요 정보원 인터뷰 (Key Informant Interview, KII)</p>	100%		✓	✓
<p>WASH 시설 위치 선정과 설계 이전에 여성 참여⁴</p>	<p>양적 방법:</p> <p>WASH 시설 현장 선정과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 중 여성의 수 × 100</p> <p>WASH 시설 현장 선정과 설계 전에 상의한 피해 인구의 수</p> <p>질적 방법:</p> <p>여성 및 여아는 WASH 위치 선정과 설계와 관련된 자신의 참여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계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p>	<p>해당 조직의 기록물, FGD, KII</p>	현장에서 결정			✓
<p>GBV 생존자 위탁 경로에 대한 직원의 지식</p>	<p>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생존자를 위한 위탁 경로를 정확하게 말하는 WASH 담당 직원의 수 × 100</p> <p>설문조사에 응답한 WASH 담당 직원의 수</p>	<p>설문조사</p>	100%	✓		✓

자원 동원

<p>GBV 위험 감소를 WASH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에 포함</p>	<p>GBV 지침에 나온 GBV 위험 감소 목표, 활동 또는 지표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 WASH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 × 100</p> <p>WASH 자금 조달 제안서 또는 전략의 수</p>	<p>(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제안서 검토</p>	100%	✓	✓	
<p>GBV 위험 완화를 위한 사전 배치된 물품 재고의 가용성</p>	<p>재고량이 최저 기준 미만인 GBV 위험 감소 물품의 수 × 100</p> <p>GBV 위험 감소 물품의 수</p>	<p>기획 또는 조달 기록, 예측 기록</p>	0%	✓	✓	
<p>WASH 담당 직원에 대한 GBV 지침 교육</p>	<p>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WASH 담당 직원의 수 × 100</p> <p>WASH 담당 직원의 수</p>	<p>(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p>	100%	✓	✓	

(계속)

⁴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umanitarian Indicators Registry, <www.humanitarianresponse.info/applications/ir/indicators>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이행

▶ 프로그램

<p>WASH 커뮤니티 기반 위원회에서 여성 참여⁴</p>	<p>양적 방법: $\frac{\text{WASH 커뮤니티 기반 위원회에 참여한 피해 인구 중 여성의 수} \times 100}{\text{WASH 커뮤니티 기반 위원회에 참여한 피해 인구의 수}}$ </p> <p>질적 방법: 여성 및 여아는 WASH 커뮤니티 기반 위원회에서 자신의 참여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성이 WASH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p>	<p>현장 관리 보고서, 이재이주 추적 매트릭스(DTM), FGD, KII</p>	50%	✓		✓
<p>WASH 프로그램에서 여성 담당 직원</p>	<p> $\frac{\text{WASH 프로그램에서 여성 직원의 수} \times 100}{\text{WASH 프로그램에서 담당 직원의 수}}$ </p>	<p>해당 조직의 기록물</p>	50%	✓	✓	
<p>WASH 시설 안과 주변의 GBV 위험 요소</p> <p>급수장, 목욕과 공중위생, 시간, 지리적 위치로 WASH 시설을 세분화</p>	<p>양적 방법: $\frac{\text{WASH 시설에 대한 접근에 대한 질문에 GBV 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WASH 시설에 대한 접근에 대해 질문을 받은 피해 인구의 수}}$ </p> <p>질적 방법: 피해 인구가 WASH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GBV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피해 인구가 말한 WASH 시설 내부 및 인근의 안전 우려사항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p>	<p>설문조사, FGD, KII, 참여 커뮤니티 도식화</p>	0%	✓		✓
<p>가정에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급수장에 대한 접근⁵</p>	<p> $\frac{\text{급수장에서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피해 인구의 수} \times 100}{\text{피해 인구의 수}}$ </p>	<p>직접 관찰</p>	현장에서 결정	✓	✓	
<p>피해 지역에 잠글 수 있고 성별로 분리된 WASH 시설의 존재⁴</p>	<p> $\frac{\text{성별로 분리되고 잠글 수 있는 WASH 시설이 있는 특정 피해 지역의 수} \times 100}{\text{특정 피해 지역의 수}}$ </p>	<p>DTM, 필요 현황 파악, 안전 감사</p>	100%	✓	✓	
<p>WASH 시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조명의 존재</p>	<p> $\frac{\text{제대로 작동하는 조명을 갖춘 WASH 시설의 수} \times 100}{\text{WASH 시설의 수}}$ </p>	<p>직접 관찰, 안전 감사</p>	현장에서 결정	✓	✓	
<p>가임기 연령대의 여성에 대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위생용품 배급⁴</p>	<p> $\frac{\text{지정된 기간 동안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리용품을 받은 여성의 수} \times 100}{\text{지정된 기간 동안 피해 인구 중 가임기 연령대의 여성의 수}}$ </p>	<p>설문조사, FGD</p>	현장에서 결정	✓	✓	

(계속)

⁵ Sphere Project. 2011.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http://www.spherehandbook.org>>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기초선	산출	결과
----	-------	------------	----	-----	----	----

이행(계속)

▶ 정책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WASH 정책, 지침 또는 기준에 포함	$\frac{\text{GBV 지침에 나온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을 포함하는 WASH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times 100}{\text{WASH 정책, 지침 또는 기준의 수}}$	(기관, 부문,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의) 문헌 검토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

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응답한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	100%	✓		
WASH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GBV 위탁 정보를 포함	$\frac{\text{GBV 생존자가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WASH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times 100}{\text{WASH 커뮤니티 아웃리치의 수}}$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문헌 검토, KII, 설문조사	현장에서 결정	✓	✓	

조정

GBV 위험 감소 활동을 다른 부문과 조정	$\frac{\text{GBV 위험 감소 활동*을 위해 상의한 비 WASH 부문의 수} \times 100}{\text{해당 인도주의 대응에 동원된 비 WASH 부문의 수}}$ <p><small>* 부문별 GBV 위험 감소 활동 목록은 296 페이지 참조</small></p>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KII, 회의록	현장에서 결정	✓	✓	
-------------------------	--	------------------------	---------	---	---	--



참고자료

주요 참고자료

- WASH 부문에서 젠더 평등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2006. Gender Handbook in Humanitarian Action,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Handbook%20%28Feb%202007%29.pdf>를 참조한다.
- **UN-Water**. 2006. 'Gender, Water and Sanitation: A policy brief'. Developed by the Inter-Agency Task Force on Gender and Water (GWTF), <www.unwater.org/downloads/unwpolbrief230606.pdf>
- **House, S., Cavill, S., Ferron, S., and Sommer, M.** 2014. 'Violence, Gender and WASH: A practitioner's toolkit - Making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safer through improved programming and services'. WaterAid/SHARE, <http://r4d.dfid.gov.uk/pdf/outputs/sanitation/Violence_Gender_and_WASH_SHARE_presentation.pdf>
- **Global WASH Cluster**. 2009. WASH Accountability Resources: Ask, listen, communicate. New York: Global WASH Cluster, <www.hapinternational.org/pool/files/wash-accountability-handbook.pdf>
- **Handicap International**. 2008. Disability Checklist for Emergency Response, <www.handicap-international.de/fileadmin/redaktion/pdf/disability_checklist_booklet_01.pdf>.
- **Sphere Project**. 2011.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www.spherehandbook.org>
- **Oxfam**. 2010. Ideas That Work: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through water and sanitation interventions in early emergency response, <<http://policy-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Ideas-That-Work-A-gender-WASH-and-emergencies-toolkit-334900>>

추가 참고자료

- **Global WASH Cluster**. 글로벌 WASH 클러스터는 인도주의 WASH 부문 행위자가 전체적으로 WASH 부문의 주요 약점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목표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www.washcluster.net>을 통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Mercy Corps**. 2008–2009.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Guidelines, <www.mercycorps.org/sites/default/files/WASH%20Guidelines.pdf>
- **Oxfam**. 2013. Oxfam Minimum Requirements for WASH Programmes, <<http://policy-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oxfam-minimum-requirements-for-wash-programmes-mr-wash-300134>>
- **OHCHR Special Rapporteur Website**: <www.ohchr.org/EN/Issues/WaterAndSanitation/SRWWater/Pages/SRWWaterIndex.aspx>
- 워터에이드(WaterAid)는 안전한 물, 향상된 개인위생과 공중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wateraid.org/uk/what-we-do/the-crisis>를 참조한다.
- WASH 프로젝트의 형평성과 포용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워터에이드(WaterAid)의 출판물은 <www.wateraid.org/~media/Publications/equity-and-inclusion-framework.pdf>를 참조한다.
- 비상사태에서 생리 개인위생에 대한 정보는 **House, S., Mahon, T., and Cavill, S.** 2012. Menstrual Hygiene Matters: A resource for improving menstrual hygiene around the world. London, UK: WaterAid, co-published with 17 other organizations, <www.wateraid.org/what-we-do/our-approach/research-and-publications/view-publication?id=02309d73-8e41-4d04-b2ef-6641f6616a4f>를 참조한다.
- **젠더와 물에 대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Inter-Agency Task Force on Gender and Water, GWTF)**. 태스크포스의 목표는 물과 공중위생과 관련된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국제, 지역, 국가, 지역, 공익사업 수준에서 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JPOI)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젠더의 주류화를 증진하는 것이다. 또한 UN-Water 구성원과 협력기관의 활동에서 일관성을 높이고 조정을 장려한다. 태스크포스 활동은 젠더 주류화의 장기적 전략과 지속적인 과정을 반영하며 이는 국가 계획 문서의 설계와 이행을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unwater.org/activities/task-forces/water-and-gender/en>을 참조한다.
-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 2006. Gender, Water and Sanitation: Case studies on best practices. New York, United Nations, <www.un.org/waterforlifedecade/pdf/un_gender_water_and_sanitation_case_studies_on_best_practices_2006.pdf>
- 존엄성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ochanet.unocha.org/p/Documents/Dignity%20Kit%20%20\(Final\).pdf](https://ochanet.unocha.org/p/Documents/Dignity%20Kit%20%20(Final).pdf)>를 참조한다.
- 위생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7. 'WASH-Related Non-Food Items: A briefing paper'. WASH Cluster HP project, <www.unicefemergencies.com/downloads/eresource/docs/WASH/WASH%20Hygiene%20Promotion%20in%20Emergencies.pdf>를 참조한다.
- **Mehrotra, S.T.** 2010. A Handbook on Women's Safety Audits in Low-Income Urban Neighbourhoods: A focus on essential services. New Delhi, India: Jagori and Women in Cities International, <www.jagori.org/wp-content/uploads/2006/01/Handbook1.pdf>

- **Water, Engineering and Development Centre.** Barrier analysis and accessibility and safety audit tools, <<https://wedc-knowledge.lboro.ac.uk/collections/equity-inclusion/general.html>>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14. Puberty Education and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Good Policy and Practice in Health Education, Booklet 9. UNESCO, France,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67/226792e.pdf>>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1.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or Schoolchildren in Emergencies: A guidebook for teachers. UNICEF, USA, <www.unicef.org/disabilities/files/WASH_in_Schools_in_Emergencies_Guidebook_for_teachers_.pdf>
- **Halcrow, G., Rowland, C., Willetts, J., Crawford J., and Carrard, N.** 2010. ‘Working effectively with women and men in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Programmes’. Resource guide. Sydney, Australia, <www.inclusivewash.org.au/_literature_68164/Working_effectiveley_with_women_and_men_in_water_and_sanitation_programs>



인도주의 활동 지원 부문 물류 및 통신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

- 물류 및 통신 부문을 담당하는 (임무 수행 중인 다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를 지원하는 일이 주된/독점적인 업무인)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직원 및 책임자)
- 지원 부문 조정 메커니즘

왜 인도주의 활동 지원 부문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가?

인도주의 비상사태 중 대부분의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피해 인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지만, 일부 부문에서는 인도주의 비상사태의 피해를 입은 여성, 여아, 남성, 남아에게 제공되는 인명 구조 및 구호 물품의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부문의 행위자와 피해 인구 간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GBV 예방 및 완화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류(조달 포함): 물류 부문은 GBV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하여 필수 구호 물품의 신속한 조달, 보관, 설치, 배급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¹ 물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건설, 임대, 임시직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또한 배급 장소의 위치와 배급 일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GBV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상 통신: 통신 부문 종사자가 다른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들의 주요 업무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통신과 신기술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반 시설이 마련된 곳에서 통신과 기술을 사용하면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의 피해 인구 지원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통신 분야는 GBV를 예방하고 완화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GBV 전문가가 이러한 기회를 주도하고 있지만, 통신 부문 종사자는 GBV 전문가와의 신기술

¹ 이러한 물품은 식량, 의약품, 노출 후 예방(post-exposure prophylaxis, PEP) 키트, 검진을 위한 사생활 보호 스크린, 화장실과 목욕 시설을 위한 견고한 잠금장치, 학교 교복 또는 기타 적절한 의복, 쉼터를 위한 칸막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및 기타 접근성 기능, 가임기 연령대의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위생 물품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분야 협력을 통해 신기술이 윤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개발 및 사용되어 이러한 신기술의 혜택이 잠재적 위험(예: 특정 메시지, 남성과 여성의 기술 접근 및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GBV 생존자 및 위험에 처한 집단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 ▶ 휴대전화를 사용한 모바일 GBV 서비스 관련 정보 전달 및 GBV 예방과 관련된 메시지를 알릴 수 있다.
- ▶ GBV 생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GBV 상담 전화 서비스나 기타 폭력 신고 창구를 이용하거나 금전/현금 바우처를 수령할 수 있다.
-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안전한 지역과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 이 정보를 암호화하여 GBV 전문가와 비밀리에 공유함으로써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



핵심 활동

인도주의 활동 지원 부문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물류와 통신 지원 부문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GBV와 관련된 일반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GBV 전문가와 협력하여 인도주의 활동 지원 부문 행위자(직원, 계약업체, 자원봉사자)의 GBV 예방과 완화 역량을 향상시킨다.

- ▶ GBV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지원 부문과 GBV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실시한다(예: GBV 관련 안전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는지 시기, 이유, 형태, 지원 부문이 완화 또는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여성이 지원 부문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법, 신기술을 활용한 전략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
 -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인지하도록 모든 지원 부문 행위자를 교육한다.
- ▶ GBV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사양에 대한 지침을 조달 부문 종사자에게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GBV 전문가 및 기타 관련 부문 행위자와 협력한다.
- ▶ 지원 부문 행위자가 업무 수행 시 발견할 수 있는 GBV 관련 우려사항(예: 고립된 장소에서 보행 중이거나 커뮤니티 내 다른 사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 여아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을 관찰)을 지원 부문 행위자(예: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의 감독자나 확인된 연락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 지원 부문 행위자가 피해 인구에 관여하는 경우,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지원 부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행동 강령 및 지원 부문 종사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담당 직원 및 협력기관이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2. GBV 전문가와 상의하여 생존자를 위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 체계(예: 위탁 경로)를 확인하고 지원 담당 직원은 생존자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 ▶ 모든 부문별 행위자(직원, 계약업체, 자원봉사자 등)가 국가 및 국제/본부 차원에서 위탁 담당자의 연락처 등 생존자에게 돌봄과 지원을 제공할 위탁 경로와 관련된 서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인권, 사회적 배제, 성 정체성, 심리적 응급 처치 문제에 대해 모든 부문 행위자를 교육한다(예: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법, 위험을 신고하고 돌봄을 받을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위탁 경로

‘위탁 경로’는 GBV 생존자를 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경찰의 도움, 법률/사법 지원 등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연한 메커니즘이다.

3. 여성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집단²을 인도주의 활동 지원 부문의 모든 활동에 직원과 지도자로 참여시킨다(이러한 활동이 잠재적으로 안보상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GBV 위험성을 높인다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 해당되는 경우 지원 부문 활동에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 중 여성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 여성 직원이 책임자급이나 교육직을 맡을 수 있도록 공식 및 직무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커뮤니티 내 여성 및 여아의 역할 변화를 위한 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과 대화를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 ▶ 위험에 처한 집단의 일원을 지원 부문 직원, 책임자, 교육자로 고용한다.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취약성과 관련된 특정 사안이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

4. GBV 예방과 완화 전략을 지원 부문의 정책, 기준 및 지침에 포함한다.

- ▶ 부문별 정책에 GBV 예방 및 완화 전략이 통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문 정책을 검토 및 수정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직원을 위한 보육 관련 정책
 - 여성에 대한 동등한 고용 기준과 채용 관행과 관련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 성적 착취 및 학대 발생 시 신고, 조사, 징계 기관의 절차 관련 정보(해당 사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계약 종료 등)
 - 아동 노동을 방지하는 정책
 - 연령·젠더·문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고 안전한 직원 숙소에 관한 정책

² 본 지침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은 청소년기 여아, 여성 노인, 여성가장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정,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여아/여성 및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원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인터섹스(LGBTI), HIV 보균자, 장애인, 강제/강압적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 및 성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구금된 사람, 무장세력/단체에 연루된 아동 등 이산/미동반 아동 및 고아, 폭력 생존자와 같이 특별한 취약성으로 인해 GBV 및 기타 폭력에 대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필요에 대한 내용은 본 지침의 11 페이지를 참조한다.





다른 인도주의 부문과의 조정을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조정 첫 단계로서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물류와 통신 지원 부문은 GBV 조정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국내에서 GBV 전문성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을 위해 GBV 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젠더, GBV, 여성의 권리와 인권 문제에 대해 지원 부문 행위자(직원, 계약업체,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 ▶ 지원 부문과 GBV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조사를 지원한다.
- ▶ 기존의 부문 정책을 검토(또는 새로운 부문 정책을 개발)하여 GBV 예방과 완화 전략에 통합한다.
- ▶ GBV 피해 사례를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생존자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피해 인구나 교류하는 담당 직원에게 생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원 부문 프로그램 담당자는 GBV 관련 위험 감소 우선순위에 부합하기 위해 다른 인도주의 활동 지원 부문과 협력해야 한다. 젠더,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 HIV, 연령과 환경 문제를 다루는 협력기관이 있고 적절할 경우, 이들이 포함된다. GBV 관련 조정 책임에 대한 자세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프로그램 주기 전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주요 GBV 고려사항

다음 목록에 제시된 지표는 본 지침의 주제별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개선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 주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는 지표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가능한 데이터 출처'는 부문 또는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말한다. '목표'는 이행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기초선' 지표는 차후 측정을 위한 참조 지점으로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가장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된다. '산출'에서는 활동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결과'는 사회적, 행동적 또는 환경적 조건의 과정 변화를 측정한다. 목표는 활동 시작 전에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간, 가용 자원 및 상황별 우려사항을 감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환경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표의 출처는 해당 부문별 지침과 참고자료에 근거한다(표 아래의 각주 참조).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 주제별 지침의 배경'을 참조한다.

지표는 성별, 연령, 장애 및 기타 취약성 요인에 따라 최대한 세분화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집단의 취약성 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개요'를 참조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지표	지표 정의	가능한 데이터 출처	목표	프로그램 단계		
				기초선	산출	결과
지원 담당 직원에 대한 GBV 지침 교육	$\frac{\text{GBV 지침 교육에 참여한 지원 부문* 직원의 수} \times 100}{\text{지원 담당 직원의 수}}$ <small>* 지원 부문은 물류, 조달, 통신을 포함함</small>	(기관이나 부문 차원의) 교육 출석부, 회의록, 설문조사	100%	✓	✓	
GBV 신고와 관련된 비밀 정보 공유 기준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즉각적인 질문에 대해 GBV 신고를 통해 공유된 정보에 생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르게 응답한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직원의 수}}$	(기관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설문조사	100%	✓		✓
GBV 생존자 위탁 경로에 대한 직원의 지식	$\frac{\text{제기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GBV 생존자를 위한 위탁 경로를 정확하게 말하는 지원 담당 직원의 수} \times 100}{\text{설문조사에 응한 지원 담당 직원의 수}}$	설문조사	100%	✓		✓
지원 부문을 맡은 여성 직원	$\frac{\text{지원 부문을 맡은 여성 직원의 수} \times 100}{\text{지원 부문을 맡은 직원의 수}}$	해당 조직의 기록물	50%	✓	✓	

참고자료

주요 참고자료

- 유엔개발계획(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GBV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배포할 다양한 방법을 파악했다. 자세한 정보는 **UNDP. 2008. Gender Responsive E-Governance: Exploring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www.undp.org/content/dam/aplaws/publication/en/publications/womens-empowerment/primers-in-gender-and-democratic-governance-4/f_GenderGovPr_eG_Web.pdf>를 참조한다.
- **Smith, G., MacAuslan, I., Butters, S., and Trommé, M., for the Cash Learning Partnership 2012. New Technologies in Cash Transfer Programming and Humanitarian Assistance**, <www.cashlearning.org/resources/library/272-new-technologies-in-cash-transfer-programming-and-humanitarian-assistance>
- 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2013. **Humanitarianism in the Network Age**, <<https://docs.unocha.org/sites/dms/Documents/WEB%20Humanitarianism%20in%20the%20Network%20Age%20vF%20single.pdf>>. 보고서 요약은 <<http://irevolution.net/2013/04/09/humanitarianism-network-age>>를 참조한다.



부록

부록 1 젠더기반폭력 관련 주요 참고자료	310
부록 2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관련 용어집	319
부록 3 젠더기반폭력의 일반적인 유형	321
부록 4 기타 주요 용어	324
부록 5 젠더기반폭력 범위에 대한 통계	327
부록 6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할 의무	331
부록 7 인도주의 전략 계획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	337
부록 8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프로젝트: 젠더 마커 팁 시트	340

젠더기반폭력 관련 주요 참고자료

A. 주요 GBV 조정 구조

조정된 활동은 효과적인 GBV 개입의 기초가 된다. GBV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전문성을 보유한 주요 조정 협력기관이 아래에 제시돼 있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GBV 관련 예방 및 완화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이러한 조정 구조를 활용해야 한다.

조정 구조	설명
GBV AoR (GBV Area of Responsibility)	GBV AoR은 보호 클러스터의 5대 '기능 요소' 중 하나이며,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의 GBV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다부문적 접근을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최초의 메커니즘이다. AoR의 책임은 인도주의 클러스터의 활동과 유사하다. 국제적 차원의 GBV AoR의 활동은 UNFPA와 UNICEF가 공동으로 주도한다. 현장 차원의 GBV AoR은 GBV 하위 클러스터 또는 GBV 워킹그룹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의 경우, 조정 협력기관에서는 '조정 구조 (Coordination Structure)' 대신 '여성 보호(Women's Protection)'와 같이 상황에 맞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세한 정보는 < http://gbvaor.net >을 참조한다.
글로벌 보건 클러스터 (Global Health Cluster)	국제적 차원에서 WHO가 주도하는 보건 클러스터는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보건 사안에 더 빠르고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및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 협력기관은 정보의 공동 평가 및 분석, 개입의 우선순위 설정, 증거에 기반한 전략 및 행동 계획 수립, 보건 관련 상황 및 보건 부문 대응 모니터링, 필요한 경우 계획 수정 및 재정비, 자원 동원, 인도주의 보건 활동 옹호를 담당한다. 보건 클러스터는 (RH 워킹그룹을 통해) 생식보건 분야의 활동을 지원, 증진, 옹호하고 주도하기 위한 클러스터 주도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상사태 안정화에 따른 더 광범위한 GBV를 포함하여 성폭력 예방 및 대응과 더 포괄적인 생식보건을 다루는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 (Minimal Initial Service Package, MISP)가 포함된다. 자세한 정보는 < www.who.int/hac/global_health_cluster/about/en >을 참조한다.
유엔난민기구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난민 및 일부 이재미주 상황에서 UNHCR은 피해 인구를 보호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관련 활동이 긴급하고 핵심적으로 다루질 보호 사안으로 포함되며, UNHCR이 이러한 GBV 조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정보는 < www.unhcr.org/cgi-bin/texis/vtx/home >을 참조한다.
분쟁 중 성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행동 (United Nations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 UN Action)	분쟁 중 성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행동(United Nations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 UN Action)은 2007년 3월에 발족한 13개의 유엔 기구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분쟁 관련 성폭력 퇴치를 위한 유엔 시스템 전반의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네트워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안에서 중요한 조정 플랫폼으로써 언급된다.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UN Country Teams)를 비롯한 모든 유엔 기구는 유엔행동에 성폭력 퇴치를 위한 포괄적 전략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조정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현장에서의 조정과 결속력을 증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전략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쟁 중 또는 전쟁 후의 성폭력 예방, 신고,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툴의 출시 및 배포와 같은 옹호 활동과 지식 축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 www.stoprapenow.org >를 참조한다.
유엔평화유지임무단 (United Nations Peacekeeping Missions)	유엔은 다차원적인 유엔 평화 유지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유엔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이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과 유엔의 국가팀이 전략적 비전을 공유하며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사무총장 특별부대표(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DSRSG), 인도주의 조정관 또는 유엔 국가팀의 지역 조정관이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되도록 지원한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820호 및 제1888호가 채택되고 분쟁 중 성폭력에 대처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부대표가 임명된 이래 평화유지활동국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PKO)에서는 일부 평화유지임무단에 여성 보호 자문관을 배치하는 등 성폭력에 대처하는 임무단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더 표준화된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 www.un.org/en/peacekeeping >을 참조한다.

B. 주요 GBV 참고자료

제3부의 주제별 지침에는 해당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GBV 관련 툴의 참고자료 목록이 포함돼 있다. 그 외 GBV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더 얻고 싶은 사람을 위한 추가 참고자료가 아래에 제시돼 있다. 또한 GBV 대처를 위한 인도적 지원 커뮤니티의 책임 강화와 관련된 IASC 문서도 포함돼 있다. 추가 정보와 참고자료는 GBV AoR 웹사이트인 <<http://gbvaor.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 웹사이트

주제	참고자료	설명
포괄적 GBV 지침 및 툴	The Virtual Knowledge Centr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 www.endvawnow.org/en >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증거 기반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참고자료이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가상지식센터(Global Virtual Knowledge Centre)에서는 사용자가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을 대처하는 데 효과가 있는 주요 툴과 증거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지식센터에는 분쟁 중/분쟁 후 프로그램 모듈도 있다.
데이터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Database on Violence against Women < www.un.org/womenwatch/daw/vaw/v-database.htm >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노력의 강화를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 61/143에 따라 개발됐으며 사무총장에게 여성 폭력에 관한 조정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촉구했다.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관리	GBV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GBVIMS) < http://www.gbvims.com >	GBVIMS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툴에 대한 정보 및 링크를 제공한다. GBV 사건 분류를 위한 표준화된 템플릿,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 신규/초기 현황 파악 양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황 파악의 용도), 보고된 사건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엑셀로 된 '사건 기록지', 기관 간 안전한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프로토콜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LGBTI	LGBTI Refugee Project Portal < http://portal.oraminternational.org >	전 세계에서 LGBTI에 대한 탄압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적 기관과 NGO가 LGBTI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법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를 채택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표이다. 이 포털은 난민 지위 결정, 정책 개발 및 연구, 실질적인 보호 조치 및 직원 개발 분야에서 LGBTI인 강제 이주민의 보호를 강화하는 프로젝트와 접근법을 공개하고 있다.
자연재해	Gender and Disaster Sourcebook < www.gdonline.org/sourcebook >	젠더 및 재해 네트워크(Gender and Disaster Network)에서 주최하는 젠더 및 재해 자료집은 재해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DRR) 및 재해 이후 관리에서 젠더를 주류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가상 도서관이다. 젠더 및 재해 자료집은 젠더 평등 및 DRR, 계획 및 실무 툴, 모범 사례, 커뮤니케이션, 범분야 사안, 교육, 사례연구 및 분석, 사진 갤러리, 용어 및 약어로 구성돼 있으며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분쟁 중/분쟁 후의 성폭력	Sexual Violence Research Initiative < www.svri.org/emergencies.htm >	성폭력 연구 이니셔티브는 분쟁 중/분쟁 후 섹션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참고자료의 온라인 서지 및 웹 포털로 WHO, UN Action, SVRI, MRC에서 식별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돼 있으며 분쟁 중 성폭력 대처 분야의 정책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Accountability to Affected Populations (AAP) and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 Task Force < http://pseataaskforce.org/en/tools >	이 사이트에는 유엔, 비정부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 지역 이행 협력기관의 직원이 저지른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계속)

2. 지침

주제	참고자료	설명
아동 생존자	<p>Caring for Child Survivors (IRC and UNICEF, 2012)</p> <p><http://www.gbvresponders.org/node/1542></p>	<p>성학대 피해 아동 및 그 가족과 함께 일하는 인도적 지원 현장 직원이 이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침은 성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며 이들을 인터뷰하는 방법과 아동 성 학대 사례에 관한 단계별 관리의 이행 및 성 학대 생존자 아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보호 개입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GBV, 아동 보호 및 기타 행위자가 아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도 포함돼 있다.</p>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및 성폭력에 대한 임상 치료	<p>Health Care for Women Subjected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or Sexual Violence: A clinical handbook (WHO/RHR/14.26, Field testing version, September 2014)</p> <p><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violence/vaw-clinical-handbook/en></p>	<p>이 핸드북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지침인 Responding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2013)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의료보건 제공자를 위한 간편한 단계 및 제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p> <p>1.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 2. 폭력을 당한 여성을 위한 최우선 지원, 3. 성폭행 이후 추가적인 임상 치료, 4. 정신건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p>
강간의 임상 관리	<p>Clinical Management of Survivors of Rape: Developing protocols for use with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WHO/UNHCR, 2004)</p> <p><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emergencies/924159263X/en></p>	<p>비상사태에서 강간당한 피해자의 임상 관리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 국가 정책·관행 및 자원, 재료, 의약품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돌봄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의료보건 제공자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강간당한 여성, 남성 및 아동의 임상 관리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p>
조정	<p>Handbook for Coordin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 (GBV AOR, provisional edition 2010; finalized edition 2015)</p> <p><www.gbvguidelines.org></p>	<p>GBV 프로그램 기획 및 조정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빠르게 참조할 수 있는 툴이다.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리더십 역할, 주요 책임 및 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이 핸드북은 또한 GBV 조정,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기본적인 보호 책무에 대한 교육 및 옹호를 위한 툴로 활용될 수 있다.</p>
데이터 수집 (위의 GBVIMS 웹사이트 참조)	<p>WHO Ethical and Safety Recommendations for Researching, Documenting and Monitoring Sexual Violence in Emergencies (WHO, 2007)</p> <p><www.who.int/gender/documents/violence/9789241595681/en></p> <p>Reporting and Interpreting Data on Sexual Violence from Conflict-Affected Countries: Dos and don'ts (UN Action, 2008)</p> <p><www.stoprapenow.org/uploads/advocacyresources/1282164733.pdf></p> <p>Gender-Based Violence Tools Manual: For assessment, program design,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conflict-affected settings (RHRC, 2004)</p> <p><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FC881A31BD55D2B3C1256F4F00461838-Gender_based_violence_rhrc_Feb_2004.pdf></p> <p>International Protocol on th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2014)</p> <p><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19054/PSVI_protocol_web.pdf></p>	<p>이 윤리 및 안전 지침(또는 권고사항)은 국제적으로 이미 합의된 연구를 위한 윤리 지침을 보완하고 윤리 검토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고사항은 연구, 인권의 문서화, GBV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를 비롯한 비상사태에서의 성폭력에 관한 모든 형태의 조사에 적용된다.</p> <p>이 자료는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UN Country Team) 및 통합임무단(Integrated Missions) 직원이 분쟁 중 발생한 성폭력에 관한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보안, 기밀성, 익명성, 사전동의, 보복으로부터의 안전 및 보호, 데이터 자체의 보호와 같은 확립된 윤리 및 안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p> <p>이 설명서의 툴은 구성 커뮤니티,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법률 및 보안 부문의 활동 및 조정을 증진하는 GBV 프로그램의 다중 부문 모델에 따라 제작됐다. 설명서는 GBV 예방 및 대응 경험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인도적 지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p> <p>분쟁 중 성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선언(UN Declaration of Commitment to End Sexual Violence in Conflict)에 따라 2014년 6월에 수립된 이 조약의 목표는 성폭력 생존자가 일관되고 공감적인 대응을 받고 생존자에게서 수집한 정보(물리적 증거 및 증언)가 기소 또는 기타 사법 메커니즘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확보 및 저장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초 대응자(first responder)가 활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p>

(계속)

2. 지침(계속)

주제	참고자료	설명
데이터 수집 (위의 GBVIMS 웹사이트 참조) (계속)	Provisional Guidance Note on the Intersections between 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 Arrangements (MARA) and The Gender-Based Viole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GBVIMS Steering Committee and UN Action, 2015) < www.gbvims.com > < www.stoprapenow.org >	젠더기반폭력 정보 관리 시스템(Gender-Based Violen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GBVIMS)과 분쟁 관련 성폭력(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CRSV)에 관한 분석 및 보고 준비(Analysis and Reporting Arrangements, MARA)는 GBV 예방 및 대응 강화 측면에서 CRSV 데이터 등을 포함한 GBV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접근법이다. 분쟁 중 성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행동 하에 GBVIMS 운영위원회는 행위자가 GBVIMS 및 MARA 툴, 접근법 및 방법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돕기 위한 지침서를 제작했다.
장애	Disability Inclusion: Translating policy into practice in humanitarian action (WRC, 2014) < http://womensrefugeecommission.org/programs/disabilities/disabilityinclusion >	여러 국가 및 다양한 이재이주 상황에서 UNHCR 및 협력기관이 장애를 포함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사례와 지속적인 도전 과제를 문서화한다. 이 보고서는 GBV 관련 업무를 비롯한 모든 수준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교훈과 권고사항을 다른 단체 및 더 넓은 인도주의 커뮤니티에게 제공하고 있다.
비상사태 대응	GBV Emergency Toolkit (IRC, updated 2014) < http://gbvresponders.org >	IRC 여성 보호 및 역량강화(Women's Protection and Empowerment, WPE) 부서는 비상사태에서의 GBV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GBV Emergency Toolkit 을 개발했다. 이 툴킷은 글로벌 대응과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했으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툴과 템플릿, 지침 및 모범 사례가 포함돼 있다.
남성 및 남아의 참여	Engaging Men through Accountable Practice (IRC, 2014)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애비 에릭슨 (Abby Erikson)의 이메일(Abigail.Erikson@rescue.org)로 문의한다.	인도주의/분쟁 이후 환경에서 GBV 프로그램과 GBV 예방 활동을 설계, 이행, 감독하는 실무자의 지식 및 기술 함양을 목표로 한다. 참고자료 패키지는 믿음 체계에 도전하고 반성과 그룹 토론을 통해 배우며 개인적 차원의 변화를 만드는 기회를 조성하는 주간 토론회에 남성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증거 기반 교과과정과 현장 검증된 접근법을 소개한다. 분쟁 이후 환경에서 남성의 책무성 있는 실천을 위한 지침 패키지, 성별로 나누어진 그룹에서 여성과 남성과 함께하기 위한 주별 레슨을 담은 활동 가이드, 진행자 지침 및 모니터링 툴, 교육 가이드가 포함돼 있다.
일반적인 예방 및 대응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Refugees, Return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Guidelines for prevention and response (UNHCR, 2003) < www.unhcr.org/3f696bcc4.html >	이 지침은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을 예방 및 대응을 목표로 한 전략 수립 및 활동 실행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전략 및 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건강, 법률, 보안 및 인권 사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UNHCR 직원 및 난민과 국내 이재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련된 운영 협력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모니터링 및 평가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 compendium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indicators (Measure Evalu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008) < www.cpc.unc.edu/measure/tools/gender/violence-against-women-and-girls-compendium-of-indicators > Toolkit for Monitoring and Evalu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along the Relief to Development Continuum (USAID, 2014) < www.usaid.gov/gbv/monitoring-evaluating-toolkit >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에 중점을 둔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에 대한 개요이다. 모든 지표는 주제/행동 부문에 따라 구성돼 있으며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더 맞게 구성된 지표를 다루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별도의 장도 포함돼 있다. 이 툴킷은 USAID가 전 세계의 젠더기반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했으며 사용자가 다음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BV 데이터 수집 및 GBV 결과 증거 분석을 위한 검증된 M&E 관행과 툴을 수정 및 적용하여 GBV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판단한다. • RDC에 따른 GBV 개입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모니터링 및 평가 정보를 통해 GBV 프로그램을 재정비, 수정, 개선 및 제도화한다. •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행위자의 GBV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을 조정한다.

(계속)

2. 지침(계속)

주제	참고자료	설명
자연재해	<p>Secretary-General's Report on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in Natural Disasters (UNSG, 2014)</p> <p><http://un.org.au/2014/01/29/secretary-general-report-gender-equality-and-the-empowerment-of-women-in-natural-disasters></p>	<p>기존의 유엔 틀 안에서 자연재해 시 젠더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GBV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회원국/유엔/인도주의 기관이 취한 조치, 정부 간 및 기관 간 전략 및 정책을 소개한다. 모니터링 및 책무성에 관한 권고사항을 촉구한다.</p>
예방	<p>SASA! Activist Kit for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HIV (Raising Voices, 2008)</p> <p><http://raisingvoices.org/sasa/#tabs-419-0-1></p>	<p>SASA!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및 HIV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 틀에 문서화 돼 있다. SASA! 툴킷에는 실용적인 참고자료, 활동, 지역별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툴, 미디어 및 옹호 활동, 커뮤니케이션 자료, 폭력 또는 HIV/AIDS 관련 기관이 그들의 활동에 이러한 범분야 사안을 통합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포함돼 있다.</p>
	<p>Communities Care: Transforming lives and preventing violence (UNICEF, 2014)</p> <p>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멘디 마시 (Mendy Marsh)의 이메일(mmarsh@unicef.org)로 문의한다.</p>	<p>‘커뮤니티 보호: 삶을 전환하고 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Communities Care: Transforming lives and preventing violence programme, CC Programme)’은 성폭력을 조장하는 유해한 사회적 규범을 전환하여 비폭력을 도모하며 여성 및 여아의 평등, 안전과 존엄성을 수호하는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분쟁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와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의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시범 이니셔티브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생존자와 그 가족들을 잘 돌보고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여성 및 여아의 보호	<p>UNHCR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Women and Girls (UNHCR, 2008)</p> <p><www.refworld.org/docid/47cfc2962.html></p>	<p>여성 및 여아가 직면한 보호 관련 문제를 명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한다. 여성 및 여아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이끄는 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 및 기타 행위자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설명한다. UNHCR 및 협력기관이 여성 및 여아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제안도 포함돼 있다. 현장의 혁신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p>
기타 집단의 보호	<p>UNHCR Need to Know Guidance Series (UNHCR, 2011-2013)</p> <p><www.globalprotectioncluster.org/en/tools-and-guidance/essential-protection-guidance-and-tools/age-gender-diversity-essential-guidance-and-tools.html></p>	<p>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호 관련 문제에 관한 필수 소개 및 행동 중심의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 LGBTI인 사람, 국민 또는 민족, 종교/언어적 소수민족 및 원주민, 노인, 남성 및 남아 성폭력 생존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이 포함돼 있다.</p>
심리적 응급처치	<p>Psychological First Aid: Guide for field workers (WHO, War Trauma Foundation and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1)</p> <p><www.who.int/mental_health/publications/guide_field_workers/en/></p>	<p>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을 위한 인간적이고 도움이 되며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된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한 지침이다. 매우 힘든 사건을 겪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 작성됐으며 그들의 존엄성, 문화, 능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여러 국제기구에서 지지를 표명한 이 지침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을 겪은 직후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최신의 과학적 및 국제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p>
생식보건/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 (Minimal Initial Service Package, MISP)	<p>Inter-Agency Field Manual on Reproductive Health in Humanitarian Settings (IAWG, 2010)</p> <p><http://iawg.net/resource/field-manual></p> <p>MISP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iawg.net/resources/MISP%20cheat%20sheet%2012%2017%2009_FINAL.pdf>를 참조한다.</p>	<p>보건 제공자를 위한 포괄적인 생식보건에 대한 지침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보건의료, 가족 계획, 낙태에 대한 포괄적인 돌봄, 젠더기반폭력, 성매개감염병, HIV 및 청소년 생식보건 등을 다루며 다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및 여아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비상사태 발생과 동시에 생존자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인도주의 대응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결과를 관리하는 것을 비롯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 및 조정된 우선순위 활동인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Minimal Initial Service Package, MISP)를 이행하는 방법을 다룬다.

(계속)

2. 지침(계속)

주제	참고자료	설명
표준운영절차	<p>Establishing GBV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IASC Sub-Working Group on Gender and Humanitarian Action, 2008)</p> <p><www.interaction.org/sites/default/files/GBV%20SOP%20guide%20FINAL%20May%202008.pdf></p>	표준운영절차(SOP) 지침은 기관 간 다부문팀과 협력하여 잘 조정된 GBV 예방 및 대응을 개발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단계별 절차를 제공하며 SOP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채우는 형식으로 된 수정 가능한 템플릿도 포함되어 있다.

3. 교육 툴

주제	참고자료	설명
옹호, 면대면 교육	<p>GBV Emergency Response and Preparedness in Emergencies: Participant handbook, 'Module 5: Advocating in emergencies' (IRC, 2011)</p> <p><http://gbvresponders.org/resources></p>	이 모듈은 긴급 대응 및 준비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패키지의 한 부분으로,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에 대한 옹호 활동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옹호 활동의 대상을 어디에 둘 것인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옹호 활동 수행 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보호, 면대면 교육	<p>Caring for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in Emergencies Training Guide (IASC Gender Sub-Working Group and GBV AoR, 2010)</p> <p><www.unicef.in/emergencies.com/downloads/eresource/docs/GBV/Caring%20for%20Survivors.pdf></p>	교육 패키지는 분쟁 피해 국가 또는 복합적인 비상사태의 성폭력 생존자와의 의사소통 및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정보와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존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 의료보조 제공자, 법조인, 경찰, 여성단체와 커뮤니티 노동자, 교사 및 종교인 등 기타 관련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위해 개발됐다.
임상 관리, 이러닝 (온라인 또는 다운로드)	<p>Clinical Management of Rape E-Learning Programme (WHO, UNHCR & UNFPA, 2009)</p> <p><www.who.int/hac/techguidance/pht/womenshealth/en/index.html></p>	의료보조 제공자(간호사, 조산사, 의사)를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강간 생존자에게 적절하고 통합된 보호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간 생존자 임상 관리에 관한 WHO/UNHCR 지침 및 UNHCR과 UNFPA에서 사용하는 교육 자료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임상 관리, 면대면 교육	<p>Clinical Care for Assault: A multimedia tool (IRC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09, revised 2014)</p> <p><http://www.iawg.net/ccsas></p>	이 교육 툴의 목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배려적이고 효과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치료를 장려하여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폭행 생존자가 더 나은 임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폭행 생존자와 대면하는 모든 클리닉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비의료 직원만을 위한 별도 섹션도 있다. 진행자가 있는 집단 교육을 위한 것이며 독학을 위한 툴로 개발된 것은 아니다. 청소부부터 간호사와 의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클리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생존자와의 의사소통 기술, 면대면 교육	<p>Communication Skills in Working with Survivors of GBV: A five-day training of trainers workshop (FHI, IRC, & RHRC, 2002)</p> <p><http://iawg.net/wp-content/uploads/2015/04/GBV-Comm-Skills-Manual.pdf></p> <p>Mental Health and Gender-Based Violence: Helping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 A training manual (Sveaass, N., Drews, D., Salvesen, K., Christie, H., Dahl S., With, A., and Langdal, E., 2014)</p> <p><http://hhri-gbv-manual.org></p>	5일간 진행되는 교육을 위한 지침으로 GBV에 대한 개요에서 시작해서 GBV 생존자와 함께하기 위한 참여 전략,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는 방법,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커뮤니티 위탁 활성화 등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기술 개요, 교육 검토 및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 교육 자료는 재해-전쟁-분쟁 중 GBV 및 성폭행과 관련된 여성 외상 생존자를 돕고 지원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이 설명서의 목적은 GBV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GBV 생존자에 관여할 때 활용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교육은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전무한 상황, 인도주의 활동가가 불안정-분쟁-전쟁 중의 극심한 인명 손실, 슬픔 및 좌절에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계속)

3. 교육 툴(계속)

주제	참고자료	설명
조정, 면대면 교육	<p>Coordination of Multi-Sectoral Response to GBV in Humanitarian Settings (developed by UNFPA and ICRH, publication pending)</p> <p>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에린 케니 (Erin Kenny)의 이메일(ekenny@unfpa.org)로 문의한다.</p>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에 대처하기 위한 다부문 개입을 조정하기 위해 현장 기반 GBV 프로그램 관리자 및 관련 실무자를 교육하기 위해 개발됐다. 목표는 GBV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이해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하고 GBV에 대한 다부문 대응의 조정에서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벨기에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교과과정은 곧 확정될 예정이며, 본 과정을 지역별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GBV 연계에 초점을 맞춘 조정, 면대면 교육	<p>Protecting Women and Child Survivors through Improved Coordination: A training curriculum (IRC, UNICEF, 2011)</p> <p>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멘디 마시 (Mendy Marsh)의 이메일(mmarsh@unicef.org)로 문의한다.</p>	교과과정의 내용은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을 다루기 위해 개발된 기존 교육 자료, 지침 및 참고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IRC와 UNICEF 간의 협력은 아동 생존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의 조정을 목표로 하며 GBV와 아동 보호 조정 기구 간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GBV 프로그램, 다단계 학습 프로그램, 이러닝 설계 및 관리, 면대면 교육	<p>Managing GBV Programmes in Emergencies (developed by UNFPA for the GBV AOR, 2012)</p> <p>E-Learning: <https://extranet.unfpa.org/Apps/GBVinEmergencies/index.html></p> <p>Companion Guide: <www.unfpa.org/publications/managing-gender-based-violence-programmes-emergencies></p>	GBV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역량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닝(E-learning)은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GBV의 개요와 GBV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면대면 과정은 GBV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일상적인 책임, 평가를 위한 기술 교육, 참여 방법, 프로그램 설계, 사례 관리 등에 중점을 둔다. 후속 교육 및 지속적인 학습/네트워킹에는 면대면 모임과 온라인 방법이 포함된다.
가정 폭력 예방, 면대면 교육	<p>Rethinking Domestic Violence: A training process for community activists (Raising Voices, 2004)</p> <p><http://raisingvoices.org/innovation/creating-methodologies/rethinking-domestic-violence></p>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툴이다.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장기 과정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교육 세션으로 참여자가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생각하고 토론하며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는 교육자와 활동가를 위한 실용적인 툴이다.
비상사태 대응, 면대면 교육	<p>GBV Emergency Response and Preparedness (IRC, 2011)</p> <p><http://www.gbvresponders.org/></p>	비상사태에서 현장 실무자가 GBV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과정은 기존 교육 자료와 기타 기관 및 전문가가 개발한 참고자료를 보완하고 주요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남성 및 남아 참여, 면대면 교육	<p>Engaging Boys and Men in GBV Prevention and Reproductive Health in Conflict and Emergency Response: A workshop module (Engender Health and CARE, 2008)</p> <p><https://www.engenderhealth.org/files/pubs/gender/map/conflictmanual.pdf></p>	이 교과과정은 GBV 예방과 분쟁 및 기타 비상사태 대응 환경에서의 생식보건 증진에 있어서 남성 및 남아가 참여하도록 돕는 참가자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됐다. 2일간의 참여 모듈을 통해 분쟁 및 이재이주의 예방과 대응 단계를 바탕으로 남성의 참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NGO 프로젝트 매니저, 현장 직원, 보건 부문 조정관, 보건 부문 기획자, 공여자 대표, 지역 보건부 대표, 유엔 기구를 위해 일하는 커뮤니티 연락원을 대상으로 한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면대면 교육	<p>Training Programme for Refugee and Asylum Professionals (ORAM, n.d.)</p> <p><www.oraminternational.org/en/videos/58-english/training/354-training-programme></p> <p>Working with LGBTI People in Forced Displacement: An interactive training (UNHCR and IOM, publication pending)</p> <p><www.globalprotectioncluster.org/en/tools-and-guidance.html></p>	<p>2012년부터 ORAM은 UNHCR, 난민서비스센터, 지역 정부 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전문가를 소집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전통에서 온 참가자가 솔직하게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및 젠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안전하고 존중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됐다.</p> <p>UNHCR 및 IOM은 직원과 광범위한 인도주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LGBTI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 패키지를 공동 개발했다. 교육 모듈 및 추가 유닛은 용어, 국제법, 운영 보호, 재정착 및 난민 지위 결정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모두 UNHCR 및 IOM 사무소 및 협력기관 조직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에 중점을 두고 있다.</p>

(계속)

3. 교육 툴(계속)

주제	참고자료	설명
GBV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다부문, 기관 간 소개, 면대면 교육	Training Manual: Facilitator's guide – Multi-sectoral and inter-agency prevention and response to GBV in populations affected by armed conflict (RHRC, 2004) < www.jsi.com/JSIInternet/Inc/Common/download_pub.cfm?id=10433&lid=3 >	이 교과과정은 다부문 GBV팀을 위한 2~3일간의 교육 및 기획 워크숍을 소개하고 있다. GBV팀이 다부문 예방 및 대응 계획을 개발하거나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과정은 기본 정보/정의, 원인과 결과를 다루고 조정 및 기획을 비롯한 예방과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자연재해, 면대면 교육	Oxfam Gender and Disaster Risk-Reduction Training Pack (Oxfam GB, 2011) < http://policy-practice.oxfam.org.uk/publications/gender-and-disaster-risk-reduction-a-training-pack-136105 >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는 여성이 재해에 대처할 때 주로 발견되는 회복력과 생존 능력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 시 젠더로 인해 취약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툴은 옥스팜(Oxfam) 프로그램 담당 직원, 재해 위험 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DRR)를 위해 일하는 협력기관 및 기구를 대상으로 개발했으며 DDR 중사자가 '젠더 렌즈'를 통해 업무 계획, 이행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툴은 프로젝트 주기 전반에 걸쳐 젠더 사안에 대처하는 참가자의 기술 및 역량강화를 추구하며, 교육 워크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연구, 연습문제 및 별도로 구성된 모듈 세트를 제공한다. 모든 내용은 알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대상이 젠더 문제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다고 가정한다.
보호, 면대면 교육	Protection Mainstreaming Training Package (Global Protection Cluster, 2014) < www.globalprotectioncluster.org/en/areas-of-responsibility/protection-mainstreaming.html >	2013년의 인도주의 활동에서 보호의 중심성에 관한 IASC 원칙 선언(IASC Principals Statement on the Centrality of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보호를 주류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보호 전략을 지원하는 보호 클러스터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보호 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는 국제적 차원 및 현장 차원에서 활동하는 다른 클러스터들이 그들의 보호 주류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툴도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 패키지는 현장 클러스터가 보호를 구체적인 현실로 주류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툴이다.
심리적 응급처치, 면대면 교육	Psychological First Aid: Facilitators manual for orienting field workers (WHO, War Trauma Foundation and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1) <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02380/1/9789241548618_eng.pdf >	이 설명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조력자가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PFA)를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작성됐다. PFA는 존엄성, 문화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인간적이고 도움이 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 설명서는 Psychological First Aid: Guide for field workers (World Health Organization, War Trauma Foundation,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11)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성적 착취 및 학대, 면대면 교육	Inter-Agency Training for Focal Points on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ECHA-ECPS PSEA Taskforce, 2010) < http://pseataaskforce.org/en/ >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연락관을 대상으로 3일 동안 기관 간 교육을 실시하며, SEA에 대처하기 위한 '4가지 기둥' 체계와 선임 관리자의 책임, 연락관 및 국내 네트워크, 희생자 지원 등을 다룬다. 선임 관리자를 위한 일일 '학습 이벤트'도 포함돼 있다.
표준운영절차, 면대면 교육	SOP Workshop Package (GBV AOR, 2010) < http://gbvaor.net/resources/gbv-sop-workshop-manual >	이 교육 패키지는 신규 표준운영절차(SOP)를 개발하거나 기존 SOP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SOP 지침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방향 및 SOP 개발 과정의 모범 사례, 기존 SOP를 검토하고 이 툴 및 현장 적용을 강화하고 개선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성적표'가 포함돼 있다.

4.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툴

툴	설명	GBV와의 연관성
Women, Girls, Boys and Men: Different needs—equal opportunities (IASC Gender Handbook for Humanitarian Action, 2006) <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Handbook%20%28Feb%202007%29.pdf >	새로운 복잡한 비상사태 또는 재해 발생 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젠더 사안 통합을 위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제공된 인도적 지원 서비스가 악화되거나 의도치 않게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목표한 대상에 다가가고, 최대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 및 GBV 프로그램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상호 교체가 가능하지는 않다. 젠더를 인도적 개입에 주류화하는 것 자체가 GBV를 예방하거나 GBV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젠더 평등 프로그램은 GBV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장기적 노력에서 매우 중요하며 인도적 개입 초기부터 시작돼야 한다. GenCap 어드바이저, 젠더 주제 그룹 및 기관이나 조직의 젠더 연락관과 같은 젠더 부문 활동가는 젠더 주류화의 폭넓은 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책임진다.

(계속)

4.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틀(계속)

틀	설명	GBV와의 연관성
<p>IASC 젠더 이러닝 과정 (IASC Gender E-Learning Course, 2010)</p> <p><www.interaction.org/iasc-gender-elearning></p>	<p>이 온라인 과정은 인도주의 활동가가 프로그램에서 젠더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기본 단계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는 젠더의 핵심 사안과 각 사안이 기타 인도주의 대응 측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3시간 동안의 자기주도적 과정을 통해 젠더인지적 프로그램을 연습해볼 수 있도록 돕는 정보와 시나리오를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교육은 IASC 젠더 핸드북(Gender Handbook)과 인도적 지원 환경의 젠더기반폭력 개입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을 비롯한 IASC 지침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젠더인지적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범분야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8개 클러스터(CCCM, 교육, 식량 문제, 건강, 생계, NFIs, 헬터, WASH)를 다룬다.
<p>IASC 젠더 마커 (IASC Gender Marker)</p> <p><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Marker%20Fact%20Sheet.doc></p>	<p>IASC 젠더 마커는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가 여성/여아와 남성/남아가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설계됐는지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 젠더 평등을 증진하도록 설계됐는지를 평가해서 0~2등급으로 표시하는 틀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가 젠더 평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젠더 마커를 통해 그 결과가 미미할지 아니면 상당할지 예측할 수 있다. 이 웹페이지는 GenCap 프로젝트 및 IASC 젠더 레퍼런스 그룹(Reference Group, RG)에 관한 추가 정보 링크와 젠더 마커 및 젠더 마커 클러스터를 위한 팁 시트 이행 지침을 제공한다.
<p>인도적 지원 활동에서의 젠더 평등에 관한 IASC 정책 성명 (IASC Policy Statement on Gender Equality in Humanitarian Action, 2008)</p> <p><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IASC%20Gender%20Policy%2020%20June%202008.pdf></p>	<p>더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여성의 역량강화를 포함한 젠더 평등이 모든 IASC의 업무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IASC에서 해야 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 평등에는 젠더 주류화, 젠더 분석, GBV와 SEA 예방 및 대응, 인권 증진 및 보호,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 직장 내 젠더 균형이 포함된다.
<p>인도적 지원 환경에서의 HIV 대처를 위한 IASC 지침 (IASC Guidelines for Addressing HIV in Humanitarian Settings, 2010)</p> <p><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FinalGuidelines17Nov2003.pd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HIV 예방, 치료, 간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주의 단체 및 AIDS 단체의 계획을 지원한다. HIV 및 인도주의 위기에 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9개 핵심 부문의 HIV 부문별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V와 GBV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특히 보건 및 보호 부문에서 GBV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 및 확대된 행동을 제공한다.
<p>비상사태에서의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IASC 지침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 in Emergency Settings, 2007)</p> <p><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Guidelines%20IASC%20Mental%20Health%20Psychosocial%20with%20index%29.pdf></p>	<p>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비상사태 발생 시 사람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웰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다부문적 대응책을 계획, 수립,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이 지침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BV는 정신건강 및 심리적 웰빙을 위협하는 잘 알려진 요인이다. 여기에는 두려움, 슬픔, 분노, 자책, 수치심, 슬픔 또는 죄의식, 불안 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기분 장애 및 약물 남용 문제 등이 포함된다. MHPSS 지침은 1차 보건의료 종사자의 심리적 응급 처치 및 기본적인 정신건강 치료와 이행 원칙 준수와 같은 주요 연결 고리를 설명한다.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관련 용어집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Identity, SOGI)*

용어	정의/설명
바이섹슈얼 (Bisexual)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육체적, 감정적 매력과 연애감정을 느끼는 사람. 바이섹슈얼이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와 동등한 성경험을 하지 않는다. 사실 바이섹슈얼임을 인식하는 데에는 전혀 성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
시스젠더 (Cisgender)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이 태어나면서 부여된 성과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
클로젯 (Closeted)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크로스드레싱 (Cross-dressing)	다른 성을 가진 사람과 전통적으로 연관된 옷을 가꿈 입을 행위. 크로스드레서(Cross-dresser)는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 부여된 성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를 바꿀 의사는 없다. 크로스드레싱은 젠더 표현의 유형으로 성적 활동과 반드시 연관된 것은 아니다. 크로스드레서를 복장도착자(transvestite)라고 부르기도 한다.
커밍아웃 (Coming Out)	평생에 걸친 자기 수용의 과정. 사람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또는 트랜스젠더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다.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커밍아웃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게이 (Gay)	동성인 사람에게 육체적, 감정적 매력과 연애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 게이 남자, 게이인 사람). 주로 다른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남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만 레즈비언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젠더 표현 (Gender expression)	일반적으로 '남성적(masculine)', '여성적(feminine)'이라는 표현 또는 성별에 따른 행동, 옷, 헤어스타일, 목소리 또는 신체 특성을 통해 표현되는 젠더 정체성의 외부적인 표현.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transgender)인 사람은 출생 시 부여된 성이 아닌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따라 젠더 표현을 한다.
젠더 정체성 (Gender identity)	젠더에 관한 각 개인의 깊은 내적 경험과 개인적 경험을 가리키며 출생 시 부여된 성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는 신체에 관한 개인적 지각(자율로운 선택에 따라 신체적 외모 또는 기능을 의약품, 수술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 옷, 말투 및 버릇을 포함한 젠더 표현이 포함된다.
이성애자 (Heterosexual)	이성인 사람에게 육체적, 감정적 매력과 연애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스트레이트(straight)'라고 불리기도 한다.
동성애자 (Homosexual)	동성에게 주로 끌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임상 용어. 게이 중에서 이 용어를 경멸적으로 느끼거나 기분 나빠 하는 사람이 있으며,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는 용어가 더 선호된다.
호모포비아 (Homophobia)	레즈비언과 게이 남성에 대한 공포, 증오 또는 불관용.
인터섹스 (Intersex)	남성 또는 여성의 '표준'으로 간주되지 않는 생식기관의 해부학적 상태를 의미한다. '인터섹스'는 염색체/생식선/해부학적 성의 발달이 비정상적인 진단가능한 선천적 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성 발달상의 차이를 다루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 '인터섹스'라는 용어는 트랜스젠더와 혼용해서는 안 되며 트랜스젠더의 동의어가 아니다.
레즈비언 (Lesbian)	다른 여성에게 육체적, 감정적 매력과 연애감정을 느끼는 여성. '게이' 또는 '게이 여성'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LGBT 또는 LGBTI	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가리키는 약어. 인터섹스인 사람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약어는 LGBTI가 된다.
아웃팅 (Outing)	상대의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때로는 소문이나 추측에 바탕을 두고) 다른 사람의 성적 지향을 선언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퀴어 (Queer)	전통적으로 경멸적인 단어였지만, 일부 LGBT 사람이 스스로를 묘사할 때 '퀴어(queer)'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
성 (Sex)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분류함. 출생 시 신생아는 염색체, 호르몬, 내부 생식 기관과 생식기를 포함한 신체적 특성의 조합에 기초하여 성을 부여받는다.

(계속)

* 용어집은 UNHCR. 2010. The Protection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Asylum-Seekers and Refugees: A discussion paper, <www.refworld.org/pdfid/4c99a8f2.pdf>의 부록 1을 인용했다. 용어 자체는 다음의 참고자료를 인용했다. Gay and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 (GLAAD). 2010. Media Reference Guide, 8th ed., Glossary of Terms, <www.glaad.org/files/MediaReferenceGuide2010.pdf?id=99>; Human Rights Watch. 2009. "They Want Us Exterminated": Murder, tortur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n Iraq, Glossary, <www.hrw.org/node/85050>; The 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007. <www.yogyakartaprinciples.org/principles_en.pdf>. OHCHR. 2012. Born Free and Equal, <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BornFreeAndEqualLowRes.pdf>

용어	정의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같은 젠더, 다른 젠더 또는 둘 이상의 젠더를 가진 개인에 대한 깊은 감정적, 정서적, 성적 매력을 느끼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각 개인의 역량을 가리킨다.
성적 소수자 (Sexual minorities)	지배적인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차별과 학대를 받는 대상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 LGBT 또는 LGBTI라는 용어 대신 쓰이기도 한다.
소도미 법 (Sodomy laws)	역사적으로 게이 남성,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을 선택적으로 처벌하는 데 사용된 법률. 이러한 법률은 많은 국가에서 폐지됐다.
트랜스젠더 (Transgender)	젠더 정체성과 젠더 표현이 태어나면서 부여된 성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 이 용어는 트랜스섹슈얼, 크로스드레서, 기타 다양한 젠더를 가진 사람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트랜스젠더인 사람은 FTM(female-to-male), MTF(male-to-female), 또는 기타 젠더로 동일시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인 사람은 호르몬 요법이나 수술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바꾸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트랜스섹슈얼 (Transsexual)	의학 및 심리학 커뮤니티에서 유래된 오래된 용어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용어와 달리 '트랜스섹슈얼'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있으며 트랜스젠더에 비해 가리키는 범위가 좁은 것으로 여겨진다. 트랜스섹슈얼은 자신의 신체가 자신이 동일시하는 젠더와 일치하도록 의료적 절차 및 수술적 절차를 거친 사람이다.
전환 (Transition)	출생 시 성을 바꾸는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다. 전환은 가족·친구·동료에게 말하기, 법률 서류상의 이름 및 성별 변경, 호르몬 요법,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방식 이상의 수술과 같은 개인적, 법적, 의학적 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트랜스포비아 (Transphobia)	트랜스섹슈얼 또는 트랜스젠더인 사람에 대한 공포, 증오 또는 불관용. 차별, 편견 또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젠더기반폭력의 일반적인 유형

아래에 나열된 폭력 유형이 항상 젠더기반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예: 아동 성학대, 특히 남아에 대한 성학대는 남아를 무력화시키려는 욕구보다는 소아성애로 인한 것일 수 있음). 폭력 행위에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반영됐거나 이를 강화하는 경우 GBV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 행위자(actor)는 만연한 남성성에 대한 젠더불평등적 규범, 젠더 정체성에 대한 규범을 강화하려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폭력(예: 남성에 대한 성폭력의 일부 유형 또는 LGBTI에 대한 표적화된 폭력 등)을 묘사하기 위해 'GBV'라는 용어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폭력의 유형	정의/설명*
아동 성학대 (Child sexual abuse)	'아동 성학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아동과 가까운 혈연관계의 가족 구성원(근친상간) 또는 가족이 아닌 성인 또는 더 나이가 든 아동과(더 어린) 아동 간의 모든 성적 행위를 가리킨다. 명확한 강제 또는 강요에 의한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어린 나이로 인해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암묵적인 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¹
분쟁 관련 성폭력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분쟁 관련 성폭력'은 여성, 남성, 여아, 또는 남아에 대한 강간, 성 노예, 강제 성매매, 강제 임신, 강제 불임시술 또는 이에 비할 만한 중대한 기타 유형의 성폭력 사건 또는 패턴(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960호 내 목록)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건 또는 패턴은 분쟁 중/분쟁 후 환경 또는 기타 우려되는 상황(예: 정치적 투쟁)에서 발생한다. 이들은 또한 분쟁이나 정치적 투쟁 자체, 즉 시간적·지리적·인과적 고리와의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분쟁과의 연관성은 범죄 혐의의 국제적 특성(상황에 따라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고문 또는 집단학살이 될 수 있음)과 더불어 범죄자의 프로필과 동기, 희생자의 프로필, 면책하는 분위기/국가의 역량이 약화된 상황, 국경을 넘는 규모, 휴전 협정 조항 위반 사실 등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²
자원, 기회, 서비스 박탈 (Denial of resources, opportunities or services)	경제적 자원/자산 또는 생계 기회, 교육, 보건 또는 기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접근을 거부당함. 예를 들어 상속받는 것이 금지된 미망인, 친밀한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에게 강제로 뺏긴 소득, 피임약 사용이 금지된 여성,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금지된 여아 등이 있다. '경제적 학대'는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일부 감금 행위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³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DV) 및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이러한 용어가 혼용될 수 있지만 이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가정 폭력'은 친밀한 파트너뿐 아니라 가족 내 다른 구성원에 의해 집 안이나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한다.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은 친밀한 파트너(결혼, 동거, 남자친구/여자친구 또는 기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WHO에 따르면, 신체적 공격, 성적 강압, 심리적 학대 및 통제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신체적·성적·정신적 해를 입힐 수 있는 친밀한 파트너 또는 전 파트너(ex-partner)에 의한 행동이라고 정의된다. ⁴ 이 유형의 폭력에는 자원, 기회, 서비스의 박탈도 포함될 수 있다. ⁵
경제적 학대 (Economic abuse)	학대자가 피해자의 자원에 대한 접근, 노동활동, 수입 관리, 자금자족 달성, 재정적 독립 획득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재정을 통제하는 학대의 한 측면을 의미한다. ⁶
감정적 학대 또는 심리적 학대 (Emotional abuse / psychological abuse)	정신적 또는 감정적 고통이나 상처의 유발. 신체적 폭력 또는 성폭력 위협, 협박, 모욕, 강제 격리, 사회적 배제, 스토킹, 언어적 괴롭힘, 원치 않는 관심 및 성적인 내용, 협박성 또는 아끼는 물건의 파괴하겠다는 발언, 제스처, 서면으로 작성된 글 등이 해당한다. '성희롱'은 이러한 범주의 GBV에 포함된다. ⁷
여성 할례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FGM/C)	비의학적 이유로 여성의 외음부 또는 생식기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말한다. ⁸
여영아살해 및 성별 선택 낙태 (Female infanticide and sex-selective abortion)	성별 선택은 산전 성감별 및 선택적 낙태를 통해 임신 전 또는 임신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영아살해나 아동 유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성별 선택이 가족의 균형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직적인 남아 선호 때문에 발생한다. ⁹
강제 결혼 및 아동 결혼(조혼) (Forced marriage and child/early marriage)	강제 결혼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혼이다. 아동 결혼은 18세 이전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결합을 의미한다. ¹⁰ 일부 국가에서는 18세 이전에 결혼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전동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동 결혼으로 분류된다. 아동은 이러한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아동 결혼은 강제 결혼의 한 가지 유형이다. ¹¹

(계속)

* 주의: 여기에 제시된 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에 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 및 국가 법률 체계에 따라 이러한 용어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GBV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기타 법률에 의해 인정된 GBV 유형이 있을 수 있다.

GBV의 유형	정의/설명*
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GBV)	사회적으로 간주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즉, 젠더)에 따라 피해자의 의지에 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각종 가해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용어는 주로 세계 곳곳의 남성과 여성 간의 구조적인 젠더 기반 권력의 차이가 여성을 다양한 형태의 폭력 위협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1993년의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젠더기반폭력은 공적인 삶 또는 사적인 삶에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 또는 고통을 유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강요하거나 기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부 행위자는 이 용어를 남성에 대한 성폭력의 일부 유형 또는 LGBTI에 대한 표적화된 폭력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 남성성에 대한 젠더 불평등적 규범 및 젠더 정체성에 대한 규범과 관련된 폭력을 의미한다.
유해한 전통적 관습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사람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관습과 전통을 말한다. 세계의 모든 사회 집단은 특정한 전통적·문화적 관습과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일부는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하지만 일부는 여성과 같은 특정 집단에 해를 끼친다. 이러한 유해한 전통적 관습에는 여성 할례, 여성 강제급식, 아동 결혼, 여성이 자신의 생식 능력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다양한 금기 또는 관행, 영양 금기 및 전통적 출산 관행, 남아 선호 및 이로 인해 여아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여영아살해, 조기 임신, 혼인 지참금 등이 포함된다. ¹²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전통적 관행으로는 전족, 흉터 만들기, 화상 입히기, 인두로 낙인 찍기, 폭력적인 성인식, 살찌게 하기, 강제 결혼, 소위 명예 범죄, 지참금 관련 폭력, 퇴마의식 또는 '주술' 등이 있다. ¹³
신체적 공격 (Physical assault)	본질적으로 성적인 폭력이 아닌 신체적 폭력 행위. 때리기, 치기, 목 조르기, बे기, 거칠게 밀기, 화상 입히기, 총격 또는 기타 무기 사용, 염산 공격, 또는 고통, 불편함, 상해를 초래하는 기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¹⁴
강간 (Rape)	음경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질, 항문 또는 구강에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¹⁵ 질이나 항문에 물체를 삽입하는 것도 포함된다. 강간에는 부부강간과 항문 강간/소도미가 포함된다. ¹⁶ 이를 시도하는 행위는 강간미수라고 한다. 둘 이상의 가해자가 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집단강간이라고 한다.
성학대 (Sexual abuse)	'성학대'라는 용어는 강제적으로 또는 불평등하거나 강압적인 상황 하에서 성적인 속성의 신체적 침해를 실제로 하거나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¹⁷
성폭행 (Sexual assault)	삽입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삽입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의미한다. 강간미수, 원하지 않는 키스, 더듬기, 성기 또는 엉덩이를 만지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¹⁸
성착취 (Sexual exploitation)	'성착취'는 취약한 지위, 권력의 차이 또는 신뢰를 이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실제로 착취하거나 착취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하며, 성착취를 통해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일부 강제 또는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¹⁹
성적 착취 및 학대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EA)	유엔, NGO,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직원이 피해 인구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를 가리키며 인도주의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SEA(Sexual exploitation and abuse)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²⁰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의 진전, 성적 호의 요청,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또는 육체적 행위를 말한다. ²¹
성폭력 (Sexual violence)	이 지침에서 성폭력은 적어도 강간/강간 미수, 성적 학대 및 착취를 포함한다. 성폭력이란 "모든 환경(집과 직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에서 희생자가 누구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강요, 위해 협박, 신체적 힘을 사용한 모든 성적 행위, 성적 행위를 하려는 시도, 원치 않는 성적 발언이나 성적 관계의 진전, 다른 사람의 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²² 성폭력에는 강간, 성 노예/인신매매, 강제 임신, 성희롱, 성적 착취 및 학대, 강제 낙태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	분쟁 피해를 입은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을 다루었던 최초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성폭력에 대한 노출에 중점을 두고 주로 난민 환경에 기반하고 있었다. 1996년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가 UNHCR과 공동으로 탄자니아 난민 캠프에서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은 해당 환경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성폭력이 아닌 다른 유형의 폭력에도 대처하겠다는 프로젝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가정 폭력과 유해한 전통적 관행이 포함된다. IRC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기에 '젠더기반폭력'은 세계 곳곳의 남성 지배적인 문화에서 여성 및 여아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다양한 유형의 학대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로 국제적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2005년에 IASC는 'GBV'라는 용어를 IASC의 인도적 지원 환경의 젠더기반폭력 개입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Settings)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이 지침은 성폭력은 GBV의 한 가지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 세계의 여러 지침과 자료에서 SGBV라는 용어 사용되고 있다. UNHCR에서는 여성, 남성, 여아 및 남아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UNHCR은 피해자/생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성폭력의 범죄적 특성과 그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에 대처하는 보호 개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SGBV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한다."고 표명했다(Action against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n updated strategy, UNHCR, 2011, <www.unhcr.org/4e1d5aba9.pdf>).

(계속)

GBV의 유형	정의/설명
남아선호 (Son preference)	“남아선호는 여러 관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와 태도를 가리키며, 주로 딸에 대한 방치를 수반하는 남자아이에 대한 선호를 공통적인 특징으로 한다. 이는 여아는 출생과 동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남아 선호로 인해 부모 양육의 양과 질, 여아의 발전을 위한 투자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고, 특히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극심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딸에 대한 방치가 일반적이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남아선호는 선택적 낙태 또는 여영아살해로 이어질 수 있다.” ²³
휴먼 트래피킹 (Trafficking in Persons)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강제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을 사용,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이나 취약한 지위의 남용,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수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 착취에는 성매매나 기타 형태의 성착취, 강제 노동 및 서비스, 노예 및 노예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 적출 등이 포함된다.” ²⁴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VAWG)	<p>1993년 유엔 여성폭력철폐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공적인 삶 또는 사적인 삶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피해나 고통을 끼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젠더기반폭력을 가리키며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위협, 강요, 자유의 자의적인 박탈이 포함된다 (제1조).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p> <p>(1) 구타, 가정에서 여아에 대한 성학대, 지참금 관련 폭력, 부부강간, 여성 할레 및 기타 여성에게 유해한 전통적인 관습, 비(非)배우자에 의한 폭력 및 착취와 관련된 폭력을 포함하여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p> <p>(2) 직장, 교육 기관 등에서의 강간, 성학대, 성희롱 및 위협, 여성 인신매매 및 강제 성매매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p> <p>(3)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제2조)”²⁵</p> <p>2006년에 발표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사무총장의 심층 보고서(The Secretary General's In-Depth Study on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18세 미만의 여아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의 여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⁶</p>

- Dominguez, N., and Perry. 2002. ‘Child Sexual Abuse’, Encyclopedia of Crime and Punishment, Vol 1.
- UN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 2011. ‘Analytical and Conceptual Framing of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www.stoprapenow.org/uploads/advocacyresources/1321456915.pdf>
- GBVIMS User Guide. 2010. <http://www.gbvim.com>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4 (updated). ‘Fact Sheet No. 239: Violence against Women’, <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39/en>
- UNFPA. 2012. Managing Gender-Based Violence Programmes in Emergencies: E-Learning companion guide, <www.unfpa.org/publications/managing-gender-based-violence-programmes-emergencies>
- National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referenced in <http://www.uncfsp.org/projects/userfiles/File/DCE-STOP_NOW/NCADV_Economic_Abuse_Fact_Sheet.pdf>
- GBVIMS User Guide. 2010. <http://www.gbvim.com>
- WHO. 2014 (updated). ‘Fact Sheet No. 241: Female Genital Mutilation’, <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41/en>. GBVIMS User Guide. 2010. <http://www.gbvim.com>
- OHCHR, UNFPA, UNICEF, UN Women and WHO. 2011. Preventing Gender-Based Sex Selection: An inter-agency statement, <http://whqlibdoc.who.int/publications/2011/9789241501460_eng.pdf>
- UNICEF. Webpage on Child Marriage, <www.unicef.org/protection/57929_58008.html>
- UNHCR. 2003.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Refugees, Return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www.unhcr.org/3f696bcc4.html>
- OHCHR. 1995. ‘Fact Sheet No. 23: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23en.pdf>
-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2006. ‘Rights of the Child’, <www.unicef.org/violencestudy/reports/SG_violencestudy_en.pdf>
- GBVIMS User Guide. 2010. <http://www.gbvim.com>
- WHO.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world_report/en>
- GBVIMS User Guide. 2010. <http://www.gbvim.com>
- United Nations Secretariat. 2003. ‘Secretary-General’s Bulletin on 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for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T/SGB/2003/13, <www.pseataaskforce.org/uploads/tools/1327932869.pdf>
- GBVIMS User Guide. 2010. <http://www.gbvim.com>
- United Nations Secretariat. 2003. ‘Secretary-General’s Bulletin on 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for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T/SGB/2003/13, <www.pseataaskforce.org/uploads/tools/1327932869.pdf>
- 자세한 정보는 <http://www.pseataaskforce.org/en/overview>를 참조한다.
- US Department of State. n.d. Sexual Harassment Policy, <www.state.gov/s/ocr/c14800.htm>
- WHO.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world_report/en>
- OHCHR. 1995. ‘Fact Sheet No. 23: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23en.pdf>
- United Nations. 2000.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www.osce.org/odhr/19223?download=true>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cember 1993.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www.un.org/documents/ga/res/48/a48r104.htm>
-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2006. The Secretary-General’s In-Depth Study on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www.un.org/womenwatch/daw/vaw/SGstudyvaw.htm>

기타 주요 용어

용어	정의/설명
옹호 (Advocacy)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보를 고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옹호에는 비슷한 문제를 공유한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도, 권력 관계, 사회적 관계, 제도적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 의사결정권자와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을 이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¹
현황 파악 (Assessment)	현황 파악은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어진 위치/지역의 관심 인구(필요, 역량, 자원 등), 기반시설의 상태,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의 수집, 업데이트, 분석”이 포함된다. ²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NGO와 유엔 기구는 커뮤니티의 필요와 조정 작업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개입을 개발한다. ³
아동 또는 미성년자 (Child or Minor)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1조는 아동을 “해당 아동법규에 의하여 미리 성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⁴ 협약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인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국가의 성년 기준이 18세보다 낮은 경우 이를 재검토하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미성년자는 선택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특히 성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를 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 ⁵
무장세력 또는 무장단체에 연루된 아동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규모에 상관없이 무장세력 또는 무장단체에 의해 포섭되거나 이용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전투원, 요리사, 집꾼, 배달원, 스파이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아동, 남아, 여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적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있거나 가담했던 아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⁶
법과 접촉한 아동 (Children in contact with the law)	사법 체계에 접촉한 모든 아동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범죄 혐의, 기소 또는 유죄 판결로 인해) 법을 위반한 아동 및 아동 생존자 또는 증인이 포함된다. ⁷
아동 노동 (Child labour)	‘아동 노동’이라는 용어는 주로 아동의 어린 시절, 잠재력과 존엄성을 박탈하고 육체적 및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작업으로 정의된다. 아동 노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위험하며 아동에게 해를 끼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 출석할 기회의 박탈 학교를 일찍 떠나도록 종용 학교 출석할 경우 매우 길고 고된 노동을 부과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노동은 노예화, 가족과의 이산, 심각한 위험 및 질병에 노출, 대도시의 길거리에서 자급자족하도록 방치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특정 형태의 ‘노동’이 ‘아동 노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동의 연령,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과 시간, 수행 조건 및 개별 국가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르다. ⁸
비밀 보장 (Confidentiality)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전문직과 관련된 윤리 원칙을 의미한다. 비밀 보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의 명시적인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고객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모든 서면 정보는 잠겨진 파일로 보관되며 대상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만 사례 파일에 기록된다. 학대에 관한 비밀 보장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례 관련 세부 정보를 가족이나 친구 또는 학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동료와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를 표시한 아동이나 의뢰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에 한계가 있다. ⁹
동의/사전동의 (Consent/ Informed consent)	특정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다음 승인 또는 동의하는 것을 가리킨다. ¹⁰ 자유/사전동의는 행위의 사실, 의미, 향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사전동의를 위해서는 동의를 하는 시점에 그 행위와 관련된 각 자가 모든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며 그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개인은 해당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강요받지 않을 (즉, 강압이나 위협에 근거하여 설득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아동은 어떠한 행위가 미칠 영향을 예상할 능력이냐 경험이 없고 거부할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전동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지 장애, 신체, 감각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해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재해 (Disaster)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 또는 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광범위한 인적, 물질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초래하는 커뮤니티 또는 사회 기능의 심각한 혼란을 의미한다. ¹¹ 재해는 서서히 발생할 수도 있고(예: 가뭄, 사회경제적 쇠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다(예: 지진, 홍수, 갑작스러운 분쟁 상황). ¹²
비상사태 (Emergency)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다. 관리를 위한 용어로서 특별한 조치에 관한 결정 및 후속 조치를 필요로 한다. ¹³ ‘비상사태’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선언’ 또는 시행하거나 어떤 시점이 되면 해제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정의되고, 인식되는 임계점이 필요하며, 참여 규칙과 출구 전략을 시사한다. ¹⁴
여성의 역량강화 (Empowerment of women)	여성의 역량강화는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과 통제권을 가지는 것에 관심을 둔다. 여기에는 인식제고, 자신감 향상, 선택권 확대, 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통제력 증대, 젠더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구조 및 제도를 변화시키는 행동이 포함된다. ¹⁵

(계속)

용어	정의/설명
젠더 (Gender)	남자다움, 여자다움, 여성과 남성 및 여아와 남아 간 관계, 여성 간 관계나 남성 간 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특성과 기회를 가리킨다. 이러한 특성, 기회,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다르며 변화할 수 있다. 젠더는 주어진 상황에서 남성 또는 여성에게 기대되거나 허용되거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 등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여된 책임, 수행하는 활동,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 의사결정 기회에 대해 여성과 남성 간 차이와 불평등이 존재한다. 젠더는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일부이다. ¹⁶
젠더 분리 데이터 (Gender-disaggregated data)	민족, 계급, 신분, 연령, 위치 등 남성과 여성의 모든 기능과 관련된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하는 것이다. ¹⁷
젠더 평등 (Gender equality)	여성과 남성 및 여아와 남아 간의 평등한 권리, 책임, 기회를 가리킨다. 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권리, 책임, 기회가 그들이 남성으로 태어났는지 여성으로 태어났는지와의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 집단의 다양성을 인식하여 여성과 남성의 관심, 필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 평등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고려하고 남성이 완전히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문제이다. 남녀평등은 인권 문제와 지속 가능한 사람 중심 개발의 전제 조건이자 지표로 볼 수 있다. ¹⁸
젠더 형평 (Gender equity)	여성과 남성 간 각자의 필요에 따른 혜택과 책임의 분배에 있어서의 공정함과 정당함을 의미한다. 젠더 평등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로 여겨지며 권리, 혜택, 의무, 기회의 측면에서 동등한 대우(또는 다르지만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우)를 포함할 수 있다. ¹⁹
젠더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조직의 정책과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젠더의 역량과 책무성을 구축하여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젠더 평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근본적인 조직적 변화에 기여한다. ²⁰ 이는 모든 정책 개발, 연구, 옹호, 개발, 규범 및 기준의 이행 및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에서 젠더 관점(여성과 남성이 무엇을 하며 어떤 자원과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가)을 보다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²¹
젠더 역할 (Gender roles)	문화의 구성원이 어떻게 생물학적 성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행동적 기대 또는 신념 및 주어진 문화에서 남성, 여성, 기타 젠더의 별도의 역할과 책임을 가리킨다. ²² 젠더 역할은 다양한 사회, 문화, 계급, 연령, 역사적 시기에 따라 다르다. 젠더에 따른 역할 및 책임은 가정의 구조, 자원에 대한 접근, 세계 경제의 특정 영향, 생태적 조건과 같은 기타 지역 관련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²³
젠더 관계 (Gender relations)	문화 또는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의 권리, 책임,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²⁴
의무 신고 (Mandatory reporting)	도움을 제공하는 직업군(예: 교사, 사회복지사, 보건 담당 직원 등)에서 일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실제 아동 학대 또는 아동 학대 혐의(예: 신체적, 성적, 방치, 감정적 학대 및 심리적 학대, 불법 성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및 정책을 말한다. ²⁵ 의무 신고는 어떠한 사람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가 피해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적 착취 및 학대에 관한 소식을 듣거나 신고를 받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도 의무 신고를 할 책임이 있다.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MHPSS)	심리사회적 웰빙을 보호하거나 증진하고 정신 장애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을 의미한다. ²⁶ MHPSS 접근법은 상황에 관여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보건 부문, 교육, 커뮤니티 서비스, 보호 및 기타 부문의 지원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 ²⁷
자연재해 (Natural disaster)	어떤 지역의 사회, 경제, 기반시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위험요인(예: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쓰나미, 홍수,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인구 취약성과 지역의 대응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자연재해는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 또는 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광범위한 인적, 물질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초래하여 커뮤니티 또는 사회의 기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²⁸ 2005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구호에서 개발까지(Relief to Development)'에서 '자연재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는데 이는 자연적 위험요인의 결과 발생한 재해가 전적으로 '자연'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피할 수 없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신 이러한 재해는 개인과 사회가 자연적 위험요인에서 유래된 위험과 관련되는 방식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 ²⁹
고아 (Orphan)	UNICEF와 글로벌 협력기관은 고아를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부모 모두를 잃은 아동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많은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고아의 개념과 다르다. 이들 국가에서 고아란 양쪽 부모 모두를 잃은 아동을 말한다. UNICEF와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AIDS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부모가 사망하여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부모 없이 성장하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1990년대 중반에 고아에 대해 더 광범위한 정의를 채택했다. 한쪽 부모만 잃은 아동을 나타내는 '편친 고아(single orphan)'와 양쪽 부모를 모두 잃은 '양친 고아(double orphan)'라는 용어는 이러한 심각해지는 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³⁰
가해자 (Perpetrator)	상대의 의지에 반하여 상대에게 폭력 또는 기타 학대를 직접 가하거나 이를 돕는 사람, 집단 또는 기관을 가리킨다.

(계속)

용어	정의/설명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Bulletin on 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ST/SGB/2003/13)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행정명령에서 강조한 것처럼 PSEA는 유엔, NGO, 정부간 기구(IGO)의 직원이 피해 인구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적 착취 및 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유지 행위자의 책임과 특히 관련이 있다. ³¹
합리적 편의 (Reasonable accommodation)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지나치거나 과도한 부담을 가하지 않으면서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경 및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³²
난민 (Refugee)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³³
이산 아동 (Separated child)	양쪽 부모 또는 법이나 관습에 따른 주 양육자와 헤어진 아동으로 다른 친척과는 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다른 성인 가족 구성원을 동반한 아동이 포함될 수 있다. ³⁴
생존자 (Survivor) ('피해자' 참조)	생존자란 젠더기반폭력을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와 ‘생존자’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피해자’는 법률 및 의료 부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 ‘생존자’라는 회복력이 있음을 암시하므로 일반적으로 심리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선호하는 용어다. ³⁵
미동반 아동 (Unaccompanied child)	양쪽 부모와 기타 친척과 헤어져 법률 또는 관습에 따라 돌볼 책임이 있는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³⁶ 이는 아동이 성인의 보호를 전혀 받지 않거나 혈연 관계가 없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보호받거나 이웃, 18세 미만의 다른 아동, 낯선 사람과 같은 일반적인 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³⁷
보편적 설계 (Universal design)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수정하거나 특수한 설계를 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설계”를 의미한다. ‘보편적 설계’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특정 집단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조 장치가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³⁸
피해자 (Victim) ('생존자' 참조)	피해자란 젠더기반폭력을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 이 용어는 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한다. ‘피해자’와 ‘생존자’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피해자’는 법률 및 의료 부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 ‘생존자’는 회복력을 암시하므로 일반적으로 심리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선호하는 용어다. ³⁹

1.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n.d. GBV Emergency Response and Preparedness: Participant handbook, <http://cpwg.net/wp-content/uploads/sites/2/2013/08/IRC-2011-GBV_ERP_Participant_Handbook_-_REVISED.pdf>
2.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12. Operational Guidance for Coordinated Assessments in Humanitarian Crises, <https://docs.unocha.org/sites/dms/Documents/ops_guidance_finalversion2012.pdf>
3.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n.d. GBV Emergency Response and Preparedness: Participant handbook, <http://cpwg.net/wp-content/uploads/sites/2/2013/08/IRC-2011-GBV_ERP_Participant_Handbook_-_REVISED.pdf>
4. **OHCHR**. 1990.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5. See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2.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www.unicef.org/pacificislands/IRC_CCSGuide_FullGuide_lowres.pdf>
6. **The Paris Principles: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and Armed Groups**. 2007. <www.unicef.org/emerg/files/ParisPrinciples310107English.pdf>
7.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6. Child Protection Information Sheet: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pp. 19–20, <www.unicef.org/publications/files/Child_Protection_Information_Sheets.pdf>
8.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n.d. 'What Is Child Labour?', <www.ilo.org/ipec/facts/lang-en/index.htm>
9. See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2.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www.unicef.org/pacificislands/IRC_CCSGuide_FullGuide_lowres.pdf>
10. **UNFPA**. 2012. Managing Gender-Based Violence Programmes in Emergencies: E-Learning companion guide, <www.unfpa.org/publications/managing-gender-based-violence-programmes-emergencies>
11. ISDR, cited in **WHO**, n.d. 'Humanitarian Health Action: Definitions', <www.who.int/hac/about/definitions/en/>
12. WFP, cited in **WHO**, n.d. 'Humanitarian Health Action: Definitions', <www.who.int/hac/about/definitions/en/>
13. Oxford Pocket Dictionary. 1992. cited in **WHO**, n.d. 'Humanitarian Health Action: Definitions', <www.who.int/hac/about/definitions/en/>
14. **WHO**. n.d. 'Humanitarian Health Action: Definitions', <www.who.int/hac/about/definitions/en/>

15. **UN Women**. 2001. 'Important Concepts Underlying Gender Mainstreaming', <www.un.org/womenwatch/osagi/pdf/factsheet2.pdf>
16. **UN Women**. 2001.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www.un.org/womenwatch/osagi/pdf/factsheet1.pdf>
17. **Oxfam**. 2013. 'Minimum Standards for Gender in Emergency', <<https://www.oxfam.org/en/research/minimum-standards-gender-emergencies>>
18. **UN Women**. 2001.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www.un.org/womenwatch/osagi/pdf/factsheet1.pdf>
19. Taken from **WHO**. n.d.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www.who.int/gender/mainstreaming/strategy/en/> and **Oxfam**. 2013. 'Minimum Standards for Gender in Emergency', <<https://www.oxfam.org/en/research/minimum-standards-gender-emergencies>>
20. **Oxfam**. 2013. 'Minimum Standards for Gender in Emergency', <<https://www.oxfam.org/en/research/minimum-standards-gender-emergencies>>
21. **UN Women**. 2001. 'Important Concepts Underlying Gender Mainstreaming', <www.un.org/womenwatch/osagi/pdf/factsheet2.pdf>
22. 자세한 정보는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7. 'Early Gender Socialization', <www.unicef.org/earlychildhood/index_40749.html>를 참조한다.
23. **FAO**. 1997. 'Gender: The key to sustainable and food security', cited in **FAO**. 2004. 'Fact Sheet: What is gender?', <www.fao.org/docrep/007/y5608e/y5608e01.htm>
24. **Bravo-Baumann**. 2000. 'Capitalisation of Experiences on the Contribution of Livestock Projects to Gender Issues', cited in **FAO**. 2004. 'Fact Sheet: What is gender?', <www.fao.org/docrep/007/y5608e/y5608e01.htm>
25.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2. Caring for Child Survivors of Sexual Abuse, <www.unicef.org/pacificislands/IRC_CCSGuide_FullGuide_lowres.pdf>
26.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07.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www.who.int/mental_health/emergencies/guidelines_iasc_mental_health_psychosocial_june_2007.pdf>
27. **UNHCR**. 2013. Operational Guidance: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programming for refugee operations, <www.unhcr.org/525f94479.pdf>
28. Taken from **ReliefWeb**. 2008. Glossary of Humanitarian Terms, <www.who.int/hac/about/reliefweb-aug2008.pdf?ua=1>, and

1.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n.d. GBV Emergency Response and Preparedness: Participant handbook, <http://cpwg.net/wp-content/uploads/sites/2/2013/08/IRC-2011-GBV_ERP_Participant_Handbook_-_REVISED.pdf>
29. **WHO**, n.d. 'Humanitarian Health Action: Definitions', <www.who.int/hac/about/definitions/en/>
30. 자세한 정보는 <www.unicef.org/media/media_45279.html>를 참조한다.
31. 자세한 정보는 **United Nations Secretariat**. 2003. 'Secretary-General's Bulletin on 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T/SGB/2003/13, <www.pseataforce.org/uploads/tools/1327932869.pdf>를 참조한다.
3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nex 1, <www.refworld.org/docid/4680cd212.html>
33. **United Nations Refugee Convention**. 1951. Article 1, <www.unhcr.org/pages/49da0e466.html>
34. **UNHCR**. 2008. UNHCR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http://cpwg.net/wp-content/uploads/sites/2/2013/08/UNHCR-Guidelines-on-Determining-the-Best-Interest-of-the-Child.pdf>>
35. **UNFPA**. 2012. Managing Gender-Based Violence Programmes in Emergencies: E-Learning companion guide, <www.unfpa.org/publications/managing-gender-based-violence-programmes-emergencies>
36. **UNHCR**. 2008. UNHCR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http://cpwg.net/wp-content/uploads/sites/2/2013/08/UNHCR-Guidelines-on-Determining-the-Best-Interest-of-the-Child.pdf>>
37. **Save the Children, UNHCR, UNICEF, UNFPA, and NCF**. 2013. The Inter-Agency Emergency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Gender-Based Violence and Child Protection in Jordan', <<http://resourcecentre.savethechildren.se/library/inter-agency-emergency-standard-operating-procedures-prevention-and-response-gender-based>>
3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nex 1, <www.refworld.org/docid/4680cd212.html>
39. **UNFPA**. 2012. Managing Gender-Based Violence Programmes in Emergencies: E-Learning companion guide, <www.unfpa.org/publications/managing-gender-based-violence-programmes-emergencies>

젠더기반폭력 범위에 대한 통계

여러 국가	
복합적인 인도적 지원 환경 내 여성 난민	2014년에 발표된 19건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분쟁 피해를 입은 14개국의 여성 난민 및 국내 이재민(IDP)에 대한 성폭력 발생률이 21.4%로 파악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복합적인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난민 또는 여성 이재민 5명당 대략 1명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성폭력) 공개와 관련된 알려진 여러 장벽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률은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¹
아동 결혼 또는 강제 결혼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에 따르면 현재의 아동 혼인율이 지속된다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억 4천만 명 이상의 여아가 아동 신부가 될 것이다. 이들 중 5천만 명은 15세 미만이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은 개발도상국에서 15~19세 여아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²
성적 착취 및 학대	유엔난민기구(UN Refugee Agency)와 영국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UK)이 2002년에 발간한 보고서에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있는 40개 기구의 인도적 지원 활동가와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적 착취 및 학대 혐의가 자세히 기술돼 있다. ³
아프리카	
중양아프리카 공화국	<p>생존자를 위한 법적 조치, 소득 창출 및 옹호 활동을 실시하는 NGO인 상처받은 가정을 위한 연민 및 개발 기구(L'Organisation pour la Compassion et le Développement des Familles en Détresse)는 (2005년 현재) 여성 강간 800건, 분쟁 관련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동 16명, 남성 강간 140건을 등록했다.⁴</p> <p>중양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방구이(Bangui)에 있는 IRC 여성센터는 2013년에 불과 3개월 만에 극심한 폭력 및 학대를 신고한 여성 및 여아 238명을 목격했다. 82%의 여성 및 여아가 강간당했다고 보고했으며 73%는 집단 강간을 당했다. 최근 IRC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및 여아는 일반적인 폭력과 심해지는 가정 폭력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재미주 현장에서 무장한 남성에 의한 강간에 특히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⁵</p> <p>유엔 협력기관은 2013년에 분쟁 관련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을 최소 146건 이상 기록했다.⁶</p>
코트디부아르	<p>유엔은 62건의 집단 강간 사건을 포함하여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381건의 성폭력 사건을 확인했다. 강간 생존자의 60% 이상이 만 10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미성년자였으며 25%는 14개월에서 10세 사이의 아동이었다. 적어도 10명 이상의 여성 및 여아가 강간 이후에 살해당하거나 성폭행 중 당한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도시 지역에서는 치안 불안으로 인해 소형 무기와 가벼운 흉기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63건의 강간 사건은 무장 강도 사건 중에 일어났다. 2013년 유엔에서 조사한 총 24건의 성폭력 사건에는 코트디부아르공화국 군대, 경찰, 헌병대, 전직 전투원이 포함돼 있었다.⁷</p> <p>2008년에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15세 이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32.9%였으며 이러한 성폭력의 상당수(24%)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것이었고 5.9%는 친밀한 파트너와 다른 남성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소수의 여성(0.3%)만이 무장한 전투원이 저지른 성폭력을 보고했다. 파트너가 아닌 사람에 의한 신고된 성폭력 발생률은 위기 후가 위기 중 또는 위기 전보다 낮았다. 반면에 파트너에 의한 성폭력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남성의 5.9%가 파트너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이거나 강요된 성관계를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⁸</p>
콩고민주공화국	<p>2013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UNICEF와 협력기관은 12,247명의 GBV 생존자를 지원했다. 약 30%에 해당하는 3,827명은 아동이었으며 그중 3,748명이 여아였고 79명은 남아였다.⁹</p> <p>수천 명의 콩고 출신 여성 및 여아는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총 등이 사용된 잔인한 강간으로부터 살아 남았지만 질, 방광, 직장의 조직 손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남키부(South Kivu) 지역의 강간 생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들 중 91%가 하나 이상의 강간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¹⁰</p> <p>일부 통계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의학적 치료를 원하는 생존자 중 4~10%가 남성 및 남아이다.¹¹</p> <p>2013년 한해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동부지역에서 15,352건의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사건을 기록했다. 또한 2013년에 유엔콩고안정화임무단(United Nations Organization Stabilization Mission in DRC, MONUSCO)은 분쟁 당사자가 저지른 860건의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확인했다. MONUSCO가 확인한 사건 중 71%는 비정부 무장단체의 소행이었으며 29%는 국가안보군과 경찰의 소행이었다. 2013년에 발생하고 기록된 성폭력 사건의 거의 절반이 여아 강간이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무력분쟁 지역에서 525건의 강제 결혼 사건을 기록했다.¹²</p> <p>2012년 손케 젠더 저스티스(Sonke Gender Justice)가 1,500명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IMAGES 연구에 따르면 여성 중 22%가 분쟁과 관련하여 강제 성관계나 강간을 당했으며 27%는 분쟁 관련 강간을 강제로 목격했다고 한다. 전투원에 의해 강간당한 여성은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자주 거절당했다고 보고했다. 10%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거나 강간을 저지르도록 강요받았으며 17%는 분쟁 관련 강간을 목격했다. 또한 45%의 여성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49%는 친밀한 파트너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다.¹³</p>

(계속)

아프리카(계속)	
라이베리아	2003년에 시에라리온에 있는 캠프에 거주하는 라이베리아 난민 여성 388명 중 74%가 이재이주 전에 성적으로 학대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55%는 이재이주 도중에 성폭력을 당했다. ¹⁴
	2008년 라이베리아에서 1,66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 기반 조사에 따르면 남성 전투원의 32.6%가 성폭력에 노출됐으며 이들 중 16.5%는 강제적으로 성노예가 됐다. ¹⁵
	2004/2005년의 WHO 조사에 따르면 연령, 결혼 상태 및 종교와 관계없이 인터뷰한 사람 중 90% 이상이 전쟁 중 또는 전쟁 이후에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성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라이베리아에서 강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에는 커뮤니티와 가족에 의한 사회적 낙인, 높은 이혼율(25.8%), 원치 않는 임신(15.1%)이 포함된다. ¹⁶
	몬트세라도(Montserrado)와 님바(Nimba)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별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연구에 따르면 이전 18개월 동안 몬트세라도 여성의 54.1%, 님바 여성의 55.8%가 비(非) 성적인 가정 학대를 당했다. 몬트세라도 여성의 19.4%와 님바 여성의 26.0%는 혼외강간을 당했으며 결혼했거나 별거 중인 몬트세라도 여성의 72.3%와 님바 여성의 73.8%가 부부강간을 당했다고 밝혔다. 보고된 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남편이거나 남자친구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두 카운티 모두 낯선 사람에 의한 강간은 2% 이하인 것으로 보고됐다. ¹⁷
말리	2012년 기관 간 현황 파악 결과에 따르면 말리의 이재민 여아는 종종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래적인/착취적인 성관계에 연루된다.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여아가 시장이나 거리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됐고, 이로 인해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위험도 증가했다. 환경 악화와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여아는 물과 조리용 연료를 구하기 위해 더 먼 거리를 걸어야 하며, 그에 따라 GBV 위험도 증가했다. ¹⁸
	2013년 6월에 17세 미만의 이재민 여아 28명이 모프티(Mopti)에서 성적 착취 및 성적 노예 피해자가 됐으며, 분쟁으로 인해 이재이주한 여성 및 여아도 성매매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2013년에 보고된 강간 사건의 25%는 미성년자의 강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3분의 1 이상은 가해자가 한 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됐다. 생존자 대부분은 경제 및 사회적 배경이 취약한 여성 및 여아였다. ¹⁹
	말리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 할례가 시행되지 않는 북부 출신 이재이주 가정의 딸들이 FGM/C가 흔한 남부의 수용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 여아 중 다수가 FGM/C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북부 출신 가정은 자기 딸에게 FGM/C를 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²⁰
르완다	르완다의 1994년 집단학살에서 투치(Tutsi)족 여성의 대다수는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중 2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강간 생존자로 추정된다. ²¹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에서 분쟁으로 인해 국내 이재민이 된 여성 중 약 5만~6만 4천 명이 전쟁 관련 폭행 경험을 보고했다. (전체 국내 이재민(IDP) 인구가 100만~130만 명이라는 통계에서 여성은 55%를 차지했다.) ²²
	1998년 시에라리온의 가정 폭력에 대한 조사에서 참여자 중 66.7%는 친밀한 파트너에게 구타당했다고 밝혔다. ²³
	1999년의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시에라리온 성매매 여성의 37%가 15세 미만이었으며 80% 이상이 미동반 아들이거나 이재민 아들이었다. ²⁴
소말리아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에 따르면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Mogadishu)에서 2013년 상반기에 약 800건의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사건이 보고됐다. ²⁵ 2013년에 소말리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성폭행 생존자의 최대 35%는 만 18세 미만의 여아였으며 이들 중 16%는 만 12세 미만이었다. ²⁶ 유엔 사무총장의 분쟁 중 성폭력에 관한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모가디슈 및 인근 지역에서 신고된 약 1,700건의 강간 사건 중 약 3분에 1이 아동과 관련돼 있었다. ²⁷
	2011년의 현황 파악에서 다답(Dadaab) 난민 캠프의 소말리아 청소년기 여아는 언어 및 신체적 희롱, 기본적 필요 충족과 관련된 성적 착취 및 학대, 강간 등의 폭력을 공개적으로 여러 가해자들에게 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아는 급수장과 같이 부족한 서비스 및 자원에 접근하거나 캠프 밖에서 장작을 모으는 동안에 폭력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된다. ²⁸
남수단	UNMISS는 2013년 12월 15일 이전에 73건의 근거있는 분쟁 관련 성폭력 혐의를 기록했다. 73건 중 42건은 납치였으며 그중 최소 3건은 강제 결혼으로 이어졌다. 22건은 강간 사건이었으며 기타 보고된 위반사건 중 3건의 집단 강간, 강제 낙태, 성적 모욕이 포함돼 있었다. SPLA 구성원은 73건 중 21건에 대한 혐의가 있었으며 1건은 국가 공무원, 경찰, 군 경찰에 의해 자행됐다고 보고됐다. 총 47건의 사건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장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됐다.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은 보고된 사건 중 4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²⁹
우간다	분쟁 후 우간다 북부에서 인터뷰한 장애인 여성 64명 중 3분의 1은 GBV를 당했다고 보고했으며 일부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으로 아이를 낳았다. ³⁰

(계속)

유럽/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2000년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에서 조사한 아제르바이잔 여성 중 25%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사람은 아제르바이잔의 국내 이재민이었으며 이들 중 23%는 남편에게 구타당했다고 말했다. ³¹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3년까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전쟁 및 집단학살 범죄 등록을 위한 제니카 센터(Zenica Centre for the registration of War and Genocide Crime)는 전쟁 관련 강간 사건 4만 건을 문서화했다. ³² 구 유고슬라비아의 무력분쟁에서 사라예보 주 집단 수용소 피해자 6,000명 중 5,000명이 남성이었으며 이들 중 80%가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보고됐다. ³³
코소보	2만 3천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여성이 세르비아와의 전쟁이 극에 달했던 1998년 8월에서 1999년 8월 사이에 강간당했다. ³⁴
중남미와 카리브해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는 정부군과 비정부 무장세력이 주둔하는 도시에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489,687명의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 ³⁵ 콜롬비아 검찰청은 2012~2013년 사이에 무력분쟁 상황에서 일어난 86건의 성폭력 사건(희생자 154명)을 조사하고 보고했다. 유엔 협력기관은 불법 무장단체가 성 노예, 강제 임신, 강제 낙태 및 강제 성매매 목적을 위해 강간, 집단 강간, 여성 및 청소년기 여아와 청소년기 남아 포섭 등 다양한 위법 행위 및 학대를 자행했다고 보고했다.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에 관한 유엔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여성 및 여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다. 2013년 11월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배상을 담당한 특별행정부에서는 3,525명의 성폭력 생존자(이들 중 2,902명은 여성)를 등록했다. ³⁶ 콜롬비아에서는 생존자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1년 GBV 정보관리시스템(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을 시작해 7개 지역에서 GBV 사건 데이터를 수집했다. 2014년 중반까지 GBVIMS에 3,499명의 여성(92.6%는 18세 이상)과 437명의 남성(91.8%는 18세 이상)이 기록됐으며 그중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 ³⁷
니카라과	1995년 분쟁 이후 니카라과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50%는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고 30%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³⁸ 1998년 허리케인 미치 이후 허리케인 생존자 여성의 27%와 남성 21%가 허리케인 발생 이후 여성에 대한 구타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³⁹
아시아·태평양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한 가구 조사(2008)에서 87.2%의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한 가지 유형의 폭력을 당했으며 62%는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⁴⁰
미얀마	인권문서화유닛(Human Rights Documentation Unit)과 버마여성연합(Burmese Women's Union)이 2000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 40,000명으로 추산되는 미얀마 여성이 매년 인신매매를 통해 태국의 공장과 사창가로 유입되거나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⁴¹ 가정 폭력 및 성폭력이 2004년 인도양 쓰나미의 여파로 증가했다는 보고가 많았다. 한 NGO는 접수된 가정 폭력 사례가 세 배나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⁴²
파키스탄	2011년 홍수 이후 파키스탄에서는 조사 대상 커뮤니티의 52%가 여성 및 여아의 사생활과 안전이 주요 우려 사항이라고 응답했다. 분쟁 피해를 입은 국내 이재민(IDPs)에 대한 2012년 보호 신속 현황 파악 중 인터뷰한 커뮤니티는 많은 여성 및 여아가 더 심해진 가정 폭력, 강제 결혼, 조혼, 교환 결혼과 기타 젠더기반폭력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⁴³
필리핀	2013년 젠더차별지수에서 5위를 기록한 필리핀에서 GBV 발생률은 국가적인 우려사항이다. 태풍 올란다의 영향이 가장 심했던 지역의 GBV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서부 비사야스(Western Visayas)의 여성 응답자 중 만 15세 이후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22%였으며 중부 비사야스(Central Visayas) 28%, 동부 비사야스(Eastern Visayas) 24%였다. ⁴⁴
중동	
팔레스타인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에 관한 199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44.7%가 결혼 생활 중 한 번 이상 구타를 당한 적이 있었다. ⁴⁵
시리아	여성미디어센터(Women's Media Center)의 포위당한 여성(Women Under Siege)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시리아의 성폭력에 관한 미확인 보고 162건 중 80%는 여성(7~46세)과 관련돼 있었고 그중 85%는 강간과 관련돼 있었다. ⁴⁶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시리아 여성 4명 중 1명은 남편에 의해 신체적 폭력을 당했거나 현재까지 겪고 있다. 2009년에는 최소 1,300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됐다. 요르단에서 조사한 여성 시리아 난민 중 조혼을 한 경우가 51.3%였다. ⁴⁷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난민 캠프인 자타리(Za'atari)에서 2013년 9월에 실시된 기관 간 안전 감사에서 응답자의 75%는 자신의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59%는 여성 및 여아의 사생활이 잘 보호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성학대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⁴⁸

1. **Vu, A., et al. 2014.** 'The Prevalence of Sexual Violence among Female Refugees in Complex Humanitarian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E Current Disasters, <www.eldis.org/go/home&id=68375&type=Document#.VQUhk410yM9www.eldis.org/go/home&id=68375&type=Document#.U7QXYvidXNw>
2. 자세한 정보는 **UN News Center**: <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4314#.U7NyVPldXNy>를 참조한다.
3.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2010.** 'Global Review of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by UN, NGO, IOM and IFRC Personnel', p. 1. **Shteir, S. 2014.** Conflict-Relate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n introductory overview to support prevention and response efforts. ACMC, <https://www.acmc.gov.au/conflict-related-sexual-and-gender-based-violence-paper-launched-by-vcdf-at-civil-military-leaders-workshop>
4. **IRIN News, 2005.** 'Central African Republic: Unending misery of rape victims'. Bangui, <www.irinnews.org/report/55920/central-african-republic-unending-misery-of-rape-victims>
5. **UKAid. April 2014.** 'Evidence Digest: Issue 01'.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elpdesk, <https://www.uk.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09018/digest-spring-2014.pdf>
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4.**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2014/181, <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2014/181>
7.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4.**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2014/181, <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2014/181>
8. **Hossain, M., Zimmerman, C., Kiss, L., et al. 2014.** 'Men's and Women's Experiences of Violence and Traumatic Events in Rural Côte d'Ivoire before, during, and after a Period of Armed Conflict'. BMJ Open: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http://researchonline.lshtm.ac.uk/1591965/1/BMJ%20%20Open-2014-Hossain-.pdf>
9. UNICEF Country Office,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ervice Statistics, 2013.
10. **UNFPA. 2012.** Managing Gender-Based Violence Programmes in Emergencies: E-Learning companion guide, <www.unfpa.org/publications/managing-gender-based-violence-programmes-emergencies>
11. **Wood, E. J. 2006.** 'Variation in Sexual Violence during War', Politics and Society 34(3), pp. 307-341.
1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4.**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2014/181, <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2014/181>
13. **Sleigh, H., Barker, G., and Levto, R. 2014.** 'Gender Relations,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nd the Effects of Conflict on Women and Men in North Kivu, Easter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Men and Gender Equality Survey (IAGES)'. Washington, DC, and Cape Town, South Africa: Promundo-US and Sonke Gender Justice.
14. **Benton, A. 2004.** 'Prevalence of Gender-Based Violence among Liberian women in three Refugee Camps (RC)', cited in **Ward, J., et al. 2006.** Broken Bodies, Broken Dreams: Violence against women exposed. IRIN.
15. **Johnson et al. 2008.** 'Association of Combatant Status and Sexual Violence with Health and Mental Health Outcomes in Postconflict Liberia', cited in **Shteir, S. 2014.** Conflict-Relate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n introductory overview to support prevention and response efforts. ACMC, <https://www.acmc.gov.au/conflict-related-sexual-and-gender-based-violence-paper-launched-by-vcdf-at-civil-military-leaders-workshop>
16. WHO 2004/2005 report on SGBV, cited in **United Nations Common Country Assessment: Liberia**, p. 22, <www.preventionweb.net/english/professional/policies/v.php?tid=10611>
17. **Stark, L., Warner, A., Lehmann, H., Boothby, N., and Ager, A. 2013.** 'Measuring the Incidence and Report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Liberia Using the "neighborhood method"'. Conflict and Health 7(20), <www.conflictandhealth.com/content/7/1/20>
18. 플랜 말리(Plan Mali)와의 개인 커뮤니케이션, 2013년 4월
1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4.**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2014/181, <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2014/181>
20. Personal Communication from Plan Mali, April 2013.
21. **Ward, J. 2002.** If Not Now, When?: Addressing Gender-Based Violence in refugee, internally displaced, and post-conflict settings. RHRC, <http://helid.digicollection.org/en/d/Js2666e>
22. **Ward, J. 2002.** If Not Now, When?: Addressing Gender-Based Violence in refugee, internally displaced, and post-conflict settings. RHRC, <http://helid.digicollection.org/en/d/Js2666e>
23. **Ward, J. 2002.** If Not Now, When?: Addressing Gender-Based Violence in refugee, internally displaced, and post-conflict settings. RHRC, <http://helid.digicollection.org/en/d/Js2666e>
24. **Ward, J., et al. 2006.** Broken Bodies, Broken Dreams: Violence against women exposed. IRIN.
25. **United Nations News Centre. 2013.** <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5641#.U7QcnVaXQ-c>
26. UNICEF Somalia Country Office Annual Service Statistics, 2013.
2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2013.** Sexual Violence in Confli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2013/149, <http://www.un.org/sexualviolenceinconflict/key-documents/reports/>, para 61, p. 14, cited in **Shteir, S. 2014.** Conflict-Relate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n introductory overview to support prevention and response efforts. ACMC, <https://www.acmc.gov.au/conflict-related-sexual-and-gender-based-violence-paper-launched-by-vcdf-at-civil-military-leaders-workshop>
28. **UNHCR. 2011.** Rapid Inter-Agency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ssessment, Dadaab Refugee Camps and Outskirts, July-August 2011.
2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4.**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2014/181, <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2014/181>
30. **Human Rights Watch. 2010.** "As If We Weren't Human":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in northern Uganda. <www.hrw.org/reports/2010/08/24/if-we-weren-t-human>
31. **Ward, J. 2002.** If Not Now, When?: Addressing Gender-Based Violence in refugee, internally displaced, and post-conflict settings. RHRC, <http://helid.digicollection.org/en/d/Js2666e>
32. **Ward, J., et al. 2006.** Broken Bodies, Broken Dreams: Violence against women exposed. IRIN.
33. **Mudrovic, Z. 2001.**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Post-Conflict Regions: The Bosnia and Herzegovina case', cited in **UNFPA. 2002.** The Impact of Armed Conflict on Women and Girls: A consultative meeting on mainstreaming gender in areas of conflict and reconstruction, <www.unfpa.org/publications/impact-armed-conflict-women-and-girls>
34. **Ward, J., et al. 2006.** Broken Bodies, Broken Dreams: Violence against women exposed. IRIN.
35. **Oxfam. 2010.** 'First Survey on the Prevalenc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Context of the Colombian Armed Conflict 2001-2009', p. 1, cited in **Shteir, S. 2014.** Conflict-Relate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n introductory overview to support prevention and response efforts. ACMC, <https://www.acmc.gov.au/conflict-related-sexual-and-gender-based-violence-paper-launched-by-vcdf-at-civil-military-leaders-workshop>
36.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4.**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2014/181, <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2014/181>
37. **GBVIMS Colombia. 2014.** <http://gbvimscolombia.unfpa.org.co>
38. **Ward, J. 2002.** If Not Now, When?: Addressing Gender-Based Violence in refugee, internally displaced, and post-conflict settings. RHRC, <http://helid.digicollection.org/en/d/Js2666e>
39. **UNFPA. 2012.** Managing Gender-Based Violence Programmes in Emergencies: E-Learning companion guide, <www.unfpa.org/publications/managing-gender-based-violence-programmes-emergencies>
40. **de la Puente. 2014.** Final Report of the IASC GBV AoR RRT for Asia Pacific (unpublished)
41. **Ward, J. 2002.** If Not Now, When?: Addressing Gender-Based Violence in refugee, internally displaced, and post-conflict settings. RHRC, <http://helid.digicollection.org/en/d/Js2666e>
42. **UNFPA. 2012.** Managing Gender-Based Violence Programmes in Emergencies: E-Learning companion guide, <www.unfpa.org/publications/managing-gender-based-violence-programmes-emergencies>
43. MIRA Assessment Pakistan Floods (2012) and Protection Cluster Rapid Assessment Jalozai (2012), **de la Puente. 2014.** Final Report of the IASC GBV AoR RRT for Asia Pacific (unpublished)
44. **Philippines, GBV Sub-Cluster. 2014.** 'Typhoon Yolanda: Secondary data review', **de la Puente. 2014.** Final Report of the IASC GBV AoR RRT for Asia Pacific (unpublished)
45. **Khawaja, M., and Barazi, R. 2005.** 'Prevalence of Wife Beating in Jordanian Refugee Camps: Reports by men and women',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9(10), 840-841.
46. **Wolfe. 2013.** 'Syria Has a Massive Rape Crisis', <www.womenundersiegeproject.org/blog/entry/syria-has-a-massive-rape-crisis>, **Shteir, S. 2014.** Conflict-Relate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n introductory overview to support prevention and response efforts. ACMC, <https://www.acmc.gov.au/conflict-related-sexual-and-gender-based-violence-paper-launched-by-vcdf-at-civil-military-leaders-workshop>
47. **MADRE, The International Women's Human Rights Clinic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chool of Law, and 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2014.** Seeking Accountability and Demanding Change: A report on women's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before and during the conflict, <www.madre.org/uploads/misc/1402077548_SyriaCEDAWShadow%20FINAL%20ENG%205.27.14%20PDF.pdf>
48.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2014.** Three Years of Conflict and Displacement: How this crisis is impacting Syrian women and girls, <www.rescue.org/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yriaVisLOWRESFinal.pdf>

젠더기반폭력에 대처할 의무

A. 법적 의무

GBV는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국제형법, 난민법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적 의무	역할	GBV와의 관련성	주요 법률 체계*
국제법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인도적인 이유로 무력분쟁의 피해를 제한하려고 하는 전통적·관습적 규범이다. IHL은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한다.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분쟁 상황에서 무장한 비국가 행위자를 비롯한 모든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자국이 소유/통제하고 있는 영토 내의 사람과 민간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HL과 관련된 협약 및 추가 의정서는 특히 성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 없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또한 여성은 그들 고유의 보건, 위생, 심리적 필요, 엄마로서의 역할과 주로 관련된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행으로부터의 보호 •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 • 임신부 및 출산 • 가족 연결의 보존 	주요 IHL 협약에는 1907년 헤이그 규정(Hague Regulations)과 네 개의 1949년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 및 1977의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가 포함된다. 국제인도법의 강간 및 기타 유형의 성폭력(규칙 93)은 Henckaerts, J., and Doswald-Beck, L., 2006.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CRC, < https://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publication/pcustom.htm >를 참고한다.
국제형법 (International Criminal Law)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을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의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민간인에 대한 강간 및 기타 유형의 성폭력은 르완다 및 구 유고슬라비아의 임시 국제형사재판소,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활동을 통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되며(범죄의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집단 학살을 구성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조약(특히 1998년 ICC 로마조약) 및 ICC, 기타 국제형사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의 판례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역차별 없이 여성, 여아, 남성, 남아 모두의 인권과 존엄성을 강화하며 다음과 같은 국가 책임의 개념을 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유린을 예방하며 그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 • 국가는 민간 행위자에 의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다. 	GBV는 주로 생존권, 인간의 안보에 대한 권리, 건강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에 피해를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DHR)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19 및 분쟁 예방, 분쟁, 분쟁 이후 상황의 여성에 관한 일반권고 30 •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잔혹한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계속)

* 협약(Convention)은 조약(Treaty)이나 규약(Covenant)으로 불리며 여기에 서명한 정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를 의미한다. 유엔총회에서 협약을 채택하며 유엔 회원국은 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한다. 유엔은 협약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는 정부를 비난할 수 있다. 협약은 합의된 기준을 규정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Declaration)보다 강력하다.

법적 의무	역할	GBV와의 관련성	주요 법률 체계*
국제법(계속)			
국제난민법 (International Refugee Law)	(i) 박해로부터 망명하려는 사람, (ii) 관련 제도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보호할 목적의 규칙과 절차를 규정한다. 국제난민법은 부분적으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과 중복된다.	난민의 정의는 적절하게 해석 되는 경우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자행되는 강간 및 기타 유형의 젠더기반폭력(예: 지참금 관련 폭력, 강요에 의한 가족 계획, 여성 할례, 가족/가정 폭력 및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다. 망명 신청은 박해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예: 성적 지향으로 인한 박해, 강제 성매매 또는 성착취를 위한 목적의 인신매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의된 역할 등을 거부하는 개인 등)에 기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관습법 지역 법률 체계(예: 1969년 아프리카통일기구협약(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Convention), 1984년 카타르해나 선언)
지역 법률 체계			
	<p>효과적인 국가적 보호가 부재한 경우, 또는 해당 국가가 국제적 제도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와 피해 인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설명한다. 개인과 특정 집단을 보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차원보다 상세하거나 높은 차원의 기준을 제공한다. 지방 법원은 GBV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 및 처벌하며 GBV 생존자에게 보상하고 이들을 구호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 여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 헌장 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2003) 아동 권리 및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1990) 아프리카청년헌장(African Youth Charter, 2006년 7월 2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처벌 및 철폐에 관한 미주협약/벨렘 도 파라 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Punishment and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Convention of Belem do Para, 1994) 국제적인 미성년자 인신매매에 관한 미주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ffic in Minors, 1994)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미주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9)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의 이슬람아동권리규약(Covenant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Islam, 2005년 6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반인신매매협약(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05) 대호수지역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reat Lakes Region, ICGLR)의 아프리카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에 관한 캄팔라 선언(Kampala Declaration on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Africa, 2011)
국내 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연령과 배경의 남녀를 위한 비차별주의, 형평성 및 평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GBV에 대처하는 공식적·비공식 메커니즘에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보호를 포함해야 한다. 국가가 승인 또는 가입한 국제 제도의 규정을 통합해야 한다. 	<p>특히 GBV와 관련이 있는 법률 체계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인, 폭행, 근친상간, 성범죄 등을 다루는 형법 직장에서의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다루는 민법 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 및 증거와 관련된 규정 법률을 시행하고 생존자에게 보상과 배상을 제공하는 체계를 제공하는 정책 	<p>성폭력, 성착취/강제 노동/가사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 기타 유형의 가정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GBV와 관련된 국내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또는 이와 동등한 법률) 아동보호법 인권법 또는 인권위원회 가족폭력방지법 교육법 <p>다양한 유형의 GBV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국가 정책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BV에 관한 국가적 행동 계획 교육 부문 계획 교사 행동 강령 사법 부문 계획 빈곤감소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평화/진실 및 화해 전략 또는 위원회 사법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국가적 실행 계획/SCR 1325/1820

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UNSCR)

1. 여성, 평화 및 안보

2000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 평화 및 안보를 주제 의제로 채택했다. 이는 체계적인 성폭행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여 여성을 특정적으로 표적화한 심각한 공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르완다,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수년 동안 지속된 분쟁 이후의 민간인과 아동의 보호 및 무력분쟁에 관한 더 광범위한 의제에서 제기됐다. 결의안 제1325호, 제1889호 및 제2212호는 여성, 평화 및 안보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고(예: 여성의 분쟁 경험과 여성의 분쟁 예방, 평화 유지, 분쟁 해결 및 평화 구축에 대한 기여), 결의안 제1820호, 제1888호, 제1960호 및 제2106호는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지만, 분쟁 관련 성폭력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 평화 및 안보와 관련된 유엔 문서의 전체 목록은 <www.securitycouncilreport.org/un-documents/women-peace-and-security>를 참조한다.)

- **UNSCR 1325(2000)**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이는 여성,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첫 번째 결의안이며 무력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이고 독특한 영향을 인지하고 있다.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평화 과정, 분쟁 후 평화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평등하고 완전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 **UNSCR 1820(2008)**은 전술로 사용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을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및 복구와 명백히 연관 짓고 있다. 강간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또는 집단학살을 구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쟁 상황에서 강간 및 기타 유형의 성폭력 사용을 비난하고 무력분쟁 시 모든 성폭력을 즉각 중단하도록 모든 당사자에게 촉구한다.
- **UNSCR 1888(2009)**은 분쟁 관련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리더십을 부여하여 **SCR 1325**과 **1820**의 이행을 강화한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분쟁 관련 성폭력에 관한 행동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 대표를 임명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주로 기관 간 네트워크와 분쟁 중 성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행동을 통해 실행된다. 또한 법치주의(Rule of Law)/분쟁 중 성폭력에 관한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현장 기반 여성 보호 자문관(Women Protection Advisers, WPAs)이라는 직급을 만들었다.
- **UNSCR 1889(2009)**은 분쟁 후 및 재건 중 여성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결의안은 평화 절차와 평화 구축에 대한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에 대처하며 또한 UNSCR 1325의 이행을 추적할 수 있는 지표를 촉구했다.
- **UNSCR 1960(2010)**은 개입을 위한 증거 기반을 심화하기 위해 책무성 시스템을 제공하고 분쟁 관련 성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신고 제도의 수립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사회 의제에 상정된 환경에서 성폭력 패턴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혐의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목록을 연례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할 것을 위임했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2013년 10월 18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분쟁 예방,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서의 여성에 관한

기념비적인 일반 권고(General Recommendation, GR)를 채택했다. GR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게 분쟁 전, 분쟁 중, 분쟁 후에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이 모든 유형의 분쟁 및 분쟁 후에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GR은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이 직면한 문제뿐 아니라 폭력 및 사법 체계와 교육, 고용, 보건에 대한 접근성 문제 등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제 의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분쟁 피해 지역에서 강제 결혼, 강제 임신, 낙태 또는 여성 및 여아의 불임시술과 같은 젠더기반폭력을 예방, 조사, 처벌하도록 국가에 권장한다. GR은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와 인권 간의 '잘 조정되고 통합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세한 정보는 <www.ohchr.org/Documents/HRBodies/CEDAW/GComments/CEDAW.C.CG.30.pdf>를 참조한다.)

- **UNSCR 2106(2013)**은 이전 결의안의 운영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한다. 안전보장이사회와 무력분쟁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과 유엔 기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는 분쟁 관련 성폭력에 관한 기존 의무를 이행하고 면책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무력 분쟁 중 및 분쟁 후 상황에서 성폭력 예방 노력에 대한 젠더 평등과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또한 이 결의안은 남성 및 남아를 성폭력 생존자로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UNSCR 2122(2013)**는 여성, 평화 및 안보에 대한 공약 이행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분쟁 예방 및 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결의안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포함하여 모든 범위의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차별 없이 완전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2. 민간인 보호

민간인 보호(Protection of Civilians, POC) 의제는 무력분쟁 시 인명 보호에 관한 유엔의 외교, 법률, 인도주의 및 인권 활동을 위한 기본 틀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999년부터 POC를 의제의 주제별 사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난민, 국내 이재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여성, 아동을 포함한 취약 인구의 필요에 대처하는 국가의 책임과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의제는 모든 당사자가 민간인 보호에 대한 책임 및 그 책임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첫 두 결의안은 민간인의 법적 보호(SCR 1265) 및 물리적 보호(SCR 1296)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SCR 1265는 무력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이고 독특한 영향을 인식하고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평화 절차, 분쟁 후 평화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평등하고 완전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이후의 결의안들은 분쟁 관련 성폭력을 비난하고 평화유지군과 관련된 군인 및 민간 인력에 대한 교육에 GBV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범위의 일반 사안과 특정 사안을 포괄한다. POC 관련 유엔 문서의 전체 목록은 <www.securitycouncilreport.org/un-documents/protection-of-civilians>를 참조한다.

3. 아동과 무력분쟁

안전보장이사회는 1999년부터 아동과 무력분쟁(Children and Armed Conflict, CAAC) 관련 사안에 집중해오고 있으며 각 결의안에는 아동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UNICEF와 국가의 최고위 유엔 대표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국가별 태스크포스에 의해 관리되는 모니터링 및 신고 메커니즘(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MRM)을 구축하여 무력분쟁 시 아동에 대한 여섯 가지 중대한 위반 사례에 관한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결의안 제1612호[2005] 및 제1882호[2009]).

- 아동을 살해하거나 불구가 되게 함
- 무장세력 또는 무장단체에 의한 아동 포섭 또는 이용
- 아동에 대한 강간 및/또는 성폭력
- 학교 또는 병원에 대한 공격
- 아동 유괴
- 아동의 인도적 지원 접근권 박탈

유엔 사무총장은 MRM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례보고서에 아동을 포섭하고 살해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며 성폭력을 저지르고 학교와 병원을 공격하는 분쟁 당사자를 밝히고 비난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워킹그룹은 정기적으로 MRM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련 SC 위원회에 의한 제재 부과와 같은 특정 국가 상황에서 아동을 더욱 잘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권고한다.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긴 하지만 CAAC에 관한 결의안과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특별 대표(<<https://childrenandarmedconflict.un.org>>)의 업무는 구금된 아동, 무력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및 착취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더 큰 이재민 아동과 여아에 중점을 두고 있다. CAAC 관련 유엔 문서의 전체 목록은 <www.securitycouncilreport.org/un-documents/children-and-armed-conflict>를 참조한다.

C. 인도적 지원 기준 및 지침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는 비상사태 시 GBV에 대처할 인도적 책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고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다. 몇 가지 예가 아래 표에 제시돼 있다. 추가적인 부문별 예제는 주제별 영역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기준/지침	설명	GBV와의 연관성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CPWG). 2012.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 http://cpwg.net/minimum-standard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보호를 담당하는 사람 사이의 조정을 강화하고 아동 보호 프로그램의 질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는 공통 원칙을 수립한다. • 각 기준은 주요 행동, 측정, 지침 안내를 담고 있다. 	기준 8(신체적 폭력 및 기타 유해한 관행), 표준 9(성폭력) 및 원칙 3(폭력 및 강요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상해로부터 사람을 보호)을 비롯한 조치 및 제한된 행동을 참조한다.
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 (HAP) and People in Aid. 2014 (draft). Core Humanitarian Standard (CHS), < www.hapinternational.org/what-we-do/the-core-humanitarian-standard.asp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운영 차원에서 인도주의 활동의 질, 효과성, 책무성을 개선하기 위한 9가지 주요 약속을 소개한다. 각 약속에 주요 요구사항, 지표, 검증 방법이 포함돼 있다. 	조직과 그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인구에 대한 책무성 강화 방안과 성적 착취 및 학대 예방을 비롯한 웰빙과 존엄성을 보호할 방법을 식별하도록 지원한다.
ICRC. 2013. Professional Standards for Protection Work Carried Out by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Actors in Armed Conflict and Other Situations of Violence, 2nd ed., <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publication/p0999.ht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인도주의 및 인권 행위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 • 무력분쟁과 폭력적인 상황에서 보호 업무를 위해 개발됐지만 자연재해 관련 보호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보호 활동의 한 부분으로 GBV를 다루거나 통합하는 행위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보호 행위자가 사용하는 일련의 다른 기준을 보완할 수 있다.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INEE). 2011. The 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 www.ineesite.org/en/minimum-standard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을 줄이고 향후 준비를 개선하며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긴급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기준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의 여러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육을 통해 GBV를 예방하는 전략에 관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접근 및 교육 환경 표준 2, 교사 및 교육 표준 3, 교사 및 기타 교육 부문 종사자 표준 2를 참조한다.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Reproductive Health in Crisis (IAWG). 2011. Minimum Initial Service Package (MISP) for Reproductive Health, < http://iawg.net/resource/field-manu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비상사태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돌봄 기준과 조정되거나 우선순위가 부여된 인명 구조 활동을 포함한다. MISP는 초기 필요 현황 파악, 성폭력, HIV, 기타 SRH 사안에 관한 자료가 없어도 이행될 수 있다. • MISP는 인도주의 대응의 스피어 최소 기준(Sphere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에 포함된 기준이며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보건 클러스터의 통과 지침에 통합돼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보호 기준 및 조정된 활동 또는 우선순위 활동을 수립한다. MISP는 성 및 생식보건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며 장기간의 위기 및 복구 과정 동안 포괄적인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를 통해 지속되고 발전돼야 한다. •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사건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계속)

기준/지침	설명	GBV와의 연관성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1994. Code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nd NGOs in Disaster Relief, <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publication/p1067.ht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은 모든 인도주의의 부문 행위자가 재해 대응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는 10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재해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이 공여자 정부, 수용국 정부 및 유엔 시스템과 맺어야 하는 관계를 설명한다. 	<p>행동강령의 제10원칙은 피해 인구의 취약성보다는 역량을 강조하고 피해 인구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의 정보, 홍보, 광고 활동에서 재해 피해자를 절망적인 대상이 아니라 존엄성 있는 인간으로 인식할 것이다.”</p>
Sphere Project. 2011.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 www.spherehandbook.or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인도주의의 부문 행위자에게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에 제시된 기준은 재해 대응을 위해 개발됐지만 자연재해 및 무력분쟁을 포함한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p>각 기준은 성폭력 프로그램 및 젠더가 범분야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주요 GBV 예방에 있어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p>
United Nations Secretariat. 2003. ‘Secretary-General’s Bulletin on 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for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T/SGB/2003/13, < www.pseatastaskforce.org/uploads/tools/1327932869.pd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유엔 직원과 협력기관이 피해 인구를 성적 착취 및 학대(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EA)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요구사항을 설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착취 및 학대는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특히 인도주의의 활동가와 관련된 젠더기반폭력의 유형이다. • 사무총장의 행정명령에는 SEA와 관련된 6가지 핵심 원칙이 포함돼 있다.
PSEA Task Force. 2011. Statement of Commitment on Eliminating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by UN and Non-UN Personnel, < http://pseatastaskforce.org/en/taskfor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에 의한 미래의 성적 착취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42개 유엔기구와 36개 비유엔기구의 결의를 확인하는 성명서다. 	<p>SEA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게 10개 원칙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p>
International Protocol on the Documentation and Investigation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June 2014.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19054/PSVI_protocol_web.pd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지역의 성폭력 종결을 위해 2014년 6월 영국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이 의정서의 목표는 최초 대응자(first responder)가 성폭력 생존자에게서 수집한 정보(물리적 증거 및 증언)를 기소 또는 기타 사법 메커니즘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저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p>이 의정서는 유죄 판결율을 높이고 미래의 가해자를 억제하기 위해 생존자와 증인을 보호하면서 성폭력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 사례의 기본 기준을 제시한다.</p>

인도주의 전략 계획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

A. 인도주의 프로그램 주기

인도주의 프로그램 주기(Humanitarian Programme Cycle, HPC)는 합동 지원 요청 절차(Consolidated Appeals Process, CAP)를 개선하는 2013년의 IASC 원칙에서 합의됐으며 인도주의 대응을 준비하고 관리하며 전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HPC는 서로 연관된 5대 요소, 즉 1) 필요 현황 파악 및 분석, 2) 전략적 대응 기획, 3) 자원 동원, 4) 이행 및 모니터링, 5) 운영 검토 및 평가로 구성돼 있다. HPC의 목표 중 하나는 인도적 지원 우선순위를 위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는 것이다. HPC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에서 조정하며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부문 및 클러스터에 걸쳐 GBV 예방을 주류화하고 대응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서로 연관된 HPC 단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5.%20Humanitarian%20Programme%20Cycle%20November%202012.pdf>와 IASC Humanitarian Programme Cycle Reference Module: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legacy_files/EDG-WG%20Session%20-%20Version%201.0_HPC%20Reference%20Module%2012%20December%202013%20final.pdf>를 참조한다.

B. 인도주의 대응 계획

인도주의 대응 계획(Humanitarian Response Plan, HRP)은 통합된 호소를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며 위기 시 인도주의 활동을 소개한다. HRP에는 다음이 포함돼 있다.

- 국가, 지역(예: 사헬), 영토(예: 동부 DRC) 전략
- 목표, 활동, 동반 프로젝트/활동을 포함한 클러스터 계획.
여기에는 전략 이행 방법과 필요한 자금 조달 액수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러한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국가 전략은 클러스터 대응 계획을 진행 중인 프로그램 주기의 일부가 되도록 지도한다. 이는 변혁의제(Transformative Agenda)의 일부로 전략적이고 조정된 증거 기반 인도주의 활동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RP의 개발과 이행은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인도주의 기관(Humanitarian Country Team, HCT)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HC/RC가 주도한다. 국가 당국의 자문을 구하고 피해 인구의 의견을 고려하여 부문/클러스터와 OCHA가 지원한다.

C. 자원 동원

자원 동원 호소는 계획된 행동과 그에 따라 HRP에서 식별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제시한다. HPC 규정 내에서, 자원 동원은 인도주의 대응 계획을 위한 모금 활동으로 구성된다. 자원 동원 노력은 대응 계획에 충분히 자금이 지원되고 공여자에게 기관 간 자금 조달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RP를 넘는 자원 동원 조치는 회원국의 브리핑부터 공여자 공약 회의, 재정 요구사항 및 기부금을 추적하는 재무추적서비스(Financial Tracking Service, FTS), 특정 위기에 대한 기부 안내, 상황 및 자금 조달 분석, 대응 지원을 위한 맞춤형 메시지 제공까지 다양하다.

D. 인도주의공동기금(Humanitarian Pooled Funds)

OCHA는 국가기반공동기금(Country-based Pooled Funds, CBPFs)과 글로벌중앙비상사태보유기금(Central Emergency Reserve Fund, CERF)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HRP 및 GBV

OCHA는 ICWG를 통해 각 클러스터의 필요 현황 파악 시 GBV 관련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각 클러스터에 GBV 관련 활동과 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1. 국가기반공동기금(Country-based Pooled Funds)

국가기반공동기금(CBPFs)은 긴급구호 조정관이 수립한 여러 공여자의 인도적 지원 자금 조달 수단이다. 이들은 인도주의 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HC)의 지도에 따라 국가 차원의 OCHA에 의해 관리된다. 각 CBPF에 대한 공여자의 기부금은 국내 협의 절차를 거쳐 HC에 의해 배정되고 할당된다.

CBPF는 인도성,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CBPF는 또한 기관 간 상임위원회 및 선진인도적지원 공여국이니셔티브(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에 따라 규정된 인도주의의 자금 조달 원칙에 의해 결정된 공인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CBPF는 인도주의 프로그램 주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식별한 인도적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할당한다. 할당된 자금은 유엔기구, 국제이주기구, 국내 및 국제 비정부기구(NGOs), 적십자/적신월사에 전달된다. 중복을 피하고 사용할 수 있는 CBPF 자금 조달의 보완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자 간 기부금을 포함한 기타 자금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CBPFs는 다음 네 가지 특정 원칙을 바탕으로 기능한다.

- **포괄성(Inclusiveness):** 광범위한 인도주의 협력기관(유엔기구, NGO)이 CBPF 과정에 참여하고 식별된 우선순위 필요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받는다.
- **유연성(Flexibility):** CBPF의 프로그램 중점과 자금 조달 우선순위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며 특히 인도적 지원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변경될 수 있다.
- **적시성(Timeliness):** CBPF는 인도적 필요가 발생하거나 심화되면 자금을 할당하고 생명을 구한다.
- **효율성(Efficiency):** CBPF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인도적 필요에 시기적절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CBPF는 투명하고 책무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한 효과적인 지급 메커니즘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중앙긴급대응기금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은 무력분쟁 및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자금이 부족한 긴급 상황에서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된 인도주의의 기금이다.

긴급구호 조정관은 유엔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기금을 관리하며 OCHA 내부의 전담 CERF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CERF는 대응 계획의 내외부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며 유엔 기금, 프로그램, 전문기구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만이 자금 조달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CERF는 중요 운영을 시작할 시작 자금과 다른 공여자가 아직 지원하지 않은 인명 구조 프로그램을 지원할 자금을 제공한다. CERF에는 신속한 대응과 자금이 부족한 비상상태 지원이라는 두 가지 창구가 있으며 다음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

-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 조기 조치와 대응을 장려
- 시간이 중요한 필요사항에 대한 대응 향상
- 자금이 부족한 위기 상황의 인도주의 대응 핵심 요소 강화



알아야 할 기본 사항

CBPFs 및 GBV

OCHA와 GBV 조정 메커니즘은 CBPF에 접근하려면 GBV 관련 활동과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알아야 할 기본 사항

CERF 및 GBV

CERF의 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단기간의 구호 조치를 통해 직접적인 인명 손실,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집단 또는 집단 대다수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거나 피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인명 구조 기준(Life-saving Criteria, LSC)은 CERF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GBV 관련 활동을 정의한다. CERF 응용 템플릿은 기관을 대상으로 각 프로젝트의 젠더 마커 점수와 GBV 요소가 각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요청한다.

(CERF의 인명 구조 기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docs.unocha.org/sites/dms/CERF/FINAL_Life-Saving_Criteria_26_Jan_2010__E.pdf> 참조)

CERF¹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에 강조된 원칙이 CERF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이행에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엔기구, IOM, 글로벌 클러스터 주도기관(Global Cluster Leads), 기타 협력기관 및 현장 실무자는 신속한 대응 및 자금이 부족한 창구를 위한 인명 구조 기준에 동의했다. 아래 표는 GBV 관련 인명 구조

부문	활동	조건
젠더기반폭력	GBV 부문 종사자를 늘리거나 이들을 배치하여 접근성 좋고 비밀이 보장되며 생존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모든 부문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기관 간 다부문 GBV 프로그램 대응의 이행을 이끌도록 한다.	비상사태에서 최우선 과제로서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 적절한 범위의 심리사회적 개입을 마련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비상사태 시 GBV를 유발하는 고위험 지역과 요인을 식별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연료 자원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포함한 예방 전략을 구축하거나 강화한다(IASC 태스크포스 SAFE 지침).	특정 비상사태 대응 상황.
	안전하고 적절한 보고, 후속 조치, 보호를 위해 경찰(특히 여성 경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타 보안 요원을 포함하여 젠더기반폭력 생존자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특정 비상사태 대응 상황.
비상사태에서의 교육	GBV 정보, 지뢰/UXO 위험 교육, HIV/AIDS, 심리사회, 영양, 보건, 위생과 같은 필수적인 인명 구조 기술 및 지원을 다룬다.	특정 비상사태 대응 상황.
비상사태에서의 보건	성폭력 생존자에게 의료적 지원(정신과 포함)을 제공한다. 성폭력 지원 절차의 임상 관리에 관해 보건 담당 직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약품과 물품(기관 내 RH 키트를 통한 지원 포함)을 공급하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특정 비상사태 대응 상황.
	HIV/AIDS에 우선순위 대응. 비상 보건의료 지원 환경에서의 HIV/AIDS 인식 정보 배포, 콘돔 제공, PMTCT, PEP, 표준 예방 조치 등과 같은 활동과 고위험 집단에 대한 비상사태 인식 및 대응 개입, HIV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돌봄과 치료 등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특정 비상사태 대응 상황.
	심리적 응급처치를 지원하여 커뮤니티와 기관에서 심각한 정신 질환(자살 행동, 정신병, 심각한 우울증 및 약물 남용)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돌본다.	특정 비상사태 대응 상황.
보호 및 인권	커뮤니티 기반 보호 메커니즘을 식별하고 강화하며 구축한다.	특정 비상사태 대응 상황.
	특정 필요가 있는 사람, 특히 고령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보건 클러스터/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국내 이재민(IDPs), 여성과 아동을 중심으로 사법 체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지원한다(예: 사법 및 안보 필요 현황 파악, 분쟁 피해 지역에서의 법률 자문 및 준법률 서비스 지원).	특정 비상사태 대응 상황.
아동 보호	GBV 및 기타 폭력의 생존자,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아동과 특별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포함하여 기타 극히 취약한 아동을 식별, 등록, 위탁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특정 비상사태 대응 상황.
	비상사태에 영향을 받는 아동에게 심리사회적 지원(예: 아동친화적 공간 마련 또는 기타 커뮤니티 기반 개입, 복학 또는 비상사태 교육, 전문가가 있는 경우 정신건강 치료 의뢰)을 제공한다.	특정 비상사태 대응 상황.
	아동 보호 사안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며 대처하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 아동 보호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식별하고 강화한다.	특정 비상사태 대응 상황.
물과 공중위생	개인위생 및 공중위생 물품(여성 및 여아를 위한 물품 포함)을 제공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WASH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완화에 대해 피해 인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무성을 보장한다. 정보/의사소통, 효과적인 시설 사용 최적화, 동원과 참여, 필수 WASH 관련 비식량물품을 지원한다.	특정 비상사태 대응 상황.

1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Life-Saving Criteria, Approved by John Holmes, USG Humanitarian Affairs/ERC, 26 January 2010, <https://docs.unocha.org/sites/dms/CERF/FINAL_Life-Saving_Criteria_26_Jan_2010__E.pdf>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프로젝트: 젠더 마커 팁 시트

GBV 예방 및 대응 개입에 젠더 평등이 중요한 이유

분쟁과 자연재해는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위험, 취약성, 역량, 필요와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약화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가족과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커뮤니티 지원 시스템과 보호 메커니즘이 추가적으로 와해될 수 있다.

젠더기반폭력(GBV)은 비상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그 이후에 더 악화될 수 있다. 'GBV'는 가부장제에서 여성 및 여아가 남성에게 종속된 결과로서 폭력에 취약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또한 남성, 여성, 남아 및 여아에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과 관련된 폭력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남성성과 관련된 규범의 영향을 받은 남성에게 대한 폭력과 섹슈얼리티와 성 정체성 규범의 영향을 받는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인 사람에 대한 폭력 등이 포함된다.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GBV는 주로 여성 및 여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부분이 동의한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대부분의 GBV 프로젝트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실효성을 위해 반드시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와 젠더 평등 사안을 다루어야 하며 예방에 있어서 남성 및 남아가 동반자로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 담당자와 정책입안자가 GBV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GBV 업무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일부 프로젝트는 특히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GBV 예방 및 대응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른 프로젝트는 남성 및 남아나 LGBTI 인구에 대한 특정 유형의 폭력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서 '젠더'나 'GBV' 개입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로 서로 다른 집단(예: 여성과 여아, 남성과 남아, LGBTI)에 대한 폭력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집단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젠더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집단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프로젝트가 젠더 측면에서 대응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 각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표에 기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문제를 젠더 민감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경우 젠더 분석의 초점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젠더 기반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 및 여아가 특정 유형의 폭력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폭력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능력과 이러한 폭력에서 자유로운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LGBTI 개인과 집단을 위한 'GBV'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경우 젠더 분석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폭력 문제가 호모포비아 및 섹슈얼리티와 성 정체성과 관계된 사회적 규범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결짓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IASC 젠더 마커(IASC Gender Marker)는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의 필요가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를 2~0등급으로 코드화한 톨로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접근과 여성, 여아, 남성 및 남아에 대한 결과가 젠더 평등하도록 보장한다. 제안된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수한 젠더 분석을 보여주는 GBV 예방 및 대응 프로젝트는 2b(맞춤형 활동)로 코딩된다. 2b로 코딩된 거의 모든 프로젝트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 환경에서 여성 및 여아에 대한 GBV 활동에 집중할 필요를 인식하고 공여자 우선순위 및 자금 조달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가시성을 높인다. 남성 및 남아나 LGBTI인 사람에 대한 폭력에 보다 폭넓은 초점을 둔 GBV 프로젝트는 자세한 젠더 분석을 토대로 정당성을 강력하게 입증해야 한다. IASC 젠더 마커와 그 적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젠더 마커 팁 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 현황 파악, 활동, 결과

필요 현황 파악은 프로젝트가 다루려고 하는 다양한 유형의 GBV 원인과 관련 요인 및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이다. 특히 피해 인구의 안전과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젠더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프로젝트의 결과는 여성 및 남성 수혜자에게 기대된 변화를 포착해야 한다. 결과 진술은 대상 집단이 개입을 통해 혜택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그 혜택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p>GBV 예방 및 대응 프로젝트 필요 현황 파악에서의 젠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분리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서도 분리한다. •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질 GBV의 유형을 정한다. • 대처해야 하는 GBV 유형의 위험 요인과 예방 요인을 구별한다.
<p>예방 및 대응 프로젝트 활동에서의 젠더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제안된 목표 집단에 따라 폭력에 대한 인식, 보호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벽, 대상 집단이 요구/요청하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로 분리되고 (기타 인구통계학적으로 민감한 변수에 따라 분리된) 표적집단토론을 조직한다. •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존중하는 서비스(예: 성폭력 임상 관리에서의 남성 및 여성 의료진과 안전/안보, 비밀, 존중, 비차별, 조정과 관련된 이행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윤리적이며 안전한 환자의 수용과 위탁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 심리사회, 안보 및 법률/사법 등 주요 부문의 남성과 여성 서비스 제공자를 교육한다. • GBV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 부문별 행동을 통해 어떻게 보장되는가에 관해 다양한 인도주의 부문(예: 교육, 보건, 영양, 보호, 쉼터 등)의 행위자를 교육한다. • 인권, 젠더, GBV와 이러한 사안이 해당 커뮤니티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부족, 전통, 종교 지도자와 남성 및 여성 커뮤니티 지도자를 교육한다. 커뮤니티 지도자를 동원하여 GBV 예방에 참여하도록 하고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보다 생존자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GBV 서비스가 시행되면 어떻게, 왜, 어디서 GBV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커뮤니티에서 알 수 있도록 보장한다.
<p>GBV 예방 및 대응 프로젝트 결과의 젠더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으로 적절한 예방 활동에 관여하는 청년,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남녀 •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존중하는 태도로 생존자에게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자 • 돌봄 서비스에 접근하고 돌봄의 질과 GBV 경험을 관리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나이와 성별에 따라 분류된) 생존자의 증가했다.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최소 젠더 약속 수립

인도주의 부문 행위자의 젠더인지적 프로젝트에 대한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현장 기반 GBV 예방과 대응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으로 적용할 목적으로 최소 젠더 약속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부가 가치 측면과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측면에서 모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관계자가 적용해야 할 핵심 행동과 접근법에 관한 짧은 본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과감한 프로그램의 재구성보다는 현재 접근 방식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와 지원서의 평가를 위해 측정 가능해야 한다.

약속은 클러스터 구성원과 조직 내 대화의 산물이어야 한다. 최초 약속 목록은 국가 클러스터, 하위 클러스터, 해당 부문에서 일하는 기관의 직원에 의해 확인, 토론, 수정, 승인되어야 한다. 약속에 특정 상황에서 식별된 핵심 우선순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의 약속, 활동, 지표는 위에 제시된 '분리-정의-구별-설명'으로 구성된 틀에서 직접 도출된 것이며, 예시로만 제공된다.

1. 분리: 가능한 한 성별 및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데이터를 분리한다. 필요하다면 위기 전 정보의 증거 기반 분석을 활용하여 위기에 처한 인구 중 누가 다양한 유형의 GBV에 대해 가장 큰 위험에 처해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모든 연령대 또는 특정 연령대의 여성(청소년, 어린 여아, 노인 여성), 장애인 여성 및 여아, 성인 및 레즈비언 여아 및 원주민 여성과 여아 및 기타 소수 여성 및 여아 등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 분석은 남성 및 남아나 더 큰 범주의 LGBTI 개인 및 집단을 포함하거나 이들에게 특별히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활동(예시)	지표(예시)
프로젝트의 제안된 목표 집단 초점에 따라 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의 종류를 도출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로 분리되고 (기타 인구통계학적으로 민감한 변수에 따라 분리된) 표적집단토론을 조직하고 그들이 경험한 폭력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젠더적 측면에 대처할 전략을 수립한다.	GBV의 속성, 정도, 위험 및 GBV와 관련된 보호 방법에 관한 표적집단토론이 여성, 청소년기 여아, 청소년기 남아, 남성과 같은 관련 목표 집단과 함께 XX 및 XX IDP 캠프에서 진행됐다. 폭력 유형과 관련된 특정한 젠더적 측면에 대처하는 권장방안 (예: 생계,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가족과 청년을 위한 기술 학습)을 수립했다. 위험, 취약성, 보호 관련 요인에 관한 분석을 수행했다.

2. 정의: 프로젝트에서 다룰 GBV의 유형(예: 강간 및 기타 유형의 성폭력, 가정 폭력, 조혼과 강제 결혼,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등)을 정의한다.

활동(예시)	지표(예시)
조정된 신속 상황 분석 수행(GBV 지침의 행동 시트 2.1 준수)	성별에 따라 적절한 평가자와 피해자가 참여하는 조정된 신속 상황 분석은 [날짜]에 시행되며 [캠프/지역]에서의 GBV의 속성과 정도를 정의한다.

3. 구별: 대처해야 하는 GBV 유형의 위험 요인을 구별한다. 젠더 불평등과 차별이 전 세계 여성 및 여아에 대한 GBV의 근본적인 원인인 하지만 다른 요인(예: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민족, 빈곤 등) 역시 여성 및 여아가 각 상황에서 겪는 폭력의 유형과 정도를 결정한다. 남성 및 남아의 경우 그들에 대한 특정 유형의 폭력은 남성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생존자에 의해 부과, 수용, 추앙되는 남성성의 결과인 경우가 있다. LGBTI 집단의 경우 그들이 경험하는 특정 유형의 폭력은 섹슈얼리티 및 성 정체성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범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이 GBV 유형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활동(예시)	지표(예시)
WASH, CCCM, 쉼터 및 NFI, 보호, 보건 등 다른 클러스터와 연락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GBV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그 완화 방법을 논의한다.	[캠프/지역 이름]의 여성과 여아 및 남성과 남아에게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논의하기 위해 각 클러스터와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권장했다.

4. 활동: 예방하고 대응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제안 활동의 유형을 설명한다.

활동(예시)	지표(예시)
조정된 신속 상황 분석,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된 표적집단토론, [지역]의 GBV에 관한 2차 자료와 보고서, 도식화 연습, 다른 클러스터와의 회의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합 및 분석하고, 예방, 대응이나 환경 구축과 같은 프로젝트의 특정 초점을 확인한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했으며 프로젝트의 초점을 위한 명확한 전략을 확인했다.

‘여성, 여아, 남아 및 남성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의 효과성 높이기(Increasing Effectiveness of Humanitarian Action for Women, Girls, Boys and Men)’ 이러닝 코스는 <<http://www.interaction.org/iasc-gender-elearning>>을 참조한다.



<http://gbvaor.net>

IASC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http://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